목 차

투 자 설 명 서 1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2
【 본 문 】 3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3
요약정보 5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61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61
1. 공모개요 61
2. 공모방법 61
3. 공모가격 결정방법 64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68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81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83
III. 투자위험요소 175
1. 사업위험 175
2. 회사위험 187
3. 기타위험 199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230
V. 자금의 사용목적 231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33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313
I. 회사의 개요 313
1. 회사의 개요 313
2. 회사의 연혁 316
3. 자본금 변동사항 320
4. 주식의 총수 등 321
5. 정관에 관한 사항 321
II. 사업의 내용 327
1. 사업의 개요 327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332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332
4. 매출 및 수주상황 333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334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335
7. 기타 참고사항 336
III. 재무에 관한 사항 340
1. 요약재무정보 340
2. 연결재무제표 340
3. 연결재무제표 주석 340
4. 재무제표 340
5. 재무제표 주석 345
6. 배당에 관한 사항 391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391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391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392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392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394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394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394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396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396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399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402
VI. 주주에 관한 사항 407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411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411
2. 임원의 보수 등 413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416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417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18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418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418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418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418
XI. 상세표 421
【 전문가의 확인 】 422
1. 전문가의 확인 422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422

투 자 설 명 서

2025년 11월 13일

(발 행 회 사 명)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66,000주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660,000,000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5년 11월 13일

2. 모집가액 : 660,000,000원

3. 청약기간 : 2025년 11월 13일 ~ 2025년 11월 20일

4. 납입기일 : 2025년 11월 21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서울 강남구 언주로 174길26, 3층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 표 주 관 회 사 명)

해당사항 없음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확 인 서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로서 이 공시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 및 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공시서류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 년 11 월 13 일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대표이사 오현순 (서명)

신고담당이사 이관재 (서명)

【 본 문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투자계약증권) 】

1. 본 금융상품은 투자자가 자산에 대한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가지는 경우로서, 개별투자자가 아닌 공동사업자가 자산에 대한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수행하는 형태 등으로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합니다.

2. 투자계약증권은 「상법」에 권리와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증권(예: 주식, 채권)과는 달리 **투자자와 공동사업자간 개별 투자계약내용에 따라 그 권리와 위험이 상이해지는 비정형적 특징**이 있으므로, 첨부서류인 투자계약 관계서류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계약증권은 다음과 같은 **투자 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초자산 위험) 본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은 **관련 시장수요 등에 따라 가치가 크게 변동**할 수 있고, 기초자산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 **훼손, 도난, 위작 등의 위험** 등이 존재하며, 기초자산 **매각 곤란시 예상보다 보유기간이 크게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② (공동사업자 위험) 본 투자계약증권의 성과는 공동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자 도산시 투자자의 지위가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자의 도산위험이 절연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사업구조 위험) 본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구조가 민법 등 소관법률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공동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사업구조를 변경**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④ (규제 위험) 현재 투자계약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정기보고서 등 발행후 공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해상충 방지 또는 불건전행위 방지 관련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다른 증권(주식 등)과 **법적인 보호체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 관련 법규 외에도 기초자산 등 투자계약내용과 관련한 별도의 법규가 있을 경우 해당 규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규제 준수 등을 위해 투자계약증권 관련 업무 절차 및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⑤ (환금성 위험) 본 투자계약증권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시장 또는 다른 활성화된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투자계약증권은 중도매각이 곤란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기까지 보유해야 할 가능성도 큽니다.

4. 회사는 공동사업의 목적이 투자계약증권이 아닌 다른 형태의 증권발행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본문 및 첨부서류중 변호사의 법률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투자계약증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본 투자계약증권은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하며 **투자금 전체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성격** 및 **비시장성**에 따라 기초자산의 처분 전까지는 본 증권의 현금화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여유자산의 10%*를 초과**하여 본 투자계약증권 등 상장되지 않는 비시장성자산에 투자하시는 것은 자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미국・영국의 경우 일반투자자가 비상장증권 등을 투자하려는 경우, 투자자 순자산의 10% 이내에서만 가능

7. 회사는 아래와 같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증권신고서 본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구조 관련 증선위 제시요건 구비) 발행회사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 등 증선위가 제시한 투자자 보호장치* 구축

*「조각투자 시장의 규율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22.11.2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른 증선위의 사업구조 재편 관련 요건

② (첨부서류 제출 강화) 외부감사보고서 등 투자계약증권 관련 공모 첨부서류를 강화하여 제출

③ (발행후 공시 실시) 투자계약증권 발행후 투자계약증권 및 발행인 현황 관련 자체적인 정기・수시공시 체계 마련

8.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자본시장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II.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국내외 경제는 관세 정책, 환율,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중국 경기 불황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공동사업에 대한 투자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여 주로 미술품인 기초자산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공동사업 및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관한 사업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취득하기 위한 물색, 투자계약 체결과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한 재원의 조달, 기초자산에 대한 관리를 거쳐 기초자산의 처분과 투자계약의 청산을 통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순환적 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변동이나 경기변동이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시가 하락을 유발하거나, 투자자 심리 위축, 기초자산 수요 침체에 따르는 회수 및 청산 가능성의 축소 등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투자자금 조달부터 투자집행 및 회수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내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외 경기둔화 또는 체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과 수익성 및 당사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시가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 세법 변경에 따른 미술품 과세 강화 시 미술품 시장 축소 위험** **향후 미술품 시장에 대한 보유세 신설 등 관련 정책이 입법화되고, 세법에 대한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실무의 변경, 미술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세율 상승이 현실화 되는 경우 미술품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과 공동사업의 수익성, 그리고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최종적인 청산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 홈페이지 해킹, 고객정보 유출 등 정보 보안 관련 위험**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부 과실뿐만 아니라 해킹 등 외부변수에 대한 강도 높은 정보 보안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보안원 기준에 따르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체계를 갖추고 다수의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권 시스템 연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 홈페이지 해킹, 고객정보 유출 등 정보 보안 관련 위험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 IT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투자계약증권 발행 및 관리 시스템 오류 발생 위험** 실시간으로 청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 발행 업무에 있어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시스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과정에서 청약에 의한 투자자 명부 작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이는 고객의 재산적 피해 또는 투자계약증권을 통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사업의 관련법령 위배 가능성과 그로 인한 소송·분쟁의 가능성 관련 위험** 당사가 진행하는 공동사업, 투자계약의 체결 및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은 관련 법령 및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등 지침과 행정지도에 따른 규제 대상이며, 따라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변경 등에 따라 당사의 영업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취득·보관·관리·처분 등에는 민법상 공유 및 위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당사는 투자자 전원으로부터 공유물인 기초자산의 취득·보관·관리·매각(기초자산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상 매각대금이 모집총액 100% 이상인 경우)·손익배분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투자자는 취득하는 투자계약증권의 좌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기초자산을 공유하며, 기초자산의 처분손익을 지급받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당사는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과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당사가 수행하는 공동사업 구조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동사업의 방식과 투자계약증권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재까지 법원이나 권한있는 유관기관에 의하여 그 적법 또는 위법 여부가 명확하게 판단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 외에도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 수리 여부,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개정 여부 등에 따라 당사가 진행하는 공동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준법감시인력 및 당사와 정기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상시적으로 공동사업 및 투자계약증권 발행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규제 강화 가능성,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공동사업의 법령 위반 가능성이나 관련 소송·분쟁 제기 가능성을 현실화될 가능당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경우 공동사업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공동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의 반대 의사표시,공동사업의 탈퇴 등으로 인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은, 청약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투자계약을 통해 투자자들은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 공동사업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공동사업 청산 또는 투자계약증권의 만기시까지 기초자산의 보관·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되, 기초자산 처분에 관한 권한은 기초자산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상 매각대금이 모집총액 100% 이상으로 약정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위임합니다. 공유물인 기초자산의 분할금지 특약(분할금지기간 5년, 갱신 시 최대 10년)을 체결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에서는 투자자들로 구성되는 투자자 총회를 두고, 투자자 전원(공동사업 운영자 제외)의 찬성으로 공동사업운영자에 대한 위

	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공모총액의 100%미만의 가격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민법 제 264조에 따라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자 전원의 동의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중단을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가 공모총액의 100%이상의 가격으로 하는 기초자산 처분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일부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기초자산의 보관·관리·처분 관련 위임계약을 취소하거나 기초자산의 분할청구 등으로 공동사업의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 투자계약 및 공동사업자에 대한 위임계약의 효력 또는 기초자산 분할특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소송·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동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사업 구조의 변동 또는 공동사업의 중단 관련 위험** 당사는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조건에 따라 사업구조재편의 완료를 보고하고, 그 보고된 사업구조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나 향후 공동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변경되거나 혹은 관련 법령 등의 변경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이외의 사유로 공동사업의 구조가 변동되거나 공동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동사업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에서 확인되거나 입증되지 아니한 사업모델 관련 위험** **해외에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사례는 다수 있으나 국내에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사례는 적은 편입니다.이처럼 당사의 사업모델은 장기간에 걸쳐 검증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측되지 않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의 미승계 관련 위험** 당사는 투자계약을 통해 기초자산인 미술품에 대한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투자자 중 1인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투자자가 가진 공유지분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가지게 되는 경우 투자계약상의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의 승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투자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시 등으로 인해 기초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제한이 발생하여 공동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투자계약증권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재무안전성 관련 위험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국내외 경기 침체 및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전망의 악화, 시장 둔화 등 예기치 못한 영업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투자계약증권 특성상 당사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게 되는 바 당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공동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위 구매고객 이탈 시 매출 하락 위험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과의 거래 관계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매출 감소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하락과 공동사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술품 소싱 경쟁 또는 미술품 시장 축소로 인한 미술품 공급 축소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물색과 취득에 필요한 능력(미술품 소싱 능력)입니다. 당사는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주)케이옥션과 미술품 소싱을 포함하는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미술품 소싱 능력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미술품 시장과열로 인한 경쟁업체와의 소싱 경쟁 또는 미술품 시장 축소로 인하여 미술품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당사의 미술품 소싱 능력 역시 감소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라. 과도한 수수료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축소 위험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의 진입이 늘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과도한 수수료율 경쟁으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자산 거래 및 증권 취득과 관련된 유동성 위험 **고가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모집 또는 매출이 계속되는데 비하여 공동사업의 청산은 지연되는 경우, 공동사업에 투입되는 당사 자금의 회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자금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바. 핵심인력 유출에 따른 영업 축소위험 전문적 인력 유지를 위해 당사는 적극적으로 핵심 인력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다양한 임직원 복리후생과 보상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최대주주인 (주)케이옥션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미술품 경매회사로 자본시장과 미술품 시장 모두에 전문성이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적 인력을 지원받는 데에도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핵심 인력의 퇴사로 인한 인력 유출이 있는 경우 당사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사업 운영자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패 위험 및 공동사업 운영자의 겸영으로 인한 위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있어 공동사업 운영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사는 과거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2024년부터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초자산 2건에 대해 투자계약증권의 청산에 따르는 손익을 배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매우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사업운영 검증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어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공동사업이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투자계약을 감시·감독하는 견제장치 미흡으로 인한 위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하는 투자계약증권에 있어 공동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투자계약의 이행을 감시·감독하는 견제장치가 외부에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투자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사업자 선정에 관련된 위험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공동사업의 주된 운영자가 되며, 다른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하여 공동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인 청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합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 시 대상자의 재무상황과 규모, 기초자산에 대한 전문성, 연혁과 기존 거래이력 등을 고려하고, 지급해야 하는 비용과 수수료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대상자에 대한 수수료율 등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당사가 부적합한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차. 소송 관련 위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나 분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분쟁이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그 소송 내역 및 금액 여부에 따라 당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공동사업의 성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공동사업자의 도산 관련 위험** 당사는 청약금과 청약증거금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당사 서비스 중단을 대비한 독립적 제3자와의 청산 업무 관련 위탁계약, 청산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의 마련, 동산인 기초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 등을 통하여 도산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고 있으나, 도산 위험은 모든 사업자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으로 이러한 도산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공동사업의 수익성이나 계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가능성** 본 증권신고서에 대하여 정부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공모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 되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수리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와 투자계약서 기재내용이 변경되거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 건 투자계약증권은 정부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라.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공모가격은 기초자산 취득금액에 발행인의 이익을 포함하는 발행제비용을 합산하여 발행하는 증권의 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희망공모금액 중 기초자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는 약 90.91%이며, 발행제비용의 비율은 9.09%를 차지합니다. 발행인은 발행제비용을 자신의 위험으로 지출하고 남은 부분을 발행인의 이익으로 삼으므로, 투자자께서 본 투자계약증권의 취득 이후 추가로 부담하시는 금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인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은 기초자산의 정확한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발행제비용 역시 절대적인 가치의 평가가 합산된 금액이 아니며 발행인의 이익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는 가능성 등 그 정확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이처럼, 공모가 산정방식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래예측진술의 포함으로 인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미래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내지 별도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 환경, 공동사업의 운영 경과,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이 포함된 시장의 추세나 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미래예측적 서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당사는 일반청약자에게 **증권을 배정함에 있어 청약 수량이 본 공모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의 수량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비례 배정, 추첨 배정, 균등 배정 방식을 각 적용하나 청약의 방식에 있어서는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를 제외한 일반청약자 1인의 본 증권 청약한도는 3,000만원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수량의 증권을 배정받을 수 없으며, 당사를 제외한 어떠한 투자자도 50%를 초과하는 증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각 적용되는 배정 방식에 의하여 배정되는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되므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증권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보다 많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증권수보다 많거나 적은 증권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자명부 확정 전까지 예상한 배정증권 청약으로 배정되는 증권의 수량 또는 환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이 존재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세법 및 관련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거래가격 및 조건은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공모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은 기초자산에 대하여 당사가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다른 공동사업 참여자들을 선정하고, 투자자들에게 기초자산의 매각시 처분손익을 배분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것으로 **공동사업자(공동사업 운영자 및 공동사업 참여자)와 투자자 간, 또는 투자자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관리하여 공동사업의 운영 원칙과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 기준,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통제 규정, 분쟁해결 기구를 두는 등 이해상충 발생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 및 공동사업의 수행과 기초자산의 취득, 보관, 처분 과정에서 당사의 증권 보유로 인하여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당사가 미처 예상치 못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모자금의 보관 방식과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본 공모를 위한 청약기간 중 청약증거금을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하여 당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금번 공모를 통하여 조달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금액을 기초자산 취득과 발행제비용으로 공제합니다. 이 때, 당사는 발행제비용 중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확정된 비용 항목들을 제외한 잔여 부분을 발행에 따라 당사에 발생하는 이익으로 인식할 예정입

	니다. **이러한 공모자금의 보관 방식과 발행제비용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당사의 이익으로 하는 공모 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는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계약증권의 환금성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 공모에서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은 대한민국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등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양도·양수 방법을 통하여만 제3자에게 증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활성화된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투자자가 취득한 증권의 환금성이 저하되고, 증권의 가치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초자산의 개별 특성으로 인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특정 작가 1인의 단일 미술품을 대상으로 기초자산을 취득·보관·관리·매각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것으로, 생산자인 작가와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특성과 그에 대한 공급 및 수요에 따라 공동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초자산인 미술품 거래시장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 미술품 시장의 규모는 기초자산이 유통되고 현금화되는 유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미술품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기초자산의 청산 가능성이나 청산시기, 또는 청산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술품 시장은 경제흐름과 연관성이 있으며, 향후 경기 둔화 시 미술품 시장 또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품 시장은 경제 위기 이후 빠르게 과거 시장규모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미술품 시장의 회복탄력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사가 공동사업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 미술품 시장은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 뿐 아니라 기초자산의 처분가능성과 수익률, 공동사업의 청산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품 시장의 유동성을 측정하는 과거 미술품 거래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미술품의 시장의 범위, 수요층에 따라서도 공동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초자산 가치의 객관적 입증 가능 여부에 따르는 위험** 당사는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거래사례 등을 분석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첨부하며, 기초자산 취득금액과 확정되거나 예상되는 발행제비용 등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품인 기초자산의 거래 사례 등에**

	대한 조사는 주로 국내 또는 국외의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거래된 과거 사례를 기초로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가치를 추정하였을 뿐이며, 동 미술품의 가격에 대한 보장 또는 명확한 작품의 가치를 제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 공모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하여 미술품 시장의 변동, 작품의 급격한 가치 상승 또는 하락 등으로 기초자산 가치의 객관적 입증 실패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실패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공동사업의 청산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초자산인 미술품 투자에 있어 내재적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것으로, **미술품의 위작 위험, 작품의 손상 위험, 분실 위험, 도난 위험 등 기초자산인 미술품 자체에 내재된 위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 기초자산의 처분곤란 등으로 인한 장기 보유 위험 및 투자계약증권 만기 연장 위험** 당사의 계속기업 가능성, 당사의 매출, 영업이익, 현금유동성 등은 공동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청산 결과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는 기초자산을 합리적 가격에 취득하여 시장가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단기간에 매각하여 공동사업을 이른 시간에 성공적으로 청산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술품은 예술적 가치와 개별적 선호도, 경기의 변동이나 미술품 시장의 상황에 따라 시장 가치와 수요가 변경될 수 있으며, 유사한 거래사례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미술품에 대하여 일정한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수의 수요자만이 존재하거나 수요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판매시기와 잠재적 가격을 본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서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기초자산의 매각이 투자계약증권의 만기인 5년이 도래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계약증권을 장기 보유하게 되실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처분곤란으로 인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 5년을 기한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의 만기 연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위험** 공동사업은 생산자이자 창작자인 작가의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본 증권신고서를 통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포함하여 공동사업의 전 과정에서 작가의 지적재산권을 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 공동사업의 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보관·관리·매각의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한이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공동사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너.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과 관련된 위험 **미술품은 2027년 7월 26일부터 「미술진흥법」에서 정하는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대상("재판매보상금")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재판매보상금의 징수 가능성은 공동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더. 원금 미보장과 관련된 위험** 본 공모에서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러.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와 투자계약은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악화는 당사의 사업,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 공동사업의 수행, 기초자산의 처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8 (단위 : 원, 주)

증권 기본정보					
증권명칭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AT-YOUNGKUK-008)	66,000	10,000	10,000	660,000,000	일반공모

공동사업구조		
권리구조	수익구조	중도환매 방법
소유권(공유)	매각	없음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명	사업 내용	회사와의 관계	공동사업 관련 경력
(주)투게더아트(공동사업 운영자)	미술품 취득, 관리(보관), 매각, 손익배분	본인	2018.07.30 부터 (약 7년 2개월)
(주)케이옥션 (공동사업 참여자)	미술품 보관업, 미술품 판매업, 미술품 중개업	특수관계인(최대주주)	2005.09.15 부터 (약 20년 1개월)

기초자산				
기본정보	매입처・매입방식	매입가액	가치산정근거	처분방식

① 작가 : 유영국(Yoo Youngkuk, 1916~2002) ② 작품명 : Work ③ 제작시기: 1984년 ④ 재질: oil on canvas ⑤ 작품크기: 97 x 130.5 cm	매입처: 개인 1인 매입방식: 선매입	600,000,000	내부평가 : ① 취득처, 기초자산의 진위, 기초자산 상태에 확인과 검증을 거치고, ② 직전 10년간 동일 작가의 거래사례 [57]건을 분석하여 기초자산의 시장성, 내재가격, 적정 취득가격을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① 제일감정평가법인, ② 한국기업평가(주) ③한국화랑협회	① 공동사업 운영자가 투자계약 제22조(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기초자산에 관한 권한 위임), 제38조의2(투자자의 의결권 위임), 제41조(청산을 위한 기초자산 매각)에 따라 기초자산 처분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발행인 재량에 따라 처분 ② 투자계약증권 만기일 경과시 : 투자계약 제41조의2(기초자산 매각에 대한 특칙)의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포괄위임된 권한에 근거하여 발행인 재량에 따라 처분 ③ 위 ①과 ② 외의 경우 : 투자자총회의 결의(처분정족수에 의한 투자자 전원 동의)에 따라 처분

기초자산 관련 시장			
시장명	운영주체	거래량	거래규모
글로벌 미술시장 (단위: 건/USD)	미술품 경매회사, 화랑, 아트페어, 기관 등	40,500,000	57,500,000,000

투자자 보호장치	
소유권 입증수단 및 보관위치 확인방법 (또는 공동사업자와의 도산절연 장치)	투자자 피해보상 체계 등

① 소유권 입증수단: - 확정된 투자자명부의 공증(사서인증 및 확정일자) - 발행인 플랫폼 투게더아트 (https://weshareart.com)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확인 ② 보관위치확인: 발행인 홈페이지에 게재 ③ 도산절연 - 청약금(청약증거금) : 도산절연된 특정금전신탁, 투자자 실명계좌, 집금계좌를 연동한 계좌체계를 통하여 분리보관(NH투자증권) - 청산금(매매대금) : 도산절연된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분리보관(NH투자증권) - 기초자산 : 미술품 보관위탁계약((주)케이옥션이 제공하는 케이아트스페이스) ④ 기타: 변경사항 공시	① 투자자보호기금 조성 : 발행인의 공동사업 미청산 잔액의 5% 이상으로 누적하여 적립하며, 매 사업연도말 별도의 분리된 금융기관신탁계좌에 특정금전신탁(NH투자증권)하고, 사업연도 중 투자자보호기금의 추가 적립과 분리보관을 위하여 하나은행 압구정금융센터에 당사 이사회 결의 및 감사 동의를 통하여만 출금할 수 있는 출금제한 계좌를 개설하여 분리보관 ② 미술품 보험 : 보관회사(㈜케이옥션) ③ 청산대리인지정 : 법무법인(유) 세종/(주)케이옥션

수수료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 수수료	공동사업자간 수수료	기타 수수료
① 발행 및 운영수수료 : 없음 ② 처분시(공제) - 성과보수(성과보수제): 매각차액(청산가액)이 공모총액의 8%를 초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20%(VAT 별도) - 매각차액이 공모총액 대비 8%이하일 경우 성과보수 없음	없음	① 발행분담금 : 594,000원 ② 자문수수료(감정평가, 법률검토의견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수): 15,422,000원(VAT 포함) ③ 사서인증비용 : 1,200,000원 ④ 예비비 : 21,392,000원(공동사업의 운영을 위한 기초자산의 운송, 전시, 분쟁해결, 계좌관리수수료, 기타 비용 등을 위한 유보) ⑤ 발행인 매매차익 : 21,392,000원

인수(주선) 여부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모집공모	아니오	해당없음	해당없음

인수(주선)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	-	-	-	-	-	-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5년 11월 13일 ~ 2025년 11월 20일	2025년 11월 21일	2025년 11월 13일	2025년 11월 21일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기초자산 선매입 비용	600,000,000
발행제비용	60,000,000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
【기 타】	① 발행인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에 대하여 본 공모로 인하여 모집되는 금액과 무관하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이미 취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발행인은 본 공모로 모집되는 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발행인이 본 공모로 발행되는 잔여증권을 전부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초자산의 잔여 공유지분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② 투자자는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 수수료"에 기재된 수수료만을 부담합니다. ③ 미술품 보관료 및 보험료는 공동사업의 청산시까지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당사가 부담합니다.

【 Q&A 】

[일반사항 관련]

Q. Q&A의 구성

A. 본 증권신고서의 Q&A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는 아래 분야에 따라 나누어진 Q.문항에서 당사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한 답변을 찾아 본 증권신고서의 본문 내용에 앞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Q&A의 구성	
분야	Q 문항
일반사항 관련	Q-일반-1. Q&A의 구성
	Q-일반-2. 투자하면 투자대상 및 발행회사에 대해 어떤 권리를 받게 되나요?
	Q-일반-3. 채권적 청구권은 무엇인가요?
	Q-일반-4. 투자계약증권은 법적규율에서 주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Q-일반-5.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판례나 해외 사례, 연구 등이 있나요?
	Q-일반-6. 청약은 선착순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청약을 하게 되나요?
	Q-일반-7. 투자와 관련한 최소 또는 최대 금액이 있나요?
	Q-일반-8. 어떤 투자자는 투자를 피해야 하나요?
	Q-일반-9. 투자계약증권의 양수도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투자대상 자산매입 관련	Q-자산-1. 회사는 투자대상(예: 미술품)을 어떻게 획득하나요?
	Q-자산-2. 투자계약증권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Q-자산-3.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외부평가는 믿을 만한가요?
	Q-자산-4. 투자대상자산의 외부평가 가격이나, 시가는 어떤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나요?
	Q-자산-5.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가격정보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

	나요?
수익/비용 관련	Q-수익/비용-1. 투자계약증권의 수익창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수익/비용-2. 투자대상자산의 판매여부와 시기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Q-수익/비용-3. 투자자산의 보관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도 높아지나요?
	Q-수익/비용-4. 투자계약증권의 수익금 배분구조 및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Q-수익/비용-5. 투자계약증권 대상 자산 및 투자기간중 발생하는 수익금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발행회사와 구분되어 관리되나요?
투자자보호관련	Q-투자자 보호-1. 발행인이 선택한 공유지분 입증수단 또는 도산절연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방식인가요?
	Q-투자자 보호-2. 기초자산에 대한 보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나요?
	Q-투자자 보호-3. 발행인 파산시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게 되나요?
	Q-투자자 보호-4. 투자이후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정기적/수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해상충 관련	Q-이해상충-1.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자 중 발행인의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가격 및 조건을 정하나요?
	Q-이해상충-2. 어떤 상황에서 발행인 또는 공동사업자는 이익을 보고,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 있나요?
	Q-이해상충-3. 발행인도 투자계약증권에 투자를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발행인이 투자대상에 대한 정보우위에서 선별적으로 투자하게 되지 않나요?

Q-일반-2. 투자하면 투자대상 및 발행회사에 대해 어떤 권리를 받게 되나요?

A-1. 공동사업 참여로 인한 권리 일반

본 증권신고서는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투자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시는 투자자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보관한 후 종국적으로 매각하여, 그 매각에 따르는 처분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투자자는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계약에 기재된 투자자의 권리를 꼼꼼히 읽어보신 후 투자하셔야 하며, 투자계약에 동의하시는 경우에만 투자계약증권을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인 당사(이하, “발행인”, “발행회사”, “공동사업 운영자”, “당사”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되며,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공동사업 참여자와 함께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청산까지 기초자산의 취득과 보관, 그리고 처분을 맡게 됩니다. 당사는 공동사업의 운영자가 되며, 공동사업을 선관주의 의무에 의하여 운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당사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시하고, 공동사업에 필요한 공동사업 참여자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기준에 부합하게 선정합니다.

A-2. 투자자가 가지는 구체적 권리와 그 범위 등에 대한 요약

투자자는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는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 또는 당사와의 관계에서 기

초자산에 대한 공유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기초자산인 미술품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또한, 당사가 기초자산을 제3자에 위탁하여 보관하는 경우 그 목적물인 미술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다른 투자자 또는 당사와 준공유하게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때, 공동사업의 범위에서 투자자는 당사에 기초자산의 취득·보관·관리·매각에 관한 권한을 공동사업의 청산 또는 투자계약증권의 만기까지에 한하여 위임하고, 당사를 통하여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위임약정과 기초자산인 미술품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존속기간 동안 공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특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임과 특약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해지나 철회에 일정한 조건과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A-3. 증권신고서 중 투자자의 권리를 알 수 있는 부분

투자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 투자자가 위임하는 권리와 의무의 상세한 내용, 분쟁의 해결, 공동사업의 구조, 증권의 투자수익 분배 절차, 과세에 관한 사항, 증권과 관련된 보고서나 안내사항 등의 전달 절차, 증권 양도시 필요한 절차,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기초자산의 보관·관리와 관련된 사항, 기초자산의 처분에 관련된 사항, 기타 중요사항에 관하여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에는 첨부 서류로 투자계약서 및 본 증권신고서와 관련된 처분문서, 진술서, 계약서,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일반-3. 채권적 청구권은 무엇인가요?

A-1. 채권적 청구권의 의미

소유권이나 다른 제한물권을 가지는 자에게 인정되는 대세적인 권리인 물권적 청구권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법률행위(계약)를 통해 인정되는 것으로 물권적 청구권과 달리 계약상대방에 대한 상대적 효력만 있습니다.

A-2.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에서의 채권적 청구권

본 투자계약증권에서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가 수행하는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공동사업의 청산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 그 청산금의 배분청구권을 가지는데, 이 때 투자자가 가지는 청산금에 대한 배분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A-3. 기초자산 운용수익 등 채권적 청구권의 예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채택하고 있는 사업구조는 아니나, ①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받은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다수 투자자에게 수익을 구매한 지분 비율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권의 주요한 권리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또는 ② 기초자산의 대여(렌탈) 등 기초자산의 처분이 아닌 운용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증권의 주요한 권리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이러한 수익에 대한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4.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초자산 운용수익의 배제

당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안전한 사업구조를 확인할 때까지 기초자산의 운용에 따르는 채권적 청구권을 증권의 중요한 권리로 포함하거나 당사의 사업수단으로 삼을 계획이 없습니다.

Q-일반-4. 투자계약증권은 법적규율에서 주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 본 증권신고서로 발행되는 증권의 종류

본 증권신고서로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6가지 증권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A-2.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 권리를 표시한 “투자계약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6항은 투자계약증권을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계약증권은 그 발행회사(당사)가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운영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표시한 증권입니다. 즉,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다른 증권의 종류와 구분됩니다.

A-3.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공동사업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계약증권으로만 발행될 수 있는 종류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판단 시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적인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법령해석 회신문 일련번호 14005). 이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계약증권이 자본시장법 제4조 제2항에 열거된 기타 증권 유형으로 발행될 수는 없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하며(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 이론적으로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가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해당 SPC가 당사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후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SPC가 보유하고 투자자는 SPC의 채권자 또는 출자자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공동사업과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을 취득가액 이하에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도 SPC가 투자자에 대해 잔존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서는 오로지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손익을 귀속받는 공동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증권”이란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5항). 공동사업의 기초자산은 제3자에 신탁되어 있지 않고 투자자가 공동소유하는 구조이므로 수익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에 의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이 발행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자본시장법 제110조 제1항) 수익증권 발행을 통해서는 공동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하며(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증권예탁증권”은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8항). 당사와 투자자 사이의 투자계약에 따른 권리는 별도의 기초자산의 가격 등과 연계하여 결정되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탁받은 증권에 관한 권리도 아니므로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도 공동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하는데(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 투자자와 당사가 체결한 투자계약은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익명조합 등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투자자가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직접 취득한다는 점에서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그 운용수익만을 배분받는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투자계약에 따라 최소 청산목표액 미만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투자자가 직접 기초자산의 처분을 결정하는 점에서도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배제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은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운용・배분하는 경우를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3호). 투자자들은 투자계약에 따라 전원의 합의로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그 전원의 합의로 기초자산의 관리・처분・손익배분 등의 권한을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위임하는 한편, 최소 청산목표액 미만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투자자 전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투자자 전원의 합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의 처분계획을 중단시키고 직접 처분 상대방, 가격, 시기를 정하여 기초자산을 처분하거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또한 투자자 전원의 합의로 언제든지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기초자산의 관리・처분・손익배분 등에 관한 위임을 해지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투자계약 제22조, 제38조 제2항), 이러한 경우 투자자들은 전원의 합의로 직접 기초자산의 관리・처분・손익배분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공동사업의 운용・배분 방법으로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기초자산의 관리・처분・손익배분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투자자 전원의 합의로 직접 기초자산의 관리・처분・손익배분에 대해 의사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당사가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거나 이를 통해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집합투자증권을 통해서 공동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사업의 목적은 투자계약증권이 아닌 자본시장법상 다른 증권의 발행으로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A-4. 본 증권신고서에서 사용하는 투자계약증권의 단위

투자계약증권의 1단위를 칭하는 명칭을 정한 법률 또는 규칙 등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용어 사용에 있어 편의를 위하여,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1단위의 증권을 '주'로 표시합니다. 이 때의 '주' 또는 '주수'는 출자 관계에 있어 '좌'나 '좌수'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Q-일반-5.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판례나 해외 사례, 연구 등이 있나요?

A-1.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해외 사례 등

일본 「금융상품거래법」과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제2조에서는 유가증권의 개념을 열거하고 있는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금융투자상품과 비교될 수 있는 용어로 집단투자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집단투자기구의 지분은 유가증권으로 간주됩니다. 동법에서는 투자계약증권을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정의하거나 열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본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제2조 15. 에서는 "투자증권"(投資證券; investment security)"을 '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증서'(a certificate that represents investment equity)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투자증권은 우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과 유사한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출자 지분권을 주권과 별도로 칭하는 명칭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2019년 개정된 「금융상품거래법」을 통하여 전자기록이전권리와 전자기록이전유가증권표시권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토큰증권(STO)를 유가증권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권의 종류가 아닌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수단으로서의 결과물을 규제하고 있으며, 일종의 자율규제단체로서 일본STO협회가 "전자기록이전권리 등의 발행시장을 담당하는 기간시스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에서는 "금융서비스와 시장에 관한 법률"(FSMA;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0/8/section/235) 제235조(Section 235)에서 집합투자체계(CIS; Collective Investment Scheme)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 등에서는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영국의 집합투자체계에서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증권에서의 투자자의 '일상적 운용지시'는 영어 '일상적 지배권'(day to day control)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영국에서 집합투자체계 이외에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법률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미국의 법제를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투자계약증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1940년에 제정된 투자자문회사법(Investment Advisors Act of 1940)에서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을 모두 규율하고 있으나 별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의 명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통일상법전(UCC; Uniform Commercial Code) 제8조(Article 8)는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Securities)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때, 투자계약증권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할 의도"(..with the intention of holding them for investment)로 취득된 증권의 일종으로 정의됩니다. 1933년 제정된 미국 연방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및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을 합쳐서 "연방증권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a)에서는 주식, 사채, 기타 투자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증서를 증권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46년 미 연방대법원의 SEC v. W. J. Howey Co., 328 U.S. 293(1946) 판결에서 '경제적 실체'(economic reality)를 중요시하여야 하며, 그 형식에 관계 없이 "투자자가 (i) 오직 권유자 또는 제3자의 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ii)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여 (iii) 공동사업에 (iv) 금전을 투자하는 계약, 거래 또는 (사업)구조는 투자계약"(an investment contract means a contract, transaction or scheme whereby a person invests his money in a common enterprise and is led to expect profits solely from the efforts of the promoter or a third party)이라고 하여 이른바 "Howey 기준(Howey Test)"이 제시된 이후로, 동 기준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여부를 판단하여 왔습니다.

요컨대, 일본의 투자증권 또는 집단투자기구 지분은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이나 신탁수익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에서의 투자계약증권은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나 투자신탁(investment trust)에 출자한 자본금 또는 수익권에 관한 증권 중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증권으로 사용되나 미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Howey 기준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여부가 판단됩니다. 즉 일본과 미국에서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과 동일한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국의 FSMA 등 관련 법령에서는 집합투자체계를 정하고 있으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증권의 종류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역시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가 검토한 범위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증권의 6가지 종류 중 하나로 투자계약증권을 두고 있으면서도 집합투자증권을 다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일본, 미국, 영국의 법률 체계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볼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에서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의 관련 법령들에 대한 원문, 영문본, 국문 번역본 등을 제공하므로,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해외 법제에 관하여서는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관련 연구 및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검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최초 제정되어 시행을 앞둔 시기인 2008년 11월 28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본시장통합법상 증권규제와 집합투자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이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 경위 및 그 입법에 있어 영향을 미친 해외의 입법 사례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집합투자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관계를 "부분과 전체"로 보는 것이 입법의도에 부합한다는 점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것은 아니나, 우리 금융위원회로부터 종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 받은 후 다시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아 음악과 관련된 저작재산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사례에서, “본 수익증권은 신탁회사(이하 “회사”)가 발행하는 신탁 수익증권으로서 (i)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해당 자금을 투자대상에 운용하는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및 (ii) 투자자로부터 주식형태로 자금을 유치하여 특정자산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 등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투자회사와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어 ① 증권 발행의 주체, ② 자금 모집의 주체, ③ 이용하는 비히클(vehicle)에 따라 종전 집합투자기구와 신종 증권을 구분하여 보충성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은 2006년 6월 30일 발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에서 “‘타인의 노력에 의해 수익이 결정되는’ 모든 증권을 통합법상 증권으로 포괄”하였다고 하며, 미국의 Howey기준을 원용하였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설명자료에서 금융당국은, “인터넷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Netizen Fund에 대한 지분”을 투자계약증권의 예로 들며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수익증권 등 전통적인 증권과 (구)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증권뿐만 아니라 현행 자운용업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비정형 간접투자의 지분까지 포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2007년 2월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투자계약증권을 신종 증권이자 비정형 간접투자의 지분으로 설명하며 같은 예시를 들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금융위원회는 위에서 본 2014년 3월 16일자 유권해석에서, 투자계약증권을 “집합투자적 성격을 가진 계약 가운데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지 않는 투자기구”라고 회신한 바 있으며, 2022년 11월과 2023년 7월에 걸쳐 당사의 사업구조에 대하여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Q-일반-6. 청약은 선착순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청약을 하게 되나요?

A-1. 청약의 개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청약은 일정한 기간 내에 청약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청약은 제한될 수 있으나 그 외의 투자자에 대하여서 청약 자격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전체 발행증권 중 [10]%에 해당하는 증권을 우선 배정받습니다. 당사는 증권을 우선배정 받음으로서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책임 있는 공동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유인을 가지게 되며, 투자자와 당사의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게 됩니다.

청약의 방식은 균등배정, 비례배정, 추첨배정의 방식을 사용하게 되며, 각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으로, 비례배정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가 배정을 희망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배정 및 추첨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A-2. 구체적 청약의 방식

투자자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 회원으로 가입하고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

트)을 필한 후, 당사와 계좌지원·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업자의 당사 청약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청약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위하여 NH투자증권(주)과 계좌 지원 서비스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NH투자증권에서 당사 청약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청약기간 내에 청약증거금을 당사에 납입하게 됩니다. 당사의 청약계좌는 위 전용 계좌를 통하여만 입금이 가능한 “집금계좌”이며, 당사는 집금계좌를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 청약금 또는 청약증거금을 지급 받지 아니합니다.

구체적 청약의 방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 4. 나. 모집 또는 매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1. 청약에 있어 실명계좌의 이용: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AML)관련 의무의 준수,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명계좌 이용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청약은 NH투자증권으로부터 필요한 투자자의 실명계좌체계(이하 "실명계좌체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적으로 고객확인제도(CDD/EDD/KYC) 및 자금세탁방지제도(AML) 등을 준수하기 위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금융회사 등에 있으며, 금융회사등은 그외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의 준수를 위한 체계를 갖춘 후 금융당국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검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인가된 금융투자업자로부터의 실명계좌체계 지원을 받는 것이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미술품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에 관련된 의무가 부과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본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서는 아직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활성화된 유통시장이 없고 지명채권 양수도의 방식으로만 권리의 이전이 가능하나, 향후 전자증권 또는 토큰증권(ST) 등의 방식으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비실명 금융자산의 유통이 제한될 여지가 많을 것이어서 투자자의 제한된 환금성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서도 증권의 발행과 배정 시점부터 실명계좌체계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당사의 판단 역시 고려되었습니다.

A-3-2. 실명계좌체계 등으로 지원되는 사항

실명계좌체계는, ① 투자자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하여 NH투자증권에 개설하는 "청약 전용 계좌", ② 당사가 NH투자증권에 개설하는 계좌로서,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투자자의 청약금을 수령하는 전용계좌로서 정해진 계좌로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집금 계좌", 그리고 ③ 집금계좌에 각 용도 별로 입금과 출금이 지정되어 있는 전용 계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편, 실명계좌체계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④ 집금계좌로 수령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 기간 내에는 당사가 NH투자증권과 체결한 "특정금전신탁" 계좌로만 출금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번 공모에서 당사는 청약을 위하여 NH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실명 계좌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나, NH투자증권에서는 본 투자계약증권의 인수·중개·주선·유통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 이하에서 정하는 "신용공여" 역시 제공하지 않습

니다.

A-3-3. 청약증거금 등이 가지는 예치금적 성격과 환불의 보장

실명계좌체계 및 특정금전신탁에 의하여 당사는 청약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투자자가 있는 경우, 그 환불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당사는 청약의 철회, 단수주의 발생, 기타 어떠한 사정으로 증권의 배정이 되지 못하여 투자자가 당사로부터 반환 받아야 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명칭이 청약금 또는 청약증거금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모두 예치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투자자는 본인 명의의 실명계좌체계를 사용하게 되므로, 예치금의 반환 액수나 반환받아야 하는 투자자의 숫자, 반환 대상 투자자에 대한 또 다른 실명 인증이나 별도의 추가 계좌 정보 제공 없이 예치금 반환을 보장받게 됩니다.

반면에, 당사가 다른 방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에게 예치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또 다른 금융계좌를 제공받아야 하는 위험, 투자자가 아닌 제3자에게 예치금을 반환할 수 없는 위험, 투자자에게 적시에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는 위험을 쉽게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구조재편 및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승인 받았으므로, 투자자 예치금의 반환 보장은 당사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A-3-4. 실명 계좌체계의 개요 및 실명 계좌체계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비용 대비 편익

투자자는 당사에 실명 계좌체계를 지원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당사 청약 전용 실명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청약을 위하여는 NH투자증권이 실명 계좌체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청약을 희망하는 투자자는 NH투자증권에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당사 청약 전용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실명계좌의 개설 과정에서 투자자는 NH투자증권이 요구하는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당사는 이 절차를 통해, 청약자와 증권의 배정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당사는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자 1인당 청약 전용 실명 계좌 개설을 위한 계좌 개설 수수료 1,1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인지세 300원을 합하여, 합계 1,400원을 최초 계좌 개설 1회에 한하여 계좌개설 수수료로 NH투자증권에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비용은 투자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전액 당사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당사는 실명계좌체계 지원에 따르는 대가로 매 청약마다 정해진 수수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자의 실명계좌 인증 절차와 계좌 개설 수수료는 다른 방식, 예컨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하여 1회성 가상계좌를 투자자에게 발급해 드리는 경우에 비하여 투자자는 청약을 위하여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으며, 당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가 최초에는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투자자가 청약을 위한 실명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실명계좌체계를 통한 투자자 보호나 금융실명제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 등에서 오는 투자자 편익이 비용보다 더 높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 번 개설된 투자자의 당사 청약 전용 실명 계좌는, 향후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의 청약에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4. 증권 배정의 구체적 방식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청약에 있어 배정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그 배정 과정에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당사는 배정물량 중 [10]%를 당사에 우선 배정합니다.

다음으로, 공모총액을 초과하는 청약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는 배정물량 중 [10]%를 균등배정 방식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모두 납입한 투자자에게 균등하게 배정합니다. 나머지 배정물량 [80]%는 비례배정 방식에 따라 투자자가 청약한 청약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 때, 균등배정 또는 비례배정 방식에 의한 배정물량이 청약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는 추첨배정 방식에 의하여 투자자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추첨하는 등 합리적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되, 1주 미만의 단수주를 5사6입하는 등 잔여주를 최소화하도록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총액에 미달하는 청약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물량 중 [10]%를 균등배정 방식에 의하여 청약증거금을 모두 납입한 투자자에게 균등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증권은 비례배정 방식에 의하여 투자자의 청약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방식을 통하여 배정되고 남은 청약물량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배정합니다.

이 때, 총 균등배정 방식의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균등배정 방식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총 청약자 수가 발행증권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1주도 배정되지 아니하거나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정방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 4. 마. 청약 결과 배정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5. 금융실명제 준수 및 자금세탁방지(AML) 등을 위한 노력 등

당사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가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포함되지 않으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청약금의 지급이나 환불을 위하여는 금융회사등과의 거래가 필수적이며, 향후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와 양수를 위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등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투자자가 청약 기간 내에 청약을 취소하여, 투자자가 청약증거금을 당사로부터 환불

받아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당사는 투자자에 대한 환불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환불의 대상자가 청약자와 동일한지 여부를 당사가 확인하고 동시에 투자자가 환불금을 정확하게 수령하기 위해서도 금융회사등을 통한 거래는 필수적입니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와 동법 제6조는 공중협박자금이나 대량살상무기확산에 관계된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이 있는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동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의 상대방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실지명의(이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필수로 하고, 고객확인제도(KYC, EDD/CDD) 및 실명확인에 관한 절차와 체계를 갖추고 있는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계좌체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실명확인을 거친 금융회사등에 포함되는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한 실명계좌로만 투자계약증권을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계좌 개설 절차를 위하여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나, 당사는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투자자가 금융실명제를 준수하고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제도에 따르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Q-일반-7. 투자와 관련한 최소 또는 최대 금액이 있나요?

A-1. 최소투자금액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1주당 가액은 10,000원입니다. 투자자는 1주 이상을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투자금액은 10,000원입니다.

A-2. 최대투자금액

당사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동사업의 사업구조를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본 증권의 청약에 있어서는 1인의 투자자가 [3,000]주, [30,000,000]원을 초과하는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최대청약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의 배정 이후에도 공동사업자인 당사를 제외한 1인의 투자자가 50%를 초과하는 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의 최대청약한도 및 증권의 취득 제한은 투자와 관련된 최대 금액이 됩니다.

Q-일반-8. 어떤 투자자는 투자를 피해야 하나요?

A-1. 청약이 가능한 투자자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에서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의 청약을 받지 아니하고,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당사에 투자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계좌관리를 위한 계약을 맺은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당사 청약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청약을 받습니다.

A-2.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 등

당사는 투자자 회원에 대하여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을 거칠 것을 요청드리고 있고, 그 결과 공격투자형에 속하는 투자자에게만 청약에 응하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모집되는 투자계약증권이 1등급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다른 금융투자상품 중 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만 투자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성향이 공격투자형이 아니시거나,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에 있어 2등급 내지 5등급 투자상품을 선택하며 안전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경우에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청약이 적절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 투자계약증권을 청약함에 있어 모든 투자자는 청약 전에 투자 성향 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하게 되며, 투자 성향 분석을 완료한 투자자에 한하여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투게더아트 회원의 투자적합성 테스트 결과는 2년간 보관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당사의 투자계약증권을 청약하시기 위한 투자적합성 테스트 질문지 예시와 투자적합성 테스트 화면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게더아트] 투자계약증권 적합성 테스트

[질문]

Q1.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가지는 권리의 성격은?

1. 상법에 투자자 권리 관련 근거가 있는 주식 등과 같이 정형적이다.
2. 발행인과의 계약에 의해 투자자의 권리가 정해지므로 매투자시마다 투자계약관계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Q2. 투자계약증권 발행인은 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1. 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대상이다.
2. 일반회사로서 발행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이다.

Q3. 증권신고서 심사가 가지는 의미는?

1.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부에서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진다.
2.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의 기재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사한다.

Q4. 투자계약증권으로 투자한 원금이 보장되는지?

1. 발행회사에 의해 원금이 보장된다.
2.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투자손실이 발생 가능하다.

Q5. 투자계약증권 기초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1. 증권시장과 같이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된 신뢰 높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감정평가 등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가치산정 근거를 공시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Q6.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1. 투자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발행기업은 투자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다.
2.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으므로 원하는 시기에 증권 매매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Q7. 일반투자자의 투자계약증권 투자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권고하는 투자수준은?

1. 본인의 여유자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계약증권 등 상장되지 않은 비시장성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2. 본인의 자산 상황 등과 관련없이 청약한도 최대치까지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8. 투자계약증권 투자자의 권리행사가 다른 투자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1. 투자계약증권 관련 권리는 다른 투자자와 관련없이 온전히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2. 동일한 투자계약증권에 투자한 모든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등 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제한이 있다.

Q9. 투자계약증권을 투자하는 적절한 방법은?

1. 사업계획, 투자위험 등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투자계약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한다.
2. 친구, 지인 등 추천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다.

Q10. 투자계약증권 발행후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1.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예 3개월, 매년), 수시로 제공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
2. 정보제공주기, 제공되는 정보수준이 투자계약증권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A-3. 해외 사례에서의 투자범위 제한

해외의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들에서는 전문 투자자가 아닌 경우, 순자산 또는 연소득의 10% 이내에서만 비상장 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A-4.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의 경우

당사 역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께는 이러한 해외 사례와 투자성향분석의 결과 등을 숙지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 또는 연소득의 10%가 넘는 금액을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투자계약증권 등 비상장 증권에 투자하시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시다는 점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위험요소들을 다시 한 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일반-9. 투자계약증권의 양수도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1.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양수도

당사에서는 투자자 명부 확정 이후 「민법」의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따라 증권을 양수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자는 당사에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고, 당

사로부터 양도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A-2. 활성화된 유통시장의 부존재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활성화된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에 따라, 제한된 방식으로의 증권 양수도나 기타 환금성 관련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 자. 투자계약증권의 환금성 관련 위험」 기타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들을 다시 한 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 유통 노력과 유통에 대한 투자자의 협조 의무

투자계약서 제19조(증권의 시장성 제한과 유통 노력 등)에 따라 당사는 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후에도 적법한 양도가 가능한 공개 또는 비공개 시장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장에서 증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하 “유통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투자자는 본 증권과 관련된 법률 등의 제·개정으로 본 증권을 전자증권 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등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 해당 발행의 절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마련한 투자계약서 제17조 제2항은 증권의 전자등록이 가능한 경우 전자등록이 가능함을 전제로 증권의 실물발행을 배제하고 있고, 동 투자계약서 제19조 제4항은 전자증권 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으로 투자계약증권을 등록 또는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는 본 투자계약증권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 또는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러한 당사의 유통노력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비록 현 단계에서는 본 증권이 전자증권으로의 등록 또는 토큰증권으로의 발행이 되지 않아 환금성이 부족하나 추후 투자계약증권의 전자등록 또는 토큰증권 발행을 통한 환금성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도록 투자계약서에 그러한 가능성을 반영하고 투자자의 일반적 협조의무를 함께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계약서 제19조의2에서 정한 공동사업의 합병 역시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통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공동사업의 규모가 부족한 경우 투자자 총회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투자대상 자산매입 관련]

Q-자산-1. 회사는 투자대상(예: 미술품)을 어떻게 획득하나요?

A-1. 기초자산의 취득처

당사는 기초자산을 개인 1인을 통하여 선매입 하였습니다.

A-2. 미술품의 유통, 미술품 시장, 그리고 미술품 시장의 참여자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미술품을 투자대상인 기초자산으로 삼아 투자계약증권을 발

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술품은 미술품 경매회사, 화랑, 아트페어, 또는 개인인 미술품 컬렉터 사이에서 거래됩니다.

이 때, 미술품이 거래되는 시장 중 작가가 미술품을 창작(제작)한 후 주로 초대받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하여 최초로 전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전시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화랑(갤러리), 그리고 다수의 화랑들이 모여서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미술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일종의 박람회장 격이 되는 아트페어를 합쳐서 미술품의 1차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 시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미술품이 다시 유통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다수의 미술품들을 모아 주로 호가 경매의 방식으로 판매 가격과 구매자(낙찰자)를 결정하는 미술품 경매회사들을 미술품 시장의 2차 시장이라고 합니다. 화랑이나 아트페어가 미술품의 전시 뿐 아니라 재판매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여전히 화랑과 아트페어 등은 1차 시장으로 분류합니다.

특히 2차 시장에 해당하는 미술품 경매회사들은 주로 미술품의 현재 소장자들로부터 미술품의 판매를 위탁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판매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는데, 이 때 다양한 작가들이 제작한 미술품을 짧은 기간 내에 분류하고 감정하며, 다수의 판매자 또는 구매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특성이 있는 미술품의 운송과 보관을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술품의 유통 체계, 정보의 관리, 회계 처리, 미술품 거래에 관련된 조세의 신고와 납부 등 여러 방면에 걸친 물적·인적 노하우가 필요하여 1차 시장에 비하여 일종의 진입장벽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진입장벽의 존재로 인하여, 인정받는 미술품 경매회사를 통한 유통 또는 보증은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진위나 감정 제도가 있지 않은 미술품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즉, 인정받는 미술품 경매회사가 운영하는 미술품 경매에서 판매된 미술품의 경우에는 그 공개된 거래가격(낙찰가격)이 유사한 미술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미술품 경매회사가 판매한 미술품에 대하여 제공하는 보증서(Certificate of Authenticity; 또는 Certificate of Warranty)나 미술품 경매회사와의 거래계약서 등은 미술품의 진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A-3. 미술품의 진위나 가치에 대한 판단 등

미술품은 창작예술품으로, 원칙적으로는 단 하나만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Unique) 것입니다. 미술품을 창작하는 작가가 제작하는 판화 등도 미술품에 속하나, 판화 역시 작가의 고유한 기법과 예술성이 담겨 있고, 각 작품별로 작가의 서명 및 에디션 번호(Edition No.) 등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미술품이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모든 미술품의 진위와 가치는 개별적으로 조사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술품의 직전 소장처들에 대한 기록에 해당하는 미술품의 유통경로(Provenance)를 확인하는 것은 미술품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작가가 해당 미술품과 같거나 유사한 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한 화랑의 전시또는 판매 기록, 해당 미술품의 전시 이력이 기재된 인쇄된 도록(Catalogue), 작가가 확인한 확인서나 보증서 등의 서면, 작품의 거래를 위하여 체결된 계약서나 송금 내역, 작가나 작가를 위한 비영리기관 등이 제작한 작가의 전작 도록(Catalogue Resonee) 등은 미술품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되어 줍니다. 국내 또는 국외의 인정 받는 미술품 경매회사를 통하여

거래된 기록이 있거나 보증서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역시 신뢰성 있는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술품의 유통경로나 그 미술품이 진품임을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있는 경우, 미술품의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상당수의 미술품은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인의 소장품으로 공개되지 않는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술품의 진위에 대한 판단은 일정한 시점에서 공개되거나 알려진 미술품이 그 다음 시점에서 공개되거나 알려진 미술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완전히 동일한 미술품이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미술품의 가치에 대한 판단은 해당 미술품을 판단하기 위한 시점 이전에 거래된 유사한 미술품의 거래사례에 비추어 비교하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술품의 가치를 추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어떤 거래사례들이 해당 미술품과 비교할 수 있을지를 추출해 내고, 그 거래사례들이 실제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나 요인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당사는 미술품의 진위나 가치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미술품의 공개된 거래사례나 공개되지 아니한 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 미술품과 작가에 대한 이해도, 미술품 시장과 미술품 유통에 대한 전문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A-4. 당사의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의 선정 과정 요약

당사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취득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주요 미술품 경매회사의 공개된 경매 출품 기록을 검토하고, 개별 미술품의 진위 여부, 유통 경로, 미술품 취득에 필요한 총 비용을 확인하여,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기초자산들의 후보들을 선정합니다.

당사는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황, 규모, 기초자산에 대한 전문성을 검토하여, 미술품의 진위에 대한 충분한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로부터 미술품의 유통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 보증서와 팩트 시트(Fact Sheet)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고려요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항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미술품 경매회사, 화랑, 아트페어 등을 중개인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내 미술품 경매회사로는 (주)케이옥션과 (주)서울옥션 외 9개사가 있으며, 상위 2개 회사인 케이옥션과 서울옥션이 연간 미술품 경매의 낙찰액 또는 출품액을 기준으로 할 때 90% 이상의 미술품 경매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미술품 경매회사로는 소더비(Sotheby's)사, 크리스티(Christie's)사, 필립스(Phillips)사가 합산하여 9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술품 경매회사는 일반적으로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중개업, 미술품 판매업을 함께 영위합니다. 기초자산이 될 투자대상 자산 취득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는 미술품 가격, 운송료, 보험료, 컨디션 리포트(Condition Report)작성 가격 등이 모두 포함되며, 당사는 비용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분석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Q-자산-2. 투자계약증권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A-1. 공모가액의 결정

투자계약증권 1주당 가액은 10,000원이며, 당사는 기초자산 취득가격에 발행제비용을 합한 금액을 공모총액으로 삼아, 이를 발행하는 증권총수로 나눈 금액을 공모가액으로 합니다.

당사는 발행제비용에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확정된 비용 또는 분담금 등을 제하고 남은 금원은 당사의 이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당사는 발행제비용의 상세한 내역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기타 본 증권신고서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또는 수수료 등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당사가 부담하며 투자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비용은 기초자산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 기초자산에 대한 보험료, 기초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운송료 등입니다.

공모가액의 결정에 관한 상세한 기재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 3.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총액의 사용계획에 관하여서는 「제1부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 기초자산 취득가격의 결정을 위한 거래사례 선정과 거래사례에 대한 분석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의 취득가격 결정은 당사의 자체적 평가에 더하여 외부전문가를 통한 평가 및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미술품의 가치는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으나, 미술품이 공개된 경매 등을 통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거래된 사례들을 선정한 후 이를 분석하는 방법이 그 기초가 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기초자산에 관하여 2025년 9월부터 역산하여 10년간 공개된 동일 작가의 작품들에 대하여 합계 57회의 공개된 거래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작가의 모든 작품은 '캔버스에 오일' 이라는 같은 재질을 가지고 있고 도상과 주제 또한 아름다운 자연을 강렬한 색상을 바탕으로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이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분석대상으로 삼아 기초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거래사례 분석 요약		
(기초자산) 작가명	주제 및 재질	당사가 분석한 거래사례
유영국	oil on canvas	57회

Artprice와 Artnet는 가장 널리 알려지고 이용되는 해외 미술품 가격정보 제공 DB로, 각 DB는 약 1,800만건 이상의 미술품 경매기록에 대한 정보를 거래사례로 제공해주고 있고, 당사 역시 해당 미술품 가격정보 제공 DB들을 활용하여 약 1,800만건 이상의 미술품 경매기록에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래사례를 획득한 후에는 거래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술품의 작가, 작품의 재질, 작품의 제작연도, 작품의 주제,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 거래에 관여한 미술품 경매회사, 거래의 시기, 작품의 크기, 작품의 입체성, 작가의 전시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전문적 시각에서 비계량적 또는 계량적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계량적 방식으로서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에 대한 당사의 진술 등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적 방식으로서 당사는 기초자산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미술품에 대하여 10년 이내에 공

개된 거래사례를 모두 확인하되, 최근 3년과 1년 내의 거래사례를 다시 한 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당사는 해외에서 발행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과 동일한 작가가 창작(제작)한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경우에는 그 해외 발행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서 분석한 거래사례를 모두 확인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당사는 일정기간의 거래 사례를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하는 해외 미술품 경매기록 유료 제공 DB 등에서 확인하여 추가되는 거래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그 분석된 결과를 포함하여 당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사례 전체를 감정평가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분석한 거래사례는 미술품의 거래 사례를 동등한 수준의 미술품 경매기록 제공 DB에서 검색하는 경우 투자자 또는 그 외의 제3자가 검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미술품의 적정한 취득 가격을 추정하거나, 향후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사업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미술품 가격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함께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품 유통에 관한 인적 노하우와 계량적 분석을 통한 물적 노하우를 함께 도입하여 공동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미술품의 가치를 완전히 평가하는 것은 어려우며, 위와 같은 계량적 분석 요소들이나 방법, 모형들은 당사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하고 있는 미술품 가격 추정에 대한 예시를 말할 뿐,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 가치의 절대적 가치나 향후 투자수익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른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나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에 의한 미술품 가격추정 모형 등을 기초자산의 취득가격을 추정·평가·검증하기 위한 결정적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술품 가격 추정을 위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미술 전문가에 의한 거래사례 선정 절차를 대신해 준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알고리즘 또는 그에 따르는 분석 결과들이 가지는 정확성은 미술 전문가를 대체할 만큼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는 점이 여전히 한계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알고리즘 종류나 방법 역시 확립되지 않고 다양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칙에서 정하는 거래사례법 등에 비하여 더 나은 평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A-3. 기초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증빙에 대한 독립된 제3자의 검토들

당사는 기초자산의 취득에 관련된 매매계약서, 지출에 관한 증빙, 기초자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취득과 관련된 처분문서나 증빙자료 등을 법률검토의견을 제공하는 법무법인에 제시하고,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되는 법률검토의견의 일부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자료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를 받거나, 매 반기 및 분기에 대한 검토를 받기 위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당사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으로 인한 매출액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기초자산을 당사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방식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 역시 재무제표을 작성하며 주석사항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매출한 재고자산(미술품)이 다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사는 기초자산의 취득가격에 대하여 내부평가 이외에 이른바 국내 13대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속하는 (주)제일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의 감정평가서, 신용평가와 사업가치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미술품 가치평가 의견서를 받았으며, 해당 보고서들은 본 증권신고서의 「제1부 II.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중 기초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분 및 첨부서류인「기초자산 관련 외부기관의 평가의견서」에 그 원문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자산-3.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외부평가는 믿을 만한가요?

A-1. 동산인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자와 그 방법

본 증권신고서는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기초자산에 대한 외부평가에 있어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1호에서는 “토지등”에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고 하여, 미술품이 속하는 ‘동산’이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법 동조 제3호는 “감정평가업”을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동산에 해당하는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의 외부평가를 받아 그 감정평가서를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하는 것이 적법한 외부평가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2.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감정평가서는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발급된 것입니다. 제일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대형감정평가법인으로 지정된 13개 감정평가법인 중 하나이며 설립 이후 감정평가법인으로서 50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당사로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규모가 감정평가서의 신뢰성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담당한 감정평가사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를 졸업하고 2015년부터 감정평가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일감정평가법인의 이사인 감정평가사이며, 미술품에 관한 감정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감정평가서가 미술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사실적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에 의하여 작성되고, 관련 법률에 의하여 내부통제체계를 갖춘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발급된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라고 판단합니다.

A-3. 한국기업평가(주)의 미술품 가치평가 보고서

한국기업평가(주)는 기업 또는 유가증권의 신용평가와 사업가치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미술품 가치평가 보고서를 받아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에서는 '국내 및 해외 미술품 시장 산업 분석', '본건 작품(기초자산) 및 작가 분석', '거래사례 데이터 분석', '본건(기초자산) 작품 가치평가'를 용역수행 범위로 하여 미술품 시장 산업분석 및 기초자산에 대한 경매사례 분석을 통해 기초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에서는 미술품 시장, 작가, 2016년 9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의 유사작품 미술품 경매시장 낙찰사례에 대한 객관적 자료들을 분석하여 기초자산의 가치에 대한 범위를 추정하였습니다. 당사는 보고서에 사용된 자료들과 분석의 방법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도에 비추어 해당 보고서가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라고 판단합니다.

한편, 투자자 중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제4-15조(투자계약증권의 평가)에 따라 ① 취득원가, ② 채권평가회사, ③ 회계법인 중 하나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동 가이드라인 제4-24조에 의하여 평가위원회를 두어 그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투자계약증권을 평가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4. 외부평가의 한계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자를 포함한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품은 "예술가가 순수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미술품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것"으로서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며, 이러한 예술창작품은 그 자체로 유일한 것이고, 개인적 선호 또는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등의 사유로 외부평가에 의한 경제적 가치가 해당 미술품의 현재 또는 미래 시점에서의 정확한 가치를 표시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비단 미술품 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그 외의 재산권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규정이 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가격으로 실제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법원이 실시하는 경매절차 등에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경매를 실시하되 유찰이 있는 경우 경매의 시작가격을 하향하기 위한 기준으로 외부평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의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매 절차나 신탁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공매 절차에서도 외부평가는 동일한 한계를 보입니다.

이처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기초자산에 대한 외부평가는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시장가치에 가까운 가치를 표시할 수는 있으나 실제 거래가액을 정확하게 표시하기는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외부평가에 관련된 투자위험요소에 관하여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자산-4. 투자대상자산의 외부평가 가격이나, 시가는 어떤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나요?

A-1. 일반적인 변동 요인

기초자산이 속하는 미술품 시장의 변화, 미술품 자체의 내재적 위험, 금리 변동 등 유동성 요인, 미술품의 보관 과정에서 손상이나 훼손, 예술창작품으로서 미술품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한 선호도 차이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으로 시가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A-2. 미술품 시장과 미술품의 시가 변동 요인을 주식시장과 비교하는 경우

미술품의 시가를 다른 자산들과 비유해서 그 특징들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미술품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비유하자면, 주식은 매 영업일에 다수 대 다수가 거래되는 주식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주식시장에서 결제능력을 가진 구매자와 판매자 각자가 제시하는 호가와 수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 당사자들은 동시에 여러 개의 같은 주식을 주문할 수 있고, 여러 범위의 가격을 동일한 주식에 대해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역시 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시가는 이른바 하한가나 상한가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한도로 하나, 그 범위 내에서도 1거래일 내에서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의 시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있으나, 금리 변동 등 외부적 유동성과 관련된 요인과 특정 주식이나 주식 시장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의 시가를 말할 때에는 당해 거래일의 일시적 가장 높거나 낮은 거래가액을 말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수 년간 해당 주식의 거래 내역과 거래 패턴, 이른바 200일선, 100일선, 50일선, 20일선 등의 거래 추세, 이동평균선 등 거래 추세의 변화에 대한 분석, 해당 주식이 가진 내재 가치나 장래의 성장 가능성 등을 함께 분석하여 일정한 시점에서 그 적정한 시가를 도출해 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미술품의 경우에는 단 1개의 유일한 작품이 있을 뿐이므로, 미술품의 판매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협상에 의하여, 또는 구매를 희망하는 당사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시되는 가격의 경쟁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으나, 최종적인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1인이며 거래되는 미술품 또한 1점입니다. 판매자가 다수가 될 수 없으므로, 다수와 다수가 만나는 공개적인 거래시장이 형성될 수도 없습니다. 공개된 거래시장이 없으므로 가격은 공개적으로 제안되는 경우가 드물고, 미술품 경매회사를 통하여 다수의 구매희망자를 찾기 위하여 그 미술품에 대한 경매를 시작할 가격이 제시될 수 있을 뿐입니다.

국내에서는 주식회사 케이옥션이 미술품 경매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고 있는데, 출품되는 미술품의 가액에 따라 주로 구분되어 매월 1회 가장 고가의 미술품을 대상으로 하는 메이저 경매와, 격주 간격의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 매주 개최되는 위클리 온라인 경매가 있습니다. (주)서울옥션 역시 케이옥션의 메이저 경매와 유사한 규모의 미술품 경매를 연4회에서 8회 가량, 그리고 다수의 온라인 경매를 개최하는데, 서울옥션의 사업보고서에서 정기적 개최의 시기를 공시하거나 표준화하고 있다는 기재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소더비와 크리스티, 필립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술품 경매회사들인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뉴욕, 홍콩, 런던 등에서 연속하여 개최되는 각 미술품 경매회사마다 주로 주요 아트페어의 개최 시점에 맞추어 연 4회 가량 개최하는 미술품 경매가 가장 큰 규모이며, 온라인 미술품 경매는 불규칙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이 전자등록제도 등에 힘입어 거래가 체결되는 즉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며 판매자의 주식계좌에서 구매자의 주식계좌에 대체 입고될 수 있는데 비하여, 미술품의 거래는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도 별도로 대금의 지급, 미술품에 대한 특별한 포장, 국경을 넘는 경우 그 운송을 기다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령 후의 작품 상태 확인 등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미술품의 거래시장은 주식 시장과 다르게 거래의 당사자, 거래의 대상, 거래 시장이 제한되어 있으며, 거래가 체결되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대금의 지급과 작품의 인도 사이에서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술품 거래의 특징으로 인하여 미술품은 거래 비용이 다른 물건에 비하여 높을 수 있고, 미술품 경매회사 등 이러한 미술품 거래 다수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식의 시가는 동일한 주식의 거래에 따라 1거래일 내에서도 셀 수 없을 만큼 변할 수 있는 반면에, 미술품의 시가는 동일한 미술품 거래가 아닌 주로 유사한 미술품의 공개된 거래 사례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유사한 미술품이 출품된 경매의 간격을 최소 주기로 하게 됩니다. 즉, 미술품의 거래에 있어 시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미술품의 거래 사례는 국내에서는 케이옥션과 서울옥션의 경매주기에, 해외 미술품은 해외 주요 경매사의 경매 주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A-3. 미술품을 부동산 시장과 비교하여 보는 경우

미술품 시장을 부동산 시장과 비교해 보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거래의 대상이 주로 단수로 1개라는 점이나, 최종적인 거래 당사자들이 구매자와 판매자 각 1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유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거래를 위하여 수 차례의 이른바 임장을 통하여 거래 대상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거래비용에 속하는 중개수수료와 물건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등기 비용이 주식 거래에 비하여 높다는 점, 거래 시작부터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까지의 기간이 주식 거래에 비하여 비교적 길다는 점, 부동산 중 특히 아파트의 경우 유사한 거래사례에 따라 시가가 변동하였다고 평가될 여지가 많다는 점,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 사이의 간격이 비교적 길다는 점, 실물이 있는 비교적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진다는 점, 1개의 거래 대상물임에 비하여 비교적 고가의 거래대금이 오간다는 점, 유사한 거래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실제 거래에 있어 입지·층·방향·학군·거래방식·거래조건 등이 영향을 미쳐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는 것처럼 미술품도 유사한 거래사례에도 색상·표현·질감·거래방식·거래조건 등이 영향을 미쳐 실제 거래가액을 변동시킬 수 있다는 점 등도 미술품과 부동산 거래의 공통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1회의 거래 사례 뿐 아니라 그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가 원시 취득한 가액부터 현재까지의 거래 내역과 거래 패턴, 거래의 주기, 거래가 이루어진 간격이나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까지를 함께 분석하여 적절한 가격을 판단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등기 제도를 통하여 소유권의 증명이 가능한 부동산과 다르게 미술품은 동산으로서 실물의 인도와 점유로 소유권을 확인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나, 위치의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과 달리 미술품은 그 보관 위치를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양도 뿐 아니라 취득과 보유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부동산과 달리 미술품에는 취득과 보유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등은 부동산과 미술품 거래의 차이점입니다.

미술품의 거래에 있어 장기간 신뢰성을 인정 받은 미술품 경매회사나 상당한 지명도나 신뢰도를 인정 받은 화랑의 보증서 등은, 마치 부동산 거래에 있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권 변동 이력 등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공신력을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강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처럼, 케이옥션, 서울옥션, 소더비, 크리스티, 필립스 등으로부터 발행된 보증서나 거래계약서는 해당 미술품의 거래 이력에 관한 일종의 강한 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 비용은 각 미술품 경매회사 등에 위탁수수료, 낙찰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이유가 되며, 향후 그 미술품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A-4. 미술품의 시가 변동 요인, 시가 변동 주기 및 미술품 자산가치의 상승에 필요한 기간 등에 대한 발행인의 의견

발행인은 주식 시장에 비하여 미술품의 시가 변동 주기는 매우 길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해외 미술품의 유통에 있어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의 시간은, 그 실제 거래의 종결까지 소요되는 운송과 통관 등을 생각하면 해외 미술품 경매의 직전 낙찰 사례 등이 아직 거래의 완결에 이르지도 않을 수 있어, 지나치게 가까운 간격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케이옥션과 서울옥션등 미술품 경매회사들이 공개된 약관상 낙찰대금의 지급 기한을 7영업일에서 30영업일 정도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외 미술품 경매회사는 최소 30일에서 최대 120일 정도까지의 분납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는 장기적으로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해외의 여러 연구 결과 등에서 미술품의 일반적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이나 평균 수익률 등을 확인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조사한 여러 연구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미술품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충분한 보유기간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S&P 지수에 비하여 미술품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낮다는 점을 연구한 결과나 해외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에서도 미술품의 보유기간을 수 년 이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술품의 시가 변동 주기를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가깝다고 비유하고자 하나,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유사한 거래사례를 공개하는 미술품 경매회사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국경을 넘는 거래로서 그 거래 대상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에 대하여 10년, 5년, 3년, 1년 등 일정한 기간 내의 가능한 모든 거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노력합니다. 최근의 거래 사례 역시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하나, 가장 최근의 거래 사례 1건 또는 2건 등이 그 미술품 전체의 시가를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미술품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빈번한 거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해당 작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증가로 판단할 수 있으며, 단위 면적당 거래 가액과 총 거래가액, 총 거래 건수 등을 함께 분석합니다. 또한, 작가에게 중요한 전시회의 개최 예정이나 세계에서 손꼽히는 화랑 등과의 전속 계약, 그 외 특별히 작가가 높거나 낮은 평가를 받을 만한 사건이나 사안들을 확인하여 거래 사례의 변경과 비교하여 확인 가능한 정보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합니다.

당사의 판단에 미술품 거래사례가 특별히 낮거나 높아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전체적인 거래가액의 변경 추세가 더욱 중요한 경우에는 평균 가격이나 상승률 등을 사용하는 등 당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설명을 포함하여 가격을 분석한 결과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합니다. 당사는 미술품이 거래된 지역이 환율이나 조세 또는 접근성의 문제 등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산정을 위한 거래사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거래를 중개하거나 거래 당사자 사이의 신뢰성이 거래 사례로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 그 외 당사가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는 다수의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래사례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와 공동사업 참여자, 그리고 본 증권신고서에 기초자산 운영인력으로 기재된 인력들은 모두 주식을 하한가에 취득하여 상한가에 매도하기를 바라는 펀드 매니저가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최저 가격에 매수하여, 최고 가격에 매도하기 위하여 전전긍긍하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미술품이라는 새로운 대체투자자산도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적인 역량으로 운영 할 것이라는 다짐으로 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술품의 소유라는 일종의 감정적이고 예술적인 특별한 경험이, 냉철한 객관성을 중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영역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와 공동사업 참여자는 미술품과 금융투자상품 모두 생소한 일반 투자자를 상상하며, 되도록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사업구조와 기초자산을 선정하기 위하여 고민하였으며, 그 고민의 결과를 본 증권신고서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의 가격이 상승할지 또는 얼마나 상승할지 보장하거나 작품 가격의 하락 없이 원금의 반환 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와 공동사업 참여자 모두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모두 진실되게 기재하고자 하였고,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모집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은 당사와 공동사업 참여자가 직접 재고자산으로 이를 매입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고 선정되었으며, 그 보관과 처분에 있어서도 당사와 공동사업 참여자가 직접 보관하고 처분할 때와 동일한 기준과 기회에 따를 것입니다.

Q-자산-5.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가격정보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A-1. 미술품의 가격 조회

예술창작품으로서 미술품은 일반적으로 하나하나의 작품이 그 생산자인 작가가 생산한 유일한 상품으로 봅니다. 다만, 주로 동일한 작가, 재질, 주제 등을 기초로 하여 유사한 거래 사례를 공개된 미술품 경매회사의 거래기록 기타 미술품 거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또는 국외 DB서비스 업체 등을 사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케이옥션이 회원에 대하여 최근 미술품 경매 결과 등을 제공하며, 그 외 미술품 경매회사나 미술품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매년 해외에서는 소더비 경매사, 크리스티 경매사, 필립스 경매사 등이 최근 미술품 경매기록을 전부 또는 일부 제공합니다.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된 내역은 아트프라이스(Artprice, 이하 “Artprice.com”) 또는 아트넷(Artnet, 이하 “Artnet.com”) 등의 해외 미술품 경매기록 유료 제공 DB 등을 통하여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tprice.com은 886,000여 명 작가에 대한 전 세계 7,200개 미술품 경매회사의 18,924,000건의 미술품 경매 기록을 검색할 수 있

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Artnet.com은 1985년부터 주요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판매된 약 1,700만건의 미술품들을 검색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유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영어 외에 독일어, 프랑스어 등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A-2. 미술품 가격 정보의 한계와 실제 미술품 유통 정보에 기반한 정보의 제공

이처럼, 단순히 미술품의 경매 낙찰기록에 포함되는 개별 미술품의 거래금액들을 저장하거나 확보하는 것은 이미 해외에서 1,800만건 이상의 미술품 경매 낙찰기록을 상시 제공하고 있는 DB가 있으므로, 그러한 DB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상 추가적인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미술품 유통시장에 대한 진술서와 미술품 가격에 대한 근거를 담은 진술과 외부평가기관이 조사한 글로벌 미술시장 및 국내 미술시장에 대한 자료를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하여 투자자들이 미술시장과 미술품 가격 산정에 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A-3. 미술품 시장의 동향과 정보에 대한 보고서 조회

Artprice.com은 개별 미술품의 가격 정보 이외에도 1990년대부터 미술품 시장 동향, 주요 국가별 또는 작가별 거래 동향, 주요 미술 사조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Deloitte)에서는 2011년부터 “아트 앤 파이낸스 리포트(Art&Finance Report)”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행하여 미술품 시장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동 보고서는 딜로이트의 홈페이지 (https://www2.deloitte.com/lu/en/pages/art-finance/articles/art-finance-report.html)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트페어로 평가되는 아트바젤(Art Basel)과 세계적 투자은행인 UBS 역시 매년 미술품 시장에 관한 분석 리포트를 발행합니다. 홈페이지 (https://theartmarket.artbasel.com/)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해당 리포트에서는 세계 미술시장의 동향과 향후의 전망 등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21년 12월까지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K-ARTMARKET)월간 리포트를 발간한 바 있고, 매년 “미술시장조사”라는 이름으로 미술시장에 대한 조사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 자료의 가장 최신판은 2024년 12월에 발간된 “2024 미술시장조사(2023년 기준)”이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gokams.or.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이옥션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매 사업연도말, 반기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는 미술품 경매시장과 미술품 상품시장에 관한 분석이나, 이익률, 향후 전망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미술품의 경매, 중개, 판매에 따르는 회계처리기준의 대강 역시 주석으로 역시 기재하고 있습니다.

[수익/비용 관련]

Q-수익/비용-1. 투자계약증권의 수익창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1. 기초자산의 매각을 통한 수익창출

본 공모로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취득한 후, 보관·관리한 후, 최종적으로 매각함으로서 공동사업을 청산합니다. 이 때, 미술품의 최종 매각가격에서 매각과 관련된 비용, 제세공과금 및 당사의 성과보수(최종매각대금이 모집(매출)총액의 108%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를 공제하고 남은 부분이 투자자의 이익으로 귀속됩니다.

A-2. 그 외의 수익창출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에서는 미술품의 대여(렌탈) 등 기초자산의 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을 공동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더 충분한 수단이 마련될 때까지는, 동산인 기초자산의 점유 이전을 수반하는 운용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기초자산의 운용에 따르는 별도의 수익창출 가능성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수시공시에 준하여 이를 공시하고 투자자에게 즉시 이를 통지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시와 투자자가 투자계약 및 기초자산에 관하여 통지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본 증권신고서「제1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수익/비용-2. 투자대상자산의 판매여부와 시기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A. 투자계약에 따르는 위임(매각의 경우 공모총액의 100%이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따라 당사가 결정합니다.

투자자는 본 증권신고서로 모집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청약과 동시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해당 투자계약에는 기초자산에 대한 보관·관리·매각(공모총액의 100% 이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필요한 권한을 공동사업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사업 청산시까지 당사에 위임하는 '중요한 권리의무의 위임'이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바탕으로 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준수하며 기초자산의 판매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에게 공시하여 제공합니다.

Q. 투자계약증권의 투자구조에서 투자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1. 증권의 취득시까지 발생한 비용

증권의 취득시까지 발생한 비용은 증권의 취득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로 모집하는 투자계약증권에 청약하시는 투자자는 증권배정일에 확정된 증권 배정 수량에 비례하여 청약증거금에서 대체되어 증권취득대금을 통하여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당사는 공모총액에 포함된 발행제비용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모자라는 비용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기초자산 취득비용과 발행제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금원은 발행에 따르는 당사의 이익으로 인식됩니다. 공모총액

에서 기초자산 취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90.91%입니다.

A-2. 공동사업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투자자는 증권의 취득 대금 이외에 공동사업 운영 과정에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초자산이 최종적으로 매각되어 공동사업을 청산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공동사업에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공모총액의 108% 초과로 기초자산이 매각되는 경우 당사가 수취하는 성과보수(최종매각대금이 모집(매출)총액의 108%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을 처분손익으로 투자자에게 배분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증권의 취득으로 공동사업의 청산 전까지 추가적으로 당사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은 없으며, 공동사업의 청산이 있는 경우 매각에 관련된 비용, 제세공과금, 성과 보수를 차감한 처분손익을 지급받게 됩니다.

투자수익 등의 분배 과정에서 비용의 정산 및 청산 수수료 등 에 관하여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V.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2. 투자수익 등의 분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3. 미술품 판매에 있어 화랑(갤러리) 또는 아트페어에서의 유통 비용

일반적으로 작가로부터 미술품을 직접 받아 전시하여 판매하는 화랑은 그 작품의 판매대금을 작가 또는 작품의 판매를 위하여 위탁하는 판매자와 배분하여 나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랑이 수취하는 비율이 유통 비용에 해당합니다. 아트페어의 경우에는 그 참가의 주체가 주로 화랑이 되므로, 아트페어에 참가하기 위한 참가비나 시설 이용료를 제외하고 난 후, 판매된 작품의 대가를 작가 또는 미술품의 판매를 위탁한 자와 나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4. 미술품 경매회사를 통한 판매에서 위탁수수료와 낙찰수수료

미술품 경매회사는 다수의 미술품에 대한 판매를 위탁 받아 일정한 기간 동안 전시한 후 주로 경매의 방식에 의하여 판매합니다. 1회의 미술품 경매를 무사히 치뤄내기 위해서 미술품 경매회사들은 ① 미술품을 위탁할 다수의 판매자들을 물색하여 판매를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② 각자 다른 크기·주제·작가·재질·무게 등을 가진 수십에서 수백점을 운송하여, ③ 미술품의 전시와 보관에 적합한 장소에서 보관한 후, ④ 미술품에 관한 진위 확인, 가격에 대한 추정, 그 외 구매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조사합니다. 그 후 ⑤ 미술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미술품 경매를 홍보하고 다수의 구매희망자를 물색하기 위한 마케팅을 진행하며, ⑥ 미술품의 실물을 일정기간 전시한 뒤에 ⑦ 주로 호가에 의한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미술품의 판매를 진행하고, ⑧ 낙찰자인 구매자로부터는 구매 대금의 수령을, 위탁자인 판매자에게는 판매 대금의 지급을 대행하며 관련된 비용과 수수료, 그리고 제반 세금의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⑨ 대금의 정산이 완료된 미술품은 구매자인 낙찰자에게 운송하고, 판매되지 않은 미술품은 다시 경매 절차를 반복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운송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처럼 미술품 경매회사들이 수행하는 복잡 다단한 업무들을 위하여 미술품의 조사와 확인, 보관과 운송, 관련된 조세와 회계에 관한 많은 인적·물적 자원과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술품 경매회사들을 통한 유통을 화랑이나 아트페어와 분리하여 미술품의 2차 시장이라고 합니다.

미술품 경매회사를 통한 미술품의 판매는 미술품이 체계적 절차를 거쳐 유통되었다는 점, 전시 기간 중 대중에 의한 미술품 검증이 이루어진다는 점, 판매와 구매의 이력이 미술품 경매회사를 통하여 증명된다는 점 때문에, 주요 미술품 경매회사를 통하여 유통된 미술품은 그 자체로 미술품에 대한 일종의 유통이력 보증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주요 미술품 경매회사가 호가 경매가 아닌 방식으로 미술품을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미술품 경매회사가 제공하는 미술품에 관한 보증서(Certificate of Authenticity; Certificate of Warranty) 또는 미술품 거래에 관한 계약서는, 그 미술품 경매회사와의 사이에서 경매를 통한 거래와 유사한 신용도나 신뢰도를 인정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케이옥션과 서울옥션이 주요한 미술품 경매회사로 분류되고, 해외에서는 소더비, 크리스티, 필립스 등이 주요한 미술품 경매회사로 분류됩니다. 미술품 경매회사는 미술품의 판매를 위탁한 판매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수취하고, 구매자로부터는 낙찰수수료를 수취합니다.

당사는 국내외 주요 미술품 경매회사들의 위탁수수료(Consignment Commission; Seller's Premium)와 낙찰 수수료(Buyer's Premium)를 조사하여 아래 표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미술품 경매회사를 통하여 미술품의 구매나 판매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수수료율들은 각 미술품 경매회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는 약관 또는 계약상 수수료율들이며, 할인 등은 개별 미술품 경매회사들의 공개되지 아니하는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회사	국가	위탁수수료	낙찰수수료	구간(현지통화)	비고
케이옥션	한국	11%	16.5%	낙찰가 무관	VAT포함
서울옥션	한국	11%	19.8%	낙찰가 무관	VAT포함
아트데이	한국	11%	13.2%	낙찰가 무관	VAT포함
Christie's	뉴욕	미공개	26.0%	USD 1,000,000 이하	VAT별도
		미공개	21.0%	USD 1,000,001 - 6,000,000	VAT별도
		미공개	15.0%	USD 6,000,000 초과	VAT별도
	런던	미공개	26.0%	GBP 800,000 이하	VAT별도
		미공개	21.0%	GBP 800,001 - 4,500,000	VAT별도
		미공개	15.0%	GBP 4,500,000 초과	VAT별도
	홍콩	미공개	26.0%	HKD 7,500,000 이하	VAT별도
		미공개	21.0%	HKD 7,500,001 - 50,000,000	VAT별도
		미공개	15.0%	HKD 50,000,000 초과	VAT별도
Sotheby's	뉴욕	미공개	26.0%	USD 1,000,000 이하	VAT별도
		미공개	20.0%	USD 1,000,001 - 4,500,000	VAT별도
		미공개	13.9%	USD 4,500,000 초과	VAT별도
	런던	미공개	26.0%	GBP 800,000 이하	VAT별도

		미공개	20.0%	GBP 800,001 - 3,800,000	VAT별도
		미공개	13.9%	GBP 3,800,000 초과	VAT별도
	홍콩	미공개	26.0%	HKD 7,500,000 이하	VAT별도
		미공개	20.0%	HKD 7,500,001 - 40,000,000	VAT별도
		미공개	13.9%	HKD 40,000,000 초과	VAT별도
	모든 지역	미공개	+1%	낙찰가 무관	VAT별도
Phillips	뉴욕	미공개	27.0%	USD 1,000,000 이하	VAT별도
		미공개	21.0%	USD 1,000,001 - 6,000,000	VAT별도
		미공개	14.5%	USD 6,000,000 초과	VAT별도
	런던	미공개	27.0%	GBP 800,000 이하	VAT별도
		미공개	21.0%	GBP 800,001 - 4,500,000	VAT별도
		미공개	14.5%	GBP 4,500,000 초과	VAT별도
	홍콩	미공개	27.0%	HKD 7,500,000 이하	VAT별도
		미공개	21.0%	HKD 7,500,001 - 50,000,000	VAT별도
		미공개	14.5%	HKD 50,000,000 초과	VAT별도
Bonhams	뉴욕	미공개	28.0%	USD 50,000 이하	VAT별도
		미공개	27.0%	USD 50,001 - 1,000,000	VAT별도
		미공개	21.0%	USD 1,000,001 - 6,000,000	VAT별도
		미공개	14.5%	USD 6,000,000 초과	VAT별도
	런던	미공개	28.0%	GBP 40,000 이하	VAT별도
		미공개	27.0%	GBP 40,001 - 800,000	VAT별도
		미공개	21.0%	GBP 800,001 - 4,500,000	VAT별도
		미공개	14.5%	GBP 4,500,000 초과	VAT별도
	홍콩	미공개	28.0%	HKD 400,000 이하	VAT별도
		미공개	27.0%	HKD 400,001 - 7,500,000	VAT별도
		미공개	21.0%	HKD 7,500,001 - 50,000,000	VAT별도
		미공개	14.5%	HKD 50,000,000 초과	VAT별도

위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에서는 위탁수수료와 낙찰수수료를 모두 공개하나, 해외주요 경매사들은 낙찰수수료만 공개하고 위탁수수료는 공개하지 않은 채 각 계약에 따라 달리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주요 경매사들에 대해서 고액의 미술품일수록 위탁수수료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매각을 위하여 미술품 경매회사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수수료 중에서 위탁수수료는 공동사업의 운영에 따르는 비용으로서 추후 공동사업의 청산시에 실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 투자자에게 청산으로 인한 손익을 귀속시키게 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낙찰가', '낙찰가격', '낙찰액'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 수수료가 미포함된 낙찰가를 지칭하며(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투자계약증권 관련 투자자 보호, 1. 용어의 정의 항목 참조)
, 기초자산 내재가치 분석 등 수수료 포함 기준이 합리적인 경우 해당 항목에 수수료가 포함된 거래가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Q-수익/비용-3. 투자자산의 보관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도 높아지나요?

A. 높아지지 않습니다.

기초자산의 보관료와 보험료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공동사업의 수행에 있어 투자자산인 미술품의 기간이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관료와 보험료 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보관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초자산 보관료와 보험료의 당사 부담 원칙은 당사가 기초자산을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는 데 있어 투자자와 이익을 같이할 유인이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미술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모손실의 대상이 아니며, 공동사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산의 보관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있어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투자자의 기대이익에 있어서는 반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도 합니다.

Q-수익/비용-4. 투자계약증권의 수익금 배분구조 및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초자산이 최종적으로 매각되어 공동사업이 청산되는 경우, 당사는 처분손익을 배분합니다.

투자자는 처분손익에서, ① 공동사업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나 수수료, ②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보수(최종매각대금이 모집(매출)총액의 108%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③ 제세공과금을 순서대로 차감한 금원을 배분받습니다. 이 때, 공동사업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나 수수료는 이 증권신고서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당사는 기초자산을 공모총액의 100% 이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으며, 기초자산이 공모총액의 108%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산가액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발생 이익에 비례(108%를 초과하는 공동사업 수익에 대하여 20%, VAT 별도)하는 성과보수를 지급받습니다.

미술품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투자계약증권은 주권과 달리 등기와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나 그에 부대하는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 역시 없습니다. 미술품에는 재산세 등 별도의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투자계약증권의 보유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도 없습니다.

한편,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지급받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은 배당소득의 범위에 추가됩니다. 배당소득에 추가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구체적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0항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의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조각투자상품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을 포함하며,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동 조 제11항에 따라 공동사

업의 이익에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여집니다.

[과세표준 결정산식] (1주당 배당소득금액 x 보유 주수) - 영 제 26조의3 제11항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

그에 따라, 기초자산이 청산되는 경우 투자자가 지급받게 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가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되게 됩니다. 당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며, 이 때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투자계약증권 1주당 분배되는 금원에서 1주의 취득금액 및 보수・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원, 즉 투자자의 원본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초과액으로서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당금으로 하여 배당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연간 배당이나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행되고 청산된 투자계약증권의 사례 등에 기초하여 동일한 청산 등 사례에 있어 배당소득세 적용이 미치는 영향을 가정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실질 수익률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경우에 비하여 낮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당사로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계약증권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되는 경우의 과세표준 또는 투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투자자가 받을 이익이나 적용 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추가적으로 과세당국의 규칙, 예규, 해석 또는 법원의 판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즉시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현행 세법에 따른 미술품 처분에 대한 일반적 과세 방식과 당사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마련한 납세의무의 수행 계획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실무가 당사의 해석과 다르거나, 미술품 또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미술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과 투자계약증권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있고 그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과세와 투자수익 등의 분배에 관하여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 증권의 주요권리 내용」중 과세에 관한 사항 및 「제1부 IV.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2. 투자수익 등의 분배」를 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수익/비용-5. 투자계약증권 대상 자산 및 투자기간중 발생하는 수익금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발행회사와 구분되어 관리되나요?

A-1. 기초자산의 관리

당사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에 대하여 공동사업 참여자인 (주)케이옥션이 운영하는 미술품 전

문 보관 프로그램인 '케이아트스페이스'를 통하여 미술품을 보관합니다. 당사가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직접 보관하지 않음으로 하여, 당사 또는 다른 투자자의 도산 위험에서 제한적이나마 기초자산을 분리하고 당사의 다른 재산과 기초자산의 혼장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케이아트스페이스 주요사항	
보안 및 출입관제	각 호실 내부 CCTV에 의한 실시간 모니터링
	소재지 건물 외부 전체 CCTV 설치 및 24시간 상주 경비
	전문 보안업체(세콤)에 의한 각 호실별 개별 출입 관제
	이중 철문 및 격벽 시스템
소방	(미술품을 보호할 수 있는) 하론가스 소방 시스템
	난연 소재 내장재(카페트, 벽돌, 페인트 등) 시공
보관	항온항습기
미술품 관리	K-Office에 의한 미술품 입고 및 출고 관리
보험	케이옥션과 동일 조건의 미술관 보험

케이아트스페이스에 보관되는 미술품은 케이옥션과 동일한 조건으로 미술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케이옥션은 총 한도 1,700억원의 미술관 보험에 부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기초자산에 대하여 별도로 케이옥션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보험을 부보하고 있습니다.

A-2. 수익금의 관리

투자기간 중에는 기초자산의 최종적인 매각 외에 별도의 수익금이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수익금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습니다.

기초자산의 매각으로 공동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은 비용에 대한 계산과 제세공과금에 대한 원천징수 등을 위하여 당사가 직접 수령한 후 투자자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기초자산을 인도하고 기초자산 매각대금을 완전하게 지급받음으로서 기초자산 매각을 통한 청산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산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며, 기초자산 인도 및 매각대금의 수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계약에 따라 7영업일 이내에 빠르게 청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초자산의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투자자 명부 변경 정지에 대한 공시 및 청산금 지급 등에 대한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청산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공시하고자 노력합니다. 당사가 청산 절차에서 공시하는 내용에는 대상 투자계약증권, 처분의 대상이 된 기초자산 작가(작품), 모집총액, 모집된 총 증권 수, 증권배정일을 포함하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정보, 그리고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을 뜻하는 청산금 총계, 매각에 수반된 판매수수료, 투자계약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게 지급되는 성과수수료가 있는 경우 그 성과수수료, 기타 투자계약에 따라 청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 당사가 투자자를 위하여 원천징수하게 되는 제세공과금 등이 있는 경우 그 세금에 대한 내용, 청산금 지급에 대한 일정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매각대금 수령 후 청산금 분배 시작 전까지, 증권 배정일 이후 투자자 명부 변경 정지일까지 사이에 변경된 투자자 명부를 확인하고, 각 투자자들에게 분배될 청산손익을 산정하며, 투자자

를 위하여 당사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를 위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의 매각 이후 안전하고 신속한 청산금 지급이 투자자 보호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청산금 지급에 있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청산금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매각대금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매각대금의 보관과 관리, 그리고 배분 절차 일체를 규정하는 "기초자산 매각 후 청산 업무 처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되는 공동사업의 기초자산이 매각되는 경우, 당사는 그 매각대금을 청약시와 동일하게 NH투자증권을 통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이 체결된 매각대금 수령 전용계좌를 통하여 수령할 계획이며, 향후로도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의 기초자산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특정금전신탁계약, 에스크로계약,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청산절차 종료시까지 매각대금을 회사와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계약 등을 체결(또는 체결된 계좌를 계설하는 등 그와 유사한 방법을 모두 포함합니다)하는 등 회사의 도산위험과 투자자를 최대한 절연시킬 수 있는 조치(이하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청산절차 내 투자자 보호조치 등")를 취하여 투자자에게 공동사업의 처분손익이 배분되기 이전까지의 매각대금에 있어서도 투자자 보호를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청산절차 내 투자자 보호조치 등을 포함하여 기초자산 매각 후 청산 업무 처리 규정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공시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투자자 보호 관련]

Q-투자자 보호-1. 발행인이 선택한 공유지분 입증수단 또는 도산절연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방식인가요?

A-1. 동산인 미술품의 인도와 점유

기초자산인 미술품은 동산으로 부동산과는 달리 특별히 등기 또는 등록하는 수단이 없고, 동산은 「민법」 제188조에 따라 인도하여야 물권 양도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 때,「민법」 제189조에 따라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점유를 계속하게 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민법」 제190조에 따라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A-2. 공유지분권에 대한 입증방식

본 증권신고서로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자들은 기초자산에 대하여 당사 또는 다른 투자자들과의 사이에서 기초자산에 대하여 「민법」에 따르는 공유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각 투자자는 공유 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당사는 그 공유지분권에 대하여 확정된 투자자 명부를 공유지분에 대한 입증수단으로 보고 이를 「공증인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사서인증 또는 확정일자 부여합니다. 또한 당사는 기초자산을 보관하는 위치를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를 통하여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게 공개하여 제공합니다.

이 때, 투자자는 공동사업 목적을 위한 범위에서 투자계약증권의 만기까지 당사에 그 보관·관리·매각에 대한 중요한 권리의무를 위임하여 당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행위하게 되며, 그 위임의 철회나 해지 등에는 공동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조건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특약을 하게 됩니다.

A-3. 투자자의 기초자산 관람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청약기간 중 기초자산을 전시하여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약기간 종료 후에는 투자자는 당사를 통하여 요청함으로서 기초자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케이옥션과 미술품 전문 수장고인 케이아트스페이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케이아트스페이스는 관람을 위한 전용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케이아트스페이스를 통한 기초자산 관람의 세부 절차를 투자자에게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며, 관람 가능 시간과 장소, 그리고 관람을 위한 전용 공간의 이용으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당사는 청약 기간 중에 서울 강남구 언주로 172길 23에 소재한 (주)케이옥션 전시장에서 기초자산에 대한 공개와 관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약이 종료된 후의 기초자산 관람과 관련하여서는, 청약 종료 후 당사 홈페이지 (https://weshareart.com)에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활성화되는 '관람 신청' 메뉴를 통하여 개별 투자자가 단독으로 관람 시간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 때 단독 관람의 장소는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에 위치한 케이아트스페이스 내 단독 관람실을 활용할 예정으로 세부 내역은 신청하신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한편, 당사는 단독 관람을 위한 신청하지 않은 투자자도 기초자산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청약기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분기별 1회 이상의 투자자 대상 관람 기회를 두어 기초자산의 실물을 확인하고 감상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A-4. 투자자가 유의하셔야 할 사항

당사는 위와 같은 당사의 사업구조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사업구조에 포함된 공유지분 입증수단이나 도산절연 여부가 「민법」 기타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의 해석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지분 입증수단 또는 도산절연 방식에 관한 투자위험요소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투자자 보호-2. 기초자산에 대한 보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나요?

A. 기초자산에 대한 보험

당사는 공동사업 참여자인 (주)케이옥션이 제공하는 '케이아트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자산을 보관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미술품 전문 수장고로, CCTV 등의 보안시설과 더불어 가스 소방시설 등 미술품을 보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에 대한 보험을 포함합니다.

케이아트스페이스에 보관되는 기초자산에 대해서는 (주)케이옥션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체 보험가입금액은 1,700억원입니다. 당사와 케이옥션은 개별 기초자산 각각이 보

험에 추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사업 참여자인 (주)케이옥션이 운영하는 케이아트스페이스에서 보관되는 당사의 기초자산은 (주)케이옥션과 동일한 미술관 보험에 부보됩니다.

번호	표제	내용
1	Policy Number 증권번호	*-2025-******
2	Policy Holder 보험계약자	(주) 케이옥션
3	Insured 피보험자	(주) 케이옥션
4	Ensured exhibition, auction, and storage places 담보구역	(케이옥션 및 케이아트스페이스 포함, 세부 담보구역 미공개)
5	The Property Insured 보험가액	1,700억원
6	General Conditions 기본 조건	Commercial Insurance Coverage for Museums and Cultural Institutions with Property Damage Only(재산상 손해에 한정한 미술관 및 문화재단을 위한 보험)

(주)케이옥션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면, 기초자산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면책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면책조항 중 전부 또는 일부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보험에서 담보되는 손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보험사의 면책여부 및 면책 비율이 별도로 정하여질 수 있습니다.

- 전쟁, 남북전쟁, 정치적 위험 및 테러
- 파괴행위 및 테러
- 서기 2000년 문제
- 정부의 제재
- 방사능 오염, 화학, 생물학, 생물화학, 전자자기무기, 사이버 공격
- 선제 손상
- 세계적 유행병/감염병
- 오기 및 누락(10억원 한도 내에서는 적용됩니다)

Q-투자자 보호-3. 발행인 파산시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게 되나요?

A-1. 청약증거금에 대한 투자자 보호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청약기간 중 당사에 도산 또는 파산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당사 도산사유와의 절연을 위해, 청약기간 중 청약금 또는 청약증거금에 대하여 청약기간 매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A-2. 당사의 사업중단시 투자자 보호

그리고「사업중단시 청산 업무 등 처리 절차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에 회생, 파산, 도산 등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산 보관·관리·처분·정산 등의 업무

수행 체계가 유지되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적 제3자와의 사이에서 조건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기초자산의 보관 및 처분에 관하여서도 별도로 사업중단 조건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의 기초자산은 동산으로 그 점유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을 당사가 직접 보관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 참여자로 하여금 미술품 전문 수장고에 보관하도록 하여 당사의 도산 사유로부터 제한적으로나마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파산 등 도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투자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도산 등 사업중단에 관한 투자위험요소는「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 청산금(기초자산 매매대금)에 대한 투자자 보호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당사에 도산 또는 파산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당사 도산사유와의 절연을 위해, 기초자산 매매대금 수령시부터 공동사업의 처분손익 배분을 완료하기 전까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기초자산 매매대금에 대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Q-투자자 보호-4. 투자이후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정기적/수시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1-1. 정보 제공을 위한 공시제도의 운영

당사가 운영하는 「공시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로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자 명부가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 에서 투자자에게 정기공시, 수시공시, 자율 공시, 조회공시를 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공시로 갈음합니다.

A-1-2. 공시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

당사의 공시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위	성명	담당업무	비고
사내이사	이관재	준법감시인	공시책임자(정)
팀장	신규식	발행/공시	공시담당자(부)

당사의 공시책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국장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당사의 공시담당자는 코스닥 협회에서 실시하는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수료하여 공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습니다
.

A-1-3. 공시제도 운영을 위한 설비와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현황 및 계획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은 발행공시만을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DART 시스템을 통하여 하게 되고, 유통에 관련된 공시는 당사가 자체적으로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당사의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이 때, 당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공시와 내부정보관리는 상장회사에 준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위와 같은 조직과 인적 자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A-2. 각 공시에서 제공되는 정보들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공시관련 업무규정」에 의한 공시사항과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공시 : 사업연도말

연번	공시사항	시기	비고
1	회사의 재무제표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2	회사의 사업자 등록 내역(상호 및 본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3	회사의 주 사업 내용 및 영업방식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4	회사의 임원과 임직원 수, 투자자 보호인력과 운영인력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5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자본변동 등에 관한 사항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6	회사의 청산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7	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한 사항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8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순자산가치(NAV)에 대한 발행인 또는 전문가의 평가의견.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순자산가치(NAV)에 대한 발행인 또는 전문가의 평가의견.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주1)

(주1)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연도가 속한 공시부터 포함한다.

(2) 분·반기말 공시

연번	공시사항	시기	비고
1	회사의 재무제표와 외부 감사인의 검토의견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2	회사의 사업자 등록 내역(상호 및 본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3	회사의 주 사업 내용 및 영업방식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4	회사의 임원과 임직원 수, 투자자 보호인력과 운영인력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5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자본변동 등에 관한 사항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6	회사의 청산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7	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한 사항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8	회사가 직전 사업보고서 공시 또는 직전 분·반기 보고서 공시 이후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의 목록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3) 수시공시

당사는 아래 수시공시의 공시사항에 대하여서는 정하여진 공시 시기에 관계 없이 가능한 발생일로부터 지체 없이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며, 2023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에 대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은 한국거래소(KRX)에 향후 당사가 본 투자계약증권 등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정한 수시공시 시한을 준수할 계획입니다.

연번	공시사항	시기	비고
1	기초자산의 처분 등 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2	기초자산의 보관장소 변경에 관한 정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3	기초자산의 보험자나 보험조건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정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4	투자설명서 또는 투자계약서(특약을 포함한다)에 기재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5	기초자산 관련 소송 중 청구금액이 기초자산 가액 100분의 5이상인 경우 또는 기초자산의 진위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6	투자자 총회의 개최 및 투자자 총회의 결정이 있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7	권한 있는 감독기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 또는 사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한 조치 또는 처분을 받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8	기타 기초자산의 가치나 투자계약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주1) 수시공시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정기공시가 이루어지고 그 정기공시에 전 항의 수시공시사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기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주2) 수시공시 사항 중 공동사업의 운영,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 법률 또는 계약상 의무, 기타 특별히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3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시를 유보(이하 “공시 유보”)할 수 있다.

(주3) 공시 유보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공시 유보 내역을 사업보고서 공시에 기재한다.

(4) 자율공시

연번	공시사항	시기	비고
1	회사가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유 발생시	

(5) 조회공시

연번	공시사항	시기	비고
1	회사 또는 회사가 발행한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르는 투자자나 감독기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공시를 하여야 하는 사유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주1)

(주1)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사실관계 또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조회하여 공시할 수 있다.
(주2) 회사는 조회공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거나 사실확인 중이라는 내용으로 미확정 공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의사결정 과정의 구체적 내용이나 사실확인의 구체적 결과를 다시 공시하는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만약 다시 공시하는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장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해상충 관련]

Q-이해상충-1.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자 중 발행인의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가격 및 조건을 정하나요?

A.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용 있는 특수관계인의 공동사업 참가

공동사업 참여자 중에서 공동사업 운영자(당사)의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최대주주 (주)케이옥션과 미술품 전문 수장고인 케이아트스페이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미술품을 안전하게 분리보관합니다.

(주)케이옥션은 국내 미술품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미술품 유통 전문 사업자로서 당사는 향후 기초자산의 처분이나, 그 처분을 위한 전시 기타 제반 업무에 있어 케이옥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포괄적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규정에 따라 관계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관리하고 있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 거래는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당사 감사보고서 및/또는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당사가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 신고서에 각 첨부하는 외부감사인의 당사 분·반기 검토 보고서 또는 기말 감사보고서에 주석으로 기재될 예정입니다.

Q-이해상충-2. 어떤 상황에서 발행인 또는 공동사업자는 이익을 보고,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 있나요?

A. 공동사업에 따르는 이익과 손해의 공유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르는 이익과 손해의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로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 구조하에서 투자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자면 공모자금에서 미술품 취득대금을 먼저 지출하고, 그 다음으로 발행제비용에서 확정된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금원이 당사의 이익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기초자산 처분으로 궁극적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일정 부분의 이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하는 투자계약증권의 10%를 선배정 받고, 본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청약이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증권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증권을 취득합니다. 또 당사는 투자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초자산인 미술품이 고가의 대규모 작품인 경우, 기초자산인 미술품이 최종적으로 매각되어 공동사업이 청산되기까지 해당 자금의 활용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는 기초자산이 최종적으로 매각되고 공동사업이 청산될 때, 투자계약증권 1주당 귀속되는 청산가액이 모집총액 대비 108%을 상회하는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가 받는 이익에 비례하여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투자자와 이익과 손해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청산을 위하여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이해상충-3. 발행인도 투자계약증권에 투자를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발행인이 투자대상에 대한 정보우위에서 선별적으로 투자하게 되지 않나요?

A-1. 당사가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로 모집하는 투자계약증권의 10%를 우선배정 받아 취득하며, 청약이 공모예정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잔여 증권 역시 배정받아 취득합니다. 이러한 당사의 증권 취득은, 청약한 투자자들이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공모 청약에 참여한 신뢰를 보호하고 당사와 투자자들의 이해를 일치시킴으로서, 공동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반이 됩니다.

A-2.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시 및 투자위험요소

당사는 기초자산에 대하여 당사가 조사한 정보와 투자자위험요소들을 상세하게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며,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투자자와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1주당 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AT-YOUNGKUK-008)	66,000	10,000	10,000	660,000,000	일반공모

청약기간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2025년 11월 13일 ~ 2025년 11월 20일	2025년 11월 21일	2025년 11월 13일	2025년 11월 21일

투자계약증권의 모집(매출) 관련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주1)

종 류	권리내용	수량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AT-YOUNGKUK-008)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하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로, 그 취득한 투자계약증권의 비율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 지분권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 및 처분손익을 귀속받을 권리	66,000	10,000	660,000,000

(주2) 투자계약증권의 권리내용(계약이 표창하는 공동사업의 내용과 의결권, 수익분배권, 장부·서류 열람권 등 포함)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1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및 「제1부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산정 근거는 「제1부 II. 9. (3) 기초자산에 관한 가격 산정 근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 금번 공모의 대상이 되는 투자계약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동 규정에 따르는 수요예측을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주5)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금번 당사가 실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공모는 신주모집 66,000주(공모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투자계약증권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 공모]

구 분	증권수	비율	비고
일반공모	66,000	100%	-
합계	66,000	100%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증권수]

구 분	증권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매출)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59,400주	90%	10,000원	594,000,000원	-
공동사업 운영자 선배정	6,600주	10%	10,000원	66,000,000원	-
합계	66,000주	100%	10,000원	660,000,000원	-

(주1) 주당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별도의 수요예측 없이 제시 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주2) 본 건 공모는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전체 투자계약증권의 10%를 선배정하며, 일반청약자에게 투자계약증권의 나머지 90%를 배정합니다.

(주3) 총 청약증권수가 공모 증권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 증권수만큼 청약자들에게 전부 배정합니다. 다만, 일반투자자 1인당 최대 배정 가능한 주 수는 3,000주 입니다.

(주4) 당사는 총 청약증권수가 공모 증권수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증권을 취득합니다.

(주5) 총 청약증권수가 공모 증권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금을 적법하게 모두 납입한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증권을 배정합니다. 이 때, 당사는 아래 모집의 방법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일괄청약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균등 배정 및 비례 배정의 방식에 의하여 배정하며 단수주 등의 경우에 추첨 배정 할 수 있고, 단수주 등에 대해서는 당사가 합리적 방법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6)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증거금은 환불일에 환불됩니다. 이 때, 환불금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 2영업일 이내에서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7) 본 공모에 의하여 모집하는 투자계약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는 증권의 배정에 있어 동 규정의 취지와 문언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주8)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9)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하거나 투자자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추첨하는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이는 청약수량과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자 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5사6입 등의 원칙에 따라 잔여주를 최소화되도록 발행인이 배정합니다. 다만, 청약자 수가 발행 증권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1주도 배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10)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선배정된 증권 또는 미달되는 증권을 취득하는 외에는 공동사업의 운영기간 동안 일반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청약 미달로 취득한 증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모집되는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투자 한도(1인당 3,000만원)를 적용하고 2년 마다 갱신하여야 하는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당사 이해관계자 통제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처분내역을 공시합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집대상	증권수	비율	비고
일반 공모	66,000주	100%	-
합계	66,000주	100%	-

[모집 세부내역]

구 분	증권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매출)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59,400주	90%	10,000원	594,000,000원	-
공동사업 운영자 선배정	6,600주	10%	10,000원	66,000,000원	-
합계	66,000주	100%	10,000원	660,000,000원	-

(주1)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당사를 통하여 직접 청약이 실시됩니다. 청약의 접수는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서 진행됩니다.

(주2) 당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을 완료한 투자자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3) 당사는 계좌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NH투자증권에서 투자자 본인의 실명으로 당사 청약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당사와의 계좌연동 서비스에 동의한 투자자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을 접수합니다.

(주4)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의 100%이며, 청약을 위한 집금계좌로만 납입 받아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증권 취득 및 배정일까지 분리보관됩니다.

(주5) 금번 모집에서는 대표주관회사를 통한 인수 또는 주선은 없습니다.

(주6) 주당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별도의 수요예측 없이 제시 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주7) 금번 공모에서 당사는 청약을 위하여 NH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실명 계좌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나, NH투자증권에서는 본 투자계약증권의 인수·중개·주선·유통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 이하에서 정하는 "신용공여" 역시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8)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선배정된 증권 또는 미달되는 증권을 취득하는 외에는 공동사업의 운영기간 동안 일반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청약 미달로 취득한 증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모집되는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투자 한도(1인당 3,000만원)를 적용하고 2년 마다 갱신하여야 하는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당사 이해관계자 통제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처분내역을 공시합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본 증권신고서를 통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있어 당사가 기 발행한 후 매출하는 증권은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1) 수요예측 미실시

금번 공모의 대상이 되는 투자계약증권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동 규정에 따르는 수요예측을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2) 공모가격의 결정 절차

금번 공모에 있어서 공모가격은 나.공모가격 산정개요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 내부평가와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친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에 발행분담금, 감정평가와 법률검토의견 등의 자문 수수료, 소유권 증명을 위한 사서인증, 청약을 위한 실명계좌 체계 지원에 따르는 계좌관리수수료, 공동사업의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운송비나 분쟁처리 비용 등을 위한 예비비, 발행인의 매매차익 등을 포함하는 발행제비용을 합산한 후, 발행하고자 하는 증권의 총수로 나누어 산정된 공모가격에 대하여 당사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최종 결정되었고, 공모가격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당사는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초자산의 진위 및 취득금액의 적절성을 평가하였습니다. 기초자산의 진위 평가 과정에서는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에 대한 진위를 유통경로(provenance),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 보증서 등, 하자 없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계약관계, 미술품 상태(condition)에 대한 확인과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기초자산 취득금액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일 작가, 유사 주제, 유사 재질의 작품들에 대하여 공개된 직전 10년간의 거래사례를 확인한 후, 거래량의 변화 추이, 유사 작품의 최근 가격, 해당 작품의 최근 경매가격과 그 변화를 고려하여 정량적으로 작품 취득을 위한 가격 적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때, 작품의 크기나 색상이 미치는 영향, 작품의 비례미와 균형미 등 정성적 요소가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사는 해외 미술품 정보 제공 전문 DB를 통하여 1,800만건 이상의 미술품들이 미술품 경매를 통하여 거래된 사례들에 관하여 거래 가격, 경매의 장소, 경매회사, 제작연도, 재질,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제시된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 등 공개된 거래 정보 전체에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당사가 기초자산의 취득금액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분석한 거래사례는 2016년 1월부터 2025년 9월 말까지 거래된 57건으로, 해당 미술품들의 연도별 거래량 변화, 거래금액 변화, 단위면적당 거래가격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기초자산과 유사한 미술품들의 시장성을 평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기초자산에 관하여 2025년 9월부터 역산하여 10년간 공개된 동일 작가의 작품들에 대하여 합계 57회의 공개된 거래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작가의 모든 작품은 '캔버스에 오일' 이라는 같은 재질을 가지고 있고 도상과 주제 또한 아름다운 자연을 강렬한 색상을 바탕으로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이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분석대상으로 삼아 기초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분석을 거쳐 당사는 첫째, 비교적 최근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둘째, 기초자산의 제작 시기와 동시대인 1980~1989년 사이에 제작된 유사한 주제의식과 도상을 가진 작품을 선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째와 둘째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작품 중 25호에서 100호 가량의 크기를 가지고 그 크기에 따르는 가격 편차가 유의미하게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작품으로서 기초자산과 같은 재질을 가지고 주제의식이나 이미지가 기초자산과 비교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작품 10점을 직접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당사는 기초 자산의 진위와 소유권, 상태 등에 이상이 없고, 취득 금액이 경쟁력 있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외부평가기관인 ㈜제일감정평가법인,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기초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가치 평가를 받아 당사의 내부평가를 보완하였습니다.

당사의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기관들의 기초자산 취득가액 적절성 평가는 「제1부 II.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초자산 취득금액에 대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기관의 검증내역

기초자산 취득금액에 대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기관의 검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내부평가]

단계	절차	상세 내용	비고
1단계	진위 및 상태 확인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의 진위 여부, 하자 없는 소유권 취득 가부, 컨디션 등에 대한 확인	취득처(매도인), 유통경로(provenance), 보증서, Condition Report, Fact Sheet 등
2단계	방법론 수립 및 거래사례 수집	내부평가 방법론 수립 및 직전 10년간 동일 작가의 유사 작품 공개된 거래 사례 전체를 확인	거래사례 선정 기준 결정(동일 작가, 유사 주제, 유사 재질, 유사 크기 등), 거래사례들에 대한 미술품 전문 해외 DB (Artprice 등) 활용

3단계	기초자산 시장성 분석 및 가치변동요인 분석	기초자산의 판매량, 거래총액, 단위가격 등의 시계열 분석, 기타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기초자산의 시장성, 기초자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분석
4단계	비교그룹 선정	거래 사례 중 직접 비교그룹(peer group) 이 될 유사작품 선정	단위면적당 가치 추정, 국내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 검토
5단계	내재가치와 취득금액 비교	선정된 유사작품 비교그룹에서 도출된 기초자산 내재가치를 기초자산 취득금액과 비교	-
6단계	취득가액 적정성 판단	기초자산 취득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결론	-

[외부평가]

단계	평가자	비고
1차 외부평가	(주)제일감정평가법인	(주1)
2차 외부평가	한국기업평가(주)	(주2)
진위 소견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주3)

(주1)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기초자산의 평가를 담당한 감정평가사는 미술 전공자이며, 미술품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경력이 있습니다.
(주2) 국내 및 해외 미술품 시장 산업분석, 기초자산 작품 및 작가 분석, 거래사례 데이터 분석, 기초자산 가치평가를 용역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주3) 1982년부터 국공립 기관 및 주요 미술관의 소장품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사는 동일 작가의 거래사례 57건을 분석하여, 첫째, 비교적 최근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둘째, 기초자산의 제작 시기와 동시대인 1980~1989년 사이에 제작된 유사한 주제의식과 도상을 가진 작품을 선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째와 둘째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작품 중 25호에서 100호 가량의 크기를 가지고 그 크기에 따르는 가격 편차가 유의미하게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작품으로서 기초자산과 같은 재질을 가지고 주제의식이나 이미지가 기초자산과 비교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작품 10점을 직접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하여 동일한 화폐 단위와 ㎠ 단위 또는 호 가격으로 환산한 후 ㎠ 단위 또는 호당 단위 면적의 평균값(average)과 중앙값(median)으로 추정한 기초자산의 내재가치는 787,604,647원부터 792,285,780원으로, 기초자산 취득금액인 60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이 공동 사업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평가기관	거래사례수(전체)	취득금액 (공모액)(원)	비고
	직접 비교대상	내재가치(원)	
당사 (내부평가)	57	600,000,000 (660,000,000)	Artprice를 통하여 직전 10년(2016년 1월 ~ 2025년 9월)까지의 거래를 분석(최근 사례는 7월까지 존재)
	10건	787,604,647 ~ 792,285,780원	

외부평가기관인 제일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13대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 하나로 감정평가를 위한 동료 평가사 심사 등 충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며, 미술을 전공하여 미술품에 대한 안목과 전문성이 인정된 담당 감정평가사가 세계 미술품 시장과 국내 미술품 시장의 동향, 주요 통화의 대원화 환율 변동, 주요 물가지수, 유영국 작품 거래 동향에 대한 조사를 거쳐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을 사용하여 기초자산의 감정평가액을 690,000,000원으로, 한국기업평가에서는 국내 및 해외 미술품 시장 산업분석, 기초자산 및 작가 분석, 거래사례 데이터 분석을 거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기초자산의 가치를 735,283,930원 ~ 862,790,702원으로 산정하여 각 감정평가서와 미술품 가치평가 보고서 등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화랑협회로부터 기초자산이 진품에 해당한다는 감정 소견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기초자산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 요약

평가기관	거래사례수(전체) 직접 비교대상	평가액(원)	비고
(주)제일감정평가법인	87 2건(최종 1건)	690,000,000	- 담당평가사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졸 (감정평가경력 9년) - 거래사례법
한국기업평가(주)	76(유찰 제외시 57) 9	735,283,930 ~ 862,790,702	- 국내 및 해외 미술품 시장 산업분석, 기초자산 및 작가 분석, 거래사례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기초자산 가치평가 - 거래사례법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의 감정 결과, 상기 작품은 **진품**으로 소견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감정 소견: **진**		

이처럼 기초자산의 취득금액 600,000,000원은 기초자산의 내재가치나 외부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등보다 낮거나 하단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모총액 660,000,000원 역시 기초자산의 내재가치나 외부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등보다 낮거나 하단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사가 수행한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서는 「제1부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중 기초자산의 가치에 관한 부분과 「제1부 II.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본 공모에 있어서 당사 내부평가와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친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에 발행분담금, 감정평가와 법률검토의견 등의 자문 수수료, 소유권 증명을 위한 사서인증, 청약을 위한 실명계좌 체계 지원에 따르는 계좌관리수수료, 공동사업의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운송비나 분쟁처리 비용 등을 위한 예비비, 발행인의 매매차익 등을 포함하는 발행제비용을 합산한 후, 이를 발행하고자 하는 증권의 총수로 나눈 금액을 공모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 때, 기초자산의 선정과 기초자산 취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매도인과의 협상, 당사의 영업현황, 기초자산이 속한 시장의 산업전망, 기초자산의 가치에 대한 상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공모가액	10,000원
공모가액 결정방법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에 발행인의 매매차익을 포함하는 발행제비용등을 합산하여 공모로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증권의 총수로 나눈 금액을 공모가격으로 최종 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금번 모집(매출)에서는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기초자산 취득금액의 산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 (3) 기초자산에 관한 가격 산정 근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제비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2) 발행제비용의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금번 투자계약증권의 모집(매출)에서는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		내용
모집 또는 매출증권의 수		66,000주
주당 모집(매출)가액		10,000원
모집(매출)총액		660,000,000
청약기일	개시일	2025년 11월 13일
	종료일	2025년 11월 20일
청약증거금		주당 모집가액의 100%
청약단위		1주
청약한도		3,000주
납입기일		2025년 11월 21일
청약취급처 및 청약금 취급처		(주6)

청약기일 및 청약시간

① 일반청약자 청약일 및 청약시간: 2025년 11월 13일 10시 00분 ~ 2025년 11월 20일 16시 00분

②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을 통한 온라인 청약만 진행되므로 청약기일 내에는 주말 및 야간 청약도 가능합니다. 청약 결과는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평일 영업시간(오전 10시 ~ 오후 6시)내에 이메일(info@weshareart.com)을 통한 1:1 문의를 통하여 청약 결과와 입금확인 등의 안내가 가능합니다.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

(주2) 주당 공모가액은 10,000원이며, 별도의 수요예측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청약단위

일반청약자의 1인당 최고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투게더아트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3)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및 청약 증거금률]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률
㈜투게더아트	59,400주	3,000주	100%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 방법 - (3) 일반 청약자의 청약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일반청약자 청약증권별 청약단위]

청약증권수	청약단위
1주 이상 ~ 3,000주 이하	1주

청약증거금

①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② 청약증거금은 투자자 명부 확정일(2025년 11월 21일)에 청약금이자 증권 납입금액으로 대체하되, 배정 과정에서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액에 미달하여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증권은 발행인이 자기 계산으로 인수하거나 매출인 경우 매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투자자명부 확정일(2025년 11월 21일)에 계좌관리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괄 반환 요청합니다. 다만, 반환 대상 투자자수가 과대한 경우 2영업일 범위 내에서 청약증거금 반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되는 청약금 또는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주5)

③ 당사에 선배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와 동일한 절차로 청약증거금 납입을 진행합니다.

청약취급처
(주)투게더아트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

청약금 취급처

구분	적요	
청약증거금 예치계좌	NH투자증권 [강남]지점	
청약금 납입	금융기관명	NH투자증권
	예금주	(주)투게더아트
	계좌번호	207-01-918198
※ 본 납입과 관련하여 수표로 입금시 환불과 관련한 일정이 지연될수 있으며, 이에 따라투자자명부 확정 등의 일정에 대하여 차질이 생길수 있음에 따라 납입대금 납부시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6)

(주1) 청약금 납입계좌로의 청약금 입금은 NH투자증권에서 당사의 청약을 위한 전용 계좌를 투자자 실명으로 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청약 전에 당사 청약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일반 청약자 납입일 및 납입시간 :

(주3) 위 계좌는 청약증거금 납입을 위한 “집금계좌”이며, 납입된 청약증거금은 증권 취득일까지 당사가 NH투자증권과 체결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분리되어 보관됩니다.

(주4) 투자자께서는 청약금 납입 전에 당사 홈페이지 (https://weshareart.com)에서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을 완료하신 경우에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7)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선배정된 증권 또는 미달되는 증권을 취득하는 외에는 공동사업의 운영기간 동안 일반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청약 미달로 취득한 증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모집되는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투자한도(1인당 3,000만원)를 적용하고 2년 마다 갱신하여야 하는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당사 이해관계자 통제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처분내역을 공시합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자	공고방법
청약공고	2025년 11월 13일	① 청약취급처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
배정공고	2025년 11월 21일	① 청약결과 배정공고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게시함으로서 개별통지 ② 청약취급처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

(주1) 청약공고는 2025년 11월 13일 ㈜투게더아트의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 공

시합니다.

(주2) 배정공고는 2025년 11월 21일 ㈜투게더아트의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게시함으로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에서는 수요예측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청약 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지 명의자로 계좌관리기관인 NH투자증권에서 본 청약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한 자이어야 하며,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서 실명 확인 후 가입하여 투자성향분석을 완료한 후, 청약증거금을 납입하고 해당 청약취급처에 소정의 청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NH투자증권(주)에서 계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좌관리처의 추가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청약취급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2) 청약서에는 투자계약서와 첨부문서 기타 청약자가 필수로 동의 또는 승낙하여야 하는 문서가 투자관계서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3) 본 증권신고서에는 청약서에 포함될 투자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청약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청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의 100%이며, 청약 전용계좌에서 청약과 함께 집금계좌인 청약증거금 납입계좌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납입된 청약증거금은 당사와 NH투자증권이 체결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증권 취득일까지 분리되어 보관됩니다.

청약취급처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청약취급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본 공모에 있어 미성년자의 청약을 받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청약자격 및 한도	■ 자격: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 제한 없이 청약가능 ① 청약 마감일 전일까지 계좌관리기관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한 자 ② ㈜투게더아트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서 약관에 동의하고 실명으로 가입한 후,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을 완료한 자 ③ 투자계약서(첨부문서 일체 포함)에 이의 없이 동의한 자 ④ 미성년자가 아닌 자 ■ 청약한도 : 최소 1주(1만원), 최대 3,000주(3,000만원)
배정	■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 10%에 해당하는 6,600주를 선배정 ■ 66,000주(100%)에서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 선배정된 6,600주(10%)를 제외하고, 나머지 59,400주(90%)에 대하여 일반 청약자로부터 일괄청약방식으로 청약받음 ■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전체 모집 증권수 중 6,600주(10%)를 균등배정하고, 52,800주(80%)를 비례배정 ■ 청약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의 청약수량만큼 전량 배정하되, 잔여분을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 배정 ■ 단수주는 당사가 추첨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정 ■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인을 제외한 투자자 1인이 과반수 취득 금지
업무 수수료등	■ 청약수수료 : 없음 ■ 대체(출고)수수료 : 없음
청약방법	■ 청약증거금이 계좌관리기관에 청약자 실명으로 개설된 전용계좌(당사 청약 전용계좌가 개설되고, 그 청약 전용 계좌에 청약증거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약 취급처인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청약 가능
온라인 청약절차	■ 청약취급처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 본인 인증 후 회원 가입 → 약관동의 → "온라인 청약" → "투자 성향 분석"(투자 적합성 테스트, 2년마다 갱신)→ “투게더아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AT-YOUNGKUK-008) 공모 청약” 신청 → 청약가능 여부 확인 → “투자 계약하기” 선택 → “투자설명서 교부” 선택 → “청약수량” 입력 → “신청” → "청약/취소내역 조회” ■ 투자자는 청약취급처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서 투자설명서를 클릭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투자 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경우에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청약 증거금	10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주1) 본 투자계약증권의 배정에 관하여서는, 일반투자자 1인은 3천만원을 초과하는 청약을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본 증권의 배정도 3,000주를 초과하지 못하며 발행인인 당사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1인의 투자자가 50%를 초과하여 배정받거나 취득할 수 없습니다.

(주2) 본 투자계약증권의 배정은 경쟁률에 따라 청약신청 물량보다 적게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3) 본 증권신고서에는 청약서에 포함될 투자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4) 투자자는 청약시 청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을 (주)NH투자증권 지점을 통하여 고객이 사전에 개설한 계좌관리기관의 청약 전용 고객계좌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 신청시 고객이 당사 집금계좌로 납입한 청약증거금 해당 금원은 투자자가 임의로 출금하거나 (주)투게더아트의 다른 투자계약증권 구매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금번 공모에서 당사는 청약을 위하여 NH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실명 계좌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나, NH투자증권에서는 본 투자계약증권의 인수·중개·주선·유통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 이하에서 정하는 "신용공여" 역시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5) 당사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당사 청약 전용의 고객계좌에서, 당사가 청약을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에 별도로 개설한 집금계좌로만 납입받습니다.

(주6) 청약증거금은 당사가 NH투자증권과 체결한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청약기간 종료 후 투자자 명부가 확정되고, 청약금 납입일과 환불일이 도래할 때까지 당사의 운영자금과 분리되어 보관됩니다.

(주7) 당사와 NH투자증권이 체결한 오픈뱅킹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청약을 위하여 개설되는 집금계좌는 청약 목적으로 지정된 계좌로의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며, 당사가 임의로 사용 목적이나 출금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본 투자계약증권을 청약함에 있어 모든 투자자는 청약 전에 투자 성향 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하게 되며, 투자 성향 분석을 완료한 투자자에 한하여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투게더아트 회원의 투자적합성 테스트 결과는 2년간 보관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주8)

[투게더아트] 투자계약증권 적합성 테스트

[질문]

Q1.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가지는 권리의 성격은?

1. 상법에 투자자 권리 관련 근거가 있는 주식 등과 같이 정형적이다.
2. 발행인과의 계약에 의해 투자자의 권리가 정해지므로 매투자시마다 투자계약관계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Q2. 투자계약증권 발행인은 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1. 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대상이다.
2. 일반회사로서 발행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이다.

Q3. 증권신고서 심사가 가지는 의미는?

1.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부에서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진다.
2.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의 기재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사한다.

Q4. 투자계약증권으로 투자한 원금이 보장되는지?

1. 발행회사에 의해 원금이 보장된다.
2.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투자손실이 발생 가능하다.

Q5. 투자계약증권 기초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1. 증권시장과 같이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된 신뢰 높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감정평가 등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가치산정 근거를 공시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Q6.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1. 투자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발행기업은 투자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다.
2.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으므로 원하는 시기에 증권 매매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Q7. 일반투자자의 투자계약증권 투자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권고하는 투자수준은?

1. 본인의 여유자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계약증권 등 상장되지 않은 비시장성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2. 본인의 자산 상황 등과 관련없이 청약한도 최대치까지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8. 투자계약증권 투자자의 권리행사가 다른 투자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1. 투자계약증권 관련 권리는 다른 투자자와 관련없이 온전히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2. 동일한 투자계약증권에 투자한 모든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등 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제한이 있다.

Q9. 투자계약증권을 투자하는 적절한 방법은?

1. 사업계획, 투자위험 등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투자계약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한다.
2. 친구, 지인 등 추천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다.

Q10. 투자계약증권 발행후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1.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예:3개월, 매년), 수시로 제공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
2. 정보제공주기, 제공되는 정보수준이 투자계약증권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투게더아트 투자적합성 테스트 질문지_3



투게더아트 투자 적합성 테스트 화면

(주9) 본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 운영기간은 투자자명부 확정일로부터 5년이며, 투자자 총회의 처분정족수 결의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운영기간 동안 기초자산인 미술품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투자계약 또는 투자자 총회의 결의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판매시장을 통해 기초자산을 처분한 후 즉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10)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선배정된 증권 또는 미달되는 증권을 취득하는 외에는 공동사업의 운영기간 동안 일반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청약 미달로 취득한 증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모집되는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투자 한도(1인당 3,000만원)를 적용하고 2년 마다 갱신하여야 하는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당사 이해관계자 통제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처분내역을 공시합니다.

(4) 청약 기간 중 기초자산 관람

금번 청약 기간 동안 당사는 기초자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관람 기간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기간 중(휴일 포함)인 2025년 11월 13일 ~ 2025년 11월 20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장소에서 기초자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람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72길23, (주)케이옥션 1층 전시장
관람 방법	별도의 관람 신청 또는 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관람 장소에 비치됩니다. 주차가 제공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주1) 당사는 청약 기간 중에 서울 강남구 언주로 172길23에 소재한 (주)케이옥션 전시장에서 기초자산에 대한 공개와 관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2) 당사는 청약 기간 전인 2025년 10월 24일 ~ 2025년 10월 31일까지 상기 관람 장소 및 관람 방법과 동일하게 기초자산을 사전 공개하여 관람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3) 청약이 종료된 후의 기초자산 관람과 관련하여서는, 청약 종료 후 당사 홈페이지 (https://weshareart.com)에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활성화되는 '관람 신청' 메뉴를 통하여 개별 투자자가 단독으로 관람 시간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 때 단독 관람의 장소는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에 위치한 케이아트스페이스 내 단독 관람실을 활용할 예정으로 세부 내역은 신청하신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한편, 당사는 단독 관람을 위한 신청하지 않은 투자자도 기초자산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청약기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분기별 1회 이상의 투자자 대상 관람 기회를 두어 기초자산의 실물을 확인하고 감상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5) 기타

금번 청약시 미성년자에 대한 청약이 제한되는 외에는 별도의 청약이 제한되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이행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

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 청약취급처 및 청약금 취급처

(1) 청약취급처

구분	적요
청약취급처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
주소	서울 강남구 언주로174길 26, 3층
연락처	(전화) 02-6959-1909

(주1) 당사는 본·지점에서의 청약을 요청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금 취급처

구분	적요	
청약증거금 예치계좌	NH투자증권 [강남]지점	
청약금 납입	금융기관명	NH투자증권
	예금주	(주)투게더아트
	계좌번호	207-01-918198
※ 본 납입과 관련하여 수표로 입금시 환불과 관련한 일정이 지연될수 있으며, 이에 따라투자자명부 확정 등의 일정에 대하여 차질이 생길수 있음에 따라 납입대금 납부시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청약금 납입계좌로의 청약금 입금은 NH투자증권에서 당사의 청약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청약 전에 당사 청약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투자자 명부의 확정, 환불금의 반환, 증권의 발행과 교부 등

구분	적요
투자자 명부 확정	2025년 11월 21일
환불일	2025년 11월 21일
기초자산의 공유지분권 취득	2025년 11월 21일

(주1) 청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주2) 환불금은 환불일에 일괄하여 계좌관리 금융기관에 반환 요청됩니다. 다만, 환불금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 2영업일 범위에서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3) 투자자 명부 확정일에 당사는 확정된 투자자명부를 사서인증합니다.

(주4) 발행인은 투자자명부 중 다른 투자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증권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청약취급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열람 및 교부합니다.

(주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발행된 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또는 그와 동등한 증권의 등록방법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르며, 그에 관련된 사항을 청약취급처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주6) 투자자 명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원본 1부를 동일하게 청약취급처에 보관합니다.

마. 청약 결과 배정방법

(1) 배정비율

전체 모집 증권수인 66,000주(100%)에서 공동사업 운영자에 선배정된 6,600주(10%)를 제외하고 일반투자자에게 59,400주(90%)를 배정하며, 1인당 최대 배정단위는 [3,000]주입니다.

(주1) 당사는 1인당 최대 청약단위를 1인당 최대 배정단위와 동일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투자계약증권의 배정은 공모가액 10,000원으로 발행회사가 투자계약서 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별첨 2] 증권의 배정 방법

1. 공동사업 운영자는 청약 기간 내 청약증거금을 적법하게 모두 납입한 투자자가 청약한 수량에 해당하는 증권을 배정합니다.
2. 전체 모집 증권수인 66,000주(100%)에서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6,600주(10%)를 우선 배정(이하 “우선 배정”)합니다.
3. 공모 절차에서 청약하는 투자자에게 59,400주(90%)를 배정하며, 1인당 최대 배정 단위는 [3,000]주입니다.
4. 청약 완료일에 우선 배정되는 증권을 제외하고, 투자자로부터의 본 증권의 모집 수량 [59,400]주에 대한 배정방식은 다음의 각 순서에 의합니다. 이 때, 청약방식은 균등배정, 비례배정, 추첨배정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배정 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 배정 및 추첨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가. 일반 투자자에게 59,400주(90%)를 배정하며, 1인당 최대 청약단위는 [3,000]주 입니다.
나. 일반 투자자에 대한 구체적 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배정물량 중 약 10%인 [6,600]주를 청약증거금을 모두 납입한 투자자에게 균등하게 배정("균등 배정")
(2) 전체 배정물량 중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우선 배정과 균등 배정을 제외한 나머지 80%인 [52,800]주를 투자자의 청약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비례 배정")
(3) 위 (1) 내지 (2)에 따라 배정되지 아니하고 남은 증권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배정
5.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하거나 투자자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추첨하는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이는 청약수량과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자 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5사6입 등의 원칙에 따라 잔여주를 최소화되도록 발행인이 배정합니다.
7. 상기 배정 방식은 본 투자계약에 의한 청약에만 해당됩니다. 다른 투자계약에 의한 청약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당사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 시, 투자자의 청약 순서, 청약 수량 등 다른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9. 청약자 수가 발행 증권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1주도 배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사업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은 2025년 11월 21일에 ㈜투게더아트의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 게시함으로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환불일은 2025년 11월 21일입니다. 이 때, 계좌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에 대한 당사의 환불 요청은 환불일에 일괄로 이루어지나 환불 대상자의 수가 과다한 경우 2영업일 범위에서 환불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투게더아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해야 합니다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구분	투자설명서 교부 형태
발행인 본・지점내방	■ ㈜투게더아트의 본・지점에서 투자설명서 인쇄물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신고서에 기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아래 온라인 청약만을 하실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으신 경우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본・지점을 내방한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온라인을 통하여 할 것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청약취급처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고, 투자설명서 다운로드를 완료한 이후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명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투게더아트에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사.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증권 취득대금 납입기일(2025년 11월 21일)에 청약금이자 증권의 취득대금으로 대체하되, 증권 배정 과정에서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에 미달하여 위 증권 취득대금 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 증권은 발행회사인 (주)투게더아트가 투자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 증권 취득대금 납입기일에 청약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아. 기타의 사항

1) 증권교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자등록된 증권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증권의 매매(양수도)개시일
본 투자계약증권의 매매(양수도)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기타 활성시장이 없으며, 투자계약에서 정한 증권의 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만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4)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인수인의 인수 없이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므로 동 절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공모를 통하여 모집(매출)할 증권은 투자계약증권(이하 "증권")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당사와 투자자간에 체결되는 투자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투자계약상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별첨]은 투자계약의 일부입니다.

1. 투자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

투자자는 증권의 취득시점에 취득한 증권 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기초자산의 소유권(공유지분)을 가집니다. 이 때,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또는 투자자와 당사는 공유관계를 형성합니다.

[투자계약서]

제20조(투자자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등)
①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공동사업 운영자로부터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② 투자자는 증권의 취득시점에 전항의 권리를 취득하며, 증권의 양도 시 전항의 권리도 함께 이전된다. 다만, 증권 및 기초자산의 양도의 효력을 공동사업 운영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가 투자자를 위하여 기초자산을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기초자산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④ 기초자산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공동사업 운영자, 투자자,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양수받는 양수인 사이에서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증권의 양도와 양수를 위한 통지와 승낙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⑤ 투자자는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만을 별도로 양도하지 못하며, 증권 및 본 투자계약에 기한 일체의 권리의무와 함께 양도할 수 있다.

제21조(기초자산의 공유관계 및 공유물의 분할 금지 특약)
①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다른 투자자와 기초자산을 공유한다.
② 투자자는 기초자산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공동사업 운영자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하여 확약(이하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한다.
③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투자자명부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전항의 기간이 만료한 날까지 본 투자계약에 의한 청산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만료일로부터 역산하여 [14]일간 투자자에게 공시한 후 [5]년 간 유효한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갱신한다. 이 때,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와 다른 투자자에게 대하여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의 갱신을 할 것을 확약(이하 “특약의 갱신 확약”)하고, 특약의 갱신에 대한 반대는 공동사업 운영자를 제외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⑤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은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인 제3자에게도 유효하게 승계된다.
⑥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의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본 투자계약 제18조의 양도 통지 및 승낙 절차에서 양수인에게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과 특약의 갱신 확약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도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⑦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는 공동사업 운영자를 제외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내용

(1) 권리의 주요 내용

1) 투자자는 투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초자산의 처분손익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투자계약서]

제23조(처분손익)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에 따라 본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하 “처분손익”)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투자자는 투자자총회에서 기초자산의 처분 또는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 등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투자계약서]
제36조(투자자총회와 의결권) ①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은 투자자총회를 구성한다. ② 투자자의 의결권은 증권 1주마다 1개로 한다.

(2) 권리행사 절차

1) 처분손익은 기초자산의 매각 후 당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기초자산을 인도하고 기초자산 매각대금을 안전하게 분리보관하기 위하여 매각대금 전용계좌에 대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 에스크로 계약,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청산절차 종료시까지 매각대금을 회사와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계약 등을 체결(또는 체결된 계좌를 개설하는 등 그와 유사한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하는 등 회사의 도산위험과 투자자를 최대한 절연시킬 수 있는 조치(이하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청산절차 내 투자자 보호조치”)를 통해 완전하게 지급받음으로서 기초자산 매각을 통한 청산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산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며, 기초자산 인도 및 매각대금의 수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계약에 따라 7영업일 이내에 빠르게 청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초자산의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투자자 명부 변경 정지에 대한 공시 및 청산금 지급 등에 대한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청산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공시하고자 노력합니다. 당사가 청산 절차에서 공시하는 내용에는 대상 투자계약증권, 처분의 대상이 된 기초자산 작가(작품), 모집총액, 모집된 총 증권 수, 증권배정일을 포함하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정보, 그리고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을 뜻하는 청산금 총계, 매각에 수반된 판매수수료, 투자계약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게 지급되는 성과수수료가 있는 경우 그 성과수수료, 기타 투자계약에 따라 청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 당사가 투자자를 위하여 원천징수하게 되는 제세공과금 등이 있는 경우 그 세금에 대한 내용, 청산금 지급에 대한 일정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매각대금 수령 후 청산금 분배 시작 전까지, 증권 배정일 이후 투자자 명부 변경 정지일까지 사이에 변경된 투자자 명부를 확인하고, 각 투자자들에게 분배될 청산손익을 산정하며, 투자자를 위하여 당사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를 위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의 매각 이후 안전하고 신속한 청산금 지급이 투자자 보호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청산금 지급에 있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청산금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매각대금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매각대금의 보관과 관리, 그리고 배분 절차 일체를 규정하는 "기초자산 매각 후 청산 업무 처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되는 공동사업의 기초자산이 매각되는 경우, 당사는 그 매각대금을 청약시와 동일하게 NH투자증권을 통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이 체결된 매각대금 수령 전용계좌를 통하여 수령할 계획이며, 향후로도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의 기초자산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특정금전신탁계약, 에스크로계약,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청산절차 종료시까지 매각대금을 회사와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계약 등을 체결(또는 체결된 계좌를 계설하는 등 그와 유사한 방법을 모두 포함합니다)하는 등 회사의 도산위험과 투자자를 최대한 절연시킬 수 있는 조치(이하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청산절차 내

투자자 보호조치 등")를 취하여 투자자에게 공동사업의 처분손익이 배분되기 이전까지의 매각대금에 있어서도 투자자 보호를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청산절차 내 투자자 보호조치 등을 포함하여 기초자산 매각 후 청산 업무 처리 규정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공시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투자계약서]
제42조(청산으로 인한 처분손익의 귀속) ① 기초자산이 잔여부분 없이 종국적으로 매각되고, 그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청산이 완료된다. ② 처분손익은 청산이 완료되는 때에 확정되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③ 처분손익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제세공과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산정된다. ④ 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후에는 본 투자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처분손익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매각 기타 처분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의 청산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청산 처분손익을 지급받는다. ⑤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은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대하여 그 소유한 증권의 비율(해당 증권의 비율로 정해지는 기초자산 소유권 비율과 같다)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조기 매각, 일부 매각, 기초자산의 운용 수익 발생, 기타 투자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고 그 지급이 본 투자계약의 청산과 관련된 재무상태 기타 본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항에 중대한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준일을 정하여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2) 의결권은 투자자총회를 통하여 행사합니다. 투자자총회에서 기초자산의 매각에 대하여 투자자 전원의 반대가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업무의 수행을 중단하며,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모총액 100%미만의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투자자총회에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계약서]

제38조(투자자총회의 결의방법)
①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과반수의 찬성(이하 “찬성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이 때, 찬성 정족수는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된 공동사업 운영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본 투자계약의 이행 경과보고
2.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시 요구
3.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사전 고지되지 아니한 공모총액 대비 3% 초과 수수료 또는 비용의 지출 여부
4.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동사업 운영 방향의 권고
5. 기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②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전부의 찬성(이하 “처분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 다만, 처분을 위한 상대방, 처분가격, 처분 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2. 제8조의3 제6항에 따라 공동사업자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최소 청산목표액 미만 가격으로 처분하는 행위
3.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4. 제21조의 공유물의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
5. 본 투자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
6.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총회가 정하는 사항
8.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40조 제3항에 따라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중단
③ 전항 각 호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해지 또는 철회 시까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본조에서 정한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가 미달된 경우 그 의안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없거나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가 증권을 취득하여 투자자로서 투자자총회의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자의 의결권을 제외한 정족수(이하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를 산정하여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를 충족하는 경우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3) 권리행사 통지 방법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처분계획(처분 시기, 가격, 상대방 등이 포함된 매매계약 예정 내용), 처분가격 산정의 객관적 근거, 처분 의사결정에 이른 사유 등 청산계획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공시하고, 투자자총회 1주일 전까지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공시합니다.

[투자계약서]

제37조(투자자총회의 소집과 개최)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 및 공동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투자자총회는 본 투자계약서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가 소집한다.
③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의하여 증권의 10%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통지로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의 대표이사는 투자자총회의 의장이 되며, 공동사업 운영자의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사내이사, 미등기임원 중 부사장(부대표), 전무, 상무, 이사, 제3항에 의하여 투자자총회를 소집 요청한 투자자의 순으로 투자자총회 의장이 된다.
⑤ 투자자총회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전자적 방식으로 투자자총회에 부의될 의안을 7일 이상의 기간동안 게시하고, 그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⑥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의 본점 소재지에서 투자자총회를 개최하거나, 필요에 따라 그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⑦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투자자총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⑧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투자자총회 1주일 전까지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발송한다.
⑨ 전항에도 불구하고, 모집 증권 총수 100분의 1 이하의 증권을 소유한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총회 1주일 전까지 투자자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본 투자계약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시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제40조(청산의 절차와 방법)
① 청산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별첨 5] 청산의 절차와 방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청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산 계획을 공시한다.1. 기초자산 매각 (예정)가격
2. 투자자에게 귀속될 1주당 처분손익
3. 처분손익 산정에 앞서 공제되는 성과보수
4. 제세공과금에 대한 안내
5. 기타 청산에 필요한 사항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처분계획(처분 시기, 가격, 상대방 등이 포함된 매매계약 예정 내용), 처분가격 산정의 객관적 근거, 처분 의사결정에 이른 사유 등을 [14]일 이상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공시한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사유, 기타 공동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그 공시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제3항에 따라 공시하며, 제2항의 내용을 함께 기재한 경우에는 청산 계획서를 공시한 것으로 본다.

3. 분쟁의 해결

(1)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규 또는 계약

[투자계약서]

제55조(해석)
본 투자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나 용어, 그 해석에 관하여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공동사업 운영자 「서비스 약관」 기타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른다. 이 때, 금융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해석이나 가이드라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이나 가이드라인 등은 본 투자계약의 해석에 있어 고려된다.

(2)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

[투자계약서]

제54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투자계약에 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한국어로 해결되어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와 투자자 간에 본 투자계약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의 본점 주소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4. 공동사업의 구조

(1) 공동사업의 구조

기초자산을 취득하여 보관하고, 매각한 후 처분손익을 분배하는 것을 공동사업의 사업구조로 하며, 당사가 공동사업 운영자가 됩니다. 투자자는 당사에 대하여 기초자산의 유지・보관・관리・처분・손익배분 등에 관한 중요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투자계약서]

제1조(목적)
본 투자계약은 투자자가 기초자산{이하 “기초자산”, 본 투자계약 제28조에서 정의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한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가지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자가 수행한 기초자산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 등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표시하는 투자계약증권(이하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투자자와 공동사업자의 권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처분손익의 귀속 기타 투자자와 공동사업자간 중요한 권리의무를 정하는 개별 투자계약(이하 “본 투자계약”)으로서 공동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본 투자계약의 체결에 동의하는 투자자의 의사표시는 다른 투자자, 공동사업 운영자, 공동사업 참여자(이하 공동사업 투자자와 운영자, 참여자를 총칭하여 “당사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한다.

제22조(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기초자산에 관한 권한 위임)
①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공유자로서 가지는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기타 그에 수반되는 사항들을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을 명확히 하고자 제18조의 양도 통지 및 승낙 절차에서 양수인에게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를 고지하고, 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도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임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는 공동사업 운영자를 제외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때,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는 본 투자계약에 대한 해지로 본다.

제24조(공동사업 운영자의 업무 및 권한)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기한 기초자산의 물색・취득・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 등 공동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역할, 그에 필요한 일체의 처분행위 및 사실행위를 수행한다.
1. 기초자산의 물색・취득・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
2. 증권의 모집・배정
3. 투자자명부의 확정・작성・변경
4. 증권 등본·사본, 투자설명서의 작성・열람・교부
5. 증권의 양도 및 양수 수단의 제공 및 유지
6. 처분손익의 지급
7. 기타 본 투자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 수행으로 인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공동사업 참여자(이하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보수・비용・수수료를 공동사업 참여자에게 우선 지급하거나 공동사업의 처분손익에서 충당할 수 있다.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

1.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하거나 추인하는 중요한 권리의무

가. 본 투자계약 제22조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하거나 추인하는 중요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초자산의 매매(예약)계약에 대한 체결과 이행, 그 매매(예약)계약에 대한 예약완결권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 그 예약완결권의 행사
(2) 기초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계된 금전 등에 대한 금전신탁계약, 서비스 이용 계약 등 기초자산 보관 또는 관리를 위한 계약의 체결
(3) 전항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에게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업무지시 및 운용지시
(4) 기초자산과 공동사업의 유지・보관・관리・대여・ 처분에 관한 권한
(5) 기초자산과 공동사업의 청산과 처분손익에 관한 업무
(6) 본 투자계약 제8조의3 제5항에 따르는 기초자산의 처분
(7) 위 (1) 호 내지 (6)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포괄적 권한

나. 위 (1) 호 내지 (7) 호에 관하여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의 체결에 앞서 투자자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는 수행 시점에 소급하여 투자자가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위임 철회의 제한 등
: 투자자는 위 1. 가. 의 (1) 호 내지 (7) 호에 따른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을 철회・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처분 정족수를 말함)로 위 위임을 제한하거나 철회・ 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포괄적 위임 등
: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기초자산의 처분권한을 위임(처분의 시기, 가격, 상대방, 등 처분 조건・방식에 관한 어떠한 제한이 없는 포괄적 대리권 수여를 포함함)한다. 투자자는 위 2.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자산의 처분에 대한 위임을 철회 ・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투자자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공모총액 대비 100% 미만의 가격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중단을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처분계획에 따라 기초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본 호는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한 다른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위임과 추인의 승계
: 투자자로부터 본 투자계약서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위 1. 가. 의 (1) 호 내지 (6) 호에 대한 위임과 추인의 효과는 승계된다.

5. 위임의 종료 등
가. 전 1. 내지 4.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가장 먼저 도래한 날의 익일에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투자자의 위임은 종료되고 본 투자계약도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1)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나, 기초자산이 처분되지 아니한 채 공유물분할 특약의 갱신에 대한 투자자총회에서 처분 정족수에 의한 반대가 있은 경우. 다만 이 경우 기초

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 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을 분배하는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2)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이 경우 기초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을 분배하는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3)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청산 업무가 종료되고, 그 청산 업무의 종료가 공시 된 경우
(4)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가 있는 경우
나. 전 항에 의하여 위임이 종료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위임이 종료된 날까지 본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를 공시한다.
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위임이 종료한 경우에도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잔존 업무가 있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그 잔존 업무를 수행한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민법 제734조에 의한 사무관리로 본다.

(2) 권리내용에 대해 발행 후 조정 가능사유와 그 조정절차

투자자총회의 전원 동의에 의하여 당사에 대한 기초자산의 보관・관리·처분권한 위임 등을 해지, 철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비용 등이 있으면 정산하고, 이미 수행한 업무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투자계약서]

제38조(투자자총회의 결의방법)
①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과반수의 찬성(이하 “찬성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이 때, 찬성 정족수는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된 공동사업 운영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본 투자계약의 이행 경과보고
2.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시 요구
3.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사전 고지되지 아니한 공모총액 대비 3% 초과 수수료 또는 비용의 지출 여부
4.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동사업 운영 방향의 권고
5. 기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②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전부의 찬성(이하 “처분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 다만, 처분을 위한 상대방, 처분가격, 처분 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2. 제8조의3 제6항에 따라 공동사업자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최소 청산목표액 미만 가격으로 처분하는 행위
3.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4. 제21조의 공유물의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
5. 본 투자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
6.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총회가 정하는 사항
8.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40조 제3항에 따라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중단
③ 전항 각 호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해지 또는 철회 시까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본조에서 정한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가 미달된 경우 그 의안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없거나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가 증권을 취득하여 투자자로서 투자자총회의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자의 의결권을 제외한 정족수(이하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를 산정하여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를 충족하는 경우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

3. 포괄적 위임 등
: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기초자산의 처분권한을 위임(처분의 시기, 가격, 상대방, 등 처분 조건・방식에 관한 어떠한 제한이 없는 포괄적 대리권 수여를 포함함)한다. 투자자는 위 2.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자산의 처분에 대한 위임을 철회 ・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투자자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공모총액 대비 100% 미만의 가격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중단을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처분계획에 따라 기초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본 호는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한 다른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위임과 추인의 승계
: 투자자로부터 본 투자계약서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위 1. 가. 의 (1) 호 내지 (6) 호에 대한 위임과 추인의 효과는 승계된다.

(3) 조정 내용의 통지·공고방법

공동사업의 기초자산 또는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합니다.

[투자계약서]

제29조(공동사업 운영자의 공시의무)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시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기초자산의 유지・보관・관리・처분에 있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 기초자산 또는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기타 공시(자율공시 및 조회공시 등)로 나누어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5. 증권의 투자수익 분배 절차

기초자산의 종국적 매각으로 발생한 처분손익을 지급합니다.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에서 성과보수, 제세공과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처분손익을 산정합니다.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에는 한도를 두지 않으나, 투자자의 손해는 증권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른 투자자나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합니다.

기초자산 처분손익은 청산이 완료(잔여부분 없이 종국적으로 매각)되는 때에 확정되어 투자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투자계약증권의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대로 귀속되고, 처분손익은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성과보수(최종매각대금이 모집(매출)총액의 108%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제세공과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산정됩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기초자산을 인도하고 기초자산 매각대금을 완전하게 지급받음

으로서 기초자산 매각을 통한 청산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산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며, 기초자산 인도 및 매각대금의 수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계약에 따라 7영업일 이내에 빠르게 청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초자산의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투자자 명부 변경 정지에 대한 공시 및 청산금 지급 등에 대한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청산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공시하고자 노력합니다. 당사가 청산 절차에서 공시하는 내용에는 대상 투자계약증권, 처분의 대상이 된 기초자산 작가(작품), 모집총액, 모집된 총 증권 수, 증권배정일을 포함하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정보, 그리고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을 뜻하는 청산금 총계, 매각에 수반된 판매수수료, 투자계약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게 지급되는 성과수수료가 있는 경우 그 성과수수료, 기타 투자계약에 따라 청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 당사가 투자자를 위하여 원천징수하게 되는 제세공과금 등이 있는 경우 그 세금에 대한 내용, 청산금 지급에 대한 일정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매각대금 수령 후 청산금 분배 시작 전까지, 증권 배정일 이후 투자자 명부 변경 정지일까지 사이에 변경된 투자자 명부를 확인하고, 각 투자자들에게 분배될 청산손익을 산정하며, 투자자를 위하여 당사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를 위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의 매각 이후 안전하고 신속한 청산금 지급이 투자자 보호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청산금 지급에 있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청산금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매각대금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매각대금의 보관과 관리, 그리고 배분 절차 일체를 규정하는 "기초자산 매각 후 청산 업무 처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되는 공동사업의 기초자산이 매각되는 경우, 당사는 그 매각대금을 청약시와 동일하게 NH투자증권을 통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이 체결된 매각대금 수령 전용계좌를 통하여 수령할 계획이며, 향후로도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의 기초자산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특정금전신탁계약, 에스크로계약,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청산절차 종료시까지 매각대금을 회사와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계약 등을 체결(또는 체결된 계좌를 계설하는 등 그와 유사한 방법을 모두 포함합니다)하는 등 회사의 도산위험과 투자자를 최대한 절연시킬 수 있는 조치(이하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청산절차 내 투자자 보호조치 등")를 취하여 투자자에게 공동사업의 처분손익이 배분되기 이전까지의 매각대금에 있어서도 투자자 보호를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청산절차 내 투자자 보호조치 등을 포함하여 기초자산 매각 후 청산 업무 처리 규정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공시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투자계약서]

제42조(청산으로 인한 처분손익의 귀속)
① 기초자산이 잔여부분 없이 종국적으로 매각되고, 그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청산이 완료된다.
② 처분손익은 청산이 완료되는 때에 확정되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③ 처분손익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제세공과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산정된다.
④ 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후에는 본 투자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처분손익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매각 기타 처분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의 청산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청산 처분손익을 지급받는다.
⑤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은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대하여 그 소유한 증권의 비율(해당 증권의 비율로 정해지는 기초자산 소유권 비율과 같다)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조기 매각, 일부 매각, 기초자산의 운용 수익 발생, 기타 투자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고 그 지급이 본 투자계약의 청산과 관련된 재무상태 기타 본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항에 중대한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준일을 정하여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제43조(처분손익의 한도)
①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익에는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② 투자자의 손해는 투자자가 처분손익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보유하는 증권 가액의 합계를 한도로 하여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증권의 가액과 비율을 넘어서는 손해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지 못한다. 다만, 투자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른 투자자나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한다.

제44조(성과보수)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은 [별첨 6] 성과보수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 1주당 귀속되는 청산시가(기초자산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으로 인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실제로 수취한 금액을 말한다.)가 증권의 1주당 모집 가액에 대비하여 108% 이하인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다.

제45조(제세공과금)
① 청산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세공과금의 일반적 산정 기준 등을 투자자에게 안내하거나, 투자자를 위하여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③ 투자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의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가 제세공과금의 원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하게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 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기초자산의 매각 후 청산 업무 처리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투자계약증권”은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2. “공동사업”은 기초자산을 증권에 비례하는 소유권 비율로 취득하고 기초자산의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통한 처분손익을 취득 시의 소유권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와 공동사업 참여자를 말한다.
4.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있어 공동사업의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회사를 말한다.
5. “공동사업 참여자”는 공동사업 운영자 외에 본 투자계약의 공동사업 관련 업무를 분담하는 자를 말한다.
6. “투자자”는 본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계약증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공동지분을 가진 자를 말한다.
7. “매각대금”은 기초자산이 공동사업자에 의해 최종 매각되어 발생하고 매각대금 전용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을 말한다. 매각대금은 달리 “청산금”이라고도 표시할 수 있다.
8. “매각대금 전용계좌”는 매각대금이 최종 배분되기 전까지 매각대금의 보관 및 관리를 목적으로 개설된 전용 계좌를 의미한다.
② 청산 업무의 처리 과정 등에 대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4조(매각대금 전용계좌 개설 및 보관)
①회사는 공동사업에 있어 기초자산의 청산금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한다.
② 회사는 매각대금을 매각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수령하며, 매각대금 전부를 완전하게 수령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시작하고 투자자에게 공동사업에 대한 처분손익을 청산금으로 지급하는 분배절차를 시작한다.
③ 회사는 매각대금 배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각대금을 전용계좌를 통하여 보관한다. 이 때, 본 규정 시행일 이후 회사가 모집하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는 공동손익의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전까지 매각대금을 안전하게 분리보관하기 위하여 매각대금 전용계좌에 대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 에스크로 계약,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청산절차 종료시까지 매각대금을 회사와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계약 등을 체결(또는 체결된 계좌를 개설하는 등 그와 유사한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하는 등 회사의 도산위험과 투자자를 최대한 절연시킬 수 있는 조치(이하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청산절차 내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 항을 위하여, 회사는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매각대금 수령을 위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청산절차 내 투자자 보호조치를 보완한 매각대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관리한다.
⑤ 전 항의 계좌 개설 후에도 계좌의 속성이 변경되거나 본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고 향상된 시스템을 지원하는 타 계좌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진행중인 청산과정 중에는 회사는 매각대금을 신규 계좌로 이관하게 할 수 없다.
⑥ 공동사업자는 매각대금을 직접 매각대금 전용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수인 혹은 공동사업 참여자의 사정으로 매각대금을 전용계좌로 수령하지 못하고 타 계좌로 수령했을 경우 매각대금을 즉시 매각대금 전용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제5조 (자금관리)
① 매각대금 전용계좌는 다른 계좌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타 목적의 자금과 혼용

되어서는 안 된다.
② 매각대금 전용계좌에 대하여는 그 자금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거래내역을 유지하여야 하며, 매각대금 전용계좌에 매각대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자금 담당자는 재무팀장과 담당 임원에게 그 거래내역을 매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매각대금 전용계좌의 청산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6조 (매각대금의 분배)
① 회사는 매각대금이 매각대금 전용계좌에 보관되기 시작된 후 신속하게 이를 투자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매각대금에 대한 분배를 위하여 투자자를 위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거나 투자자명부에 대한 확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양수 등 투자계약증권의 현재소유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 등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매각대금 전용계좌에 매각대금 전액을 완전히 수령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매각대금에 대한 분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매각대금에 대하여 수행된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청산절차 내 투자자 보호조치에 대한 내역을 지체 없이 재공시한다.
④ 매각대금 분배 내역에 대한 기록은 청산 완료 후 5년간 보관한다.

제7조 (공시)
① 회사는 매각대금에 관한 사항을 수시공시 사항으로 공시한다.
② 회사의 공시는 내부 공시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③ 본 규정에 관련된 업무는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모두 수시 공시 사항으로 본다.

제8조 (공동사업 중단 시 청산 업무 등)
회사가 서비스 중지 또는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관중인 매각대금의 청산 절차는 회사의 「사업중단시 청산 업무 등 처리 절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분쟁)
본 규정에 따른 투자자 민원이 있을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다. 본 규정에서 지정된 매각 및 청산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지시 또는 업무대리를 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다.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당사는 투자자에게 청산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성과보수(최종매각대금이 모집(매출)총액의 108%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를 수취합니다. 성과보수의 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투자계약관계서류」에 포함된 투자계약서에 성과보수의 구체적 예시를 기재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총액 대비 청산시가*	성과보수율	비고
[108]% 이하	0%	
[108]% 초과	공모총액 대비 청산시가가 108%를 초과하는 공동사업 수익의 20%	부가가치세(VAT) 별도

(주1) 청산시가 :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으로 인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실제로 수취한 금액
(주2) 공동사업 수익 = 청산시가 - 공모 총액

6. 과세에 관한 사항

본 공모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은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과세 체계에 따르게 됩니다. 당사는 미술품의 기타소득세 과세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본 증권신고서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과세 체계와 세원 분류를 기재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법률 또는 규정의 변경,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나 판례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 공시할 계획입니다.

가. 기초자산 처분에 관한 과세

(1) 기타소득세 과세

미술품이 포함되는 서화, 골동품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세로 분리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서화, 골동품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자로 당사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 포함됩니다. 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는 서화, 골동품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서화, 골동품의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에서 다음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② 필요경비

ㄱ. 받은 금액이 6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ㄴ.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1억원의 100분의 90) + 받은 금액에서1억원을 뺀 금액의100분의 80 ※서화, 골동품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③ 원천징수 세율

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0%입니다.

④ 서화, 골동품 양도 소득 과세대상

가) 과세대상

① 회화, 데생, 파스텔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및 석판화, 골동품(제작 후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
② 개당, 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
③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국외 원작자의 작품은 생존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에 해당)

나) 비과세대상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취득세, 등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미술품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투자계약증권은 주권과 달리 등기와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나 그에 부대하는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 역시 없습니다. 미술품에는 재산세 등 별도의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투자계약증권의 보유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도 없습니다.

나. 투자계약증권의 취득과 양도 등에 관한 과세 등

본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과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1항 각호에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계약증권의 거래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

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2) 취득세 및 등록세

미술품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투자계약증권은 주권과 달리 등기와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나 그에 부대하는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 역시 없습니다.

(3) 배당소득세

한편,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지급받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은 배당소득의 범위에 추가됩니다. 배당소득에 추가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구체적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0항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의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조각투자상품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을 포함하며,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동 조 제11항에 따라 공동사업의 이익에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여집니다.

[과세표준 결정산식]

(1주당 배당소득금액 x 보유 주수) - 영 제 26조의3 제11항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

그에 따라, 기초자산이 청산되는 경우 투자자가 지급받게 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가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되게 됩니다. 당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며, 이 때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투자계약증권 1주당 분배되는 금원에서 1주의 취득금액 및 보수・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원, 즉 투자자의 원본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초과액으로서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당금으로 하여 배당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연간 배당이나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행되고 청산된 투자계약증권의 사례 등에 기초하여 동일한 청산 등 사례에 있어 배당소득세 적용이 미치는 영향을 가정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실질 수익률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경우에 비하여 낮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당사로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계약증권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되는 경우의 과세표준 또는 투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투자자가 받을 이익이나 적용 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추가적으로 과세당국의 규칙, 예규, 해석 또는 법원의 판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즉시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현행 세법에 따른 미술품 처분에 대한 일반적 과세 방식과 당사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마련한 납세의무의 수행 계획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실무가 당사의 해석과 다르거나, 미술품 또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미술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과 투자계약증권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있고 그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7. 증권과 관련된 보고서나 안내사항 등의 전달 절차

(1) 공시

당사는 공동사업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eshareart.com)에 공시합니다.

[투자계약서]
제4조(공시 방법) 본 투자계약에 관련된 공시(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과 본 투자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공시”)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 게재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의 공시로 공동사업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시를 갈음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9조(공동사업 운영자의 공시의무)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시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기초자산의 유지・보관・관리・처분에 있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 기초자산 또는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기타 공시(자율공시 및 조회공시 등)로 나누어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8. 증권 양도시 필요한 절차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가 당사에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 사실을 통지(이하 “양도 통지”)하고, 당사로부터 양도에 대한 승낙(이하 “양도 승낙”)을 받아야만 당사에 양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양수인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당사에 대한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고 당사의 양도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당사 이외의 제3자에게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의 방법과 절차를 당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투자계약서]

제18조(증권의 양수도 방법 및 제한)
① 어느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 등 본 투자계약에 기한 권리, 권한, 의무 및 지위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 이 때, 양수인은 본 투자계약에 기한 권리, 권한, 의무 및 지위 일체를 승계하는 것을 승낙하고 동의한 자여야 한다.
②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인인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 사실을 통지(이하 “양도 통지”)하고, 공동사업 운영자로부터 양도에 대한 승낙(이하 “양도 승낙”)을 받아 야만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양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 통지에 대한 위임을 받은 서면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제출하거나, 양도인의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 통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양수인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고 공동사업 운영자의 양도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공동사업 운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이 때,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모집이 완료된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하는 투자자명부에 대한 사서인증과 별개로, 투자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양도 승낙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가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에 대한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은 이를 준수하여야만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공하는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의 절차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나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의 양도를 위해 필요한 당사자의 정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증명서, 처분문서와 양도에 필요한 비용 등을 투자자와 투자자의 양수인으로부터 제공 또는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증권의 양도 및 통지에 필요한 수단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와의 명시적 서면 합의 없이 본 투자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본 투자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투자자는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본 투자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⑦ 증권의 양도・양수 및 투자자명부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양도인 및 양수인이 연대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비용의 지급을 받기 전까지 관련된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기초자산이 되는 작품의 사진들 일체, Condition Report, 감정평가서에서 작품을 촬영한 사진 등이 포함된 부분은 당사 홈페이지의 아래 기재된 URL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으로부터의 법률자문 및 해당 법무법인을 통하여 저작권법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문의 등을 거쳐, 본 증권신고서에 저작물의 복제물인 사진 등을 제한적으로만 게시하고, 투자자가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을 통하여 청약기간까지 작품의 사진이나 사진이 포함된 컨디션 리포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작품의 실물을 전시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동조 제3항 등의 취지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에 기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 종료된 이후에는,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한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인 등의 절

차를 거쳐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아래 인터넷 주소(url)를 통하여 청약자 또는 청약희망자로서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며, 미술품의 원본을 당사가 안내하는 바에 따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기간이 종료하여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판매가 종료되면, 위 인터넷 주소에 접근하기 위한 로그인 절차 등이 추가될 예정이나, 배정된 증권을 취득하여 미술품에 대한 공유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소유권자로서 미술품에 대한 사진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이러한 방안이 「저작권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상반되는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결 등이 나오는 경우 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변경 등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초자산의 복제물인 사진을 추가·삭제 또는 변경하여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한편,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첨부되어 제출되는 컨디션 리포트(Condition Report), 감정평가서 등의 서류에 저작물의 복제로 평가될 수 있는 기초자산의 사진 등이 표시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저작권법」의 취지에 따르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사진, 컨디션 리포트, 감정평가서 등을 투자자를 위해 공개하고 있는 URL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URL주소
https://weshareart.com/goods/subscription/image/dart?id=wksr7mdwqQNX1bnpri6niA%3D%3D

가. 기초자산 요약 정보

기초자산에 대한 요약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고유명칭(작품명)	Work	
생산자(작가)	유영국(Yoo Youngkuk, 1916~2002)	
생산연도(제작연도)	1984	
생산국가(작가 국적)	대한민국	
취득가액	600,000,000	
취득시기	2025년 10월 14일	
보관장소	케이아트스페이스	
기타	크기: 97 x 130.5 cm 재질: 캔버스에 오일(oil on canvas)	 <Work>

(주1)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기초자산의 판매를 위하여, 기초자산을 특정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초자산의 복제물인 사진을 포함합니다. 기초자산의 전면 및 후면 사진은

위「제1부 II.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URL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명부 확정 이후에는 해당 URL에 접근하기 위하여 증권을 배정 받은 투자자임을 확인하는 로그인 절차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사진에 대한 무단 전재, 복제, 배포는 금지됩니다.

(주2) 기초자산의 취득시기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일정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기초자산에 대해 회사가 조사한 사항

기초자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의 생산자와 작품에 대한 안내사항

1. 기초자산의 요약

작 품 명(고유명칭) : Work 작 가 명(생 산 자) : 유영국(Yoo Youngkuk, 1916~2002) 제작연도(생산연도) : 1984 생산국가(작가국적) : 대한민국 취득(예정)가액 : 600,000,000원 취득(예정)시기 : 2025년 10월 14일 보 관 장 소 : 케이아트스페이스 기타 : 1. 크 기: 97 x 130.5 cm, 60호 2. 재 질: oil on canvas

2. 기초자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가. 작가(생산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

1916년 경상북도 울진에서 태어난 유영국은 1935년 도쿄 문화학원 유화과에서 본격적인 미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김환기와 이중섭 등 장차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주역이 될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자유로운 학풍 속에서 당대의 가장 전위적인 '추상' 미술을 일찍부터 시도한 그는,1943년 태평양전쟁을 피해 귀국한 뒤 한동안 어선을 몰며 어업을 생업 삼아 격동의 시대를 살아내기도 했습니다. 가족 부양에 전념하던 그는 1948년 서울대학교 교수 부임을 계기로 상경하였으나, 시대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붓을 들고 놓기를 반복하다 1955년에 이르러서야 서울에서 본격적인 미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일생을 화업에 전념한 그는 한국 최초의 추상 미술 그룹인 신사실파를 설립한 것은 물론, 모던아트협회를 비롯한 여러 전위 미술 단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한국 추상 미술의 지평을 다방면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이렇듯 선구자적 인물로서 유영국이 스스로 구축해 왔던 예술 세계는 점, 선, 면, 형, 그리고 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형 단위를 기저에 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하학적 조형 요소의 중첩, 교차, 그리고 조화로운 배치를 통해 그가 포착하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한국적 자연의 아름다움이었으며, 산, 바다, 그리고 하늘과 산맥 등 수려한 자연 풍경이 가장 가까이 펼쳐져 있는 고향 울진을 영감 삼아 본질적인 숭고미, 즉 자연의 '정수'를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유영국의 작품 속 응축된 색면은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형태로 드러나고, 강렬하게 대비되는 색채는 강한 울림을 형성합니다. 그 결과, 화면은 단순한 추상을 넘어 자연의 기운과 감정을 품은 장(場)으로 변모하며, 이를 통해 관람자는 고요하면서도 깊은 몰입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추상'이라는 서양화의 형식을 빌려 '산수'라는 동양적 화재를 절묘하게 소화한 유영국의 예술 세계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큰 반향을 끌어냈습니다. 그의 선구적 조형 감각은 이미 1960년대부터 한국 화단의 인정을 받아왔으며, 오늘날 그에게 '한국 제1세대 서양화가'이자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라는 평가를 안겨주었던 기반이 되었습니다. 1964년 신문회관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이후, 2002년 타계 전까지 총 15번의 개인전을 개최한 그는 평생 400여 점의 유화 작품을 남겼으며, 2016년에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국립현대미술관 대규모 회고전을 통해 다시금 조명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1975년 개인전에서 이병철 삼성 그룹 회장이 작품을 처음 구매한 것을 계기로, 그의 작품은 대를 이어 꾸준히 소장돼 오늘날 국내외 대가들의 명작을 아우르는 이건희 컬렉션에도 다수 포함되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리더 RM 또한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 세대를 초월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활동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202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뮤지엄(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에서 한국 근대 미술을 조명하는 단체전에 그의 작품이 소개되었으며, 2023년 무렵에는 페이스 갤러리(Pace Gallery)와 PKM 갤러리의 공동 전속 계약을 통해 뉴욕에서의 개인전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Venice Biennale) 공식 병행 전시를 통해 첫 유럽 개인전 역시 진행된 바

있으며, 오늘날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리움미술관 등 유수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만큼, 유영국은 한국 근현대 화단을 대표하는 예술가 중 한 명으로서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나. 작품(기초자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강렬한 삼원색을 바탕으로 화려한 색채의 변주가 펼쳐지는 <Work>는 예술과 자연의 합일을 깊이 있게 탐구한 유영국의 예술 세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대표작입니다. 다양한 자연 경관 중에서도 줄곧 '산'을 그려온 유영국은 특히나 '산의 화가'라고도 불리며, 일평생 추상의 절대적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이어왔습니다. 이를 보여주듯 화면 속 산의 형태를 암시하는 색면은 단순한 형태에 그치지 않고 추상과 구상의 경계 사이에서 시각적인 전환을 반복하고 있으며, 간결한 사선 구도만을 통해서도 근경, 중경, 그리고 원경이 중첩된 독특한 깊이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시원하게 펼쳐진 화면은 확장된 공간감과 지평선 너머를 상상하게 만드는 몰입감을 선사하고 있으며, 붉은색을 주조로 하여 대비 속에서 세밀한 조화를 이루는 색채 구성 역시 화면 곳곳에서 시선을 붙잡아두는 힘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색채가 형태에 갇히는 대신 그 자체로 해방된 자유로움을 표현하며, 생동하는 자연의 기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Work>는 "산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던 작가의 말을 회화적으로 축약하며, 사물 이상의 자연, 즉 내면의 시선과 맞닿아 비춰진 주관적 자연의 다채로움, 그 무한한 서정성과 장엄한 아름다움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유영국의 대표적인 작업입니다.

다. 작품(기초자산)의 유통경로(Provenance)와 진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기초자산은 1985년 경 매도인 1인이 구매한 후, 매매계약일까지 매도인이 계속 소유하며 보관한 작품입니다. 당사는 1985년 경 매도인이 기초자산을 구매하였다는 구매처의 확인을 서면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2025년 5월 22일부터 2025년 7월 16일까지 진행된 갤러리현대 "55 YEARS: A LEGACY OF MODERN & CONTEMPORARY KOREAN ART - PART II" 전시에 전시된 작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에 사용된 캔버스와 물감, 기초자산의 작가와 그 작가의 유사한 연대 작품과의 비교, 기초자산에 기재된 서명 등에 대한 필체 비교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에 대하여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로부터 진위 감정을 의뢰하였고, 진품("진")이라는 취지의 감정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기초자산은 작가가 미술 작품을 최초로 전시한 갤러리에서 최초로 취득하여 장기간 소유권 변동 없이 처분하지 아니하고 보유한 컬렉터로부터 당사가 그 최초 취득에 대한 증빙과 보증까지 확인한 후 취득하는 작품으로, 당사는 유통경로에 있어 기초자산의 진위를 의심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당사가 현재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의 전시 이력은 당사가 미술품 유통 전문 DB와 문헌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과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기초자산이 진품으로서 당사가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미술품으로, 일반투자자로부터 공모의 방식으로 모집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으로 삼기에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확인되고 검증되었다고 판단합니다.

3.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계약
: [기타 첨부] 매매계약서(매매약정서) 참조

4. 기타 기초자산에 대하여 조사한 내역

가. 작품의 전면 사진 및 후면 사진 등
나. 매매서류(매도인 제공)
다. Condition Report(art C&R[상태조사서 전문 제공업체] 제공)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조치]

■ 상기 조사한 내역들 중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초자산의 복제물에 해당 하는 기초자산의 사진들 일체, Condition Report, 기타 저작물의 복제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사 홈페이지의 아래 기재된 URL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투자계약서에서 기하여 모집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타 첨부]로 표시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동조 제3항 등의 취지에 따라, 본 투자계약서에 기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이 종료된 이후에는,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한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본 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의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조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는 저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추가적인 법률검토의견을 첨부하고, 관계부처에 유권해석을 신청하는 등 합리적 범위에서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합니다.
■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저작물은 투자계약증권의 모집을 통한 판매를 위하여만 이용되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제·배포할 수 없 습니다.

5. 열람 가능한 당사 홈페이지의 URL 주소
[https://weshareart.com/goods/subscription/image/dart?id=wksr7mdwqQNX1bnpri6niA%3D%3D]

6. 기타
가. 공동사업 운영자는 예비투자설명서에 의하여 청약의 권유를 할 수 있는 기간 중 또는 청약기간 중 기초자산의 실물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나. 기초자산의 전시기간과 전시장소는 증권신고서 또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또한, 당사가 아래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의 컨디션 리포트(Condition Report)는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서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의 진위에 대한 일반적 진술

1. 기초자산의 범위
가. 발행인은 “예술가가 순수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미술품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것”으로서 “예술창작품”(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동법 시행령 제36조)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 발행인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예술창작품과 동일한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발행인이 위 가. 내지 나. 항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삼거나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고 투자자에게 고지합니다.
2. 예술창작품으로서 미술품의 진위
가. 발행인은 예술창작품인 미술품의 ‘진위(眞僞)’ 여부는 기초자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합니다.
나. 발행인은 전항에 있어 진위 여부를, “그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의하여 창작된 본래(Original)의 것”인 경우 ‘진(眞)’으로 판단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위(僞)’로 봅니다.
다. 그에 따라 발행인은 미술품의 진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1) 미술품을 창작한 예술가
(2) 미술품의 제목
(3) 기초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미술품이 (1)과 (2)에서 표시되는 정보와 동일하다고 볼 사정들
라. 발행인은 미술품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증서, Fact Sheet, Condition Report 등을 확인합니다.

3. 보증서 등
가. 발행인은 미술품의 진위를 매도인, 미술품의 최초 창작자인 예술가, 그 외 작품의 유통과정에서 그 유통에 관여한 자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판단 근거로 삼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인이 이해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보증서는 COA(Certificate of Authenticity) 또는 COW(Certificate of Warranty)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질 수 있으나, 그 주요한 취지는 미술품이 2. 나. 내지 다. 와 같은 의미에서 진(眞)이라는 사실을 보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자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다. 발행인은 보증서의 효력이나 권위가 그 보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자의 지위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발행인은 다음 각 호의 보증서는 다른 보증서에 비하여 그 효력과 권위가 미술품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간주합니다.
- 미술품의 창작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창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
- 미술품에 대하여 공개된 시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졌고, 그 경매를 수행한 미술품 경매회사가 보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 다만, 이 경우, 해외의 미술품 경매회사 중 Sotheby’s, Christie’s, Phillips, 국내의 미술품 경매회사 중에서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거나 상장된 회사에 준하는 신용을 가진 미술품 경매회사를 통하여 제공된 문서를 우선할 수 있습니다.
- 미술품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전시가 이루어진 화랑(Gallery)에서 서명 또는 날인된 문서. 이 때, 발행인은 인쇄된 도록(Catalogue) 또는 작가의 전작도록(Catalogue raisonne)에 기재된 내용 등을 조사하거나, 화랑의 신용도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미술품의 유통 이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로부터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문서
라. 미술품 경매회사가 발행한 보증서에는, 제공되는 보증이 ‘제한 보증(limited or restricted warranty)’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제한 보증은 2. 의 가. 내지 나. 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해당 미술품 경매회사가 약관 등으로 정하는 절차와 범위에 의하여 보증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제한 보증은 미술품 경매회사가 거래계에서 가지는 신용을 바탕으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이나 손해의 배상과는 별도로 제공하는 계약상 권리의무로 해석되며, 발행인은 제한 보증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미술품 경매회사의 신용과 연동

되는 높은 수준에서의 보증을 제공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그 외의 문서
가. Fact Sheet : 발행인은 작품의 유통 경로 중 작품의 진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기할 만한 출처(provenance),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주요한 전시,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 등을 기술한 Fact Sheet을 매도인, 중개인, 그 외 신용할 수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Fact Sheet에 기재된 내용들은 발행인이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구성요소가 되지는 않으나, 발행인이 Fact Sheet을 제공받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을 일반적 관점에서 신뢰합니다.
나. Condition Report : 발행인은 기초자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미술품에 대하여 이학적, 물리적, 미술적 현재 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매도인, 중개인, 그 외 신용할 수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Condition Report에 기재된 내용은 발행인이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구성요소가 되지는 않으나, 발행인이 Condition Report를 제공받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을 일반적 관점에서 신뢰합니다.

다. 기초자산이 속한 미술품 시장

(1) 미술품 시장 등

가) 미술품 유통구조 요약

일반적 관점에서 미술작품의 유통구조는 생산(창작)단계에서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예술가, 유통단계에서 1차 시장으로 분류되는 화랑(Gallery), 아트페어(Art Fair) 및 2차 시장으로 분류되는 경매회사(Art Auction), 소비단계에서 미술품의 최종적인 소비자인 컬렉터(Collector)로 구성됩니다.

미술관이나 미술은행 등 공공영역이나 파생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트컨설팅 또는 아트펀드도 미술품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으나, 아트컨설팅은 주로 컬렉터의 소비를 중개하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아트펀드는 미술품의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미술품은 대부분 제작자인 창작자로부터 소비자인 컬렉터에게 직접 매매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유통 단계에서 1차 시장인 화랑에서의 전시를 거쳐 컬렉터의 손에 1차로 소비되었다가, 다시 한번 그 컬렉터가 2차로 경매회사에 위탁하여 재판매가 이루어지는 등의 방식으로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생산(창작)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그림1) 미술품 유통구조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미술시장 실태조사)

나) 미술품 거래시장의 역사

미술품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할 정도로 오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미술품을 상품으로 보고 그 유통 또는 미술품 거래시장의 연혁을 다루는 것은 학문적 논의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미술시장의 수요자와 생산자가 근대의 상징인 화폐를 매개로 하여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한 시기, 즉 근대적 의미에서 처음으로 미술품 거래시장이 형성된 시기를 르네상스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에서는 서기 1254년에 미술품 경매에 관한 칙령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서기 1522년에는 앙리 2세에 의하여 근대적 의미의 미술품 경매가 정착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드루오 국립경매원과 에뛰드 따장이라고 불리는 경매사 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한국 미술품 거래시장의 발전

우리 미술은 수천 년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미술품이 본격적으로 유통의 한 분야가 되어 시장으로서 형성된 것은 불과 한 세기 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전에는 선물, 교환, 상찬 등 우리 고유의 미술품 유통 형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주로 문인 사대부를 중심으로 하는 취미나 품격 도야, 화원 화가들이나 관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주문 제작, 서민이나 무명 작가들에 의한 민화나 생활 필수품으로 하는 제한적인 방식에 그쳤습니다. 근대에 와서야 비로소 미술품이 유통되는 특정 공간이 형성되었는데, 1913년 해강 김규진이 현재의 서울 중구 소공동 인근에 '고금서화관'이라는 이름으로 옛 명화와 근대의 작품을 전시하고 표구하는 서화관 겸 지물포를 운영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화랑은 1950년대 중반 반도호텔 내에 설치된 반도화랑으로서, 이후 1970년에 반도화랑을 이은 현대화랑이 상호를 바꾸어 출범하며 최소한의 컬렉터를 확보해 나가는 상업화랑이라는 근대식 개념의 갤러리가 됩니다. 현대화랑은 이후 1973년 9월에 <화랑>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미술유통 전문 잡지를 발간하였으며, 현대화랑의 개관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는 수많은 화랑들이 개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건축물의 미술 장식품 의무화, 1988년 올림픽,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전후한 경제성장을 거치며 부를 축적한 컬렉터 층의 성장 등으로 대규모 전시가 활발해지고 국제아트 페어 참여 등 국제적으로

무대가 넓어지거나 미국과 유럽의 작품들이 국내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세계 미술품 유통시장의 규모와 성장

가) 세계 미술품 유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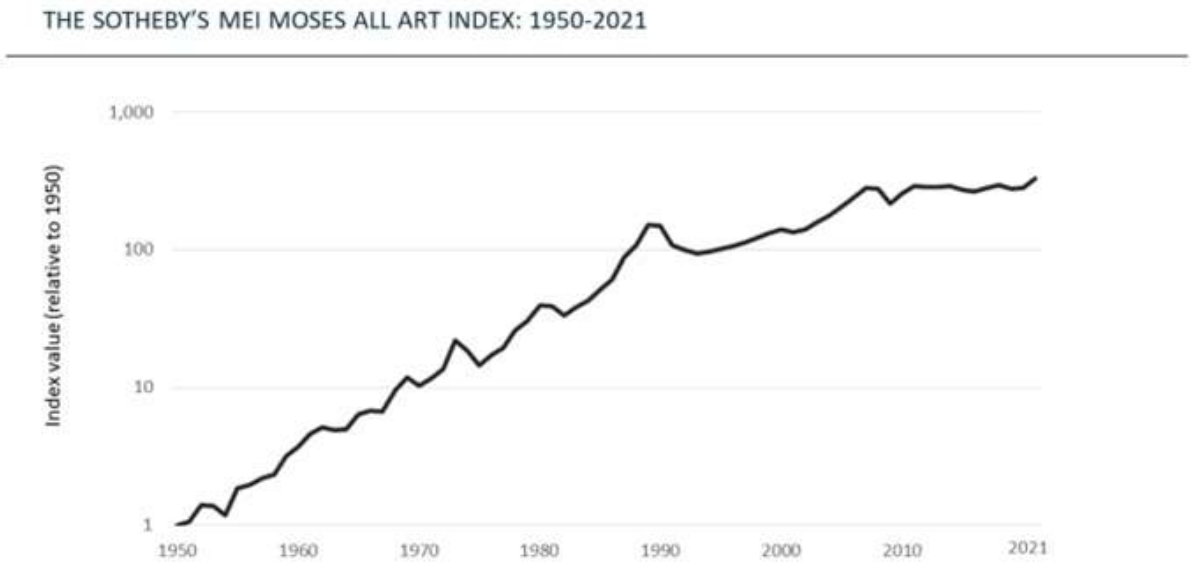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품 유통시장은 소더비, 크리스티, 필립스로 대표되는 미술품 경매회사들입니다. 소더비는 1744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40개국에 걸쳐 연 600회의 미술품을 주요 경매물품으로 하고 그에 부대되는 와인, 보석, 시계, 위스키, NFT에 이르는 고가품의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는 1766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제임스 크리스티가 런던에서 첫 경매를 실시한 이후, 현재 뉴욕, 런던, 홍콩, 파리, 제네바를 거점으로 하여 전 세계 46개국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소더비와 유사하게 미술품을 주요 경매물품으로 하되 그에 부수되는 고가품의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립스는 1796년 런던에서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 10여개국에서 미술품 및 고가품 카테고리의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세계 미술시장의 성장

소더비에서 제공하는 '메이 & 모제스 아트 인덱스(Mei & Moses Art Index, 이하 "메이 모제스 지수")'에 따라 살펴보면, 세계 미술시장은 1950년을 1로 볼 때 2021년까지 연평균 약 8.5%의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동 지수의 1950년부터 2021년까지의 세계 미술 시장 장기 추세선에 따르면 세계 미술 시장은 여전히 장기 성장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미술시장의 장기적 성장(*)(**)

The graph below shows the Sotheby's Mei Moses Index for the broader art market from 1950 to 2021. The index benchmarks at 1 in 1950 and shows the trajectory in demand for the overall market, a compound annual growth rate of 8.5%.



(그림2) 세계 미술시장의 장기적 성장

(출처: https://www.sothebys.com/en/the-sothebys-mei-moses-indices)
(주1) 2016년 소더비 경매사는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 메이 지앤핑 교수와 마이클 모제스 교수가 만든 메이 모제스 지수를 인수하였고, 이후 소더비 홈페이지에서 독점적으로 이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메이 모제스 지수는 1810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미술품 경매기록을 기초로 하여, 1950년의 지수를 1로 하여, 작품의 소재와 작가의 화풍, 그에 따르는 반복매매(repeat-sales)를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가격 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메이 모제스 지수는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등의 투자금융사나 뉴욕 타임스 또는 월 스트리트 저널 등의 언론사에서 미술시장의 규모나 변화, 수치 등에 관련된 가장 신뢰성 있는 지수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주2) 메이 모제스 지수는 미술품을 공개시장에서 구매하고 일정한 보유 기간 동안 보유한 후(holding period), 다시 공개된 시장에서 동일한 작품을 판매하는 것을 반복매매라고 정의한 후, 해당 반복 매매를 통해 현출된 이익(Realized Return)을 중심으로 미술품 시장 규모의 증가를 부동산 가격 분석에 사용되는 '케이스 쉴러 부동산 지수(Case-Shiller Real Estate Index)'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미술품의 보유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매매가액이 고가라는 점, 매매의 사례가 빈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상품의 특성이 표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 미술품과 부동산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60,000건 이상의 반복 매매사례를 위와 같이 분석한 것입니다.
세계 미술시장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약 연 395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약 575억 달러 규모의 시장까지 성장하였습니다.

2009년-2024년 세계 미술시장 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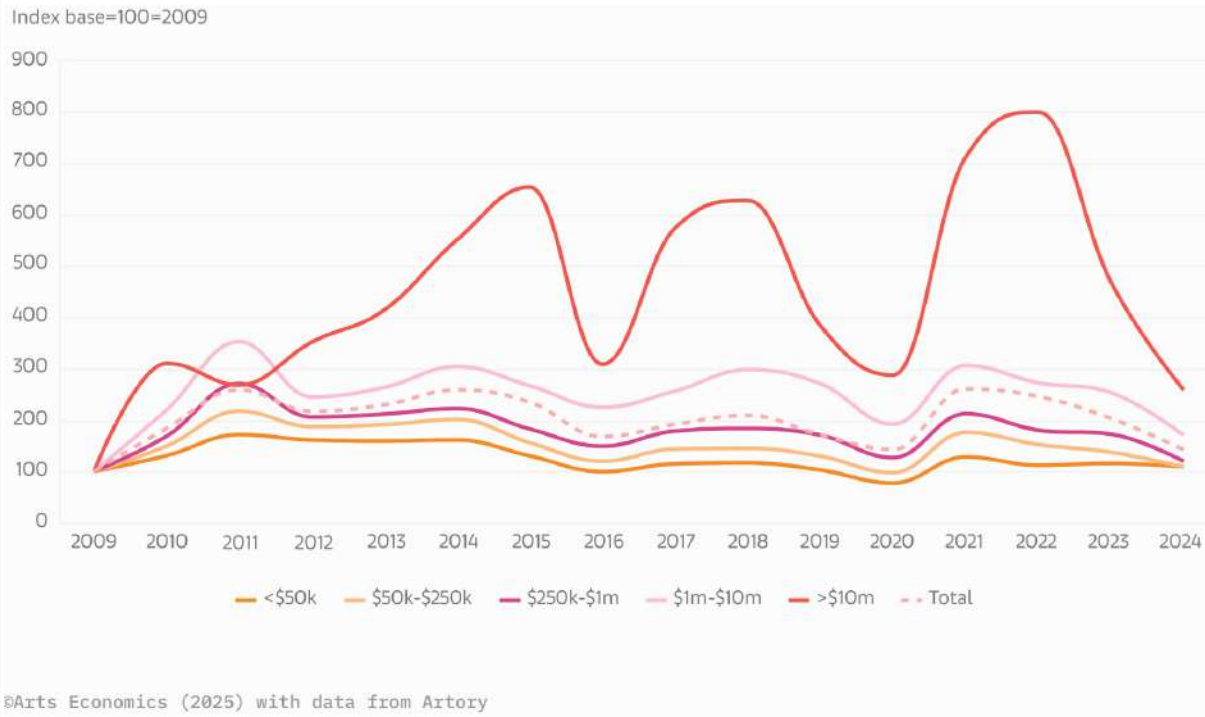


(그림3) 2009년~2024년 세계 미술시장 규모 변화

(출처: Art Basel&UBS "The Art Market Report 2025" 제21면)

한편, 함께 과거 소수의 딜러들과 최고급 갤러리들에서만 다뤄졌던 초고가 미술품들[피카소(Piccaso)나 모네(Monet), 싸이 톰블리(Cy Twombly),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등]이 공개적인 미술품 경매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고가 미술품의 낙찰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9년-2024년 세계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낙찰가격대별 비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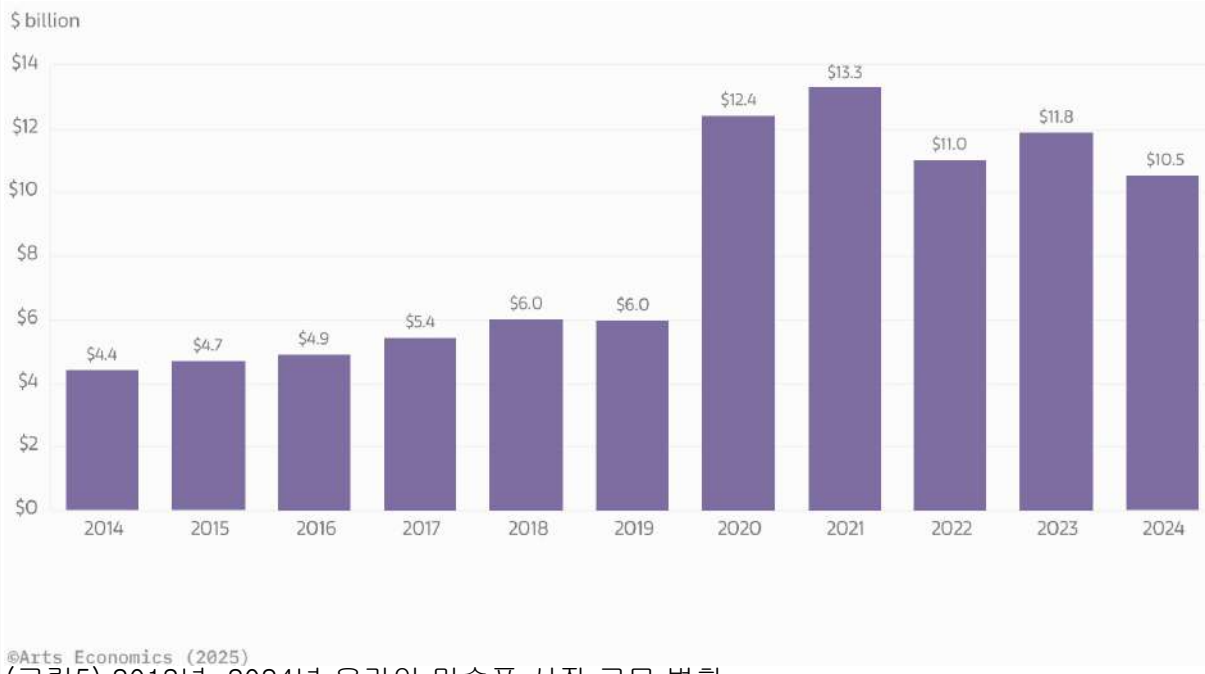


(그림4) 2009년-2024년 세계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낙찰가격대별 비율의 변화

[출처: Art Basel&UBS “The Art Market Report 2025”제182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관점에서 온라인 미술품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온라인을 통한 미술품 판매 시장 규모는 약 6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2020년대에는 1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2013년-2024년 온라인 미술품 시장 규모 변화



(그림5) 2013년-2024년 온라인 미술품 시장 규모 변화

[출처: Art Basel&UBS “The Art Market Report 2025” 제31면]

(3) 국내 미술품 시장

전체 국내 미술품 시장의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6,928억원이었으며, 이 중 화랑 및 경매를 통한 거래는각각 4,020억원, 1,572억원으로 화랑과 경매를 통한 미술품 거래 비중이 80.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주요 유통 영역	화랑	210,308	238,733	168,628	179,393	153,872	300,772	446,449	402,013
	경매회사	127,798	149,282	151,147	115,820	115,298	338,463	234,523	157,216
	아트페어	4,447	2,568	4,182	3,314	2,392	7,310	5,969	2,687
	소계	342,553	390,583	323,957	298,527	271,562	646,545	686,940	561,916
공공 영역	건축물 등	36,805	87,932	106,454	97,361	96,537	97,092	97,953	112,987
	미술은행	1,956	2,054	2,293	2,558	2,158	1,557	1,686	1,286
	미술관	15,155	13,674	15,520	16,227	14,603	11,076	20,018	16,642
	소계	53,916	103,660	124,267	116,146	113,297	109,725	119,657	130,915
합 계		396,469	494,243	448,224	414,673	384,859	756,270	806,597	692,832

(출처: '2024 미술시장조사 보고서(2023년도 기준)')

(주1) 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매년 말에 그 전년도 미술시장에 대한 조사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에 「2024 미술시장조사 보고서(2023년도 기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25년 12월 경 「2025 미술시장조사 보고서(2024년도 기준)」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미술품 시장과 경기 변동과의 관계

발행인은 미술품과 경기 변동과의 관계를 심도 깊게 다룬 연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하고자 하며, 특히 국내에서는 미술품과 경기 변동의 관계 혹은 미술품의 유통에 관한 연구가 순수미술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미술품과 경기 변동과의 관계는 대부분 미술품을 투자로 보는 관점에서 수익률을 연구하고, 미술품 투자로 인한 수익률을 각종 지수, 특히 주가 지수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상관 관계를 연구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1998년 ~ 2008년까지의 한국 미술품 경매시장을 회귀분석 방법의 일종인 특성가격 모형(Hedonic pricing model)로 분석한 2011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남준우 교수의 연구가 최초로 미술시장을 가격이라는 요소와 연관지어 분석한 연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술품 가격 지수를 토대로 투자 수익률을 분석한 연구들은 아래와 같이 상당수는 투자대상으로서 미술품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술품 투자에 관련된 주요한 연구들				
저자	수익률	표본 크기	기간	표본

Baumol(1986)	0.55%	1,198	1652-1961	세계 유명 작가
Goetzmann(1993)	3.20%	3,329	1715-1986	세계 경매 시장
Rennebook & Spaenjers(2013)	4%	110만	1951-2007	세계 경매 시장
Agnello & Pierce (1996)	9.30%	15,216	1971-1992	66명의 미국 작가
Mei & Moses (2002)	4.90%	4,896	1875-2000	세계 경매 시장
Renneboog & Van Houtte (2002)	7.60%	10,598	1970-1997	71명의 벨기에 작가
Kraeussl & Logher (2010)	10%	24,524	1985-2008	러시아 미술 시장
Kraeussl & Logher (2010)	5.70%	7,172	1990-2008	중국 미술 시장
Kraeussl & Logher (2010)	42.20%	2,859	2002-2008	인도 미술 시장
Taylor & Coleman (2011)	6.60%	4,360	1982-2007	호주 원주민 작가
Higgs & Worthington(2005)	6.96%	37,605	1973-2003	호주 출신 현대 미술 작가
Worthington & Higgs (2006)	4.82%	30,227	1973-2003	호주 출신 현대 미술 작가
Garay (2019)	4.30%	5,961	1969-2014	69명의 베네수엘라 작가
남준우 (2011)	23.74%	3,503	1998-2008	한국 경매 시장
신정원 (2019)	2.9~16%	46,192	2007-2018	한국 경매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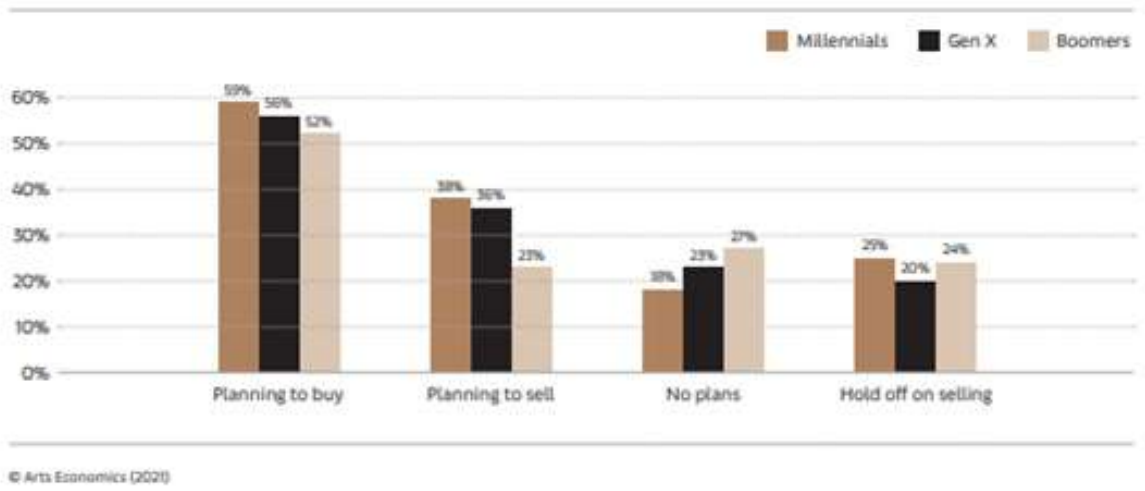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미술품을 투자 상품으로 보고 그 가격과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은 표본의 크기와 대상, 기간, 표본이 되는 시장과 대상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미술품 투자는 어떤 시간대에서 어떤 기간으로, 어떠한 시장을 대상으로 어떠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하여도 현재까지 양(+)의 수익률을 보여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술품 시장의 변동성이 주식시장에 비하여 작고 하방 경직성이 강하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양의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에 여러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이유로는 미술품의 특성상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구 증가와 소득 증가로 인하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거나 미술품 수요자의 특성 중 하나가 다른 시장 수요들에 비하여 경기 민감도가 적다라는 점을 든 연구 결과 역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발행인은, 미술품 시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① 미술품 시장은 주식시장에 비하여 하방경직성이 강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양의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 수익률은 시간대와 분석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② 미술품 시장은 실물경제의 투자패턴과 유사한 모습으로 경제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미술품 수요자는 다른 시장 수요자들에 비하여 그 민감도가 적기는 하나 경기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5) 미술품 시장의 향후 전망

백신 등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혹은 코로나19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2021년 3분기 이후의 미술시장에서, 전 세대에 걸친 미술시장의 소비자 즉 컬렉터들은 미술품을 구매할 계획이 50%가 넘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미술품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에 비하여 많게는 2배 이상의 수치입니다. 즉,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미술시장은 수요 의사가 공급 의사보다 많은, 전세계적으로 수요 주도의 강세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코로나 이후 전세계 컬렉터들의 미술품 구매/판매/무계획/보유 계획
 (그림6) 코로나 이후 전세계 컬렉터들의 미술품 구매 계획 등

(출처: Art Basel 2021/UBS “The Global Art Market in 2020” 제304면)

라. 기초자산에 관한 가격 산정 근거 등

(1) 내부평가

기초자산의 취득금액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내부평가는 다음의 각 단계를 밟게 됩니다.

내부평가 절차 단계의 요약

단계	절차	상세 내용	비고
1단계	진위 및 상태 확인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의 진위 여부, 하자 없는 소유권 취득 가부, 컨디션 등에 대한 확인	취득처(매도인), 유통경로(provenance), 보증서, Condition Report, Fact Sheet 등
2단계	방법론 수립 및 거래사례 수집	내부평가 방법론 수립 및 직전 10년간 동일 작가의 유사 작품 공개된 거래 사례 전체를 확인	거래사례 선정 기준 결정(동일 작가, 유사 주제, 유사 재질, 유사 크기 등), 거래사례들에 대한 미술품 전문 해외 DB (Artprice 등) 활용
3단계	기초자산 시장성 분석 및 가치변동요인 분석	기초자산의 판매량, 거래총액, 단위가격 등의 시계열 분석, 기타 기초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기초자산의 시장성, 기초자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분석
4단계	비교그룹 선정	거래 사례 중 직접 비교그룹(peer group) 이 될 유사작품 선정	단위면적당 가치 추정, 국내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 검토
5단계	내재가치와 취득금액 비교	선정된 유사작품 비교그룹에서 도출된 기초자산 내재가치를 기초자산 취득금액과 비교	-

6단계	취득가액 적정성 판단	기초자산 취득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결론	-

가) 평가방법론

당사가 기초자산의 내부평가에 사용한 평가방법론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방법론

가. 평가방법론에 대한 요약
(1) 당사는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의 취득가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거래사례 비교법을 사용하였습니다.
(2) 거래사례의 선정에 있어서는 아래 기재된 거래사례 선정기준을 활용합니다.
(3) 미술품의 가치평가에 있어 알려진 국내 또는 국외의 자료들과 연구들을 검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 알려진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인의 미술품 가치평가 방법을 사전에 검토하여 참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 각 미술품 경매사, 국가, 위탁수수료/낙찰수수료(buyer/seller premium), 부가가치세(VAT), 추급권(Artists' Resale Rights), 낙찰가격(realized price), 제작연도, 판매량 등의 요소를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비교하고, 각 요소가 단독으로 혹은 혼합으로 미술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6) 미술품의 크기는 인치, 센티미터, 호수에 기초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이 때, 미술품의 호수는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나 사단법인 한국미술품시가감정협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표로서 법률적 구속력이 있지 않으나,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미술품의 크기에 기초하여 가격을 산정하거나 가늠하는 잣대로 통용될 수 있습니다.
(7) 미술품의 내재가치를 추정하여 비교하고자 할 때에는 단위가격(㎠) 또는 1호당 가격을 기초자산의 면적이나 호수로 환산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위가격(㎠)은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으나, 호당 가격은 1호 단위로 연속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중앙값(Median)이나 최빈값(Mode) 등 당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판매량 변화에 따르는 시장성이나 미술품 가치에 대한 비교와 분석, 단위면적당 가격의 비교와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9) 당사는 기초자산 취득가격에 대한 방법론이, 기초자산의 처분시기 및 기초자산의 처분가격 등 공동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전략에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비교와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10) 다만, 미술품의 절대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확립된 방법론은 당사가 검토한 범위 내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사의 기초자산 취득가격 평가의견에는 당사가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당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론을 미술품의 특성에 따라 순서를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2) 금번 기초자산은 대한민국에서 원화로 600,000,000에 매입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내용 검수 등 취득 과정을 거치고 내부 평가(2025년 10월 1일)를 통해 대금 지급을 2025년 10월 14일 진행하였습니다.
(13) 내부평가를 위해 적용된 환율은 다음과 같이 서울외국환중개가 제공하는 기간별 매매기준율 중 내부평가일 전일인 2025년 09월 30일부터 역산하여 전 1개월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여 1달러(USD)에 1,391원(원 미만 버림)을 적용하였습니다.

평가에 있어 환산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된 조정 환율	
환율	1달러(USD)/1,391원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제공1개월 평균 매매기준율 (2025. 08. 31. ~ 2025. 09. 30.)

(14) 기초자산은 2025년 7월 낙찰작까지 국내 경매시장의 거래이력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USD 기준으로 내부평가를 진행하는 이유는, 미술품 경매 이력 정보의 사실상(de facto)의 규범이 되는 Artprice에서 경매 기록이 USD 또는 유로화 기준으로 되어 있어 동시대 작가 및 경매사들의 경매 기록과 시계열적으로 일관성을 가지므로, 이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15) 미술품 시장 일반에 관하여 당사는 다음 각 주요 지수를 전제사실로 사용합니다.

주요 지수 인용 요약	
2001 ~ 2023 근현대 미술품 연평균 가격 상승률	10.5%
2001 ~ 2021 미국 S&P 500의 연율화 수익률	8.06%
글로벌 미술시장 연간 판매액(2024년)	약 575억 달러

(출처: Masterworks.io.; Investopedia; The Art Market Report 2025 Art Basel & UBS)
(주1) 상기 기재된 미국 S&P 500 지수는 2001 ~ 2021 배당금 재투자(dividends reinvested)를 가정한 연율화된 수익률(annualized return)입니다.
(주2) 근현대 미술품의 연율화된 가격 상승률에 관하여는 근현대 미술품의 범위와 분류 등으로 다양할 수 있으나, Artprice에서 제공하는 Artprice 100 과 미국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회사인 Masterworks에서 제공하는 가격지수가 대표적입니다. Masterworks에서 제공하는 근현대미술품 가격지수는 Citi Bank Private Bank의 Art Advisory & Finance 에서 발간하는 자료에서 동일하게 인용되고 있으며, Masterworks가 미국 SEC의 승인을 얻어 Reg. A.에 의하여 발행하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서 전제사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3) 당사는 해외에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이 대체투자자산으로 기능하는데 충분하다는 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객관적 지표들에 제시하되, 상기 지수들을 기초자산의 내재가치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비교대상이나 계산의 기초로 삼고 있지 않으며, 미술품 시장 전체의 장기적 성장성에 비추어 미술품이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으로 삼기기에 충분하다는 참고 자료로만 삼고 있습니다.

나. 거래 사례 선정
(1) 거래 사례 선정 기준
가) 해외 미술품 정보 제공 전문 DB를 통하여 작가의 작품 중 거래사례를 분석함
나) 해외나 국내에서 기초자산과 유사한 미술품에 대한 증권 발행사례 또는 증권신고서 제출 사례 등이 있는 경우 그 발행 사례에 포함된 거래 사례들이나 주된 기재사항들
다) 다만, 거래사례의 시장성을 확인하거나 주제와 구성에 대한 대조를 확인하기 위한 거래사례들을 대조군으로 추가

작품(기초자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 :
강렬한 삼원색을 바탕으로 화려한 색채의 변주가 펼쳐지는<Work>는 예술과 자연의 합일을 깊이 있게 탐구한 유영국의 예술 세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대표작입니다. 다양한 자연 경관 중에서도 줄곧 '산'을 그려온 유영국은 특히나 '산의 화가'라고도 불리며, 일평생 추상의 절대적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이어왔습니다. 이를 보여주듯 화면 속 산의 형태를 암시하는 색면은 단순한 형태에 그치지 않고 추상과 구상의 경계 사이에서 시각적인 전환을 반복하고 있으며, 간결한 사선 구도만을 통해서도 근경, 중경, 그리고 원경이 중첩된 독특한 깊이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시원하게 펼쳐진 화면은 확장된 공간감과 지평선 너머를 상상하게 만드는 몰입감을 선사하고 있으며, 붉은색을 주조로 하여 대비 속에서 세밀한 조화를 이루는 색채 구성 역시 화면 곳곳에서 시선을 붙잡아두는 힘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색채가 형태에 갇히는 대신 그 자체로 해방된 자유로움을 표현하며, 생동하는 자연의 기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Work>는 "산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던 작가의 말을 회화적으로 축약하며, 사물 이상의 자연, 즉 내면의 시선과 맞닿아 비춰진 주관적 자연의 다채로움, 그 무한한 서정성과 장엄한 아름다움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유영국의 대표적인 작업입니다.

(2) 선정된 거래 사례
: 당사가 비교와 분석을 위하여 검토한 거래사례는 대조군을 포함하여 아래[57]건입니다. 다만, 아래 작품 중 대조군은 기초자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주제가 다르거나, 다른 구도, 혹은 다른 재질 등).

나) 거래사례의 수집과 분석

당사는 위와 같은 평가방법론을 바탕으로 하여 2016년 1월 부터 2025년 9월까지 동일 작가(유영국)의 낙찰 작품 57점을 1,800만점 이상의 해외 미술품 거래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는 DB인 Artprice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당사가 비교와 분석을 위하여 검토한 거래사례는 대조군을 포함하여 아래 [57]건입니다. 다만, 아래 작품 중 대조군은 기초자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주제가 다르거나, 다른 구도, 혹은 다른 재질 등).

[거래사례 목록]

경매일자	경매사	작품명	제작연도	크기	호수	낙찰가(수수료 포함, USD)
2025-07-22	Seoul Auction	Dusk		64.2 x 64.2 cm	25	346,941
2025-06-25	K-Auction	Work	1976	45.5 x 53 cm	10	351,550
2025-03-28	Seoul Auction	Mountain	1972	43 x 52 cm	10	351,325
2025-02-19	K-Auction	Work	1986	65.1 x 80.3 cm	25	275,290
2023-08-29	Seoul Auction	Work	1984	104 x 104 cm	60	499,446
2023-06-28	K-Auction	Work	1989	130.3 x 193.9 cm	120	890,060
2023-05-31	K-Auction	Work	1991	65.1 x 90.9 cm	30	263,523
2023-05-30	Seoul Auction	Work	1986	65 x 90 cm	30	263,344
2023-05-30	Seoul Auction	Work	1991	64 x 89 cm	30	199,778
2023-03-29	K-Auction	Work	1980	80.3 x 100 cm	40	312,337
2023-03-28	Seoul Auction	Work	1964	162 x 133 cm	100	988,314
2023-02-28	Seoul Auction	Work	1982	60 x 71 cm	20	145,485
2023-01-18	K-Auction	Work	1987	65.1 x 90.9 cm	30	329,870
2022-12-20	Seoul Auction	Work	1975	50 x 73 cm	20	199,526
2022-12-20	Seoul Auction	Work	1976	24.7 x 35 cm	5	77,089
2022-11-29	Seoul Auction	Work	1975	105.8 x 105.8 cm	60	351,364
2022-11-23	K-Auction	Work	1975	106 x 105 cm	60	443,236
2022-10-26	K-Auction	Work	1981	53 x 72.7 cm	20	259,818
2022-10-25	Seoul Auction	Work	1977	52.6 x 65 cm	15	391,440
2022-09-27	Seoul Auction	Work	1989	52.5 x 72 cm	20	155,215
2022-09-27	Seoul Auction	Mountain	1972	43.7 x 52.8 cm	10	334,940
2022-08-24	K-Auction	Work	1989	65.1 x 90.9 cm	30	286,800
2022-07-20	K-Auction	Work	1979	53 x 65.1 cm	15	266,669
2022-04-27	K-Auction	Work	1986	65.1 x 80.3 cm	25	248,180
2022-02-22	Seoul Auction	Roof (지붕)	1974	64.3 x 91.2 cm	30	283,118
2022-02-22	Seoul Auction	Mountain (산)	1991	80.2 x 100 cm	40	185,491
2021-10-27	K-Auction	Snow Mountain	1973	53 x 65.1 cm	15	273,600
2021-08-24	Seoul Auction	Work		65 x 90 cm	30	219,905
2021-08-24	Seoul Auction	Temple on the Mountain	1974	135 x 161.5 cm	100	449,807
2021-06-22	Seoul Auction	Spirit	1965	129.3 x 161.2 cm	100	1,303,484
2021-06-02	Seoul Auction	Work	1989	52.5 x 72 cm	20	110,197
2021-04-28	K-Auction	Work	1988	65.1 x 90.9 cm	30	282,780
2021-04-27	Seoul Auction	Work	1986	71.8 x 99.3 cm	40	146,464

2021-03-23	Seoul Auction	Work	1990	72 x 90 cm	30	185,375
2021-02-23	Seoul Auction	Work	1988	72.3 x 91 cm	30	292,928
2021-01-20	K-Auction	Work	1989	130.3 x 193.9 cm	120	773,059
2020-03-24	Seoul Auction	Work	1986	80 x 100 cm	40	216,772
2019-05-22	K-Auction	Work	1960	130.3 x 162.2 cm	100	753,522
2019-01-23	K-Auction	Work	1981	72.7 x 90.9 cm	30	222,422
2018-12-13	Seoul Auction	Work	1982	53.2 x 65 cm	15	150,005
2018-11-21	K-Auction	Work	1986	65.1 x 90.9 cm	30	186,004
2018-09-19	K-Auction	Work	1959	97 x 162.2 cm	100	623,508
2018-09-12	Seoul Auction	Work	1976	44 x 52 cm	10	104,151
2018-06-20	Seoul Auction	Untitled		65.4 x 91 cm	30	157,799
2018-05-02	Seoul Auction	Work	1988	72.8 x 100 cm	40	291,902
2018-03-21	K-Auction	Work	1991	72.7 x 100 cm	40	174,843
2018-03-07	Seoul Auction	Work	1989	53 x 72.5 cm	20	109,010
2018-03-07	Seoul Auction	Work	1958	130.5 x 101.5 cm	60	446,945
2017-12-12	K-Auction	Mountain	1979	106 x 106 cm	60	321,540
2017-08-30	K-Auction	Trees	1981	53 x 45.5 cm	10	76,727
2017-06-14	K-Auction	Mountain	1989	72.7 x 90.9 cm	30	108,869
2017-05-28	Seoul Auction	Work (作品)	1985	96 x 129.3 cm	60	298,939
2017-04-26	Seoul Auction	Work	1991	72 x 99.3 cm	40	184,536
2017-03-07	Seoul Auction	Work	1975	105.8 x 105.8 cm	60	273,213
2016-12-14	Seoul Auction	Work	1991	65.3 x 90.8 cm	30	220,418
2016-09-28	K-Auction	Mountain	1982	72.7 x 90.9 cm	30	159,023
2016-09-27	Seoul Auction	Work		128.5 x 160.5 cm	100	360,451

(주1) 당사는 거래사례 목록을 일관되게 이미지 형태로 제공했으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PDF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해 열람시 해당 이미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부터는 본문에 직접 텍스트 형식으로 기재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주2) '대조군'이란 거래사례 비교를 위한 상대적 가치 평가 방법론에서 사용되는 비교 대상을 의미합니다. 이하 각 분석 항목의 거래사례 분석에서 대조군으로 사용된 대상 작품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3) '호수' 또는 '호'란 미술품에서 캔버스의 크기와 규격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미술품의 크기나 면적에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으며 법률적 구속력이 있지 않으나, 미술계에서 미술품의 크기에 기초하여 가격을 산정하거나 가늠하는 잣대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대륙별로 아주 약간 다른 기준이 알려져 있기도 한데, 국가별 도량형의 차이로 미세한 수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호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수	F	P	M	S
	Figure(인물형)	Paysage(풍경형)	Marine(해경형)	Square(정방형)
1 호	22.7 x 15.8	22.7 x 14.0	22.7 x 12.0	15.8 x 15.8
2 호	25.8 x 17.9	25.8 x 16.0	25.8 x 14.0	17.9 x 17.9
3 호	27.3 x 22.0	27.3 x 19.0	27.3 x 16.0	22.0 x 22.0
4 호	33.4 x 24.2	33.4 x 21.2	33.4 x 19.0	24.2 x 24.2
5 호	34.8 x 27.3	34.8 x 24.2	34.8 x 21.2	27.3 x 27.3
6 호	40.9 x 31.8	40.9 x 27.3	40.9 x 24.2	31.8 x 31.8
8 호	45.5 x 37.9	45.5 x 33.4	45.5 x 27.3	37.9 x 37.9
10 호	53.0 x 45.5	53.0 x 40.9	53.0 x 33.4	45.5 x 45.5
12 호	60.6 x 50.0	60.6 x 45.5	60.6 x 40.9	50.0 x 50.0
15 호	65.1 x 53.0	65.1 x 50.0	65.1 x 45.5	53.0 x 53.0
20 호	72.7 x 60.6	72.7 x 53.0	72.7 x 50.0	60.6 x 60.6
25 호	80.3 x 65.1	80.3 x 60.6	80.3 x 53.0	65.1 x 65.1
30 호	90.9 x 72.7	90.9 x 65.1	90.9 x 60.6	72.7 x 72.7
40 호	100.0 x 80.3	100.0 x 72.7	100.0 x 65.1	80.3 x 80.3
50 호	116.8 x 91.0	116.8 x 80.3	116.8 x 72.7	91.0 x 91.0
60 호	130.3 x 97.0	130.3 x 89.4	130.3 x 80.3	97.0 x 97.0
80 호	145.5 x 112.1	145.5 x 97.0	145.5 x 89.4	112.1 x 112.1
100 호	162.2 x 130.3	162.2 x 112.1	162.2 x 97.0	130.3 x 130.3
120 호	193.9 x 130.3	193.9 x 112.1	193.9 x 97.0	130.3 x 130.3

150 호	227.3 x 181.8	227.3 x 162.1	227.3 x 145.5	181.8 x 181.8
200 호	259.1 x 193.9	259.1 x 181.8	259.1 x 162.1	193.9 x 193.9
300 호	290.9 x 218.2	290.9 x 197.0	290.9 x 181.8	218.2 x 218.2
500 호	333.3 x 248.5	333.3 x 218.2	333.3 x 197.0	248.5 x 248.5

(주4) 각 호수는 대부분 인물형, 풍경형, 해경형, 정방형의 규격을 가지고 있으나(정방형은 호수 표기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캔버스의 용도와 주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캔버스 규격의 구분을 위한 용어입니다.

(주5) 캔버스의 호수표는 대체로 많이 이용되는 캔버스의 규격을 범주화한 것일 뿐, 모든 캔버스가 호수표 규격대로 제작되지 않고 작가와 작품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캔버스 크기와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거래사례 목록에서 호수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과 면적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가까운 호수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술품 유통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상기 호수표에서 벗어난 크기를 가진 미술품이 이른바 '비정형' 호수를 가진 미술품으로 가장 근접한 호수에 비추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6) 제작연도가 공란인 작품은 해당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미술품은 작가가 직접 미술품이나 캔버스에 제작연도를 기재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직접 그 제작연도를 작품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화풍이나 전시 시기, 기타 제반 사정 등으로 제작연도를 유추할 수 있으나, 미술품 경매회사 등에서는 그러한 추정 제작연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보로 미술품 경매회사의 제한보증 대상이 되는 도록 등에 기재하지 않고 연도미상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 국내외 증권 발행 사례 또는 증권신고서 제출 사례의 분석

1) 해외 증권 발행 사례

작가의 작품은 해외에서 증권으로 발행된 기록이 없습니다.

2)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사례

작가의 작품은 국내에서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기록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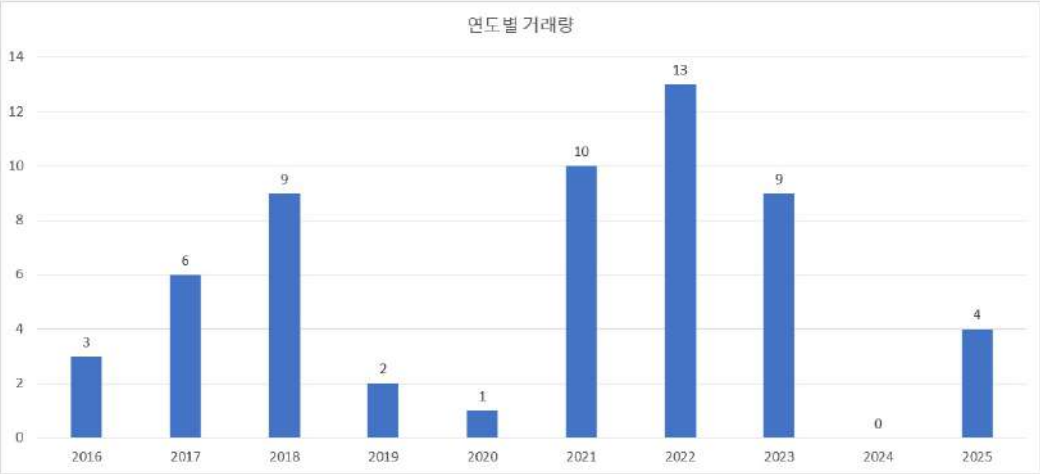
라) 당사가 선정한 거래사례들에 대한 분석

1) 분석 기간
당사는 작품 내재가치 분석을 위해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공개된 미술품 경매시장에서의 10년간 연도별 거래량을 조사합니다. 유영국 작가의 작품을 2016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공개된 미술품 경매시장에서의 연도별 거래량을 조사하였습니다. 확인된 가장 최근의 거래 이력은 2025년 7월로 확인되었습니다.

2) 시장성 분석(I): 거래량 분석
당사는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공개된 미술품 경매시장에서의 연도별 거래량을 조사하였고 가장 최근의 낙찰 이력은 2025년 7월로 확인되었습니다.

거래 사례의 연도별 거래량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거래량(점)	3	6	9	2	1	10	13	9	0	4

(주1) Artprice를 통해 작가의 낙찰 작품 57점(거래사례 목록 전체)을 집계하였습니다.
(주2) 2025년 9월 30일까지의 거래량을 집계하였으며, 거래 사례로 삼을 수 있는 낙찰이력이 2025년 7월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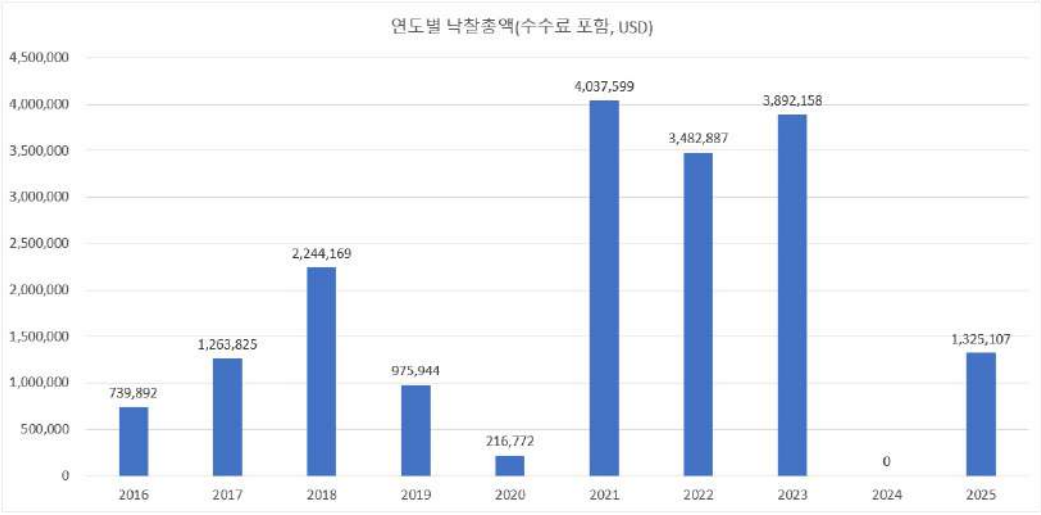


기초자산과 동일한 거래사례들의 거래량은 2016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대체로 국내 미술 시장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0년 12월 미국의 저명한 예술 전문 출판사 Rizzoli가 Yoo Youngkuk: Quintessence를 발간하고, 2021년 고 이건희 회장 소장 작품들로서 국가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에서 작가(유영국)의 작품이 총 187점으로 단일 작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전보다 더욱 새롭게 조명되고, 이후 거래량이 다소 증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당사의 조사에 따르면 작가가 다작을 하지 않았다는 점, 2002년 이미 별세하심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작품 수가 증가할 여지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량의 연도별 증감이 있으나 작가 사후에도 꾸준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점, 작가에 대한 조명이 작가 사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 사례들의 거래량은 기초자산의 시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추정합니다.

3) 시장성 분석(II): 낙찰총액 분석
당사는 같은 기간 공개된 미술품 경매에서의 낙찰총액을 조사하였습니다.

거래 사례의 연도별 낙찰총액(수수료 포함, USD)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낙찰 총액	739,892	1,263,825	2,244,169	975,944	216,772	4,037,599	3,482,887	3,892,158	0	1,325,107

(주1) Artprice를 통해 작가의 낙찰 작품 57점(거래사례 목록 전체)을 집계하였습니다.
(주2) 2025년 9월 30일까지의 거래량을 집계하였으며, 거래 사례로 삼을 수 있는 낙찰이력이 2025년 7월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래 사례의 연도별 낙찰총액을 살펴보면 2016년 낙찰총액 약 73만 달러, 2017년 낙찰총액 약 126만 달러, 2018년 낙찰총액 약 224만 달러, 2019년 낙찰총액 약 97만 달러, 2020년 낙찰총액 약 21만 달러, 2021년 낙찰총액 약 403만 달러, 2022년 낙찰총액 약 348만 달러, 2023년 낙찰총액 약 389만 달러, 2025년 낙찰총액은 7월까지 약 132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3) 소결
위와 같은 조사 결과에 비추어 당사는 거래 사례들의 거래량이나 거래액수 모두 기초자산이 공개된 시장에서 시장성을 가지고 거래될 수 있는 수준에 부합한다고 추정합니다.

마) 기초자산의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

1) 분석 방법 개요
당사는 기초자산의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시 단위면적당 환산가치를 수치화해 제공합니다. 미술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희망하는 가격을 가늠할 때, 작가, 재질, 도상이나 주제, 연도 등 다른 요소가 유사한 경우, 해당 작품의 크기 또는 면적이 가격 결정에 있어 일응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거래사례의 낙찰가격(USD)을 작품의 면적(cm2)으로 나누면 면적(cm2)당 낙찰가격(USD), 즉 단위면적당 가격이 도출되므로 이 수치가 높다면 상대적으로 같은 면적당 낙찰가격이 높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미술품 단위면적당 가격을 구한 후, 단위면적당 가격의 평균값(mean)을 거래사례와 비교하는 방식을 작품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는 낙찰가격(USD)을 호로 나눈 값도 미술품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이 때, 호는 가로와 세로 길이의 곱과 정비례하여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면적(cm2)을 낙찰가격(USD)으로 나눈 단위면적당 낙찰가격과 달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호수표에 의할 때 10호 이후에 11호 크기 캔버스 없이 12호 크기 캔버스가 있거나 13호와 14호 크기의 캔버스 없이 15호가 있는 등 호수표의 호수가 크기의 증가에 따라 불연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 1호 크기의 캔버스가 22.7 x 15.8cm의 크기를 가지고 있음에 비하여 100호 크기의 캔버스는 162.2 x 130.3cm의 크기를 가져 호수표의 단위가 면적에 정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도 불구하고 호수표에 기반한 가격이 사용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위면적(cm2) 대신 단위면적(호)로 나눈 경우에는 평균값 대신 중앙값(median)을 사용하였습니다. 중앙값은 주어진 값들을 크기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값으로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값들의 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호수표의 영향으로 미술품의 가치가 평균값을 이용할 때보다 1호부터 100호까지 단위면적당 가격의 평균값보다 면적 변화의 영향을 지나치게 크거나 작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완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사는 UBS와 Art Basel의 Art Market Report 2024와 2025에서는 평균값과 중앙값을 모두 사용하면서 그 중 전년도 미술시장의 규모를 설명하는 데에는 중앙값(median)이 더 대표성 있는 값이라고 설명한 내용, 미술품 낙찰가격을 면적에 대하여 나눈 후 그 평균값과 중앙값을 함께 사용하여 가치를 산정하고자 한 복수의 해외 연구 사례들을 검토하여 평균값과 중앙값이 미술품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합리적 수단이 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가 검토한 자료 또는 연구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저자명	제목	연도
1	Dr. Clare McAndrew of Arts Economics	THE ART BASEL & UBS ART MARKET REPORT 2024	2024
2	Dr. Clare McAndrew of Arts Economics	THE ART BASEL & UBS ART MARKET REPORT 2025	2025
3	Morgan Stanley	Demystifying Art Indices	2023
4	ANNA VASINA, VALERY BUKANOV, VALERIA KOLYCHEVA, ALEXANDER SEMENOV, DMITRY GRIGORIEV	THE PROFITABILITY OF INVESTING IN FINE ART: AN ANALYSIS OF RESALE DATA FROM SOTHEBY'S, CHRISTIE'S, AND PHILLIPS	2023
5	Fabian Y. R. P. Bocart, Marina Gertsberg, Rachel A. J. Pownall	An empirical analysis of price differences for male and female artists in the global art market	2020
6	Yuexin Li, Marshall Xiaoyin Ma, Luc Renneboog	Pricing art and the art of pricing: On returns and risk in art auction markets	2021
7	Kangsan Lee, Jaehyuk Park, Sam Goree, David Crandall, Yong-Yeol Ahn	Social signals predict contemporary art prices better than visual features, particularly in emerging markets	2024
8	Adri De Ridder, Steffen Eriksen, Bert Scholtens	The art of valuation: Using visual analysis to price classical paintings by Swedish Masters	2024

이해를 돕기 위해 3항 거래사례 중 기초자산과 유사한 호수 작품들의 연도별 단위면적 가격 변화를 산출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일자	작품명	크기	면적 [A]	낙찰가(수수료 포함, USD) [B]	USD/cm2 [C=B/A]	연도별 단위면적당 가격의 평균값 [D= C의 총합 /C의 총 개수]
2022-11-29	Work	105.8 x 105.8 cm	11,193.64 cm2	351,364	31.39	35.61
2022-11-23	Work	106 x 105 cm	11,130 cm2	443,236	39.82	

(주1) USD/cm2와 연도별 단위면적당 가격의 평균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당사는 아래에서 상기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기초자산의 가치를 기재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기초자산의 가치를 평균값과 중앙값으로 비교한 결과를 단위면적(cm2) 및 호수 대비로도 제시하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래사례의 단위면적당 가격 분석
당사는 같은 기간 거래사례의 단위면적당(USD/cm2) 가격을 분석하였습니다.

거래 사례의 연도별 단위면적당 가격(USD/cm2) 변화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USD/cm2	26.24	25.20	34.75	34.66	27.10	40.13	63.68	42.30	0	109.94
작품 수	3	6	9	2	1	10	13	9	0	4

(주1) Artprice를 통해 작가의 낙찰 작품 57점(거래사례 목록 전체)을 조사하였습니다.
(주2) 2025년 9월 30일까지의 거래량을 집계하였으며, 거래 사례로 삼을 수 있는 낙찰이력이 2025년 7월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래사례들의 출품 연도별 단위면적당 가격 변화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하락하였고, 2024년의 단위면적당 가격 변화는 2024년의 거래사례로 산정된 작품이 없어 0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다시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에 비하여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거래 사례들의 출품 연도별 단위면적당 가격 변화의 추세를 관측한 결과,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그 이유로는 기초자산 작가가 사후에도 작가의 작품과 작품 세계가 계속 조명되어 오며, 작가와 작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라 보고 있습니다.

3) 거래사례 중 기초자산과 같은 호수 작품들의 연도별 단위면적 가격 변화

거래 사례의 연도별 단위면적당 가격(USD/cm2) 변화				
연도	2017	2018	2022	2023
USD/cm2	25.70	33.74	35.61	46.18
작품 수	3	1	2	1

(주1) Artprice를 통해 작가의 낙찰 작품 57점 중 호수(60호)가 비슷한 7점을 집계하였습니다. 대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일자	경매사	작품명	제작연도	크기	호수	낙찰가(수수료 포함, USD)
2023-08-29	Seoul Auction	Work	1984	104 x 104 cm	60	499,446
2022-11-29	Seoul Auction	Work	1975	105.8 x 105.8 cm	60	351,364
2022-11-23	K-Auction	Work	1975	106 x 105 cm	60	443,236
2018-03-07	Seoul Auction	Work	1958	130.5 x 101.5 cm	60	446,945
2017-12-12	K-Auction	Mountain	1979	106 x 106 cm	60	321,540
2017-05-28	Seoul Auction	Work (作品)	1985	96 x 129.3 cm	60	298,939
2017-03-07	Seoul Auction	Work	1975	105.8 x 105.8 cm	60	273,213



작가의 작품 중 자연을 추상적으로 다룬 도상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은 후, 그 중 면적과 재질이 같은 작품들을 직접 비교 대상이 되는 거래 사례로 삼아 그 연도별 단위면적당 가격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기초자산과 직접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 사례들의 단위면적당 가격은 2017년, 2018년, 2022년, 2023년에 걸쳐 높아져 왔다고 보여집니다. 당사는 이렇듯 기초자산과 직접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사례들의 출품연도별 단위면적당 가격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초자산의 향후 전망이 부정적이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4) 거래사례 중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비교 작품들의 연도별 단위면적 가격 변화

유영국미술문화재단(yooyoungkuk.org)에 따르면, "유영국의 작품에서는 점, 선, 면, 형, 색 등 기본 조형요소가 주체가 되어 등장한다. 이들은 서로 긴장하며 대결하기도 하고, 모종의 균형감각을 유지하기도 함으로써, 그 자체로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고향 울진의 깊은 바다, 장엄한 산맥, 맑은 계곡, 붉은 태양 등을 연상시키는 그의 작품은, 자연의 사실적인 모습을 그대로 옮겨 담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을 추상화한 조형의 힘은 오히려 더욱 더 직접적으로 자연의 '정수(essence)'에 다가간다. 그의 작품은 산, 바다, 나무, 언덕, 계곡, 노을 등 일상적으로 만나는 자연의 요소들을 점차적으로 추상화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작가

의 작품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가의 말을 다시 인용하여 "산은 자연이 부여한 하나의 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추상의 빈 그릇일 수도 있다. 그것은 또한 누군가가 베고 잤을지도 모르는 산가 여인숙의 헌 베개같이 축소 해석되어 한밤 내내 친근한 대화를 오가게 한다. 바라볼 때마다 변하는 것이 산이다. 결국 산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기초자산과 같은 도상을 가진 작품에서 산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1)항에서 분석하였듯이 2021년을 기점으로 작가의 작품세계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면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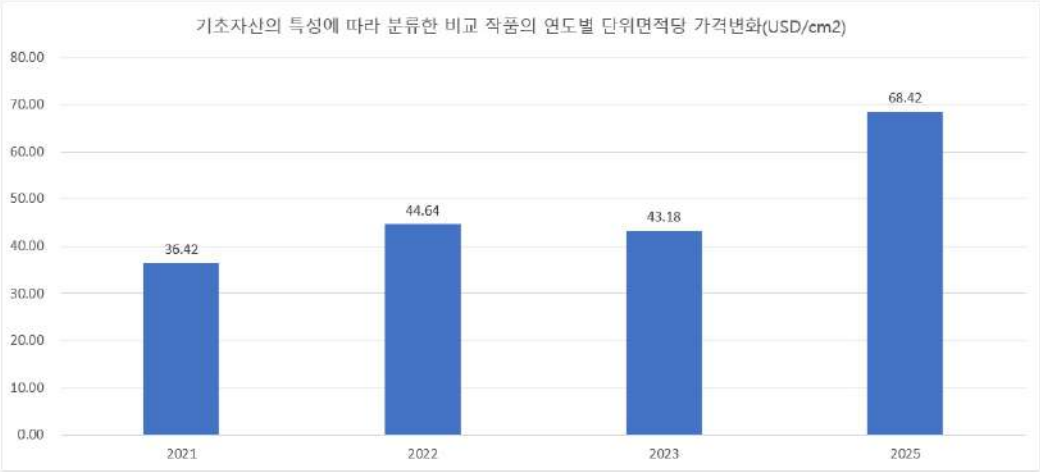
이에 따라 당사는 첫째, 2021년부터 가장 최근까지의 사례, 둘째로 같은 재질과 유사한 주제의식 및 도상을 나타낸다고 당사가 판단할 수 있는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호에서 100호 사이에 해당하는 사례의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시 한 번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거래 사례의 연도별 단위면적당 가격(USD/cm2) 변화				
연도	2021	2022	2023	2025
USD/cm2	36.42	44.64	43.18	68.42
작품 수	8	9	8	2

(주1) Artprice를 통해 작가의 낙찰 작품 57점 중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27점을 집계하였습니다. 대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일자	경매사	작품명	제작연도	크기	호수	낙찰가(수수료 포함, USD)
2025-07-22	Seoul Auction	Dusk		64.2 x 64.2 cm	25	346,941
2025-02-19	K-Auction	Work	1986	65.1 x 80.3 cm	25	275,290
2023-08-29	Seoul Auction	Work	1984	104 x 104 cm	60	499,446
2023-05-31	K-Auction	Work	1991	65.1 x 90.9 cm	30	263,523
2023-05-30	Seoul Auction	Work	1986	65 x 90 cm	30	263,344
2023-05-30	Seoul Auction	Work	1991	64 x 89 cm	30	199,778
2023-03-29	K-Auction	Work	1980	80.3 x 100 cm	40	312,337
2023-03-28	Seoul Auction	Work	1964	162 x 133 cm	100	988,314
2023-02-28	Seoul Auction	Work	1982	60 x 71 cm	20	145,485
2023-01-18	K-Auction	Work	1987	65.1 x 90.9 cm	30	329,870
2022-12-20	Seoul Auction	Work	1975	50 x 73 cm	20	199,526
2022-11-29	Seoul Auction	Work	1975	105.8 x 105.8 cm	60	351,364
2022-11-23	K-Auction	Work	1975	106 x 105 cm	60	443,236
2022-10-26	K-Auction	Work	1981	53 x 72.7 cm	20	259,818
2022-09-27	Seoul Auction	Work	1989	52.5 x 72 cm	20	155,215
2022-08-24	K-Auction	Work	1989	65.1 x 90.9 cm	30	286,800
2022-04-27	K-Auction	Work	1986	65.1 x 80.3 cm	25	248,180
2022-02-22	Seoul Auction	Roof (지붕)	1974	64.3 x 91.2 cm	30	283,118
2022-02-22	Seoul Auction	Mountain (산)	1991	80.2 x 100 cm	40	185,491
2021-08-24	Seoul Auction	Work		65 x 90 cm	30	219,905
2021-08-24	Seoul Auction	Temple on the Mountain	1974	135 x 161.5 cm	100	449,807

2021-06-22	Seoul Auction	Spirit	1965	129.3 x 161.2 cm	100	1,303,484
2021-06-02	Seoul Auction	Work	1989	52.5 x 72 cm	20	110,197
2021-04-28	K-Auction	Work	1988	65.1 x 90.9 cm	30	282,780
2021-04-27	Seoul Auction	Work	1986	71.8 x 99.3 cm	40	146,464
2021-03-23	Seoul Auction	Work	1990	72 x 90 cm	30	185,375
2021-02-23	Seoul Auction	Work	1988	72.3 x 91 cm	30	292,928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요소를 추출해 집계한 분석 결과로도 그 추이가 전항의 분석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거래사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기초자산의 향후 전망이 부정적이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바) 기초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성적 요인(예술성 등)에 대한 검토

(1) 기초자산의 예술성 등

당사가 지난 10년간 분석한 57점은 동일 작가가 공개된 경매 시장에서 거래된 전체 작품으로서 주제, 기법, 표현 방식 등이 대체로 유사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의 예술성이 거래사례들에 비추어 부족하지 않으며, 기초자산 제작시기에 있어 작가의 대표적 도상에 가까우므로 예술성 등 정성적 요인이 기초자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앞선 분석대로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의 관심과 가치 상승 추세 분석으로 갈음합니다.

(2) 작품의 재질이나 크기 등

당사는 미술품이 가치는 가치를 분석하는 데 있어 작품의 재질이 그 가치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자 하며, 특히 기초자산의 작가는 캔버스에 오일 재질의 작품이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점이 낮게 평가될 요소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크기는 97 x 130.5 cm로, 통상 캔버스 60호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캔

버스 10호 이하의 작품 또는 100호에서 200호를 초과하여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미술품의 경우에는 감상 가능성이나 운반의 용이성, 높이나 넓이가 가지는 제약으로 인한 전시 가능성이 작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0호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사는 작가의 동일 크기의 기초자산을 비교한 결과 작품의 크기가 작품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작가의 작품세계에 있어 자연과 산의 의미

작가의 <Work> 시리즈는 한국 혹은 고향이 내포하는 정체성과 민족 정신의 철학을 구현합니다. 고향 울진 깊은 산골의 깊은 물, 험준한 산, 비옥한 계곡, 눈부신 태양을 강렬한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구현한 작가의 미학은 감상자에게 작품을 자연의 정수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4) 연도의 유사성
작가의 작품 중 작품이 제작된 연도가 지나치게 달라진다면, 작가가 미술품에 투영하는 사상이나 작가의 화풍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작품의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 역시 변화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연도의 유사성 역시 미술품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사) 직접 비교그룹 선정을 통한 분석

위와 같은 분석을 거쳐 당사는 첫째, 비교적 최근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둘째, 기초자산의 제작 시기와 동시대인 1980~1989년 사이에 제작된 유사한 주제의식과 도상을 가진 작품을 선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째와 둘째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작품 중 25호에서 100호 가량의 크기를 가지고 그 크기에 따르는 가격 편차가 유의미하게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작품으로서 기초자산과 같은 재질을 가지고 주제의식이나 이미지가 기초자산과 비교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작품 10점을 직접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직접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경매사 (판매사)	작품명	제작년도	크기(cm)	낙찰가(수수료 포함, USD)
2025-02-19	K-Auction	Work	1986	65.1 x 80.3 cm	275,290
2023-08-29	Seoul Auction	Work	1984	104 x 104 cm	499,446
2023-05-30	Seoul Auction	Work	1986	65 x 90 cm	263,344
2023-03-29	K-Auction	Work	1980	80.3 x 100 cm	312,337
2023-01-18	K-Auction	Work	1987	65.1 x 90.9 cm	329,870
2022-08-24	K-Auction	Work	1989	65.1 x 90.9 cm	286,800
2022-04-27	K-Auction	Work	1986	65.1 x 80.3 cm	248,180
2021-04-28	K-Auction	Work	1988	65.1 x 90.9 cm	282,780
2021-04-27	Seoul Auction	Work	1986	71.8 x 99.3 cm	146,464
2021-02-23	Seoul Auction	Work	1988	72.3 x 91 cm	292,928

(주1) 선정된 작품들 중 K-Auction과 Seoul Auction의 거래사례에서는 낙찰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사례의 경매사에서 일반적으로 수취하는 낙찰수수료(증권신고서 [Q&A][수익/비용 관련] 항목에 기재된 낙찰수수료 정보 참조)를 적용하여 환산했습니다.

선정된 작품들의 단위면적당 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도상 거래사례의 단위면적(cm2)당 판매가 (USD)										
거래일	2025-02-19	2023-08-29	2023-05-30	2023-03-29	2023-01-18	2022-08-24	2022-04-27	2021-04-28	2021-04-27	2021-02-23
USD/cm2	52.66	46.18	45.02	38.90	55.74	48.47	47.48	47.79	20.54	44.52
호	25	60	30	40	30	30	25	30	40	30
USD/호	11,011.60	8,324.10	8,778.15	7,808.43	10,995.67	9,559.99	9,927.20	9,426.02	3,661.60	9,764.25

(주1) 단위면적(cm2 및 호) 판매가(USD)의 산정에 있어 단수처리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크기에서 각 작품별 판매 경매회사에서 실측한 면적 차이가 있는 경우 단위면적 당 판매가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산을 비교그룹과 비교하기 위하여 조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기초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유사작품 비교그룹과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된 조정		
항목	조정 전	조정 후
달러 환산(1달러/1,391원)	600,000,000원	USD 431,344.36
크기	97 x 130.5cm	면적: 12,658.50 cm2 호: 60호

위와 같이 조정된 기초자산의 단위면적당 환산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자산의 단위면적당 환산가치	
USD/cm2	34.08
USD/호	7,189.07

당사는 조정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과 단위면적당 가격을 비교그룹과 비교하였습니다.

기초자산 내재가치 추정액과 기초자산 취득가격의 비교			
평균값(㎠)[A]	환산 면적[B]	내재가치 추정액(USD) [E=AxB]	기초자산의 환산가치 (USD)[G]
44.73	12,658.50	566,214.70	431,344.36
중앙값(호)[C]	환산 호수[D]	내재가치 추정액(USD)[F=CxD]	
9,493.00	60	569,580.00	

(주1) 당사는 미술품의 내재가치를 추정하여 거래사례와 비교하며, 단위면적(㎠)당 가격(USD)의 평균값(mean)과 단위면적(호)당 가격(USD)의 중앙값(median)을 모두 활용하였습니다. 가로와 세로 길이의 곱으로 구해지는 단위면적(㎠)당 가격(USD)에 있어서는 작품의 크기에 가치가 비례한다는 점에 비추어 평균값(mean)을 사용하되, 1호에서 100호까지 호수 증가가 불연속적이고 캔버스의 크기 역시 비례관계가 아닌 호수표 기준 캔버스에 있어서는 가격을 호수로 나눈 값이 호수표에 따르는 캔버스 크기 변화에 지나치게 크거나 작게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하여 중앙값(median)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UBS와 Art Basel이 발행하는 Art Market Report나 미술품 시장 또는 미술품 가치에 대한 해외 연구 사례 등에서도 미술품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평균값과 중앙값을 모두 사용하면서 그 중 전년도 미술시장의 규모를 설명하는 데에는 중앙값(median)이 더 대표성 있는 값이라고 설명한 내용, 미술품 낙찰가격을 면적에 대하여 나눈 후 그 평균값과 중앙값을 함께 사용하여 가치를 산정하고자 한 복수의 해외 연구 사례들을 검토하여 평균값과 중앙값이 미술품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합리적 수단이 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주2) 내부평가 기준환율(1,391원/USD)에 따라 원화로 환산된 내재가치 추정액 범위는 787,604,647원 ~ 792,285,780원이 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그룹의 단위면적(㎠)당 가격 평균값(average)과 중앙값(median)을 기초자산 면적으로 환산하여 추정한 기초자산 내재가치 추정액[E,F]이 기초자산 취득가액[G]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기초자산의 취득가격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위에서 제시한 면적에 대한 평균값, 호에 대한 중앙값 외에 면적에 대한 중앙값, 호에 대한 평균값을 추가로 분석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자산 내재가치 추정액과 기초자산 취득가격의 비교			
중앙값(㎠)[A]	환산 면적[B]	내재가치 추정액(USD) [E=AxB]	기초자산의 환산가치 (USD)[G]
46.83	12,658.50	592,797.55	431,344.36
평균값(호)[C]	환산 호수[D]	내재가치 추정액(USD)[F=CxD]	
8,925.70	60	535,542.00	

이 경우에도 기초자산 내재가치 추정액[E,F]이 기초자산 취득가액[G]을 초과하며 기초자산 취득가격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기초자산 취득금액 적절성에 대한 당사의 결론

내부평가 기준일 현재 작가의 작품이 공동사업의 기초자산으로 삼기에 충분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 증권 발행사례를 분석하였을 때 기초자산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기초자산 취득가격은 적절하게 결정되었으며 경쟁력 있는 공동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사가 기초자산을 동일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분석한 결과 기초자산의 예술성은 유사 작품들에 비하여 낮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으로 선정된 거래사례들에 대한 분석에서 도출된 기초자산 내재가치에 비하여 기초자산 취득가격이 낮으므로, 기초자산 취득가격은 적절하게 결정되었으며 경쟁력 있는 공동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기초자산의 매도인의 수준 및 신원을 포함한 기초자산의 확실한 유통경로(provenance)는 기초자산의 진위에 대한 보증과 소유권 이전을 증빙하는데 충분하며, 추후 공동사업의 청산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합니다.

마. 기초자산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

(1) 외부평가기관

당사는 기초자산에 대하여 2차에 걸친 외부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초자산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단계	평가자	비고
1차 외부평가	(주)제일감정평가법인	(주1)
2차 외부평가	한국기업평가(주)	(주2)

(주1)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기초자산의 평가를 담당한 감정평가사는 미술 전공자이며, 미술품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경력이 있습니다.
(주2) 국내 및 해외 미술품 시장 산업분석, 기초자산 작품 및 작가 분석, 거래사례 데이터 분석, 기초자산 가치평가를 용역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산의 진위에 대한 소견서를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당사가 선정한 외부평가기관들은 기초자산의 가치나 진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충분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평가기관	전문성
(주)제일감정평가법인	- 국토교통부 선정 13대 대형감정평가법인 - 담당 : 이사/감정평가사(감정평가경력 8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졸 - 거래사례법
한국기업평가(주)	- 국내 및 해외 미술품 시장 산업분석, 기초자산 및 작가 분석, 거래사례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기초자산 가치평가 - 거래사례법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 기초자산의 진위에 대한 소견서

(2)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상세 내용

가) 글로벌 미술 시장에 대한 조사

외부평가기관 중 한국기업평가(주)가 조사한 글로벌 미술시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가 조사한 글로벌 미술시장 요약

2. 글로벌 미술품 시장

2.1. 시장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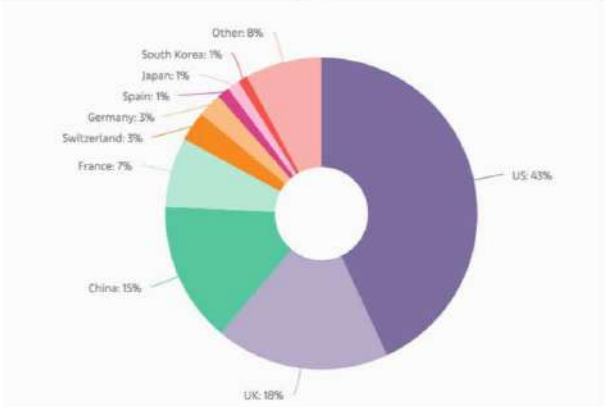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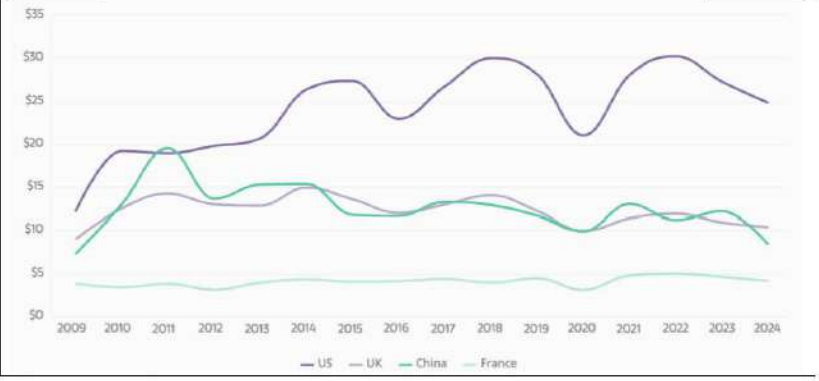
○ **글로벌 미술품 판매시장 국가별 점유율은 미국, 영국, 중국 순이며 한국 점유율은 1% 상당**

미술품 판매시장은 아트 딜러 부문과 미술품 경매 부문으로 나눌 수 있음. 2024 년 고물가, 지정적 리스크 등의 요인으로 전세계 미술 판매금액는 전년대비 12% 감소하여 575 억 USD 수준을 기록하였음.

2024 년 미술품 판매 시장의 국가별 점유율은 미국이 점유율 43%로 1 위를 차지하였으며, 2 위 영국 18%, 2 위 중국 15% 수준을 기록하여, 영국이 중국을 제치고 2 위로 상승하였음.

글로벌 미술품 판매시장 현황

(단위 : %, 십억 USD)

구분	내용
지역별 비중(%)	
지역별 시장규모 (십억 USD)	

자료 : The Art Basel & UBS 'Art Market Report 2025'

글로벌미술시장_01



글로벌미술시장_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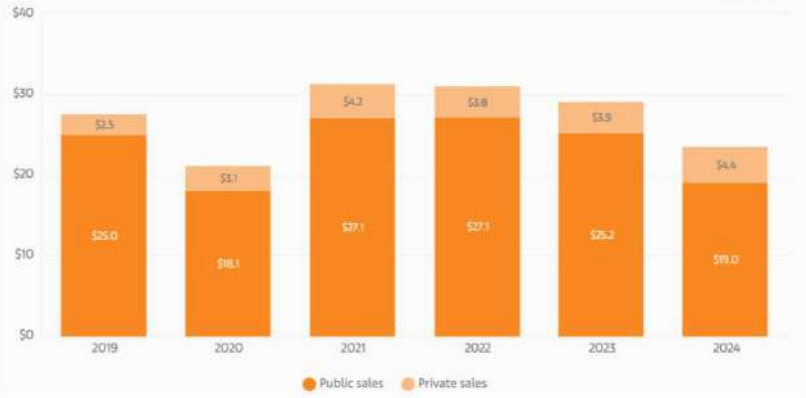
○ **글로벌 미술품 경매시장 규모는 '24 년 234 억 USD 규모로 전년대비 19.6% 감소**

2024 년 글로벌 미술품 경매시장(Public Auction+Private Sales)은 234 억 USD 의 시장규모를 기록하며, 2023 년 291 억 USD 대비 19.6% 감소하였고, 팬데믹 이전인 2019 년 275 억 USD 대비 14.9% 감소하였음.

한편, 글로벌 미술품 경매 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31% 수준으로 1 위를 기록하였으며, 중국 25%, 영국 14% 등을 기록하였음.

글로벌 미술품 경매시장 매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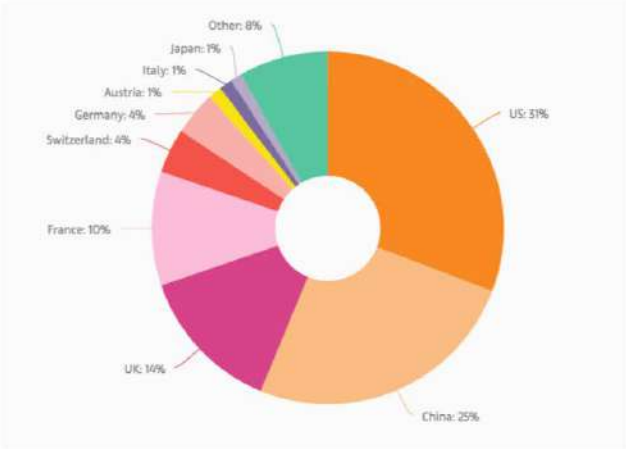
(단위 : 십억 USD)



자료 : The Art Basel & UBS 'Art Market Report 2025'

글로벌 미술품 경매시장 국가별 점유율

(단위 : %)



자료 : The Art Basel & UBS 'Art Market Report 2025'

글로벌미술시장_03



글로벌미술시장_04

(주)제일감정평가법인 역시 글로벌 미술 시장을 조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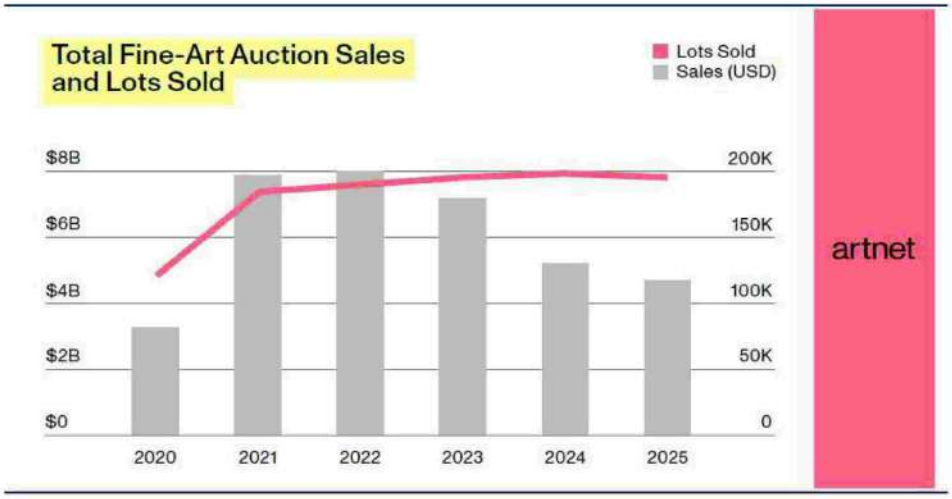
(주)제일감정평가법인이 조사한 세계 미술품 시장

III. 미술품 시장 동향

1. 세계 미술시장(2025 상반기, 출처 : Artnet 자료 재구성)

1) 전체 미술품 경매 시장 매출액 지속적 감소

2025년 상반기 미술품 경매 시장 매출액은 47억$(USD)로 전년 동 기간 대비 8.8% 감소하였으나, 2024년 상반기와 2023년 상반기 사이의 하락 폭인 28% 대비 감소 폭이 둔화함. 판매 수량은 2.4% 감소하였으며, 거래된 작품의 평균 가격은 24,224$(USD)로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주된 원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규칙한 관세 협상이 세계 무역에 영향을 미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그로 인한 수요의 위축 및 4천만$(USD) 이상 고가 작품 거래의 감소를 들 수 있음.



세계미술시장_01



위와 같은 외부평가기관의 글로벌 미술시장에 대한 조사에서, 글로벌 미술시장이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 작가의 위상 및 기초자산의 유통경로(provenance)를 보았을 때 글로벌 미술시장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내 미술 시장에 대한 조사

외부평가기관인 한국기업평가는 국내 미술시장과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을 조사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가 조사한 국내 미술 시장

제 1 장 미술품 시장 산업분석

1. 국내 미술품 시장

1.1. 시장 개요

1.1.1. 시장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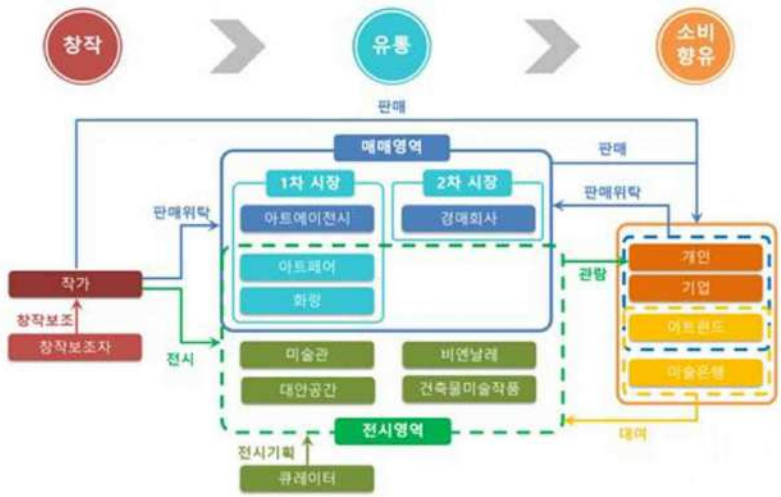
○ **미술품 시장은 ①창작단계, ②유통단계, ③소비단계의 유통구조로 1·2 차 시장 존재**

미술작품의 유통구조는 창작단계에서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작가, 유통단계에서 1 차 시장으로 분류되는 화랑(Gallery)·아트페어(Art Fair) 및 2 차 시장으로 분류되는 경매회사(Art Auction), 소비단계에서 최종적인 소비자인 개인, 법인 등으로 구성됨.

유통과정에서 비판매 전시목적의 미술관, 건축물 미술작품 등 전시영역이 존재하며, 소비과정에서도 최근 아트펀드, 미술은행 등 미술품의 재판매, 대여, 보관 등의 새로운 파생영역이 등장하였음.

미술품은 작가와 최종소비자 간의 직접 매매보다는 화랑, 아트페어 등의 1 차 시장을 경유하여 최초로 소비되었다가, 경매회사 등의 2 차 시장에 위탁하여 재판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음.

미술품 시장 구조 및 주요계약 유형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내미술시장_01



국내미술시장_02

1.2. 시장 규모

1.2.1. 거래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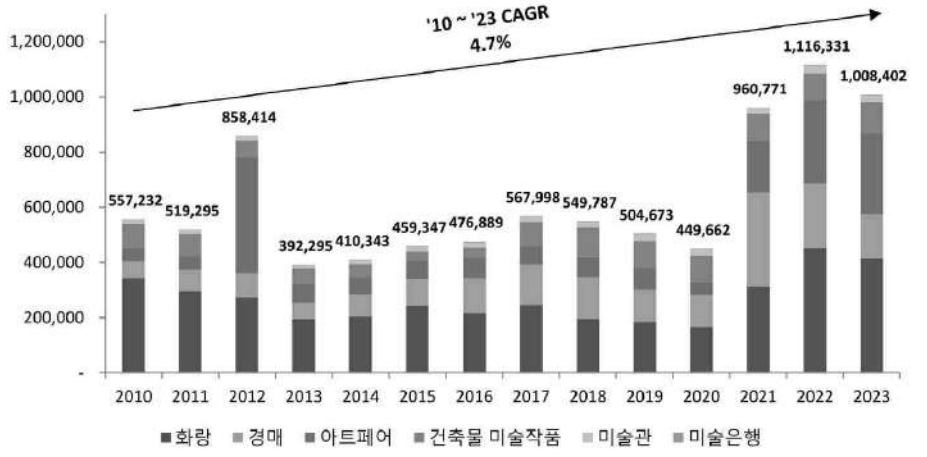
○ **미술품 유통시장규모는 '10 년 5,572 억원에서 '23 년 총 1 조 84 억원까지 연평균 4.7% 증가**

국내 미술품 시장 규모는 2010 년 5,572 억원에서 2023 년 총 1 조 84 억원까지 연평균 4.7% 증가하였으며 2022 년 1 조원을 돌파하였음. 2021 년 이후 세계 3 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영국 프리즈(Frieze)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등 아트페어 열풍 및 미술 대중화로 급격한 매출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임.

2023 년 기준 세부적으로 화랑 4,166 억원(41.3%), 아트페어 2,958 억원(29.3%), 경매 1,572 억원(15.6%) 등으로 구성됨. 미술 대중화에 따른 아트페어 시장의 성장뿐만 아니라, 아트페어를 개최하는 화랑 시장확대가 전체 성장에 기여한 반면 경매시장의 경우 2022 년 이후 규모가 감소하였음.

국내 영역별 미술 유통시장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화랑	344,596	296,308	275,136	194,504	204,841	240,655	215,825	244,663
경매	58,595	78,238	85,274	59,216	77,868	98,472	127,798	149,282
아트페어	48,387	46,446	420,212	66,113	62,427	67,388	73,593	63,803
건축물 미술작품	89,564	83,557	62,051	58,718	51,017	34,323	36,805	87,932
미술관	14,504	13,236	14,233	12,070	12,160	15,759	20,122	19,568
미술은행	1,586	1,510	1,508	1,674	2,030	2,750	2,746	2,750
합계	557,232	519,295	858,414	392,295	410,343	459,347	476,889	567,998
중복 제외 거래금액	483,563	472,259	440,518	324,927	349,646	390,382	396,469	494,243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CAGR
화랑	195,387	185,161	165,773	314,224	450,640	416,610	1.5%
경매	151,147	115,820	115,298	338,463	234,523	157,216	7.9%
아트페어	73,290	80,256	46,890	188,966	302,000	295,778	14.9%
건축물 미술작품	106,454	97,361	96,537	97,092	97,953	112,987	1.8%
미술관	20,259	22,828	22,139	19,476	28,447	22,886	3.6%
미술은행	3,250	3,247	3,025	2,550	2,768	2,925	4.8%
합계	549,787	504,673	449,662	960,771	1,116,331	1,008,402	4.7%
중복 제외 거래금액	448,224	414,673	384,859	756,270	806,597	692,832	2.8%

주) 유통경로 간의 중복거래 금액을 제외한 순액의 경우 영역별 시계열자료 미공시로 총액 기준으로 표기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시장조사 통계

국내미술시장_03



국내미술시장_04

1.3. 경매시장 현황

1.3.1. 일반현황

○ **국내 경매회사수는 2017 년 14 개에서 2023 년 12 개로 감소하여 대형업체 중심으로 재편**

국내 경매회사수는 2017 년 14 개에서 2023 년 12 개로 감소하여, 경쟁력을 보유한 대형업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임. 기간 내 경매 낙찰률은 50-60%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23 년 47.5% 수준을 나타냄.

경매 시장 일반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경매회사수(개)	12	14	10	9	9	11	12	12
종사자수(명)	199	252	233	231	225	260	299	275
경매개최수	425	514	480	518	493	556	562	565
경매 낙찰률(%)	62.1	50.8	57.4	58.8	59.2	61.4	47.2	47.5
작품판매금액(백만원)	127,798	149,282	151,147	115,820	115,298	338,463	234,523	157,216
판매작품수(개)	15,411	19,238	19,839	20,248	20,061	26,695	20,150	16,66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시장조사 통계

○ **작품판매금액 기준 회화 비중이 60-80%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 차지**

작품판매금액 기준 회화 비중이 60-80%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작품거래건수 기준으로는 회화비중이 50-60% 수준으로 나타나, 회화의 평균 판매단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경매 시장 작품 종류별 비중 현황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작품판매금액	회화	71.5	71.2	72.1	71.2	64.5	82.8	78.3	67.4
	판화	1.5	3.1	3.3	1.5	3.1	7.8	7.7	5.6
	사진	0.4	0.1	0.2	0.1	0.2	-	0.0	0.1
	조각설치	1.0	2.9	3.2	1.1	2.2	0.3	3.4	2.7
	미디어아트	4.9	0.7	1.1	0.4	0.3	-	0.1	0.1
	현대공예	1.7	1.3	1.3	1.6	1.4	0.1	0.1	0.2
	전통회화	9.9	8.4	11.1	18.5	18.4	5.6	5.6	7.1
	골동품 목기	7.5	8.8	7.3	4.3	7.4	2.3	4.3	16.5
	기타	1.5	3.5	0.4	1.2	2.6	1.0	0.3	0.5
작품거래건수	회화	-	44.7	53.9	59.6	50.0	56.0	62.7	60.7
	판화	-	10.9	6.5	3.2	10.8	18.4	14.3	12.6
	사진	-	0.5	0.5	0.1	0.2	0.1	0.1	0.5
	조각설치	-	2.9	2.5	1.7	2.2	1.5	1.8	3.0
	미디어아트	-	0.6	0.2	0.3	0.1	-	0.1	0.0
	현대공예	-	6.0	2.2	4.8	2.1	2.2	0.9	3.4
	전통회화	-	16.8	24.9	18.4	17.9	11.8	10.1	8.0
	골동품 목기	-	13.7	8.0	7.6	12.3	7.4	8.4	8.5
	기타	-	3.8	1.2	4.4	4.4	2.6	1.5	3.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시장조사 통계

국내미술시장_05



국내미술시장_06

1.3.2. 세부현황

가격대별 경매 낙찰 현황은 500 만원 미만 작품의 낙찰 비중이 80%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1 억원 이상 작품의 낙찰비중은 2% 수준으로 파악됨.

국내 미술품 가격대별 경매 낙찰 현황

(단위 :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1H
500 만원 미만	85.5	86.0	75.7	76.4	81.9	77.5	75.7
500 만원 이상 1,000 만원 미만	5.3	5.2	7.9	8.4	6.0	7.3	7.9
1,000 만원 이상 6,000 만원 미만	7.4	7.1	12.4	11.8	9.0	11.8	12.8
6,000 만원 이상 1 억원 미만	0.6	0.6	1.8	1.7	1.3	1.8	1.5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1.0	0.9	1.9	1.4	1.4	1.5	2.0
5 억원 이상 10 억원 미만	0.1	0.1	0.3	0.2	0.2	0.1	0.1
10 억원 이상	0.1	0.0	0.1	0.1	0.1	0.0	0.0

자료 :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년 상반기 미술시장 분석 리포트

상반기 기준 경매 낙찰가 TOP 10 을 살펴보면 외국 작가의 경우 쿠사마 아요이, 마르크 샤갈, 국내 작가는 김환기, 이우환 등의 작품 낙찰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2025 년 상반기에는 이우환 'Dialogue'가 16 억원, 안중근 '녹죽' 9 억원 등에 낙찰됨.

국내 미술품 상반기 경매 낙찰가 TOP 10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1H			2024.1H			2025.1H		
	작가명	작품명	낙찰가	작가명	작품명	낙찰가	작가명	작품명	낙찰가
1	-	백자청화 오조룡문호	7,000	김환기	3-V-71 #203	5,000	이우환	Dialogue	1,600
2	단원 김홍도, 수월헌 임희지	죽하맹호도	3,900	이중섭	시인 구상의 가족	1,400	안중근	녹죽	940
3	-	백자대호	3,400	안중근	인심조석 변산색고금동	1,300	김창열	물방울 ABS N° 1	860
4	쿠사마야요이	Infinity-Nets Green (TTZO)	2,500	박서보	묘법 No. 10-78	1,000	박수근	아기 업은 소녀	800
5	안중근	용호지웅세기 작인묘지태	1,950	김창열	물방울 ABS N° 2	980	김환기	무제	780
6	-	백자대호	1,900	김창열	물방울	950	박수근	노상	650
7	김환기	북서풍 30-VIII-65	1,500	이우환	바람과 함께 S8708-5	950	마르크 샤갈	Profil au Bouquet	600
8	이우환	조응	1,300	-	두운지정화첩	850	이우환	조응	580
9	쿠사마야요이	Watermelon	1,300	윤형근	Umber '90-66	700	이우환	바람과 함께	490
10	이우환	바람과 함께	1,200	박래현	이른 아침	650	쿠사마 야요이	Hat	450

주) 고가 미술품 대다수는 대형업체인 케이옥션 및 서울옥션의 경매를 통해 낙찰

자료 :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년 상반기 미술시장 분석 리포트

국내미술시장_07



국내미술시장_08

○ **국내 메이저 경매사인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의 낙찰 규모는 457 억원으로 80.9% 비중**

25 년 상반기 가장 높은 낙찰률을 기록한 경매사는 마이아트옥션으로 63.3%의 낙찰률을 보임. 낙찰 총액 기준으로는 케이옥션이 252 억원으로 가장 높았음. 국내 메이저 경매사인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의 낙찰 규모는 457 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80.9%를 차지함.

2025 년 상반기 국내 경매사 낙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라이즈 아트	마이아트 옥션	서울옥션	아이옥션	에이옥션	칸옥션	케이옥션	토탈아트 옥션	합계
오프라인	출품작		286	494	995		455	625		2,855
	낙찰작		181	268	728		278	360		1,815
	낙찰률		63.3	54.3	73.2		61.1	57.6		63.6
	낙찰총액		5,496	17,880	2,024		941	23,111		49,453
온라인	출품작	977		2,121	1,243	981		1,058	774	7,154
	낙찰작	509		1,007	630	569		518		3,233
	낙찰률	52.1		47.5	50.7	58.0		49.0		45.2
	낙찰총액	1,371		2,556	174	752		2,115		6,969
합계	출품작	977	286	2,615	2,238	981	455	1,683	774	10,009
	낙찰작	509	181	1,275	1,358	569	278	878	-	5,048
	낙찰률	52.1	63.3	48.8	60.7	58.0	61.1	52.2	-	50.4
	낙찰총액	1,371	5,496	20,437	2,198	752	941	25,227	-	56,421

자료 :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년 상반기 미술시장 분석 리포트

'25 년 상반기 가장 높은 낙찰총액을 기록한 경매는 서울옥션의 "CONTEMPORARY ART SALE" 69 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며, 대부분 서울옥션, 케이옥션 등 대형사의 오프라인 경매임.

2025 년 상반기 낙찰총액 TOP 10 경매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경매명	경매사	판매방식	낙찰총액
1	CONTEMPORARY ART SALE	서울옥션	오프라인	6,927
2	2025 년 3 월 19 일 메이저 경매	케이옥션	오프라인	5,632
3	2025 년 4 월 23 일 메이저 경매	케이옥션	오프라인	4,359
4	제 183 회 미술품 경매	서울옥션	오프라인	4,112
5	2025 년 1 월 22 일 메이저 경매	케이옥션	오프라인	3,624
6	제 182 회 미술품 경매	서울옥션	오프라인	3,540
7	2025 년 6 월 25 일 메이저 경매	케이옥션	오프라인	3,309
8	제 184 회 미술품 경매	서울옥션	오프라인	3,302
9	제 55 회 마이아트옥션 경매	마이아트옥션	오프라인	3,261
10	2025 년 2 월 19 일 메이저 경매	케이옥션	오프라인	3,127

자료 :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년 상반기 미술시장 분석 리포트

국내미술시장_09

(주)제일감정평가법인 역시 국내 미술품 시장을 조사하였습니다.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조사한 국내 미술품 시장 요약

2. 국내 미술시장(2025 상반기, 출처 : 예술경영지원센터)

1) 2025년 상반기 경매 시장 결산

'25년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규모는 8개 경매사에서 진행한 112회의 국내외 온·오프라인 경매에서 출품된 10,009점의 작품 중 5,048점이 낙찰되어, 낙찰률 50.4%, 낙찰총액 564.2억 원을 기록함.

낙찰총액은 직전 반기 461.1억 원 대비 22.4%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 666.3억 원 대비 약 15.3% 감소했으며, 낙찰률은 직전 반기 대비 약 4.6%p, 전년 동기 대비 2.9%p 감소함.

'25년 상반기 최고가 작품은 서울옥션 'CONTEMPORARY ART SALE(4.22.)'를 통해 16억 원에 낙찰된 이우환 <Dialogue> 임.



국내미술시장_01



국내미술시장_02

3) 연도별 상반기 경매 최고가 비교

'23년 최고 낙찰가가 70억 원에 도달하여 정점을 기록했으나, '25년에는 최고 낙찰액이 10억 원 대로 크게 하락함.

23년~25년까지 3년 연속으로 미술품 경매 낙찰가 TOP 10에 등장한 작가는 김환기, 이우환임.

2023~2025년 상반기 경매 낙찰가 TOP10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상반기)		2024(상반기)		2025(상반기)	
	작가명	작품 낙찰가	작가명	작품 낙찰가	작가명	작품 낙찰가
1	-	백자청화오조룡문호 <7,000>	김환기	3-V-71 #203 <5,000>	이우환	Dialogue <1,600>
2	-	단원 김홍도, 수월현 임희지<죽하맹호도> <3,400>	이종섭	시인 구상의 가족 <1,400>	안중근	녹죽(녹죽) <940>
3	-	백자대호 <3,400>	안중근	인심조석변산색고금동 (人心朝夕變山色古今同) <1,300>	김창열	물방울 ABS N°1 <940>
4	쿠사마 야요이	Infinity-Nets Green (TTZO) <2,500>	박서보	묘법 No. 10-78 <1,000>	박수근	아기 업은 소녀 <800>
5	-	용호지웅세기작인묘지태(龍虎之雄勢豈作蚓描之態) <1,950>	김창열	물방울 ABS N°2 <980>	김환기	무제 <780>
6	-	백자대호 <1,900>	김창열	물방울 <950>	박수근	노상 <650>
7	김환기	북서풍 30-VIII-65 <1,500>	이우환	바람과 함께 S8708-5 <950>	마르크 샤갈	Profil au Bouquet
8	이우환	조응 <1,300>	-	두운지정화첩 <850>	이우환	조응 <580>
9	쿠사마 야요이	Watermelon <1,300>	윤형근	Umber '90-66 <700>	이우환	바람과 함께 <490>
10	이우환	바람과 함께 <1,200>	박래현	이른 아침 <650>	쿠사마 야요이	Hat <450>

국내미술시장_03



위와 같은 외부평가기관들의 국내 미술품 시장 분석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미술품 시장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기초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조사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는 기초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통화의 대 원화 환율과 주요 물가지수 등을 별도로 조사하였습니다.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조사한 주요 통화의 대 원화 환율과 주요 물가지수 등

IV. 감정평가액 산출

1. 주요 통화의 대원화 환율

1) 주요 통화 월 평균 환율

[대 원화(KRW), 월 평균 매매기준율]

구분	2023년						2024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원/USD	1,266.30	1,318.47	1,329.47	1,360.89	1,310.39	1,308.98	1,329.57	1,331.74	1,330.89	1,357.83	1,365.39	1,380.13	1,388.38	1,354.15
원/¥(100엔)	911.74	911.40	901.65	903.72	874.28	904.83	906.71	891.08	888.12	869.97	875.88	874.32	875.30	925.99
원/유로	1,421.87	1,439.04	1,422.61	1,427.31	1,418.59	1,422.28	1,441.12	1,437.52	1,447.27	1,465.77	1,476.24	1,486.57	1,489.38	1,491.48
원/HKD	164.52	168.49	169.80	172.63	167.84	166.99	169.33	170.27	170.10	174.67	174.80	176.70	177.14	173.67

구분	2024년				2025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원/USD	1,334.82	1,361.00	1,393.38	1,434.42	1,466.79	1,448.66	1,468.95	1,444.31	1,394.49	1,389.95	1,375.22	1,389.86	1,391.83
원/¥(100엔)	929.25	906.77	907.16	934.25	927.97	952.59	977.77	999.96	962.28	944.94	936.97	941.32	941.20
원/유로	1,481.80	1,481.35	1,482.93	1,502.63	1,504.11	1,505.44	1,575.91	1,617.71	1,571.45	1,574.56	1,607.95	1,617.03	1,633.09
원/HKD	171.30	175.16	179.11	184.51	187.05	185.73	187.45	186.01	178.65	174.17	175.20	177.52	178.75

2) 주요 통화 일 평균 환율

[대 원화(KRW), 일 평균 매매기준율]

구분	2025년								
	09/02	09/03	09/04	09/05	09/08	09/09	09/10	09/11	09/12
원/USD	1,392.40	1,392.20	1,393.80	1,392.70	1,391.80	1,390.40	1,386.60	1,387.60	1,389.40
원/EUR	1,630.78	1,619.76	1,625.17	1,622.43	1,629.45	1,635.74	1,623.85	1,624.05	1,630.88
원/HKD	178.59	178.31	178.67	178.53	178.48	178.41	178.04	178.13	178.39

구분	2025년								
	09/15	09/16	09/17	09/18	09/19	09/22	09/23	09/24	09/25
원/USD	1,388.70	1,389.50	1,382.30	1,380.00	1,384.60	1,393.60	1,394.00	1,393.80	1,394.90
원/EUR	1,628.67	1,634.54	1,640.58	1,631.44	1,632.10	1,635.95	1,645.13	1,646.57	1,638.17
원/HKD	178.49	178.60	177.67	177.43	178.03	179.25	179.41	179.26	179.32

구분	2025년								
	09/26	09/29	09/30	10/01	10/02	10/10	10/13	10/14	10/15
원/USD	1,400.40	1,411.60	1,402.20	1,403.20	1,406.00	1,401.90	1,420.50	1,427.70	1,428.40
원/EUR	1,633.99	1,652.35	1,644.50	1,647.71	1,650.08	1,620.60	1,649.20	1,651.14	1,657.52
원/HKD	179.95	181.44	180.15	180.30	180.69	180.15	182.53	183.52	183.74

환율과물가지수_01



환율과물가지수_02

라) 작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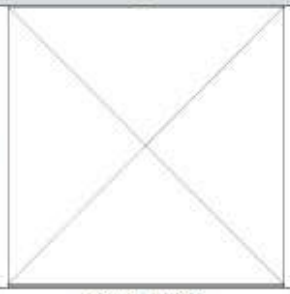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는 동일 작가의 최근 10년간 거래 동향, 최근 거래 사례와 거래 사례 분석, 비교 거래사례 선정, 가치형성 요인 비교의 과정을 거쳐 기초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기초자산 감정평가액 및 감정평가액 결정 과정

4. 감정평가액 산출

1) 비교 거래사례 선정

상기 조사된 유사 거래사례 중 대상물건과 주제, 크기, 제작 시기, 기법 등에서 유사하여 비교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아래와 같음.

구분		사례 기호 3	사례 기호 4
이미지			
거래일		2023.08.29	2023.06.28
작품명		Work	Work
제작연도		1984	1989
재질		Oil on canvas	Oil on canvas
규격(세로 x 가로 ㎝)		104 x 104	130.3 x 193.9
면적(㎡)		10,816.00	25,265.17
거래가액	낙찰가(원)	658,900,000	1,165,000,000
	낙찰 단가(원/㎡)	60,919	46,111
경매사/도시		Seoul Auction / Seoul	K-Auction / Seoul
Lot Number		34	48

※기준시점 최근 15일 평균 원/미국달러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였으며, 대한민국 내 낙찰사례의 경우 원화는 낙찰 시 원화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음.

감정평가_01



감정평가_02

V. 감정평가액 결정

1. 감정평가액

일련번호	구분	수량	감정평가액(원)
1	회화	1점	690,000,000

2. 결정 의견

대상물건은 유영국(作)의 회화로서 대상물건의 제 특성을 감안하고, 미술품 시장 동향, 최근 동 작가 작품의 낙찰가격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금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기 금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감정평가_03

한국기업평가의 기초자산 가치평가액 및 가치평가액 도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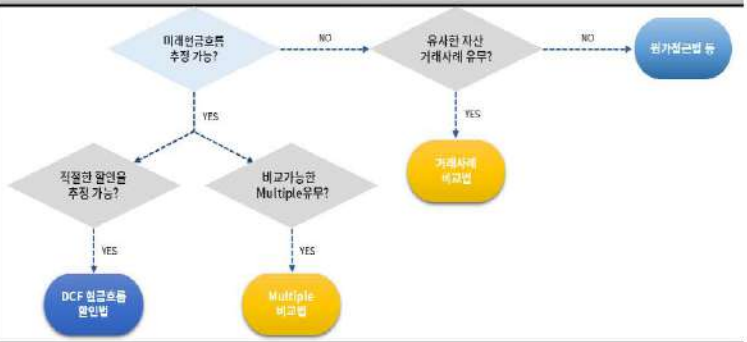
2. 본건 미술품 가치평가

2.1. 평가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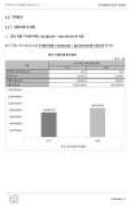
○ **본건 적용 평가방법론**

본건 미술품 지적재산권의 평가방법은 미래현금흐름에 의한 추정이 제한되고, 유사 자산 거래사례에 대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선정하였음.

본건 적용 평가방법론

평가방법	적용근거
평가방법론	
DCF 현금흐름 할인법	-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액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
Multiple 비교법	- 동일하거나 비교가능한 자산 혹은 기업이 존재하여 유사한 자산 또는 기업의 토대로 산정된 시장배수(Multiple)를 이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평가
거래사례 비교법	- 대상자산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자산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자산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을 통해 가치를 산정
원가접근법	- 대체의 경제 원리에 기초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있는 해당 자산을 개발하거나 구입하는 원가를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

가치평가_01



가치평가_02

○ **본건 거래사례 분석**

본건 작품 거래사례 분석결과 지난 5 개년 기간별 면적당 낙찰가격은 '23 년 및 '25 년 49.0 USD/㎠, '21 년 및 '22 년 41.8 USD/㎠ 등으로 파악되어 본건 작품 면적을 감안한 추정 가치평가액은 735,283,930 ~ 862,790,702 원 수준으로 평가됨.

본건 거래사례 분석

구분	거래건수	면적당 가격 (USD/cm²)	면적(㎠)	추정 공모가액	
				USD	원
비교사례	9	45.4	12,658.5	574,434	799,037,316
'23/25 년(2 개년)	4	49.0	12,658.5	620,267	862,790,702
'21/22 년(2 개년)	5	41.8	12,658.5	528,601	735,283,930

주 1) 회사제시 본건 작품 매입시점 기준 환율 1,391 원/USD 기준 환산
주 2) 2024 년은 거래사례 미상

가치평가_03



가치평가_04

마) 진위에 대한 소견

(사)한국화랑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초자산이 유영국의 작품으로 진품인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그에 대하여 감정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한국화랑협회의 감정 소견



감정소견서 Report of Authenticity

355766

감정번호 0110W2H53007

작가명 Artist Name	유영국
명제 Title	-
제작연도 Year	1984
재료 및 기법 Medium and Technique	캔버스에 유채
크기 Size	97.0x130.5 cm
참고사항 Reference	
감정 소견 Deemed Authentic	眞
감정 시가 Fair Market Price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의 감정에 의거, 진품 으로 본 소견서를 발행함.
This Report of Authenticity is issued by Authentication & Appraisal Committee of Galleries Association of Korea.

서명 Signature

20 25 년 10월 1 일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감정소견서_한국화랑협회

(5) 외부평가기관의 기초자산 평가 결과 요약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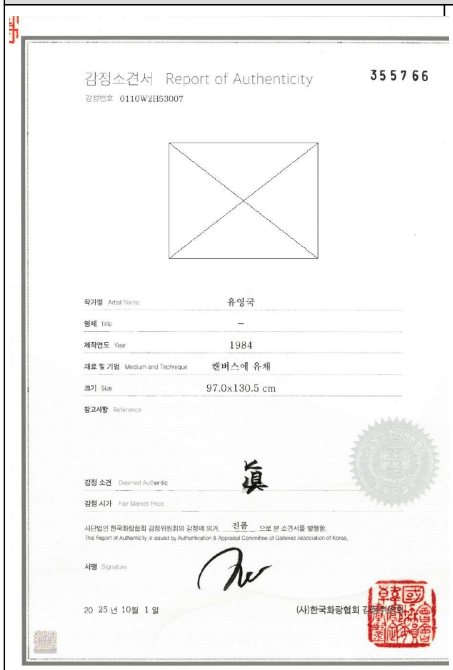
기초자산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 요약

평가기관	거래사례수(전체) 직접 비교대상	평가액(원)	비고
(주)제일감정평가법인	87 2건(최종 1건)	690,000,000	- 담당평가사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졸 (감정평가경력 9년)- 거래사례법
한국기업평가(주)	76(유찰 제외시 57) 9	735,283,930 ~ 862,790,702	- 국내 및 해외 미술품 시장 산업분석, 기초자산 및 작가 분석, 거래사례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기초자산 가치평가 - 거래사례법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의 감정 결과, 상기 작품은 **진품**으로 소견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감정 소견: **진**		

기초자산의 취득금액 600,000,000원은 기초자산의 내재가치나 외부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등보다 낮거나 하단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모총액 660,000,000원 역시 기초자산의 내재가치나 외부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등보다 낮거나 하단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은 외부평가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진품이라는 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들의 평가서와 보고서 원문은 첨부서류 「기초자산 관련 외부기관의 평가의견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저작물인 기초자산의 사진 등이 삭제되지 않은 감정평가서는 당사가 제공하는 URL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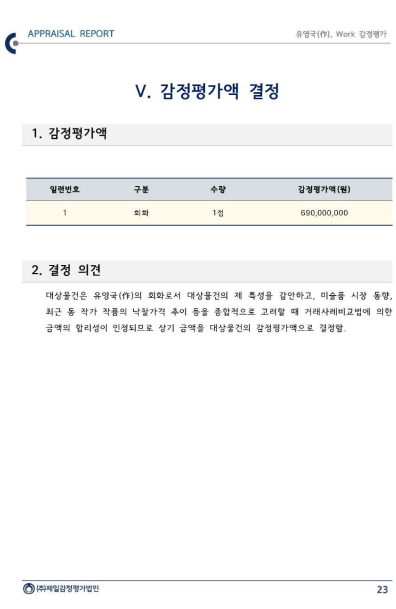
[감정평가서]



감정소견결과



가치평가결과



감정평가결과

당사는 ㈜제일감정평가법인,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기초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재한 감정평가서 및 가치평가 결과 보고서, (사)한국화랑협회로부터의 감정소견서 등을 받아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바. 기초자산 매도인에 관한 정보

위 기초자산의 매도인은 개인 1인(“매도인”으로만 표시합니다)이며, 매도인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 당사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도장과 일치하는 인감증명서 등을 각 제시하여 당사자 관계를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기초자산 매도인	
매도인	홍**
당사의 취득가액(원, 합계)	600,000,000
실명확인조치(KYC)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추가 확인조치(CDD)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전자공시시스템

당사는 매도인 제시 자료들을 확인하는 것과 별도로 매도인 주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매도인의 주소지 정보 등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각 법인등기부등본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등과도 대조하여 거래상대방으로서 매도인의 신뢰성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기초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매도인과 체결하는 계약의 주요 조건으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기초자산을 취득한다는 사실,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매도인으로부터 확인하거나 당사가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나 금융당국 등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제출 또는 기재를 요청 받는 사항을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매도인의 사생활 보호와 작품의 예술적·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 기초자산의 진위성

(1) 기초자산의 유통경로(Provenance) 등

기초자산은 1985년 경 매도인이 구매한 후, 매매계약일까지 매도인이 계속 소유하며 보관한 것입니다.

(2) 기초자산에 대한 전시이력, 보증, 진위감정 등

당사는 기초자산이 2025년 5월 22일부터 2025년 7월 16일까지 진행된 갤러리현대 “55 YEARS: A LEGACY OF MODERN & CONTEMPORARY KOREAN ART - PART II” 전시에 전시된 작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1985년 경 매도인이 기초자산을 구매하였다는 구매처의 확인을 서면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에 사용된 캔버스와 물감, 기초자산의 작가와 그 작가의 유사한 연대 작품과의 비교, 기초자산에 기재된 서명 등에 대한 필체 비교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에 대하여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로부터 진위 감정을 의뢰하였고, 진품(“진”)이라는 취지의 감정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의 감정 결과 상기 작품은 **진품**으로 사료됩니다.

최종 결과 : **진**

기초자산은 매도인이 취득한 이후 당사에 매도할 때까지 소유권 변동 없이 직접 소장하고 있었고 당사가 보유한 미술품 전문 인력들이 기초자산 매도인과 미술품 유통 경로에 대하여 제공한 직접적 정보와 서비스, 당사가 보장하는 거래에 있어서의 투명성 및 당사 대표이사 등 주요 인력이 보유한 미술품 유통업계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기초자산 확인 및 취득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기초자산의 상태

기초자산의 상태는 작가 작품에서 대체로 나타나는 특유의 모습으로, 대체로 적정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사용한 재료 및 제작 기법에서 기인한 건조 균열이 특정 색면 위에서 전체적으로 관찰되고 붉은 색면 위에는 해당 균열 부위에 전반적인 색맞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작품 하단부 세로 방향의 균열이 관찰되고 화면 전반에 매트 바니시 처리가 되어 있으며, 화면 상단 푸른 색면 위에 이로 인한 광택의 변화가 관찰됩니다. 작품의 좌측 가장자리를 따라 미세한 채색층 박락이 있습니다. 지지체 후면에 작가의 이름과 제작연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4) 당사의 확인과 검증, 진위에 대한 판단

당사는 기초자산을 매도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9월 30일 전부터 2주간에 걸쳐 진위 감정 의뢰, 유통경로(Provenance) 조사, 매도인 검증을 면밀히 수행했으며 외부기관에 의뢰해 컨디션리포트를 발급받았습니다.
기초자산은 1985년 경 매도인 1인이 구매한 후, 매매계약일까지 매도인이 계속 소유하며 보관한 작품입니다. 당사는 1985년 경 매도인이 기초자산을 구매하였다는 구매처의 확인을 서면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2025년 5월 22일부터 2025년 7월 16일까지 진행된 갤러리현대 “55 YEARS: A LEGACY OF MODERN & CONTEMPORARY KOREAN ART - PART II” 전시에 전시된 작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에 사용된 캔버스와 물감, 기초자산의 작가와 그 작가의 유사한 연대 작품과의 비교, 기초자산에 기재된 서명 등에 대한 필체 비교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에 대하여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로부터 진위 감정을 의뢰하였고, 진품(“진”)이라는 취지의 감정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기초자산은 작가가 미술 작품을 최초로 전시한 갤러리에서 최초로 취득하여 장기간 소유권 변동 없이 처분하지 아니하고 보유한 컬렉터로부터 당사가 그 최초 취득에 대한 증빙과 보증까지 확인한 후 취득하는 작품으로, 당사는 유통경로에 있어 기초자산의 진위를 의심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당사가 현재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의 전시이력은 당사가 미술품 유통 전문 DB와 문헌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과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기초자산이 진품으로서 당사가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미술품으로, 일반투자자로부터 공모의 방식으로 모집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으로 삼기에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확인되고 검증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매매계약관련

매매 약정서

매매 약정서(이하 "본 계약")는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전문과 같은 목적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25년 [10]월 [14]일에 체결되었다.

1.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이하 "투게더아트")

2. 홍[redacted] (이하, "매도인")

(투게더아트와 매도인을 각각 "당사자", 당사자들을 총칭하여 "당사자들")

-전 문-

투게더아트와 매도인은 본 계약 제1조에 관련된 [작품명: Work] 미술작품 (이하 "작품(들)") 1점을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게더아트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합의한다.

-다 음-

제1조 [작품(들)의 내역] 작품(들)의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작품(들)의 상세한 내역>

작가명: 유영국 (Yoo Youngkuk, b. 1916)

작품명: Work

크기: 97 x 130.5 cm

재질: 캔버스에 유채(oil on canvas)

연도: 1984

SAMPLE

매매약정서

(주1) 본 증권신고서 및 본 증권고서에 첨부된 서류들에는 기초자산의 판매를 위하여, 기초자산을 특정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초자산의 복제물인 사진을 포함합니다. 기초자산의 진위 보증이나 가치 판단, 기초자산의 컨디션 리포트(Condition Report) 등에 관련된 사항 등은「제1부 II. 9. 기초자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URL 주소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명부 확정 이후에는 해당 URL에 접근하기 위하여 증권을 배정 받은 투자자임을 확인하는 로그인 절차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10. 기초자산의 보관·관리 관련

(1) 기초자산의 보관·관리 방법

당사는 공동사업 참여자인 (주)케이옥션과 미술품 보관계약을 체결하여 (주)케이옥션이 제공하는 미술품 전문 수장고인 '케이아트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자산을 보관합니다.

케이아트스페이스 주요사항	
보안 및 출입관제	각 호실 내부 CCTV에 의한 실시간 모니터링
	소재지 건물 외부 전체 CCTV 설치 및 24시간 상주 경비
	전문 보안업체(세콤)에 의한 각 호실별 개별 출입 관제
	이중 철문 및 격벽 시스템
소방	(미술품을 보호할 수 있는) 하론가스 소방 시스템
	난연 소재 내장재(카페트, 벽돌, 페인트 등) 시공
보관	항온항습기
미술품 관리	K-Office에 의한 미술품 입고 및 출고 관리
보험	케이옥션과 동일 조건의 미술관 보험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기초자산의 가치 상승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전시 또는 판매 목적의 전시 외에는 별도로 기초자산에 대하여 영리 목적의 미술품 렌탈업/대여업을 운영하거나 겸영하지 아니합니다.

공동사업 참여자인 (주)케이옥션이 운영하는 케이아트스페이스에서 보관되는 당사의 기초자산은 (주)케이옥션과 동일한 미술관 보험에 부보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표제	내용
1	Policy Number 증권번호	*-2025-******
2	Policy Holder 보험계약자	(주) 케이옥션
3	Insured 피보험자	(주) 케이옥션
4	Ensured exhibition, auction, and storage places 담보구역	(케이옥션 및 케이아트스페이스 포함, 세부 담보구역 미공개)
5	The Property Insured 보험가액	1,700억원
6	General Conditions 기본 조건	Commercial Insurance Coverage for Museums and Cultural Institutions with Property Damage Only(재산상 손해에 한정한 미술관 및 문화재단을 위한 보험)

케이아트스페이스 내부

■ 개 요

3) 내부 사진



복도

8

첨부_케이아트스페이스 소개서_8

■ 개 요

3) 내부 사진



수장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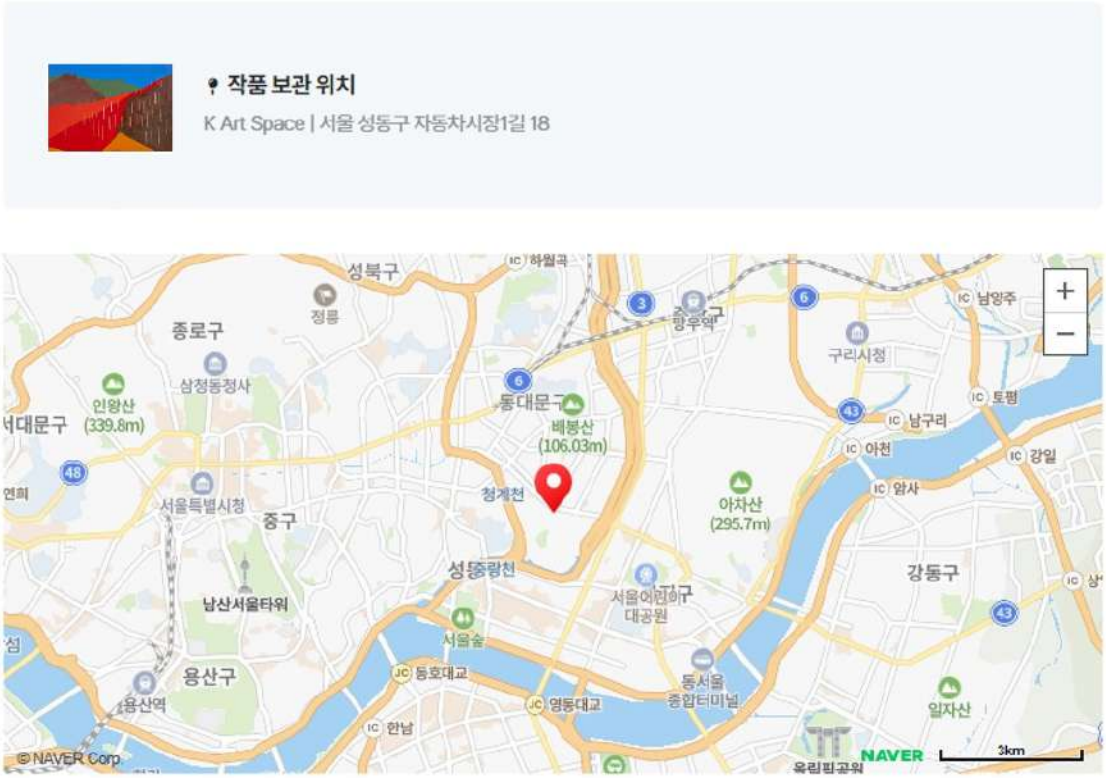
9

첨부_케이아트스페이스 소개서_9



(2) 기초자산의 보관·관리 관련 투자자·공동사업자의 권한 및 의무

공동사업 참여자인 (주)케이옥션이 운영하는 케이아트스페이스에서 보관되는 기초자산은 (주)케이옥션과 동일한 미술관 보험에 부보됩니다. 해당 보험은 (주)케이옥션의 도산사유가 발생하여도 보험기간 내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보관장소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당사는 기초자산의 보관장소를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기초자산 보관 위치 확인 화면(예시)
 작품보관위치_게시례

미술품 보관과 관련된 계약의 세부 내용, 보관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방실에 대한 정보는 거래상대방과의 비밀유지 약정, 미술품 보관에 따르는 보안 정책 등으로 별도로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구획으로 분리된 케이아트스페이스에서 기초자산은 당사만이 활용하는 특정한 호실에 보관되며, 1개의 호실은 그 보관방식에 따라 300점 정도까지의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구획분리된 호실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당사 기초자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으로, 당사가 이용하지 않는 동안 다른 호실 또는 화재나 파손 등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당사의 기초자산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는 각 기초자산에 대하여 부여된 번호를 바탕으로 미술관 보험에 부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사는 공동사업의 청산시까지 미술품 보관료와 보험료를 당사의 부담으로 지출합니다.

11. 기초자산의 처분에 관련된 사항

(1) 기초자산의 처분방법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 당사에 위임된 권한으로 기초자산의 처분시기와 처분 상대방을 결정합니다. 당사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에서 제시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업 참여자나 거래상대방을 결정합니다. 당사는 5년 이내에 기초자산을 처분하나 부득이한 경우 청산기간이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제24조(공동사업 운영자의 업무 및 권한)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기한 기초자산의 물색・취득・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 등 공동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역할, 그에 필요한 일체의 처분행위 및 사실행위를 수행한다.
1. 기초자산의 물색・취득・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
2. 증권의 모집・배정
3. 투자자명부의 확정・작성・변경
4. 증권 등본·사본, 투자설명서의 작성・열람・교부
5. 증권의 양도 및 양수 수단의 제공 및 유지
6. 처분손익의 지급
7. 기타 본 투자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 수행으로 인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공동사업 참여자(이하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보수・비용・수수료를 공동사업 참여자에게 우선 지급하거나 공동사업의 처분손익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26조 (공동사업 참여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선정기준)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 참여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선정에 있어 공동사업 참여자나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황, 규모, 기초자산에 대한 전문성, 연혁과 기존 거래이력 등 발생가능한 리스크가 과다하지 않은지를 고려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동사업 참여자 또는 전문가인 제3자 등을 이용할 때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수료 등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지를 고려한다. 이 때, 비용과 수수료 등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거래 상대방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높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공동사업 참여자 또는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유형(미술품 전시 판매 또는 경매 판매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기초자산의 매각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한다.

제27조(공동사업 운영자의 선관주의 의무)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취득・보관・관리・처분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초자산이 공동사업 운영자의 재무상태나 신용상태와 분리되어 유지・보관・관리・처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가 공동사업 운영자와 공동사업 운영자의 임직원, 그리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제3자에게도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산을 위한 기초자산 매각)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 이후 합리적 기간 내에 기초자산을 매각하여 공동사업을 청산한다.
② 전 항의 기간은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 이후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③ 기초자산의 매각 가액은 기초자산의 보유기간, 매각 예상 시점에서 기초자산의 시장 가치, 경기변동,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과 향후 전망, 기초자산 매각을 위한 수수료나 제세공과금 기타 투자자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 항에 있어 동종의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의 모집 사례, 국내외의 미술품 판매업자나 미술품 경매업자의 이익률, 공동사업에 소요 된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는 청산을 위한 기초자산 매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1. 기초자산의 처분 가액, 시기, 매수자의 결정
2. 기초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운송, 전시
3. 기초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비용 등의 지출
4. 기타 상기 각 호에 부수하는 권한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

1.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하거나 추인하는 중요한 권리의무

가. 본 투자계약 제22조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하거나 추인하는 중요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초자산의 매매(예약)계약에 대한 체결과 이행, 그 매매(예약)계약에 대한 예약완결권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 그 예약완결권의 행사
(2) 기초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계된 금전 등에 대한 금전신탁계약, 서비스 이용 계약 등 기초자산 보관 또는 관리를 위한 계약의 체결
(3) 전항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에게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업무지시 및 운용지시
(4) 기초자산과 공동사업의 유지・보관・관리・대여・ 처분에 관한 권한
(5) 기초자산과 공동사업의 청산과 처분손익에 관한 업무
(6) 본 투자계약 제8조의3 제5항에 따르는 기초자산의 처분
(7) 위 (1) 호 내지 (6)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포괄적 권한

나. 위 (1) 호 내지 (7) 호에 관하여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의 체결에 앞서 투자자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는 수행 시점에 소급하여 투자자가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위임 철회의 제한 등
: 투자자는 위 1. 가. 의 (1) 호 내지 (7) 호에 따른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을 철회・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처분 정족수를 말함)로 위 위임을 제한하거나 철회・ 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포괄적 위임 등
: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기초자산의 처분권한을 위임(처분의 시기, 가격, 상대방, 등 처분 조건・방식에 관한 어떠한 제한이 없는 포괄적 대리권 수여를 포함함)한다. 투자자는 위 2.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자산의 처분에 대한 위임을 철회 ・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투자자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공모총액 대비 100% 미만의 가격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중단을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처분계획에 따라 기초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본 호는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한 다른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위임과 추인의 승계
: 투자자로부터 본 투자계약서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위 1. 가. 의 (1) 호 내지 (6) 호에 대한 위임과 추인의 효과는 승계된다.

5. 위임의 종료 등
가. 전 1. 내지 4.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가장 먼저 도래한 날의 익일에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투자자의 위임은 종료되고 본 투자계약도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1)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나, 기초자산이 처분되지 아니한 채 공유물분할 특약의 갱신에 대한 투자자총회에서 처분 정족수에 의한 반대가 있은 경우. 다만 이 경우 기초

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 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을 분배하는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2)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이 경우 기초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을 분배하는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3)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청산 업무가 종료되고, 그 청산 업무의 종료가 공시 된 경우
(4)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가 있는 경우
나. 전 항에 의하여 위임이 종료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위임이 종료된 날까지 본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를 공시한다.
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위임이 종료한 경우에도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잔존 업무가 있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그 잔존 업무를 수행한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민법 제734조에 의한 사무관리로 본다.

(2) 기초자산의 처분관련 투자자·공동사업자의 권한 및 의무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기초자산의 처분에 앞서 처분계획을 공시하고 투자자총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투자자총회에서 처분정족수에 의한 반대가 있는 경우 처분을 중단합니다. 또한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모총액 100% 미만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투자자총회에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계약서]

제38조(투자자총회의 결의방법)
①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과반수의 찬성(이하 “찬성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이 때, 찬성 정족수는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된 공동사업 운영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본 투자계약의 이행 경과보고
2.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시 요구
3.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사전 고지되지 아니한 공모총액 대비 3% 초과 수수료 또는 비용의 지출 여부
4.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동사업 운영 방향의 권고
5. 기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②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전부의 찬성(이하 “처분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 다만, 처분을 위한 상대방, 처분가격, 처분 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2. 제8조의3 제6항에 따라 공동사업자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최소 청산목표액 미만 가격으로 처분하는 행위
3.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4. 제21조의 공유물의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
5. 본 투자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
6.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총회가 정하는 사항
8.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40조 제3항에 따라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중단
③ 전항 각 호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해지 또는 철회 시까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본조에서 정한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가 미달된 경우 그 의안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없거나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가 증권을 취득하여 투자자로서 투자자총회의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자의 의결권을 제외한 정족수(이하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를 산정하여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를 충족하는 경우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

1.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하거나 추인하는 중요한 권리의무

가. 본 투자계약 제22조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하거나 추인하는 중요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초자산의 매매(예약)계약에 대한 체결과 이행, 그 매매(예약)계약에 대한 예약완결권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 그 예약완결권의 행사
(2) 기초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계된 금전 등에 대한 금전신탁계약, 서비스 이용 계약 등 기초자산 보관 또는 관리를 위한 계약의 체결
(3) 전항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에게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업무지시 및 운용지시
(4) 기초자산과 공동사업의 유지・보관・관리・대여・ 처분에 관한 권한
(5) 기초자산과 공동사업의 청산과 처분손익에 관한 업무
(6) 본 투자계약 제8조의3 제5항에 따르는 기초자산의 처분
(7) 위 (1) 호 내지 (6)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포괄적 권한

나. 위 (1) 호 내지 (7) 호에 관하여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의 체결에 앞서 투자자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는 수행 시점에 소급하여 투자자가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위임 철회의 제한 등
: 투자자는 위 1. 가. 의 (1) 호 내지 (7) 호에 따른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을 철회・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처분 정족수를 말함)로 위 위임을 제한하거나 철회・ 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포괄적 위임 등
: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기초자산의 처분권한을 위임(처분의 시기, 가격, 상대방, 등 처분 조건・방식에 관한 어떠한 제한이 없는 포괄적 대리권 수여를 포함함)한다. 투자자는 위 2.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자산의 처분에 대한 위임을 철회 ・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투자자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공모총액 대비 100% 미만의 가격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중단을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처분계획에 따라 기초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본 호는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한 다른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위임과 추인의 승계
: 투자자로부터 본 투자계약서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위 1. 가. 의 (1) 호 내지 (6) 호에 대한 위임과 추인의 효과는 승계된다.

5. 위임의 종료 등
가. 전 1. 내지 4.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가장 먼저 도래한 날의 익일에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투자자의 위임은 종료되고 본 투자계약도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1)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나, 기초자산이 처분되지 아니한 채 공유물분할 특약의 갱신에 대한 투자자총회에서 처분 정족수에 의한 반대가 있은 경우. 다만 이 경우 기초

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 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을 분배하는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2)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이 경우 기초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을 분배하는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3)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청산 업무가 종료되고, 그 청산 업무의 종료가 공시 된 경우
(4)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가 있는 경우
나. 전 항에 의하여 위임이 종료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위임이 종료된 날까지 본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를 공시한다.
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위임이 종료한 경우에도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잔존 업무가 있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그 잔존 업무를 수행한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민법 제734조에 의한 사무관리로 본다.

12. 기타 중요사항

(1) 기초자산이 있는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관련 사항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 등 투자계약에 기한 권리, 권한, 의무 및 지위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됩니다. 투자자는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고, 당사로부터 위 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아야만 당사에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당사의 양도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당사 이외의 제3자에게도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의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확정일자 부여 기타 증권의 양도와 양수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위 양도 통지 및 양도 승낙에 대한 절차를 당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투자계약서]

제18조(증권의 양수도 방법 및 제한)
① 어느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 등 본 투자계약에 기한 권리, 권한, 의무 및 지위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 이 때, 양수인은 본 투자계약에 기한 권리, 권한, 의무 및 지위 일체를 승계하는 것을 승낙하고 동의한 자여야 한다.
②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인인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 사실을 통지(이하 “양도 통지”)하고, 공동사업 운영자로부터 양도에 대한 승낙(이하 “양도 승낙”)을 받아 야만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양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 통지에 대한 위임을 받은 서면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제출하거나, 양도인의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 통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양수인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고 공동사업 운영자의 양도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공동사업 운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이 때,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모집이 완료된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하는 투자자명부에 대한 사서인증과 별개로, 투자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양도 승낙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가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에 대한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은 이를 준수하여야만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공하는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의 절차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나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의 양도를 위해 필요한 당사자의 정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증명서, 처분문서와 양도에 필요한 비용 등을 투자자와 투자자의 양수인으로부터 제공 또는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증권의 양도 및 통지에 필요한 수단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와의 명시적 서면 합의 없이 본 투자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본 투자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투자자는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본 투자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⑦ 증권의 양도・양수 및 투자자명부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양도인 및 양수인이 연대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비용의 지급을 받기 전까지 관련된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초자산의 분할 가능 여부

투자자들은 다른 투자자 전원 및 당사와 기초자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체결합니다. 해당 특약은 5년을 기한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증권의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당사는 해당 특약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기 위해, 증권의 양도 및 양수절차에서 양수인에게 공유물 분할금지 및 연장에 대한 특약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으며, 양수인이 이에 동의하여야 증권이 양도됩니다.

[투자계약서]

제21조(기초자산의 공유관계 및 공유물의 분할 금지 특약)
①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다른 투자자와 기초자산을 공유한다.
② 투자자는 기초자산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공동사업 운영자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하여 확약(이하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한다.
③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투자자명부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전항의 기간이 만료한 날까지 본 투자계약에 의한 청산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만료일로부터 역산하여 [14]일간 투자자에게 공시한 후 [5]년 간 유효한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갱신한다. 이 때,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와 다른 투자자에게 대하여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의 갱신을 할 것을 확약(이하 “특약의 갱신 확약”)하고, 특약의 갱신에 대한 반대는 공동사업 운영자를 제외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⑤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은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인 제3자에게도 유효하게 승계된다.
⑥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의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본 투자계약 제18조의 양도 통지 및 승낙 절차에서 양수인에게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과 특약의 갱신 확약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도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⑦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는 공동사업 운영자를 제외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III. 투자위험요소

용어의 정의는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투자계약증권 관련 투자자보호 - 1. 용어의 정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위험

가.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국내외 경제는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중국 경기 불황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공동사업에 대한 투자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여 주로 미술품인 기초자산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공동사업 및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관한 사업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취득하기 위한 물색, 투자계약 체결과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한 재원의 조달, 기초자산에 대한 관리를 거쳐 기초자산의 처분과 투자계약의 청산을 통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순환적 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금리변동이나 경기변동이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시가 하락을 유발하거나, 투자자 심리 위축, 기초자산 수요 침체에 따르는 회수 및 청산 가능성의 축소 등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투자자금 조달부터 투자집행 및 회수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내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외 경기둔화 또는 침체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과 수익성 및 당사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시가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① 세계 경기 동향

IMF가 2025년 10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5년 3.2%에서 2026년 3.1%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7월 전망치에 비해 2025년은 0.2% 상승한 수치이며 2026년은 같은 기간 변동 없습니다. 이는 새로운 무역 조치의 직접적 영향과 파급 효과, 불확실성의 증가를 반영합니다. 2025년의 정책 불확실성, 무역 장벽 확대, 고용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세계 경제의 향방은 모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p.)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E)		
		2025년 7월	2025년 10월(E)	조정폭	2025년 7월	2025년 10월	조정폭
		(A)	(B)	(B-A)	(C)	(D)	(D-C)
세계	3.3	3.0	3.2	0.2	3.1	3.1	0.0
선진국	1.8	1.5	1.6	0.1	1.6	1.6	0.0
미국	2.8	1.9	2.0	0.1	2.0	2.1	0.1
유로존	0.9	1.0	1.2	0.2	1.2	1.1	-0.1

일본	0.1	0.7	1.1	0.4	0.5	0.6	0.1
영국	1.1	1.2	1.3	0.1	1.4	1.3	-0.1
캐나다	1.6	1.6	1.2	-0.4	1.9	1.5	-0.4
신흥국	4.3	4.1	4.2	0.1	4.0	4.0	0.0
러시아	4.3	0.9	0.6	-0.3	1.0	1.0	0.0
중국	5.0	4.8	4.8	0.0	4.2	4.2	0.0
인도	6.5	6.4	6.6	0.2	6.4	6.2	-0.2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5.10)

한국은행이 2025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물가 상승세가 커지고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등 관세인상 영향이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유로지역은 그간의 통화정책 완화에도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성장세는 완만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관세유예 조치에 따른 수출의 양호한 흐름 등으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세계교역은 조기선적 효과가 소멸되며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견조한 AI투자로 확장국면이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반도체 관세부과 가능성, AI 과잉투자 우려 등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브렌트유가는 OPEC+ 의 생산량 회복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60달러대 초중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전망 요약(전망의 주요 전제)

구분	2024	2025			2026(E)		
	연간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세계경제 성장률(%)(주1)	3.3	3.2	2.5	2.8	2.6	2.9	2.7
미국	2.8	2.0	1.3	1.7	1.6	2.1	1.9
유로지역	0.9	1.3	1.0	1.1	0.9	1.4	1.1
중국	5.0	5.3	4.2	4.7	4.0	4.1	4.1
일본	0.1	1.5	0.6	1.0	0.0	1.0	0.5
세계교역 신장률(%)(주1)	3.8	3.7	1.5	2.6	1.6	3.2	2.4
브렌트유가(달러/배럴)(주2)	80	71	65	68	62	63	63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5.08)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

(주2) 브렌트유 기준, $/배럴, 기간 평균 기준

②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이 2025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GDP 성장률은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하나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내수는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이 美 관세 영향으로 점차 둔화될 전망으로, 성장률은 5월 전망 수준 0.8%을 소폭 상회하는 0.9%로 예상됩니다.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한국은행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전망입니다.

경제전망 요약(국내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24	2025			2026(E)		
	연간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GDP 성장률	2.0	0.2	1.6	0.9	2.0	1.3	1.6
민간소비	1.1	0.7	2.0	1.4	2.2	1.1	1.6
건설투자	-3.3	-12.4	-4.3	-8.3	4.4	3.2	3.8
설비투자	1.7	4.8	0.3	2.5	0.9	1.2	1.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2	1.3	4.3	2.9	3.5	1.6	2.5
재화수출	6.4	1.6	3.3	2.5	0.4	-0.7	-0.1
재화수입	1.3	1.8	1.7	1.8	1.7	0.3	1.0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5.08)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GDP 성장률은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하나 추경과 경제심리 호전으로 소비개선세가 뚜렷하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하여 5월 전망 수준 0.8%을 소폭 상회하는 0.9%로 예상됩니다. 2/4분기중 건설투자 감소폭이 예상보다 컸으나 소비가 개선되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1/4분기 역성장에서 반등한 0.6% 성장하였습니다. 3/4분기에는 소비쿠폰 지급,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당초 예상 0.7%을 웃도는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관세부과 품목철강,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수출의 하방압력이 커지면서 4/4분기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수출이 美관세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1.6% 성장할 전망입니다.

상기와 같이 국내외 경제는 관세정책, 원달러 환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갈등 고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물가 지속, 금리인상 및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가능성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국내 경기는 수출 및 내수 여건 개선에 따르는 성장세도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대외적인 이슈로 인한 실물 경기의 침체가 길어질 경우 미술품 유통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시장 거래의 축소와 함께 미술품 가격의 하락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투자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해당 미술품을 재매각하고자 할 때에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판매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투자자금 조달부터 투자 집행 및 회수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내외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계약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세법 변경에 따른 미술품 과세 강화 시 미술품 시장 축소 위험

향후 미술품 시장에 대한 보유세 신설 등 관련 정책이 입법화되고, 세법에 대한 과세관청의 해석이

나 실무의 변경, 미술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세율 상승이 현실화 되는 경우 미술품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과 공동사업의 수익성, 그리고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최종적인 청산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미술품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투자계약증권은 주권과 달리 등기와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나 그에 부대하는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 역시 없습니다. 미술품에는 재산세 등 별도의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투자계약증권의 보유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도 없습니다.

한편,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지급받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은 배당소득의 범위에 추가됩니다. 배당소득에 추가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구체적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0항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의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조각투자상품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을 포함하며,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동 조 제11항에 따라 공동사업의 이익에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여집니다.

[과세표준 결정산식]

(1주당 배당소득금액 x 보유 주수) - 영 제 26조의3 제11항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

그에 따라, 기초자산이 청산되는 경우 투자자가 지급받게 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가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되게 됩니다. 당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며, 이 때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투자계약증권 1주당 분배되는 금원에서 1주의 취득금액 및 보수・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원, 즉 투자자의 원본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초과액으로서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당금으로 하여 배당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연간 배당이나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행되고 청산된 투자계약증권의 사례 등에 기초하여 동일한 청산 등 사례에 있어 배당소득세 적용이 미치는 영향을 가정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실질 수익률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경우에 비하여 낮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당사로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계약증권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되는 경우의 과세표준 또는 투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투자자가 받을 이익이나 적용 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추가적으로 과세당국의 규칙, 예규, 해석 또는 법원의 판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즉시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현행 세법에 따른 미술품 처분에 대한 일반적 과세 방식과 당사가 전문가의 조력

을 받아 마련한 납세의무의 수행 계획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실무가 당사의 해석과 다르거나, 미술품 또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미술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과 투자계약증권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있고 그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 홈페이지 해킹, 고객정보 유출 등 정보 보안 관련 위험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부 과실뿐만 아니라 해킹 등 외부변수에 대한 강도 높은 정보 보안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보안원 기준에 따르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체계를 갖추고 다수의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권 시스템 연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당사 홈페이지 해킹, 고객정보 유출 등 정보 보안 관련 위험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당사가 계좌관리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한정하여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의 청약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온라인으로 고객 가입이 이루어지며 시스템이 운영되는 당사의 특성 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부 과실뿐만 아니라 해킹 등 외부변수에 대한 강도 높은 정보 보안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보안 관련 모니터링 및 인프라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관리에 있어서 당사의 IT팀 등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사로서 내부통제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IT팀에 투입하여 내부통제와 개인정보보호가 당사 전산망의 편리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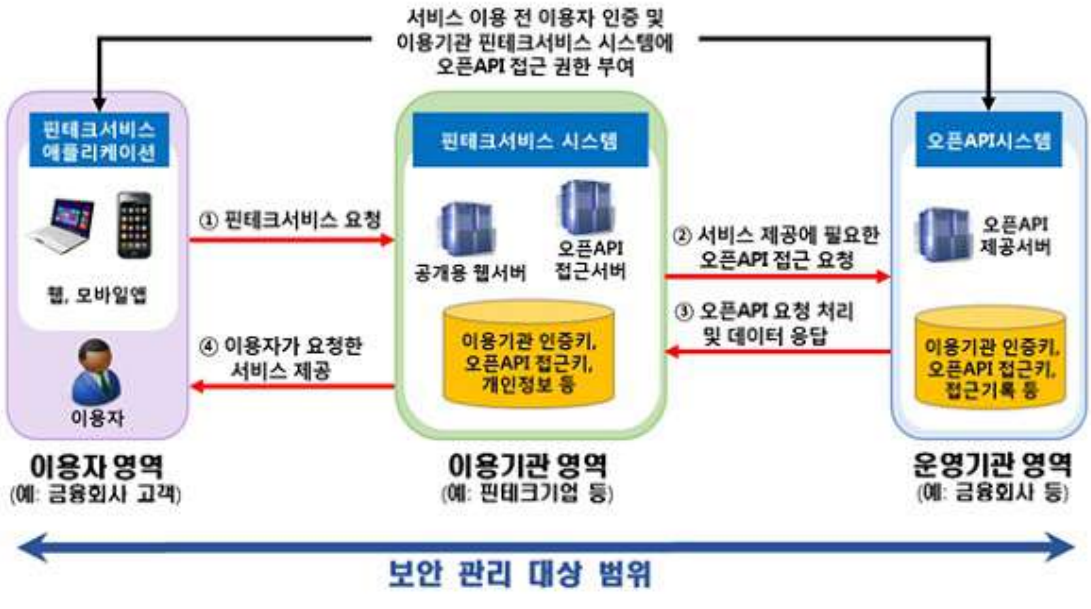
성명 (생년)	업무경력	총 경력 (년)	담당 분야	자격증
도영진 (1993)	1. 아트네이티브(주) 1년 2. (주)블랜드 0.6년 3. 티에이어드바이저(유) 1.2년 4. 아트폼스(주) 1년 5. 아트큐브플러스(주) 6년 6. (주)투게더아트 2.3년	12.1	기획개발팀장	미국공인회계사 /투자자산운용사
김희철 (1976)	1. 에디슈 0.6년 2. 나루씨큐리티 11.6년 3. (주)투게더아트 1.9년	14.1	서버 및 인프라 엔지니어	-
박형민 (1993)	1. 엠지엠엘 1.5년 2. 비즈앤테크컨설팅 2.0년	7.3	풀스택 개발	-

	3. 지에스아이티엠 0.9년			
	4. (주)투게더아트 2.9년			
박진우 (1993)	1. 투게더아트 1.3년	6.6	풀스택 개발	정보처리기사
	2. 에피르 2.1년			
	3. 인피닛블록 2.8년			
	3.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0.4년			
강민철 (1994)	1. 데일리펀딩 4.2년	5.8	프론트 개발, 퍼블리싱	-
	2.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1.6년			

당사는 금융보안원의 기준에 따르는 전산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정보보호정책 제정, 위험 평가, 정보보호위원회, 침해사고 대응, IT재해복구 모의 훈련, 서버와 네트워크의 완전 클라우드화를 통하여 시스템 장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통합보안장비(UTM)의 폐쇄적 구성을 통하여 불법적 외부 침입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한편,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를 위한「금융권 오픈 API 운영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와 당사와 같이 이용기관을 위한 「금융권 오픈 API 이용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의 가이드 2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본 청약을 위하여 NH투자증권으로부터 실명계좌 체계를 지원받는 당사는 금융권 오픈 API의 이용기관이 되어 「금융권 오픈 API 이용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을 만족하는전산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당사에 실명 계좌 체계를 지원하는 금융회사인 NH투자증권은 당사의 전산 보안 체계가 금융권 오픈 API를 이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금융권 오픈 API 운영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가이드는 서비스 이용 전 이용자 인증 및 오픈API 접근 권한 부여, 이용기관 인증키, 오픈API 접근키, 개인정보, 접근기록 등이 모두 보안 관리 대상 범위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 가이드를 만족하는 전산 보안 체계를 갖추고 본 청약에 있어 NH투자증권으로부터 실명계좌체계를 지원받고 있으며, 향후로도 위 가이드에 따라 전산 보안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금융권 오픈 API 이용 구조



금융권 오픈 api 이용 구조

(출처: 금융보안원, 금융권 오픈 API 이용기관 자체 보안점검 가이드, 2018)

한편, 당사는 개인정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유출 등 배상책임을 대비하여 매 사업연도 매출액과 홈페이지 이용자수에 비례하여 한국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개인정보유출책임공제보험을 부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보안 담당 직원의 과실 혹은 부정행위, 외부로부터의 해킹 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의 고객 정보가 유출될 경우, 미술품 구매 기록이나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에 필요한 영업비밀 등 당사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들과 상당한 법률 및 재정 상의 위험 및 평판 실추로 인하여 당사의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소송,규제 당국의 조사, 책임 및 규제 관련 과징금이 뒤따를 수 있어 당사의 평판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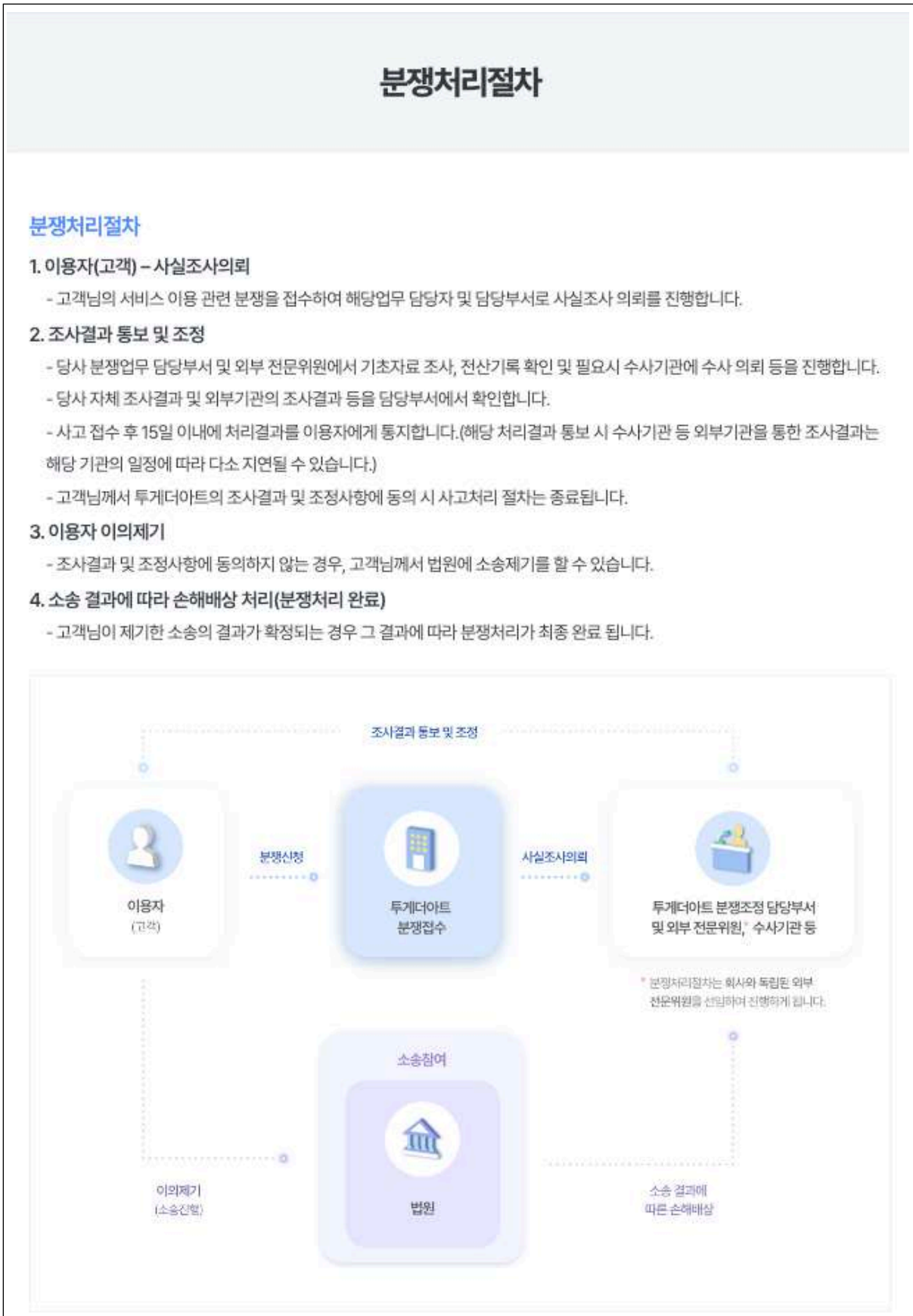
라. IT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투자계약증권 발행 및 관리 시스템 오류 발생 위험

실시간으로 청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 발행 업무에 있어**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시스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과정에서 청약에 의한 투자자 명부 작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이는 고객의 재산적 피해 또는 투자계약증권을 통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서비스 약관에 서비스 장애로 인한 면책 조항을 추가하고 서버와 네트워크의 완전 클라우드화, 매 청약 기록에 대한 백업 시스템, 매 청약 트래픽 대비 2배 이상의 네트워크와 UTM 용량의 상시 유지 등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 및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에 관하여서는 이용자가 별도의 분쟁처리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초자료 조사, 전산기록 확인 및 필요시 수사기관에 의뢰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사실조사 의뢰, 이용자 이의제기,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처리 절차



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처리절차 요약.png

다만, 예상하지 못한 프로그램 버그 등의 오류나 일시적인 트래픽 급증, 인적 오류 등으로 인해 모든 오류 또는 결함을 차단하지 못할 수 있으며, 예상 수준을 넘는 당사 청약 참여자 수의 급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청약 참여자들의 응찰

지연으로 인한 청약 참여 제한 및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당사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사업의 관련법령 위배 가능성과 그로 인한 소송·분쟁의 가능성 관련 위험

당사가 진행하는 공동사업, 투자계약의 체결 및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은 관련 법령 및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등 지침과 행정지도에 따른 규제 대상이며, 따라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변경 등에 따라 당사의 영업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취득·보관·관리·처분 등에는 민법상 공유 및 위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당사는 투자자 전원으로부터 공유물인 기초자산의 취득·보관·관리·매각(기초자산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상 매각대금이 모집총액 100% 이상인 경우)·손익배분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투자자는 취득하는 투자계약증권의 좌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기초자산을 공유하며, 기초자산의 처분손익을 지급받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당사는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과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당사가 수행하는 공동사업 구조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동사업의 방식과 투자계약증권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재까지 법원이나 권한있는 유관기관에 의하여 그 적법 또는 위법 여부가 명확하게 판단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 외에도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 수리 여부,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개정 여부 등에 따라 당사가 진행하는 공동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준법감시인력 및 당사와 정기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상시적으로 공동사업 및 투자계약증권 발행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향후 규제 강화 가능성,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공동사업의 법령 위반 가능성이나 관련 소송·분쟁 제기 가능성을 현실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경우 공동사업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공동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되어야 합니다. 즉 투자계약 및 이로 인한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은 법률 및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받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과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회사의 영업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민법상의 공유물과 위임 법리에 근거하여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취득, 보관, 관리, 매각, 배분 등을 수행하는 공동사업을 진행합니다. 당사는 투자자 전원으로부터 공유물인 기초자산의 취득·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동사업을 수행하고(단, 매각의 경우에는 기초자산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상 매각대금이 모집총액 100% 이상으로 약정된 경우 매각에 관한 권한을 포괄 위임받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물 매각에 대한 원칙에 따라 투자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투자자는 취득하는 투자계약증권의 좌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기초자산을 공유하며, 기초자산의 처분손익을 지급받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때, 투자자들은 본 공모에 참여하여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과 함께 동산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투자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은 다른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기초자산을 공유하는 공유 지분권에 해당합니다. 공유 지분권자로서 투자자는 기초자산이 제3자에게 보관되는 경우 그 기초자산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다른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준공유하게 되는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유 지분권로서 투자자는 어떠한 물건을 단독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관리와 처분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에 해당하는 다른 투자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사가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사 역시 공동사업 운영자로서의 지위 뿐 아니라, 증권을 취득하며 얻게 된 기초자산의 공유 지분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됩니다.

당사는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당사 자체적인 판단으로 이와 같은 사업구조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원이나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 본 공동사업 구조의 적법 또는 위법 여부가 판단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당사는 종전에 영위하였던 미술품 조각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이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함께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등에 대하여 2022년 11월 29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로 조건부 제재면제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는 위 제재절차 개시 보류 조건에 포함된 투자자 보호 조치를 포함하는 사업구조재편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업구조 재편 완료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2일 2023년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제재면제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가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은 위와 같은 투자자 보호 조치를 반영한 것이며,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핵심투자위험 및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항들을 충실히 기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리스크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운영담당임원을 선임하여 공동사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법무법인들과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의 적법한 수행을 위해 상시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당사는 법무법인(유)지평으로부터 공동사업 구조의 적법성, 투자계약증권 발행 구조 및 양도 방식,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공유 구조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위험 및 그 해결방안, 법률적 관점에서의 투자위험 등에 관하여 법률검토의견을 받아 증권신고서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당사는 공동사업의 구조, 저작권법의 준수, 투자위험의 방지 등을 위하여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발행 후 공동사업 운영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자문을 받아서 법률 위험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조건에 따라 사업구조재편의 완료를 보고하고, 그 보고된 사업구조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향후 공동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 가이드라인의 변경이나 혹은 관련 법령 등의 변경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인 법률검토와 정책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법적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금융감독당국의 관리 및 감독을 받아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강화, 법원에 의한 법 해석 변경, 소송 제기 등 요인으로 인하여 공동 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위험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의 반대 의사표시,공동사업의 탈퇴 등으로 인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은, 청약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투자계약을 통해 투자자들은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 공동사업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공동사업 청산 또는 투자계약증권의 만기시까지 기초자산의 보관·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되, 기초자산 처분에 관한 권한은 기초자산 매각을 위한 매매계

약상 매각대금이 모집총액 100% 이상으로 약정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위임합니다. 공유물인 기초자산의 분할금지 특약(분할금지기간 5년, 갱신 시 최대 10년)을 체결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에서는 투자자들로 구성되는 투자자 총회를 두고, 투자자 전원(공동사업 운영자 제외)의 찬성으로 공동사업운영자에 대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공모총액의 100%미만의 가격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민법 제264조에 따라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자 전원의 동의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중단을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가 공모총액의 100%이상의 가격으로 하는 기초자산 처분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일부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기초자산의 보관·관리·처분 관련 위임계약을 취소하거나 기초자산의 분할청구 등으로 공동사업의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 투자계약 및 공동사업자에 대한 위임계약의 효력 또는 기초자산 분할특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소송·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동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의 운영자로서 당사는 본 공모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투자자들 전원으로부터 공동사업의 청산시까지 기초자산을 보관·관리·매각(기초자산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상 매각대금이 모집총액 100% 이상으로 약정된 경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고, 투자자들 전원은 공유물인 기초자산의 분할금지 특약(분할금지기간 5년, 갱신 시 최대 10년)을 약정합니다. 또한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 총회가 구성되며, 투자자 총회가 당사에 의하지 않고 기초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사업 운영과정에서 일부 투자자가 기초자산 처분과 관련된 반대를 하는 등 소수 투자자에 의한 반대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일부 투자자가 투자계약에서 인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탈퇴하고자 당사 또는 다른 공동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관·관리 및 처분 관련 위임계약의 취소를 하거나, 투자계약에 의하여 제한되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투자계약 및 공동사업자에 대한 위임계약의 효력 또는 기초자산 분할특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소송·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나 과정에 따라 공동사업의 수익성이나 공동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사업 구조의 변동 또는 공동사업의 중단 관련 위험

당사는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조건에 따라 사업구조재편의 완료를 보고하고, 그 보고된 사업구조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나 향후 공동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변경되거나 혹은 관련 법령 등의 변경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이외의 사유로 공동사업의 구조가 변동되거나 공동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동사업의 구조는 해외에서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 구조와 동일하지 아니합니다. 해외에서 미술품 투계약증권을 발행한 사례에서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계약증권 발행시마다 특수목적 법인(SPC)를 설립하는 방식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조건에 따라 사업구조재편의 완료를 보고하고, 그 보고된 사업구조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나 향후 공동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변경되거나 혹은 관련 법령 등의 변경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공동사업의 안정적이고 계속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자 보호 조치와 사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기술한 법률상, 제도상 문제나 기타 본 증권신고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정으로 공동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공동사업의 중단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중단시 청산 업무 등 처리 절차 규정>

1.「사업중단」 사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서비스 중지 사태가 10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회사가 합리적인 서비스 중지 사유와 30영업일 이내의 서비스 재개 일자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중단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회사의 서비스이용약관 제16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다. 회사의 관련 등록·인가·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결의, 파산선고, 회생신청, 지급불능 기타 그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회사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투자계약에서 정한 업무 등의 정상적 수행에 있어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공동사업 구조의 변동이나 공동사업 중단이 있는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특히 당사 공동사업 중단시를 대비하여 투자자보호기금의 적립, 공동사업의 중단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공시와 투자자에 대한 통지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보완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의 중단사태시 청산 업무 등을 수행할 독립적 제3자와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원리금, 상환금, 투자금의 배분과 장부의 작성
2. 전 호의 대금에 대한 지급
3. 예치기관에 대한 송금 지시
4. 기초자산의 관리 및 처분
5. 전4호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요청
6. 전5호에 관련된 업무들에 관련된 업무의 재위탁 권한
7. 전6호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통지, 공지, 공시, 고시
8. 위탁계약의 수행과 관련된 보수와 비용

그럼에도 국내에서 많은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공동사업이라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당사의 준비가 실효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동사업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에서 확인되거나 입증되지 아니한 사업모델 관련 위험

해외에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사례는 다수 있으나 국내에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사례는 적은 편입니다. 이처럼 당사의 사업모델은 장기간에 걸쳐 검증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측되지 않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미술품을 취득·보관·관리·매각(공모총액 대비 100%이상인 경우)하고 그 처분에 따르는 청산손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수의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모집 또는 매출된 투자계약증권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해외에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한 사례에서 공동사업 운영자가 각 투자계약증권 발행시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방식을 사용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당사의 사업모델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사업모델은 국내외에서 장기간에 걸쳐 검증되지 않은 모델로서,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예측되지 않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의 미승계 관련 위험

당사는 투자계약을 통해 기초자산인 미술품에 대한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투자자 중 1인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투자자가 가진 공유지분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가지게 되는 경우 투자계약상의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의 승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투자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시 등으로 인해 기초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제한이 발생하여 공동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투자계약증권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투자계약을 통해 기초자산인 미술품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특정 투자자 중 1인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투자자가 가진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가지게 되고, 이 경우 해당 투자자와 당사 간 체결한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중 1인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시 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투자자의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할 때까지 기초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제한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제한이 발생하여 공동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투자계약증권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재무안전성 관련 위험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나**국내외 경기 침체 및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전망의 악화, 시장 둔화 등 예기치 못한 영업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투자계약증권 특성상 당사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게 되는 바 당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공동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5년 반기말 및 최근 3개년 요약재무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2025년 반

기말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적용을 받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따른 자본, 총포괄손익 및 주요한 현금흐름의 조정사항, 전환기준일 및 재작성된 전기 재무제표 등은 「제2부 III. 재무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과목	제 8 기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반기말	(2024.12.31)	(2023.12.31)	(2022.12.31)
회계처리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외부감사(감사의견)	삼덕회계법인(검토)	삼덕회계법인(적정)	삼덕회계법인(적정)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자산				
1. 유동자산	2,042,327,967	3,432,612,600	2,060,151,102	1,485,329,469
현금및현금성자산	1,644,982,396	2,278,808,856	848,049,767	353,189,139
기타유동자산	397,345,571	1,153,803,744	1,212,101,335	1,132,140,330
2. 비유동자산	3,868,912,219	2,917,885,970	906,535,960	1,054,713,908
자산총계	5,911,240,186	6,350,498,570	2,966,687,062	2,540,043,377
부채				
1. 유동부채	3,941,443,565	3,792,919,718	1,630,487,604	42,073,501
2. 비유동부채	557,494,432	249,470,314	-	-
부채총계	4,498,937,997	4,042,390,032	1,630,487,604	42,073,501
자본				
1. 자본금	1,237,501,500	1,237,501,500	1,132,501,500	1,070,703,100
2. 자본잉여금	8,748,019,492	8,577,058,309	5,640,010,609	4,507,004,840
3. 자본조정	465,349,313	-	-	-
4. 결손금	9,038,568,116	7,506,451,271	5,436,312,651	3,079,738,064
자본총계	1,412,302,189	2,308,108,538	1,336,199,458	2,497,969,876
부채및자본총계	5,911,240,186	6,350,498,570	2,966,687,062	2,540,043,377

과목	제 8 기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반기말	(2024.12.31)	(2023.12.31)	(2022.12.31)	(2021.12.31)
매출	460,261,815	4,789,667,847	77,728,954	395,825,636	318,977,462
영업이익(손실)	(1,054,522,018)	(1,965,603,788)	(2,437,739,124)	(1,852,233,748)	(331,247,933)
당기순이익(손실)	(1,107,780,533)	(2,070,138,620)	(2,356,574,587)	(1,815,044,326)	(316,949,128)
이자비용	88,815,267	151,071,024	9,237,704	18,261,638	2,249,705

한편, 당사의 2025년 10월말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에 따른 당사 영업손익은 매출액 469백만원, 영업손실 2,119백만원입니다.

구분	제 8 기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제 4 기
	(2025.06.30)	(2024.12.31)	(2023.12.31)	(2022.12.31)	(2021.12.31)
유동비율	52%	91%	126%	3,530%	60%
당좌비율	46%	61%	59%	3,530%	60%
부채비율	319%	175%	122%	2%	188%

2025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유동부채 3,793백만원은 당사의 기초자산취득을 위한 차입금과 일상적 운전자금에 속하는 미지급금, 당기에 매각된 미술품들의 판매대금으로서 종전 공동구매 구매자들에게 분배될 예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사업 개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여 왔고, 일정 기간 사업을 중단하였던 기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보안 체계 등을 갖추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결손금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전 우선주 주주들이 모두 보통주로 전환하였고, 추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건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말 기준 당사 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당사는 2025년 10월까지 매출액 469백만원, 영업손실 2,119백만원을 기록하여 비록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는 영업손실을 시현하고 있으나, 사업 재개로 인한 매출 시현이 시작된 만큼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회차가 누적되며 가져오는 발행이익으로 당사의 영업손실은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머지 않은 시점에 기초자산의 처분이 본격화되어 재무적 안정성 관련 위험 역시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의 취득과 관리, 그리고 처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빠르게 결손금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투자자 보호와 당사 재무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편, 2025년 반기말 기준 당사 유동비율은 52%, 부채비율은 319%이며, 유동자산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당사 최대주주인 (주)케이옥션과의 사이에서 미술품 구매대금으로서 차입금 총 3,500백만원을 대여 받았습니다. 또한 대여금 등에 대한 만기연장, 현금흐름에 대한 관리, 연내 외부 투자 유치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등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본건전성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적자를 시현하고 있고 결손금이 누적된 사실이 있으나, 현금 유동성 확보와 자본건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적극적인 조치를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및 종전 공동구매 미술품의 지속적 처분 노력 등 공동사업의 성공을 위한 당사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당사의 재무 안전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투자계약증권의 특성상, 당사의 현금 흐름, 부채 비율, 신용 등급 등의 하락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의 청약에 있어 실명으로 개설된 전용 청약계좌를 통하고 있으며, 청약증거금을 100%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모 대금이 미납입될 위험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청약이 미달된 실권주에 대해 전액 당사가 인수하게 되며,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 또는 원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거나 도산 위험 발생시에는 증권 발행의 대상이 된 미술품은 회사의 재산과 별개로 취급되어 투자자는 보호되며, 청산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과 (주)케이옥션의 청산 처리 절차에 따르게 됩니

다. 회사는 자체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외부 신용평가 기관과 협력하여 신용 등급 관리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회사는 공동사업 구조의 변동이나 공동사업 중단이 있는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자에 대한 통지 절차 이행, 공시 등의 보완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재무상태 악화로 인하여 공동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곤란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위 구매고객 이탈 시 매출 하락 위험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과의 거래 관계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매출 감소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하락과 공동사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고객과의 거래 관계 단절이 있거나, 고가 미술시장의 불황이 도래하여 미술품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경우 당사의 매출 감소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종전 영위하였던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부터 당사와 거래관계를 이어온 주요 투자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당사가 약 1년 가까이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금융규제당국에 대한 사업구조재편 완료 보고를 거쳐 본 증권신고서를 통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 사업을 재개하기까지 당사의 서비스에서 탈퇴한 회원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참여하는 고객들은 소액의 투자자이자 미술품에 대한 선호라는 특수한 선호도를 보이므로, 당사는 주요 고객 이탈로 인한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위 구매고객이 당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유로 이탈하는 경우 당사의 매출 하락과 공동사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술품 소싱 경쟁 또는 미술품 시장 축소로 인한 미술품 공급 축소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물색과 취득에 필요한 능력(미술품 소싱 능력)입니다. 당사는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 (주)케이옥션과 미술품 소싱을 포함하는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미술품 소싱 능력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미술품 시장과열로 인한 경쟁업체와의 소싱 경쟁 또는 미술품 시장 축소로 인하여 미술품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당사의 미술품 소싱 능력 역시 감소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산업과는 달리 미술품 시장은 그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며, 작고한 작가의 경우 작품의 생산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희소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 수요에 맞춘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일반 산업군의 제품 및 상품과는 달리 미술품의 양과 품질은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미술품의 공급 측면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생존 작가가 예술창작품인 미술품을 생산하여 발생하는 공급과 기존 미술품 보유자가 미술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공급입니다
.

작가의 작품 활동은 매 해 작가의 작품활동에 따라 출품되는 작품의 수가 다르며, 일정하지 않아, 시장의 수요에 맞춘 공급이 어렵습니다. 보유자의 판매로인한 공급 또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취득·보관하고 처분하여 처분손익을 배분하는 투자계약에 있어 발행사인 당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는 미술품 소싱, 관리, 처분 능력입니다.

당사는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 (주)케이옥션과 미술품 소싱을 포함하는 포괄적 업무협력 관계를 2022년 3월부터 구축하여 미술품 소싱이나 관리, 처분 능력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와 케이옥션과의 업무협력에 관하여서는 「제2부 II. 사업의 내용 3.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 구조과 당사의 경쟁력」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당사는 미술품의 소싱, 관리, 처분 능력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미술품 시장 과열로 인한 경쟁업체와의 소싱 경쟁 또는 미술품 시장 축소로 인하여 미술품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당사의 미술품 소싱 능력 역시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미술품의 소싱, 관리, 처분 능력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미술품 시장 과열로 인한 경쟁업체와의 소싱 경쟁 또는 미술품 시장 축소로 인하여 미술품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당사의 미술품 소싱 능력 역시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라. 과도한 수수료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축소 위험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의 진입이 늘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과도한 수수료율 경쟁으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술시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증가로 인해 국내 미술품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역시, 소액 투자와 새로운 유형의 투자에 관심있는 MZ세대의 유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 향후 토큰증권(Token Security)의 유통시장에 진입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존재하여, 이러한 관점에서도 이미 금융규제당국에 의하여 가이드라인이 제공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모집과 매출을 시도하려는 업체가 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현재까지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금융규제당국의 실사 등을 수검한 업체는 4개이고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수반되는 투자자 보호장치의 완비 등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신생 업체의 진입이 단기간에 허용될 가능성

은 크지 않으나, 향후 유입되는 경쟁업체들로 인하여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과도한 수수료율 경쟁으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자산 거래 및 증권 취득과 관련된 유동성 위험

고가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모집 또는 매출이 계속되는데 비하여 공동사업의 청산은 지연되는 경우, 공동사업에 투입되는 당사 자금의 회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자금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하는 투자계약증권의 10%를 선배정 받고,본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청약이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증권수에 미달하는경우 그 미달하는 증권을 취득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선배정된 증권 또는 미달되는 증권을 취득하는 외에는 공동사업의 운영기간 동안일반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청약 미달로 취득한 증권등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모집되는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투자 한도(1인당 3,000만원)를 적용하고 2년 마다 갱신하여야 하는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당사 이해관계자 통제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처분내역을 공시합니다. 그에 따라 기초자산인 미술품이 고가의 대규모 작품인 경우, 기초자산인 미술품이 최종적으로 매각되어 공동사업이 청산되기까지 해당 자금의 활용이 어렵게 됩니다.

한편, 고가의 미술품의 경우 그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는 시장으로 작품을 원하는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또는 경기 변동에 따라 고가 미술품을 구매하는 자산가들에게 현금 유동성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기초자산 매각이 계속적으로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자금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바. 핵심인력 유출에 따른 영업 축소위험

전문적 인력 유지를 위해 당사는 적극적으로 핵심 인력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임직원 복리후생과 보상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최대주주인 (주)케이옥션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미술품 경매회사로 자본시장과 미술품 시장 모두에 전문성이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적 인력을 지원받는 데에도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핵심 인력의 퇴사로 인한 인력 유출이 있는 경우 당사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물색한 후, 잠재적인 판매자 및 구매자와의 관계를 공동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으로 구조화하고, 투자계약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로 일반투자자를 공동사업 투자자로 유치하는 임직원들의 능력이 회사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쟁력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고 그 인력을 유지하는 데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 인력 유지를 위해 당사는 적극적으로 핵심 인력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다양한 임직원 복리후생과 보상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최대주주인 (주)케이옥션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미술품 경매회사로 자본시장과 미술품 시장 모두에 전문성이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적 인력을 지원받는 데에도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핵심인력에 대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성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담당업무 (상세업무)	성명 (생년)	소속·직급	업무경력	자격증	비고	근속연수 (개월)
투자자 보호인력 (공동사업 관리 총괄)	도현순 (1967)	대표이사	1. 한국은행 4.6년(외화자금과) 2. 리만브라더스 홍콩 0.5년 3. 페레그린증권 홍콩/서울 3.8년 4. 맥킨지 서울 1.9년 5. 리먼브라더스 서울 6.9년 6. (주)케이옥션 16.4년(현재/대표이사) 7. (주)투게더아트 2.6년(현재/대표이사)	-	책임담당자	31
투자자 보호 인력 (사업운영담당/ 준법지원담당임원)	이관재 (1965)	사업운영 / 준법지원담당 임원 등기이사	1. 금융감독원 33.8년(조사기획국, 기업공시국 등) 2. (주)투게더아트 2.4년(현재/사업운영담당/준법지원 담당 임원 전무)	-	-	29
투자자 보호인력 (기초자산 검증)	김보름 (1979)	사외이사	1. 서울문화재단11.3년(문화사업팀장) 2. 세종대학교 3년(문화예술경영학과 주임(초빙)교수) 3. 한성대학교 2.7년(현재/문학문화컨텐츠학과 조교수) 4. (주)투게더아트 2.1년(현재/사외이사)	AAA	(주1)	25
투자자 보호인력 (경영감시)	지승현 (1983)	사외이사	1. 삼정회계법인 4년(IM4본부 공인회계사) 2. 삼덕회계법인 1년(감사본부 공인회계사) 3.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년 (Deal 1본부 공인회계사) 4. KT&G 1.6년(자금운용센터 금융투자팀) 5. (주)로보에테크놀로지 2.4년(현재/재무기획담당) 6. (주)투게더아트 2.1년(현재/사외이사)	공인회계사	-	25
투자자 보호인력 (경영감시)	배장원 (1974)	사외이사	1. 사회적기업 ㈜꿈틀 3.7년(서울지사장) 2. 국회의원 보좌관 4.8년(4급, 정무위원회) 3. 신성장연구소 0.5년(현재/소장) 4. (주)투게더아트 0년(현재/사외이사)	-	-	0
투자자 보호인력 (감사)	박준원 (1983)	감사	1. 안진회계법인 8년(감사본부 공인회계사) 2. 삼덕회계법인 4년(감사본부 공인회계사) 3. (주)LG 에너지솔루션 1.6년(정도경영팀) 4. 예인회계법인 3.1년(현재/대표자 공인회계사) 5. (주)투게더아트 2.1년(현재/감사)	공인회계사	-	25
투자자 보호 인력 (이해관계인 거래 통제/준법지원)	문대영 (1982)	매니저	1. 변호사문대영법률사무소 8년(변호사) 2. (주)케이옥션 1년(법무팀장) 3. 티에이어드바이저(유) 6.7년(현재/이사) 4. (주)투게더아트 2.6년(현재/ISC팀 매니저)	변호사 /CAMS /투자자산운용사	(주2)	31
운영인력 (기초자산 관리, 공시, 투자자 명부 관리)	신규식 (1984)	매니저(O&CS팀장)	1.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 4.7년(플랜트계약팀, 해외계약팀, 토건계약팀)2. (주)미드레이트 4.1년(운영총괄팀) 3. (주)투게더아트 4.0년(O&CS팀장/매니저)	투자자산운용사	-	48

운영인력 (기초자산 매입, 관리, 처분)	김진환 (1975)	매니저(ISC팀장)	1. 주식회사써머스플랫폼 2.8년(콘텐츠팀, 사업기획팀) 2. 주식회사케이티알파 1.5년(사업기획팀) 3.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식회사 2년(사업기획팀) 4. 주식회사지엔에스무역 5.3년(운영총괄팀) 5. 뷰티매니지먼트솔루션 주식회사 3년(사업개발팀) 6. (주)하비우드 3.3년(운영팀) 7. (주)서울옥션블루 1.3년(사업개발팀) 8. (주)투게더아트 1.3년(현재/ISC팀장/매니저)	-	-	16
운영인력 (투자계약 관리, 투자자보호)	도영진 (1993)	매니저(기획개발팀장)	1. 아트네이티브(주) 1년(사내이사/사업개발) 2. (주)블랜드 0.6년(대표이사/사업개발) 3. 티에이어드바이저(유) 1.2년(사업개발) 4. 아트폼스(주) 1년(사내이사/사업개발) 5. 아트큐브플러스(주) 6년(사내이사/사업개발) 6. (주)투게더아트 2.3년(현재/매니저/기획개발팀장)	미국공인회계사 /투자자산운용사	-	27
운영인력 (기초자산 매입, 관리, 처분)	이지현 (1983)	매니저	1. (주)케이옥션 16.1년(현재/경매팀 팀장) 2. (주)투게더아트 2.6년(현재/매니저)	-	-	31
운영인력 (기초자산 매입, 관리, 처분)	윤희재 (1990)	매니저	1. University of Pennsylvania Arthur Ross Gallery 1.2년(연구) 2. Keystone Education Ltd.(서울/홍콩) 3.2년(컨설팅, 마케팅) 3. 프리랜서 2.3년(전시자료 번역, 유학컨설팅) 4. (주)케이옥션 5.5년(현재/경매팀 PI파트) 5. (주)투게더아트 2.3년(현재/ISC팀 매니저)	-	-	27
운영인력 (투자계약 관리)	김세라 (1989)	매니저(재무팀장)	1. 제일메디칼 주식회사 2.2년(무역관리부) 2. 주식회사 메타브랜딩 1.7년(경영지원실) 3. 주식회사 참피온 1.7년(재무팀) 4. (주)케이옥션 3.6년(재무그룹 회계팀) 5. (주)투게더아트 2.3년(현재/재무팀장, 회계 및 공시 담당 매니저)	투자자산운용사	-	27
운영인력 (투자계약 관리)	이아름 (1993)	매니저	1. 한국맨소래담 주식회사 4.6년(재무팀) 2. (주)케이옥션 2.4년(재무그룹 회계팀) 3. (주)투게더아트 2.3년(현재/재무팀 자금담당 매니저)	투자자산운용사, 재경관리사	-	27

(주1) AAA는 Appraisers Association of America의 약자로 미국에서 감정평가를 위한 통일 규준(USPAP: Uniform Standard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에 의하여 미술품 등 동산의 가치 평가에 관한 교육을 수료하고, AAA에 회원자격(membership)을 득한 전문가를 말합니다.

(주2) CAMS는 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의 약자로, 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ACAMS: Association of 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에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ACAMS 회원으로 등록한 전문가를 말합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의 적절한 평가와 물색, 취득, 처분을 위하여는 미술품에 전문적 지식이 있고 미술품 거래에 관한 노하우를 갖춘 미술품 경매회사 경력 또는 미술 전공자, 사업구조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 전문가나 준법 감시 전문가, 공인회계사, 공시 및 증권 분야에서의 전문가, 투자자 보호와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등 핵심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유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당사는 확장에 따르는 인력 충원 필요성에 대비하여 인력을 선제적으로 충원하여 왔으며,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핵심 인재 채용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는 보상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다양한 인재 유치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세 내역은 「제2부 VII. 임원의 보수 2. 임원의 보수 등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의 노력이나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당사 핵심 인력의 퇴사로 인한인력 유

출이 있는 경우 당사의 영업과 공동사업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동사업 운영자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패 위험 및 공동사업 운영자의 겸영으로 인한 위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있어 공동사업 운영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사는 과거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2024년부터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초자산 2건에 대해 투자계약증권의 청산에 따르는 손익을 배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매우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사업운영 검증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어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공동사업이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가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의 구조는 실무적으로 사례가 충분치 않으며, 해외에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이 지속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되는 사례가 있으나, 그 사업성이나 법제상 차이 등으로 완전히 당사와 동일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 증권신고서와 같은 방식으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 그에 기한 공동사업을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영위하며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청산을 위하여 노력할 뿐, 미술품 렌탈(대여)업 또는 미술품과 관련된 대부업 등의 다른 사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술품에 대하여 공유 지분권을 기초로 하는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당사가, 점유로 그 소유권 이전이 표상되는 동산인 미술품에 관하여, 점유 이전을 수반할 수 있는 미술품 렌탈업 또는 역시 미술품의 소유권 분쟁 가능성을 높이고 기초자산의 혼장 가능성을 야기하는 미술품 양도담보·근질권 설정을 수반하는 대부업을 겸영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동사업의 운영 외에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미술품의 점유를 전제나 기초로 하는 다른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당사는 공동사업의 운영 외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이러한 사업이 공동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투자계약을 감시·감독하는 견제장치 미흡으로 인한 위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하는 투자계약증권에 있어 공동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투자계약의 이행을 감시·감독하는 견제장치가 외부에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투자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투자계약의 목적인 공동사업의 적법성, 투자계약증권에 기재된 투자계약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투자계약에 비추어 진실한지와 정확한지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아 그 법률검토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계약의 적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

여 기초자산의 위치와 주요 변경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외부감사인의 2025년 반기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였으며, 향후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증권신고서에도 외부감사인의 분기 또는 반기 검토 보고서나 사업연도말 감사보고서를 각 첨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기초자산의 보관을 위하여 미술관 보험이 부보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보호기금을 조성합니다.

한편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에 있어 공동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6조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준법지원담당임원을 사내이사로 두어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에 전문성이 있는 임원이 담당하는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며, 대표이사,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담당 임원 등을 포함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고, 기초자산의 선정,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사후관리에 있어 투자자보호 관련 통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체 내부점검 등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투자계약 자체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감독하는 외부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추후 당사가 마련한 체계의 적절한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사업자 선정에 관련된 위험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공동사업의 주된 운영자가 되며, 다른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하여 공동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인 청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합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 시 대상자의 재무상황과 규모, 기초자산에 대한 전문성, 연혁과 기존 거래이력 등을 고려하고, 지급해야 하는 비용과 수수료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대상자에 대한 수수료율 등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당사가 부적합한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동사업 참여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동일한 의무를 준수합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황, 규모, 기초자산에 대한 전문성, 연혁과 기존 거래이력 등 발생가능한 리스크가 과다하지 않은지를 고려하고, ② 비용과 수수료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거래 상대방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높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수료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지 여부를 고려하며, ③ 거래 유형(미술품 전시 판매 또는 경매 판매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기초자산의 매각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기준을 투자계약에 명시하고 있으며, 공동사업 참여자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선정과 전문가인 제3자의 이용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공동사업 참여자에 관한 중요한 정보로서, 공동사업 참여자 상호, 공동사업 참여자가 위탁 등으로 분담하는 공동사업의 내용, 공동사업 운영자와의 관계(지분관계와 특수관

계인 여부 포함), 공동사업 관련 경력(내용 및 기간), 공동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보수, 수수료 기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시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케이옥션을 미술품 보관에 있어서의 공동사업 참여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① 케이옥션은 2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서울옥션과 더불어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미술품 경매회사로 미술품 시장에서 충분한 전문성이 있으며, ② 케이옥션이 제공하는 케이아트스페이스는 미술품 전문 수장고로 24시간 CCTV와 미술품 보호를 위한 가스 소방 설비, 방화 철문, 각 호실별로 불연소재로 구획된 격벽, 항온항습기, 미술품 입출고를 위한 K-Office 지원이나 미술관 보험 등 미술품 보관에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재단이나 국내외 주요 컬렉터가 이용하고 있고, 당사 역시 케이옥션의 다른 중요 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약 300점 이상의 미술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케이아트스페이스에 대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③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초자산 판매 분야에 있어서는 케이옥션을 공동사업 참여자로 확정한 것이 아니므로, 추후 기초자산의 판매시에는 케이옥션을 포함하여 크리스티, 소더비 등의 해외 경매회사나 갤러리 등까지 기초자산 판매를 위한 최적의 판매처를 물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기초자산의 가치 상승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전시 또는 판매 목적의 전시 외에는 별도로 기초자산에 대하여 영리 목적의 미술품 렌탈업/대여업을 운영하거나 겸영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적합한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하거나 당사가 제시한 기준이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에 부족한 경우, 공동사업의 수익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차. 소송 관련 위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나 분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분쟁이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그 소송 내역 및 금액 여부에 따라 당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공동사업의 성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나 분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분쟁이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아닌 공동사업 참여자가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사업 참여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제기나 분쟁의 발생은 그 내역 및 금액 여부에 따라 당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공동사업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소송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초자산에 대한 보증을 매매계약 조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을 인도받은 후 객관적 제3자를 통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진위 검증 및 컨디션 리포트(Condition Report)를 각 제출 받았습니다. 당사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비한 공제와, 임원책임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기초자산은 케이아트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미술관 보험에 부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

사는 법률전문가인 사외이사와 역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는 분쟁처리기구를 통하여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그 분쟁의 해결과 소송의 대응을 위하여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공동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카. 공동사업자의 도산 관련 위험

당사는 청약금과 청약증거금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당사 서비스 중단을 대비한 독립적 제3자와의 청산 업무 관련 위탁계약, 청산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의 마련, 동산인 기초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 등을 통하여 도산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고 있으나, 도산 위험은 모든 사업자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으로 이러한 도산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공동사업의 수익성이나 계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청약금과 청약증거금을 청약 기간 내에 특정금전신탁하여 분리 보관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의 도산 위험에 대비합니다. 당사는 도산을 포함하는 당사의 사업중단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의 청산과 관련된 독립적 제3자로서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계속적 보관 및 처분노력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사업 참여자인 (주)케이옥션과 사업중단조건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업중단시 청산 업무 등 처리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유로서 소유권의 이전이 표창되는 동산으로서 미술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당사가 직접 보관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 참여자인 (주)케이옥션이 제공하는 케이아트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관함으로써, 당사의 도산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도 당사 소유 재산과 기초자산이 혼장될 위험 또는 당사가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위험을 관리합니다.

특히 당사는 불연 소재와 방화문으로 구획된 케이아트스페이스의 개별 호실을 특정하여 계약기간 동안 이용하는 것이어서 케이옥션의 다른 미술품들과 혼장될 위험이 없으며,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전 공동구매 미술품 외에 투자계약증권 발행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미술품을 취득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므로 당사의 다른 자산과 혼장될 위험도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이용하는 호실은 등록된 인원만이 출입하고, 출입하는 인원의 기록 및 미술품의 입출고 기록은 모두 K-Office에 보관됩니다. 케이아트스페이스의 호실별 구획 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아트스페이스 호실별 구획 분리


케이아트스페이스 구획분리(1)


케이아트스페이스 구획분리(2)

위와 같이 구획으로 분리된 케이아트스페이스에서 기초자산은 당사만이 활용하는 특정한 호실에 보관되며, 1개의 호실은 그 보관방식에 따라 300점 정도까지의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구획분리된 호실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당사 기초자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으로, 당사가 이용하지 않는 동안 다른 호실 또는 화재나 파손 등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당사의 기초자산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는 각 기초자산에 대하여 부여된 번호를 바탕으로 미술관 보험에 부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공동사업 참여자인 (주)케이옥션은 2022년 1월 2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상장회사로서 체계적인 위험 관리 정책과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내재된 도산 위험을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 또는 공동사업 참여자인 (주)케이옥션 역시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러한 도산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공동사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동사업의 계속 가능성이 상실되거나 축소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에서 투자계약증권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을 하기 전 본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사업 영위나 공동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실적, 공동사업의 운영·성공·실패·청산 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투자계약증권의 시장가격이나 공동사업의 청산가치가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일부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당초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나.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가능성

본 증권신고서에 대하여 정부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공모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 되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본 증권신고서의 수리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와 투자계약서 기재내용이 변경되거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 건 투자계약증권은 정부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에 대하여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투자계약증권은 정부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로 공동사업의 투자계약서, 당사 2024년 감사보고서 및 2025년 반기 검토보고서, 기초자산의 진위·가치·상태 등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서나 당사가 조사한 사항들, 기초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서, 당사의 확인서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해당 정보를 모두 참조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전까지 금융감독원의 수리 과정에서 정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투자설명서의 내용 또한 동일하게 정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내용 중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금번 투자계약증권 청약 시 일반청약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발행인인 당사의 현황, 기초자산의 상세한 내역, 투자계약의 조건과 중요한 권리 의무, 발행인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와 의무,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라며,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바.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공모가격은 기초자산 취득금액에 발행인의 이익을 포함하는 발행제비용을 합산하여 발행하는 증권의 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희망공모금액 중 기초자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는 약 90.91%이며, 발행제비용의 비율은 9.09%를 차지합니다. 발행인은 발행제비용을 자신의 위험으로 지출하고 남은 부분을 발행인의 이익으로 삼으므로, 투자자께서 본 투자계약증권의 취득 이후 추가로 부담하시는 금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미술품인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은 기초자산의 정확한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발행제비용 역시 절대적인 가치의 평가가 합산된 금액이 아니며 발행인의 이익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는 가능성 등 그 정확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이처럼, 공모가 산정방식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기초자산 취득금액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거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의 평가의견서를 통하여 기초자산 취득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발행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공모를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산의 취득, 보관, 처분에 필요한 금액과 발행에 있어 부담하거나 분담하여야 하는 비용, 외부전문가들에게 지출하는 비용, 법률검토비용,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래의 미술품 보관비용이나 보험료, 기타의 비용 등을 조사하여 포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공모가액은 기초자산 취득금액에 발행인의 이익을 포함하는 발행제비용을 합산하여 발행하는 증권의 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공모금액 중 기초자산의 율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치(NAV)는 약 90.91%이며, 발행제비용의 비율은 9.09%를 차지합니다. 당사는 발행인 매매차익의 100%를 예비비로 삼아 기초자산의 국내외 운송료, 분쟁 처리, 기타 발행과 공동사업의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 유보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에는 비용의 지출을 줄이고 당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부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처분기간을 단축하고 적절한 처분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계속할 경제적 유인이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예상 항목과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기초자산의 매각에 따른 청산시 남은 비용은 당사로 귀속되며 부족한 경우 당사가 추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 투자자가 추가로 부담하

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목	금액(원)	비고
컨디션리포트 발급비	990,000	작품 판매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의 컨디션 체크와 컨디션리포트 발급 비용
전시 및 운송비	7,000,000	미술품 해외 전시 판매를 위한 운송(판매자 부담시, 항공 운송 기준, 회당 500만원 가정) 1회 + 미술품 국내 전시 판매를 위한 운송 (판매자 부담시, 미술품 운송용 무진동 탑차 편도 1회당 50만원 가정) 4회
작품관리비(액자, 보존처리, 촬영 등)	4,000,000	작품 판매를 위한 액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보존처리와 촬영이 필요한 경우 등
뷰잉 및 전시비용	6,000,000	청약 전 프리뷰를 위한 인력배치 및 인쇄비용을 포함한 전시비용 일체, 청약 종료 후 전시 부대비용, 작품 관람을 위한 인력배치 비용 등
기타비용	3,402,000	기초자산이나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우발적 상황에 대한 기타비용 및 계좌관리수수료
합계	21,392,000	

한편, 공동사업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비용이나 수수료의 지출은 투자자가 별도로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납부하지 아니하고 당사가 우선 부담한 후, 기초자산의 매각 후 그 매각대금에서 공제하며,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당사는 기초자산의 청산으로 인한 청산손익이 본 공모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 비율에 따라 투자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수(최종매각대금이 모집(매출)총액의 108%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를 수취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 본 투자계약증권의 취득 이후 청산 시점까지 추가로 부담하시는 금원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당사의 공모가 산정방식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인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은 기초자산의 정확한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발행제비용 역시 절대적인 가치의 평가가 합산된 금액이 아니어서 발행인의 이익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는 가능성 등 그 정확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상황의 변동 및 당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기초자산이 속한 미술품 시장의 변동성 등이 계량화 되어 있지 않아 기초자산 취득금액의 장래 평가나 청산손익에 있어 공동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장래 지출될 금액이 현재의 공모가 산정방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모가 산정방식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래예측진술의 포함으로 인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미래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내지 별도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 환경, 공동사업의 운영 경과,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이 포함된 시장의 추세나 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미래예측적 서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당사의 실제 실적이나 공동사업의 실제 실적은 본 공시서류에 포함된 여러 미래 예측적 서술과는 실질적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의 가치, 기초자산의 취득·보관·관리·매각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의 운영 또는 청산 계획, 기초자산의 향후 가치, 공동사업 참여자의 선정 계획 등 공동사업과 관련된 미래 예측적 서술도 해당됩니다. 한편,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당사 사업과 관련하여 앞서 서술한 위험요소와 다음과 같은 기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아래 사항에 반드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일반적인 경제, 사업 및 정치 상황
- 당사가 발표·공시한 당사 또는 공동사업의 사업계획 지연 또는 취소
- 당사 제품・서비스 관련 시장 상황 및 사업 전망
- 기초자산의 생산자인 작가 관련 시장 상황 및 사업 전망(평판 또는 거래량, 거래가격 추이 등)
- 기초자산이 포함된 미술품의 판매 시장 또는 미술품 경매 시장의 상황 및 전망
- COVID-19의 장기화 또는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는 기타 유형의 감염병
- 규제, 입법 및 사업 관련 상황의 부정적 동향
- 금리 및 환율 변동
- 당사의 차입 및 채무 상환력
- 향후 공동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수수료
-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 기초자산에 내재된 위험(위작·작품손상·분실·도난 등)

앞서 언급하였던 위험요소 및 다른 위험요소와 관련한 일부 당사 기업 정보 공시서류와 공동사업과 관련된 공시서류는 추정에 기반할 뿐이며, 하나 이상의 불확실성 또는 리스크가 발현하는 경우, 실제 결과는 추정, 예상 또는 추산했던 것 뿐만이 아니라 과거 경험치와도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 자체의 거래량 감소 등 시장 위축, 미술품 판매 시장 또는 미술품 경매 시장의 거래액 감소, 환율 변동으로 해외 미술품 시장에의 접근성 약화, 기초자산의 생산자인 작가의 평판 위험, 기초자산의 거래량 매출액 감소, 공동 사업 운영 중의 비용 증가, 기초자산에 내재된 위험으로서 위작·작품손상·분실·도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상 자료들은 본 공시서류 기준일자 현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정보 취득, 미래 사건 발생 등과 관계없이 미래 예측 자료를 갱신 또는 수정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이와 같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향후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이 제공하는 모든 당사 또는 공동사업의 추정자료는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유의사항이 적용되는 바, 투자자께서는 본 공시서류의 공개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미래예측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본 증권신고서와 함께 당사의 감사보고서, 기초자산의 진위·가치·상태 등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서나 당사가 조사한 사항들, 기초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서, 당사의 확인서 등이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되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결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당사는 일반청약자에게**증권을 배정함에 있어 청약 수량이 본 공모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의 수량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비례 배정, 추첨 배정, 균등 배정 방식을 각 적용하나 청약의 방식에 있어서는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를 제외한 일반청약자 1인의 본 증권 청약한도는 3,000만원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수량의 증권을 배정받을 수 없으며, 당사를 제외한 어떠한 투자자도 50%를 초과하는 증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그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각 적용되는 배정 방식에 의하여 배정되는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되므로,**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증권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보다 많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증권수보다 많거나 적은 증권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자명부 확정 전까지 예상한 배정증권 청약으로 배정되는 증권의 수량 또는 환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는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공개(IPO)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금융투자협회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주식의 배정) 역시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위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준용하여 일반청약자로부터 일괄청약방식으로 청약을 받되, 청약 수량이 본 공모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의 수량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배정 방식을 달리합니다.

또한, 미술품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각투자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당사의 동의가 없는 한, 당사를 제외한 일반청약자는 3천만원에 해당하는 3,000주를 초과하는 증권을 배정받을 수 없으며, 당사를 제외한 어떠한 투자자도 50%를 초과하는 증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약 수량이 본 공모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의 수량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청약의 제한을 제외하고는 청약된 증권 수량을 모두 배정하나, 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의 수량을 초과하는 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균등 배정 방식, 비례 배정 방식, 추첨 배정 방식을 각 적용합니다.

당사는 위에서 서술한 증권의 배정방식에 따라 배정한 결과 모집예정증권 총액에 미달하는 증권을 배정 받거나, 증권의 청약에 일반투자자와 같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각 적용되는 배정 방식에 의하여 배정되는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되므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증권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보다 많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증권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증권이 배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투자자명부 확정 전까지 예상한 배정증권 청약으로 배정되는 증권의 수량 또는 환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이해상충 발생 위험

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이 존재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세법 및 관련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거래가격 및 조건은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공모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은 기초자산에 대하여 당사가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다른 공동사업 참여자들을 선정하고, 투자자들에게 기초자산의 매각시 처분손익을 배분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것으로**공동사업자(공동사업 운영자 및 공동사업 참여자)와 투자자 간, 또는 투자자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관리하여 공동사업의 운영 원칙과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 기준,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통제 규정, 분쟁해결기구를 두는 등 이해상충 발생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 및 공동사업의 수행과 기초자산의 취득, 보관, 처분 과정에서 당사의 증권 보유로 인하여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당사가 미처 예상치 못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반기 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기업명	
	당반기	전기
최상위지배기업	티에이매니지먼트(유)	티에이매니지먼트(유)
중간지배기업	티에이어드바이저(유)	티에이어드바이저(유)
지배기업	(주)케이옥션	(주)케이옥션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주1)	-	-
기타	최상위지배기업, 중간지배기업 및 지배기업의 기타특수관계자 등	최상위지배기업, 중간지배기업 및 지배기업의 기타특수관계자 등

(주1) 전기 중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인 아트폼스(주), 아트네이티브(주), 아르떼케이(주)는 (주)케이옥션에 흡수합병되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관계회사를 기타 관계회사까지 포함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일	업종
상장	1	주식회사 케이옥션	도현순	2005. 9. 15.	미술품 경매
비상장	5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도현순	2018. 8. 1.	기타 상품 중개업
		티에이매니지먼트 유한회사	강수진	2015. 6. 18	경영자문
		티에이파트너 유한회사	강수진	2015. 6. 18	경영컨설팅
		티에이어드바이저 유한회사	강수진	2010. 12. 6	사업구조자문
		아트큐브플러스㈜	강수진	2013. 9. 5	소매업

당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	매입	매출원가	기타비용
티에이매니지먼트(유)	최상위지배기업	14,370	-	13,564	-
티에이어드바이저	중간지배기업	14,439	-	13,579	-

(주)케이옥션	지배기업	-	-	-	154,715
아트큐브플러스(주)	기타	14,439	-	13,579	-
티에이파트너(유)	기타	14,370	-	13,564	-
임직원 등	기타	53,813	-	50,352	-
합계		111,431	-	104,638	154,715

<당반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과 목	거래조건			변동내용			
			발생년도	약정기간	이율(%)	기초잔액	기중증가액	기중감소액	기말잔액
임직원	임직원	주임종장기채권	2022	상환시	-	100,000	-	-	100,000
(주)케이옥션	지배기업	단기차입금	2023	1년	4.6	1,500,000	-	-	1,500,000
(주)케이옥션	지배기업	단기차입금	2024	1년	4.6	2,000,000	-	-	2,000,000
합계						3,600,000	-	-	3,600,000

당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채권			채무		
		주임종장기채권	선급비용	임차보증금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티에이매니지먼트(유)	최상위지배기업	-	-	-	-	-	5,763
티에이어드바이저	중간지배기업	-	-	-	-	-	6,579
(주)케이옥션	지배기업	-	36,271	60,000	3,500,000	240,147	-
아트큐브플러스㈜	기타	-	-	-	-	-	6,579
티에이파트너(유)	기타	-	-	-	-	-	5,763
임직원 등	기타	100,000	-	-	-	-	28,370
합계		100,000	36,271	60,000	3,500,000	240,147	53,05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또는 상품·서비스 거래는 세법 및 관련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약관에 의한 거래인 경우 해당 약관을 준수하고, 거래가격 및 조건은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거래 주요 규정]

구분	내용

제4조 (거래의 범위)	이해관계자 거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당 1억원 이상의 매출/매입거래 2. 건당 1억원 이상의 부동산 또는 자산의 구입/처분 3. 건당 1억원 이상의 용역거래 4. 연구개발의 이전 5. 면허 약정 6. 건당 1억원 이상의 대여와 출자를 포함하는 금융거래[복리후생(주거 안정, 기타)를 목적으로 하는 임직원에 대한 대여를 제외한다] 7. 담보 또는 보증 8. 경영위탁계약 9. 기타 위와 유사한 정도의 거래
제5조 (거래의 집행)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들에게 그 거래의 객관성과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참석이사들의 만장일치 결의를 얻어 그 거래를 집행한다.
제7조 (이사회를 불요로 하는 거래)	이해관계자 거래 중에서 다음 각 호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매입거래(약관 또는 약관과 유사한 계약서에 의한 응찰·낙찰·위탁 등). 다만, 회사가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취득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거래조건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경우에 한한다. 2. 경상적인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보수/비용(약관 또는 약관에 유사한 계약서에 의한 거래를 말한다) 3. 기타 상관습이나 상대방인 관계회사가 전 2호에 의한 거래로 보는 거래(경매약관, 정형화된 판매계약서, 임직원 복리후생에 따르는 대여금, 파트너 수수료, 할인이나 우대 정책 등). 다만, 회사가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취득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거래조건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경우에 한한다.

이처럼 당사는 이해관계자 통제 규정에서 정하는 거래의 범위를 넘는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의한 통제를 거치도록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하여 당사가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취득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거래조건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를 불요로 하나, 이러한 동등 또는 유리한 조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래 당시나 거래 전후 이사회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어서 결국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기초자산에 관련하여서는 이사회의 검토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사 최대주주인 (주)케이옥션의 관계회사들은 모두 동일한 수준의 이해관계자 통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당사가 기초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거래로 이사회를 생략한다 하여도 당사의 거래 상대방이 관계회사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그 거래상대방이 이사회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동일한 이해관계자 통제규정에 의한 통제를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케이옥션은 제3자에게 제공하여 오던 케이아트스페이스 이용계약을 계약의 중요한 조건과 금액을 동일하게 당사와 체결하여 공동사업 참여자인 기초자산의 보관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당사는 유동자산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관계회사인 아트폼스(주)와 미술품 구매대금으로서 차입금 1,500,000,000원, 아트네이티브(주)와 미술품 구매대금으로서 차입금 2,000,000,000원에 대하여 같은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였으며, 아트폼스(주

)와 아트네이티브(주)는 전기 중 당사 최대주주인 (주)케이옥션과 소규모합병을 완료하여 당사가 대여받은 차입금의 거래당사자는 모두 (주)케이옥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의 매각 과정에서 당사 최대주주가 미술품 판매업, 미술품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당사 최대주주에 대하여 기초자산의 처분을 위탁하여 공동사업 참여자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이해관계자 통제규정에 따라 거래의 객관성과 당위성을 소명하여 이사회의 통제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 및 이해관계인 간의 거래 특성상 이해상충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으며, 모든 이해상충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모자금의 보관 방식과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본 공모를 위한 청약기간 중 **청약증거금을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하여 당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금번 공모를 통하여 조달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금액을 기초자산 취득과 발행제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이 때, 당사는 발행제비용 중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확정된 비용 항목들을 제외한 잔여 부분을 발행에 따라 당사에 발생하는 이익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모자금의 보관 방식과 발행제비용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당사의 이익으로 하는 공모 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는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는 당사와 계좌관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업자에 당사 투자계약증권 청약전용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나, 그 금융투자업자가 직접 청약을 수령하거나 당사를 위하여 청약금, 청약증거금, 또는 어떠한 형태의 예치금도 대신 수령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청약전용계좌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예치한 금원을 청약을 위하여 당사가 특별히 개설한 집금계좌에 납입하고, 당사는 청약기간이 종료되어 투자자 명부가 확정될 때까지 이를 보관한 후,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계약에 기재한 바에 따라 사용하거나 투자자에게 환불합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본 공모를 위한 청약기간 중 투자자로부터 납입받는 예치금 성격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 청약기간 중 당사의 도산위험과 절연하고 투자자 명부 확정 후의 적법한 자금사용과 투자자에 대한 환불 정책 이행을 위하여, 각일에 청약증거금을 수탁사인 NH투자증권에 특정금전신탁합니다. 당사와 수탁사가 체결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은 투자자 명부 확정일에 해지되고, 당사가 계좌관리를 위하여 선정한 금융투자업자와의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당사 운영자금 계좌, 투자자 환불 계좌로 나뉘어 출금됩니다.

기초자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 기초자산을 선매입하였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매매대금 지급에 따르는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발행제비용 중 확정된 부분들에 대하여는 당사의 이름으로 계약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사는 그 비용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당사가 그러한 매매대금 또는 비용의 지급 의무를 공모자금의 사용용도로 기재된 내역과 달리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한편, 당사는 공동사업과 관련된 금전의 지출을 본 증권신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 취득자금을 제외한 발행제비용 중에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확정된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따르는 분담금, 사서인증에 따르는 수수료와 비용,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나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에 따르는 비용,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을 받기 위한 비용 등을 지출하고 그 남은 잔여 부분을 발행에 따르는 당사의 이익으로 삼습니다. 당사는 공동사업의 운영 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보관료와 보험료를 투자자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하고, 본 증권신고서의 정정 또는 변경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검토비용의 증가 역시 투자자가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공모 자금 사용목적의 상세 내역은 「제1부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당사는 공모자금의 보관과 사용내역을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공모자금의 보관 과정이나 사용 과정에 있어 투자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금번 공모로 조달된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투자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계약증권의 환금성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본 공모에서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은 대한민국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등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양도·양수 방법을 통하여만 제3자에게 증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활성화된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투자자가 취득한 증권의 환금성이 저하되고, 증권의 가치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투자계약서에 의하여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있고, 그에 따르는 전산 시스템 등 지원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 투자계약증권의 전자증권화나 토큰증권(Token Security)의 발행, 장외거래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등이 법제화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마련한 투자계약서 제17조 제2항은 증권의 전자등록이 가능한 경우 전자등록이 가능함을 전제로 증권의 실물발행을 배제하고 있고, 동 투자계약서 제19조 제4항은 전자증권 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으로 투자계약증권을 등록 또는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는 본 투자계약증권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 또는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러한 당사의 유통노력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 2019년 9월 16일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과정에서, 당시 주권의 전자등록 과정에서 주권의 발행과 종류를 정한 조항들은 정관에서 반드시 삭제를 필요로 하였으나, 주식의 전자등록에 대한 근거는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는 등으로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지난 국회 회기 발의되었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3조의2 제6항 각 호는 '발행인이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나 '분산원장등록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등에 있어 "전자등록기관은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토큰증권, ST를 말합니다)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거나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전환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8일자로 개정된「전자등록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7호) 제1-3조는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을 전자등록 대상 증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2023년 12월 13일자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한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비록 현 단계에서는 본 증권이 전자증권으로의 등록 또는 토큰증권으로의 발행이 되지 않아 환금성이 부족하나 추후 투자계약증권의 전자등록 또는 토큰증권 발행을 통한 환금성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도록 투자계약서에 그러한 가능성을 반영하고 투자자의 일반적 협조의무를 함께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계약서 제19조의2에서 정한 공동사업의 합병 역시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통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공동사업의 규모가 부족한 경우 투자자 총회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계약증권은 통일규격 유가증권 용지나 양식의 사용 대상이 아니며, 『증권·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사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등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활성화된 유통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된 사례도 없습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제공하는 증권의 양도와 양수 방법을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한 지명채권 양도양식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 채권의 양수도에 따르는 승낙에 확정일자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사이에서 채권의 양도와 양수에 따르는 권리의 이전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받기 위한 확정일자에 관한 비용은 양수도 당사자인 투자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공개 또는 비공개로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투자계약서에 의한 기초자산의 처분과 공동사업의 청산으로 인한 기대이익 이외에 증권의 유통 가능성은 보장되지 아니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투자자가 취득한 증권의 전매 방식 제한과 증권의 환금성 저하가 곧 증권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초자산의 개별 특성으로 인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특정 작가 1인의 단일 미술품을 대상으로 기초자산을 취득·보관·관리·매각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것으로, 생산자인 작가와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특성과 그에 대한 공급 및 수요에 따**

라 공동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아래 기초자산에 관한 공동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작가명	유영국(Yoo, Youngkuk, 1916~2002)
작품명	Work
재질	oil on canvas
작품 크기	97 x 130.5 cm
제작년도	1984

위 기초자산은 “예술가가 순수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미술품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말하는 “예술창작품”인 미술품에 해당합니다. 위 기초자산은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3조에서 말하는 "예술창작품" 인 미술품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의 예술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작품(기초자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강렬한 삼원색을 바탕으로 화려한 색채의 변주가 펼쳐지는<Work>는 예술과 자연의 합일을 깊이 있게 탐구한 유영국의 예술 세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대표작입니다.다양한 자연 경관 중에서도 줄곧 ‘산’을 그려온 유영국은 특히나 ‘산의 화가’라고도 불리며, 일평생 추상의 절대적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이어왔습니다. 이를 보여주듯 화면 속 산의 형태를 암시하는 색면은 단순한 형태에 그치지 않고 추상과 구상의 경계 사이에서 시각적인 전환을 반복하고 있으며, 간결한 사선 구도만을 통해서도 근경, 중경, 그리고 원경이 중첩된 독특한 깊이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시원하게 펼쳐진 화면은 확장된 공간감과 지평선 너머를 상상하게 만드는 몰입감을 선사하고 있으며, 붉은색을 주조로 하여 대비 속에서 세밀한 조화를 이루는 색채 구성 역시 화면 곳곳에서 시선을 붙잡아두는 힘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색채가 형태에 갇히는 대신 그 자체로 해방된 자유로움을 표현하며, 생동하는 자연의 기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Work>는 “산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던 작가의 말을 회화적으로 축약하며, 사물 이상의 자연, 즉 내면의 시선과 맞닿아 비춰진 주관적 자연의 다채로움, 그 무한한 서정성과 장엄한 아름다움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유영국의 대표적인 작업입니다.

당사는 기초자산 가격의 적절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1) 거래 사례 선정 기준
가) 해외 미술품 정보 제공 전문 DB를 통하여 작가의 작품 중 거래사례를 분석함
나) 해외나 국내에서 기초자산과 유사한 미술품에 대한 증권 발행사례 또는 증권신고서 제출 사례 등이 있는 경우 그 발행 사례에 포함된 거래 사례들이나 주된 기재사항들
다) 다만, 거래사례의 시장성을 확인하거나 주제와 구성에 대한 대조를 확인하기 위한 거래사례들을

대조군으로 추가

당사는 위와 같은 평가방법론을 바탕으로 하여 2016년 1월 부터 2025년 9월까지 동일 작가(유영국)의 낙찰 작품 57점을 1,800만점 이상의 해외 미술품 거래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는 DB인 Artprice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평가기관	거래사례수(전체)	취득금액 (공모액)(원)	비고
	직접 비교대상	내재가치(원)	
당사 (내부평가)	57	600,000,000 (660,000,000)	Artprice를 통하여 직전 10년(2016년 1월 ~ 2025년 9월)까지의 거래사례를 모두 확보하여 분석
	10건	787,604,647원 ~ 792,285,780원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 대하여 외부 평가기관인 (주)제일감정평가, 한국기업평가(주),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예술창작품인 기초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조사된 거래사례는 유사한 작품일 뿐 기초자산 자체의 거래 가격은 아니고, 분석의 방식이나 심미적 차이에 따라 당사 뿐 아니라 외부평가기관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래사례를 판단하는 안목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 요약

평가기관	거래사례수(전체) 직접 비교대상	평가액(원)	비고
(주)제일감정평가법인	87 2건(최종 1건)	690,000,000	- 담당평가사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졸 (감정평가경력 8년) - 거래사례법
한국기업평가(주)	76(유찰 제외시 57) 9	735,283,930 ~ 862,790,702	- 국내 및 해외 미술품 시장 산업분석, 기초자산 및 작가 분석, 거래사례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기초자산 가치평가 - 거래사례법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의 감정 결과, 상기 작품은 **진품**으로 소견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감정 소견: **진**		

당사의 내부 평가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1부 II. 9. 기초자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당사는 기초자산에 관한 입수 가능한 최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거래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초자산 취득금액과 공모총액을 산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당사의 내부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하여 객관적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창작품인 기초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조사된 거래사례는 유사한 작품일뿐 기초

자산 자체의 거래 가격은 아니고, 작가나 작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당사가 조사한 내역에 대하여 완전성을 보장할 통일적 기준이 없다는 점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초자산인 미술품 거래시장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

미술품 시장의 규모는 기초자산이 유통되고 현금화되는 유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미술품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기초자산의 청산 가능성이나 청산시기, 또는 청산가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술품 시장은 경제흐름과 연관성이 있으며, 향후 경기 둔화 시 미술품 시장 또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품 시장은 경제 위기 이후 빠르게 과거 시장규모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미술품 시장의 회복탄력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사가 공동사업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 미술품 시장은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 뿐 아니라 기초자산의 처분가능성과 수익률, 공동사업의 청산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품 시장의 유동성을 측정하는 과거 미술품 거래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미술품의 시장의 범위, 수요층에 따라서도 공동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본 투자계약증권은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의 청산을 위하여는 미술품을 매각하여야 합니다. 미술품을 거래되는 시장은 주로 1차 시장으로 불리는 미술품 판매시장으로 화랑 또는 아트페어가 있고, 2차 시장으로 불리는 미술품 경매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사와 같은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인이 기존 미술품 시장에 참여하여 상당한 인지도와 시장 참여도를 가지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공동사업의 청산을 위하여 기초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사는 1차 시장 또는 2차 시장 중에서 먼저 어느 시장에 있는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할 것인지 혹은 다수의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 검토합니다. 기초자산이 미술품 시장에서 매각될 수 있는 가능성, 즉 기초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공동사업의 청산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초자산 시장의 유동성은 미술품 거래시장의 규모로 나타납니다. 미술품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미술품 경매회사의 과거 경매 거래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시행하는 미술품 시장 실태 조사에 대한 미술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 응답, 그 외 한국시가감정협회 등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자료에 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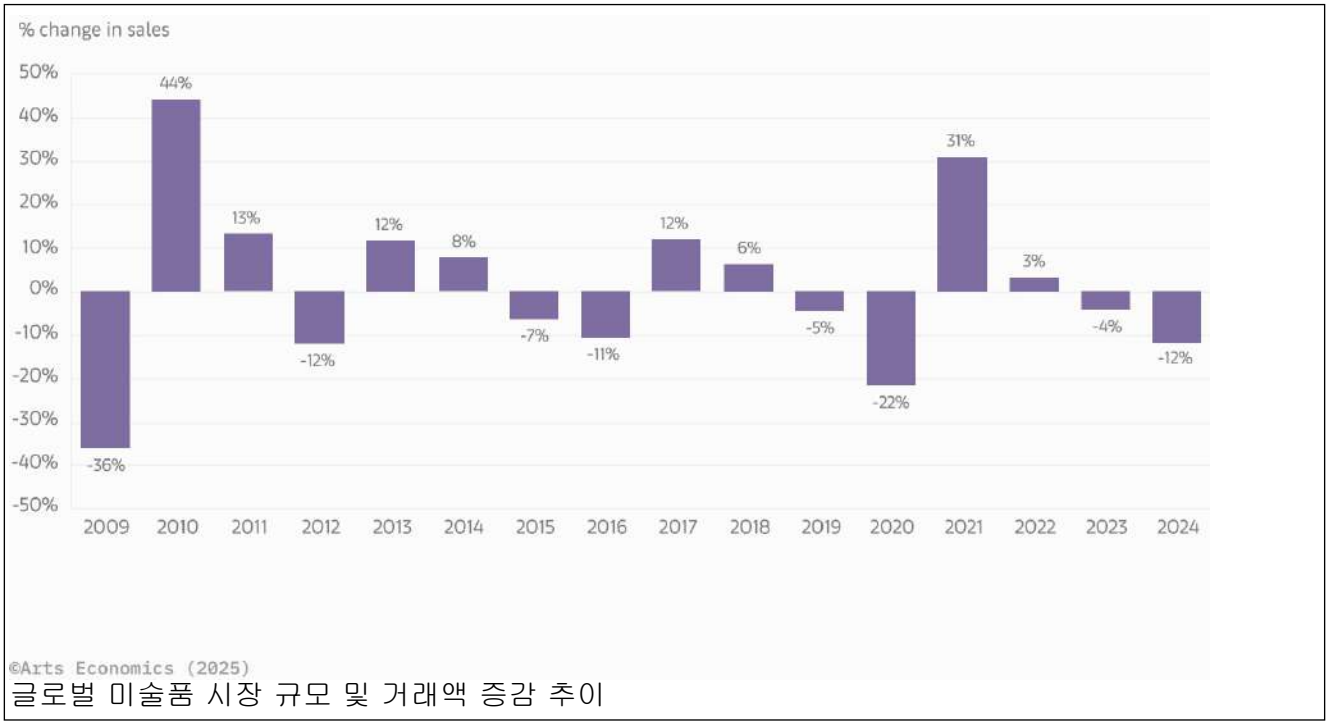
이러한 자료들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료가 자발적 응답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통일적이고 완결성 있는 시장 규모를 추정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미술진흥법」제23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미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24년 7월 26일 시행되며 첫 발을 내디딘 상태입니다.

해외의 경우 글로벌 투자은행 UBS와 세계적 아트페어인 아트 바젤(Art Basel)이 매년 세계 미술품 시장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를 발표하고, 딜로이트(Deloiite)나 기타 시장조사 업체, 소더비(Sotheby's)에서 제공하는 메이 & 모제스 아트 인덱스(Mei & Moses Art Index) 등도 미술품 거래 시장을 분석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해외에서는 조금 더 정교한 자료나 분석이 제공될 수 있으나, 미술품 경매회사의 기록에 의존하는 거래 사례 이외에는 대부분 자

발적 응답으로 작성된다는 한계점은 동일합니다.

이렇듯 자료의 신뢰성 한계를 전제하고 미술품 거래시장의 규모와 변동을 살펴보면,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거래시장은 먼저 경기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Art Basel과 UBS가 발행한 The Art Market 2025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미술 시장의 매출은 전년에 비해 12% 감소하여 약 575억 달러에 그쳤고, 딜러와 경매 부문 모두와 모든 대형 미술 시장에서 총 가치가 감소했습니다. 2020년 COVID-19 팬데믹 이후 2년간 강력한 성장을 보인 후, 글로벌 미술 시장의 매출은 2023년에 둔화되기 시작했고 2024년에도 거래량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총 가치가 하락하면서 계속 감소했습니다.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은 지난 2년 동안 고가 시장 부문이 크게 줄어들어 일부 저가 부문의 매출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총 가치가 낮아진 것입니다. 2024년은 지정학적 긴장, 경제적 변동성, 무역 분열이 지속된 한 해였습니다.

[글로벌 미술품 시장 규모 및 거래액 증감 추이(직전연도와 비교)]



글로벌 미술품 시장 규모 및 거래액 증감 추이

(출처: The Art Market Report 2025, UBS & Art basel)

미술품 경매 시장 또한 미술품 시장 및 경기흐름과 어느 정도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The Art Market에 따르면, 2008년 280억달러의 규모였던 글로벌 미술품 경매 시장은 2009년 183억달러로 감소하였으며, 2019년 275억달러였던 시장은 2020년 210억달러로 23.6%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 글로벌 미술품 경매시장은 다시 2021년 312억달러, 2022년 306억달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술품 시장은 경제 위기 이후 빠르게 과거 시장규모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미술품 시장 침체 이후 2010년 미술품 시장은 빠르게 증가하여 전년도 거래량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COVID-19 이후의 시장 또한 2020년 503억달러에서 최근 3개년 600억달러대의 성장세를 보여주며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도별 글로벌 미술품 판매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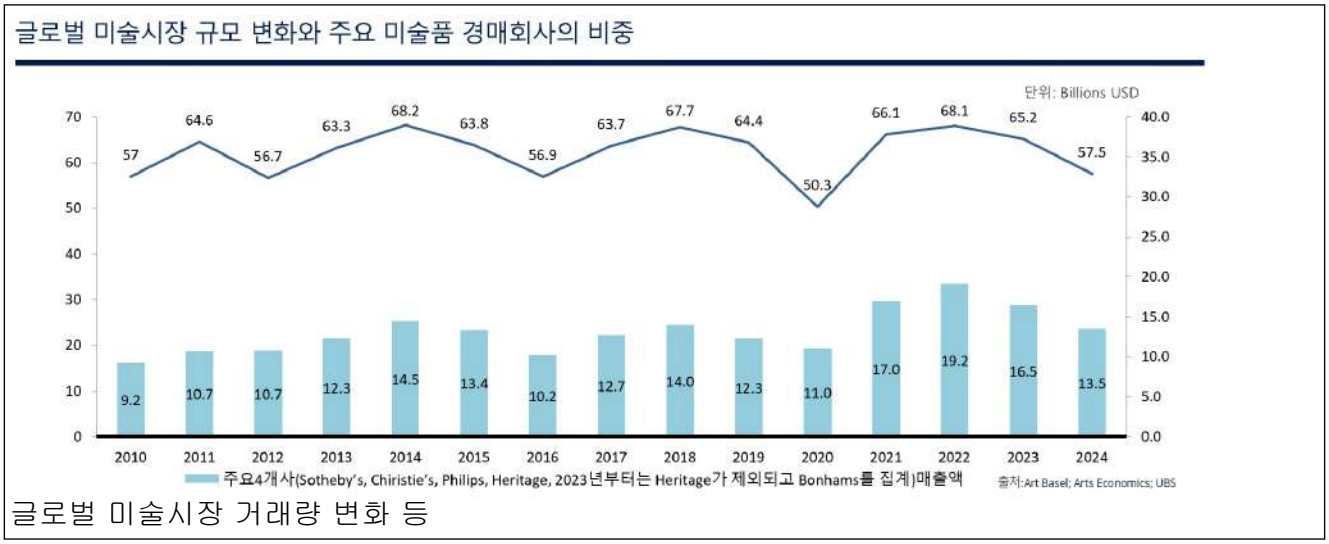
(단위: 십억달러)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금액	57.0	64.6	56.7	63.3	68.2	63.8	56.9	63.7	67.7	64.4	50.3	65.9	67.8	65.0	57.5

(출처: The Art Market Report 2025, UBS & Art basel, Value 기준)

즉,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글로벌 미술시장의 규모 변화를 보면, 경기 침체기에 거래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나, 곧 빠르게 회복하여 600억 달러 이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미술 시장 중에서 미술품 경매회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술시장의 규모 변화와 미술품 경매회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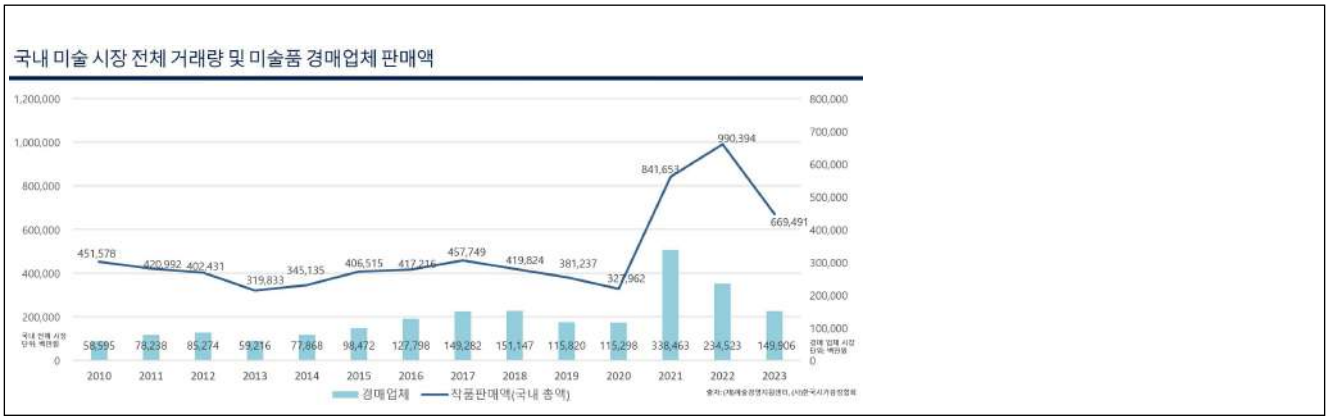


글로벌 미술시장 거래량 변화 등

(출처: The-Art-Market-2023, UBS & Art basel, 자체가공)

국내 미술 시장 역시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경기 변동에 따라 침체와 회복을 반복하다, 2021년에 큰 폭으로 성장하고 2022년에도 상승세 기조를 이어나가다 2023년에는 조정기를 거쳤습니다.국내 미술시장에서 미술품 경매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등락이 있으나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미술 시장 전체 거래량과 미술품 경매업체의 판매액



국내 미술시장 거래량 변화 등

(출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사)한국시가감정협회)

국내 미술품 시장 전체 거래량은 경매 시장은 2020년 COVID-19 발생으로 전년도 대비 26.2% 감소하였다가 2021년도와 2022년까지 상승하다, 2023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나, 2021년 이전 약 10년간의 거래량 규모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의 거래규모는 2020년에 비하여 2021년에는 약 3배 가량 상승하였다가, 2022년과 2023년에는 각 전년도 대비 거래규모가 축소되었으나, 2023년에도 2018년을 제외하고는 2021년 이전 10년간의 연간 거래규모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거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은 2023년 상반기 대비 약 17%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의 호황기를 지나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미술품 투자에 관심있는 경우 경쟁력 있는 가격에 작품을 획득할 수 있는 시기로 여기는 투자자들도 존재합니다.

[연도별 국내 미술품 낙찰총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낙찰총액	증감률(%)	낙찰총액	증감률(%)	낙찰총액	증감률(%)	낙찰총액	증감률(%)	낙찰총액	증감율	낙찰총액	증감률	낙찰총액	증감률(상반기 기준)
케이옥션	72,088	56,952	(21%)	50,607	(11%)	136,520	170%	83,516	(39%)	58,134	(30%)	44,174	(24%)	25,227	1%
서울옥션	112,363	80,619	(28%)	43,228	(46%)	158,544	267%	119,170	(25%)	54,549	(54%)	47,988	(13%)	20,437	(34%)
기타	15,605	16,781	8%	20,111	20%	29,148	45%	33,304	14%	40,898	23%	20,586	(49%)	10,758	1%
합계	200,056	154,351	(23%)	113,946	(26%)	324,211	185%	235,990	(27%)	153,581	(35%)	112,748	(27%)	56,422	(16%)

(주1) 증감률은 전년대비 증가 또는 감소를 의미하며, 2018년도는 2017년 자료의 부재로 증감률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상반기 증감률은 2024년 상반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주2) 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24년 12월 발표한「2024 미술시장조사 보고서(2023년도 기준)」자료에서는 2023년의 미술품 경매회사들의 거래 규모를 약 1,572억원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주3)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www.k-artmarket)'의 연도별 경매시장 분석을 참조하였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은 (사)한국미술품시가감정협회가 배포한 '2023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연말결산'을 참조하였습니다.

(주4) 2025년 상반기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25년 8월 6일자로 발표한「2025년 상반기 국내 미술시장 결산 분석 리포트」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주5) 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매년 말에 그 전년도 미술시장에 대한 조사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에「2023 미술시장조사」를 각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25년 12월 경에는 「2024 미술시장조사」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경매회사들의 낙찰총액이나 증감률 등은 해당 자료에서 직접 발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술품 시장은 경제흐름과 연관성이 있으며, 경기 둔화 시 미술품 시장 또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시장의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곧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거래규모가 회복하는 모습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소더비에서 제공하는 메이 & 모제스 아트 인덱스는 1950년을 1로 보았을 때, 세계 미술품 거래시장의 규모가 2021년까지 연 평균 8.5%의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The Art Market 2025에 따르면 세계 미술품 거래시장 규모는 2024년 575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거래 금액은 다소 줄었지만 거래 건수는 4,050만 건으로 전년에 비해 3% 성장했습니다.

국내 미술품 시장은 COVID-19 이후 대중의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2021년 약 1조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2024년에는 시장 규모가 일부 축소되었으나, 금번 공모를 포함하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에 많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여 미술품 전체 시장의 확대를 기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미술품 시장의 수요자 다변화로 국내 미술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기초자산의 진위에 대한 미술 전문가로서의 소견 제시, 기초자산이 속한 글로벌 미술시장과 국내 미술시장, 기초자산과 작가에 대한 조사, 기타 기초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 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이 검토하여 줄 수 있도록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용역범위와 주요 분석 사항들

외부평가기관명	용역범위	주요 분석 사항들
(주)제일감정평가법인	기초자산 감정평가	- 기초자산이 속한 글로벌 미술시장과 국내 미술시장, 기초자산과 작가에 대한 조사, 기타 기초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 조사 - 기초자산 가액의 감정평가액 산정
한국기업평가(주)	기초자산 가치검증	- 기초자산이 속한 글로벌 미술시장과 국내 미술시장, 기초자산과 작가에 대한 조사, 기타 기초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 조사 - 기초자산 가치검증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기초자산 진위소견	- 기초자산 진위소견

외부평가기관의 분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제1부 II. 9. 기초자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및 본 증권신고서 첨부서류인 「외부평가기관의검토의견」을 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사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도 미술품 경매와 프라이빗 세일의 방법을 시의 적절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술품 경매와 프라이빗 세일은 아래와 같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초자산을 프라이빗 세일 방식으로 취득하였지만, 추후 기초자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처분의 시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식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분	경매 방식	프라이빗 세일 방식

내용	- 소장자의 미술품을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위탁받아 일정기간 전시한 후 지정한 일자와 장소에서 공개된 경매를 개최합니다. 이 때, 경매회사를 위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자를 경매사(auctioneer)라고 하며, 경매에 응하는 것을 응찰 또는 입찰(bidding), 경매에 응하는 사람을 응찰자 또는 입찰자(bidder)라고 합니다. 응찰자가 경매에 응하는 가격은 응찰가 또는 호가(bidding price)이며, 각 경매가 이루어지는 미술품은 '랏'(Lot)이라고 합니다. - 경매회사는 매 랏의 미술품에 경매를 시작하는 추정가(estimate)를 제공하고 경매사는 낮은 추정가(low estimate)부터 호가 단위(bidding increment)에 따라 점점 높은 가격에 응찰하는 응찰자를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떤 랏에 응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 랏의 미술품은 유찰이 되나, 여러 명의 응찰자가 계속하여 호가 단위를 높여 가면 경매사가 최고가에 응찰한 응찰자가 낙찰자(winning bidder)로 결정합니다. 만약 같은 미술품에 대하여 동일한 호가를 제시한 응찰자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경매 시작 전에 서면 응찰(written bidding)을 제시한 응찰자를 1순위로 합니다. - 미술품 경매회사는 경매가 종료되면 낙찰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미술품을 인도하고, 위탁자에게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미술품의 전시, 보관, 신뢰와 보증의 제공, 대금의 수령과 지급, 경매의 진행 등에 걸친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 이처럼 미술품 경매의 방식은 일정한 기간이 정하여지기는 하나, 대중에게 공개되고 여러 사람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술품 가격이 보다 더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고 신뢰성 있는 미술품 경매회사의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술품의 경매가 대면 또는 온라인 경매 방식으로 진행되고 완전히 동일한 작품이 있기 힘든 미술품의 특징으로 인하여 특별한 과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대금(hammer price) 이외에 미술품 경매회사에 지급되는 구매수수료(buyer's premium)나 위탁수수료(seller's premium)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미술품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여야 합니다.	- 위탁자가 미술품을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공개 경매에서 유찰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술품 경매회사에 대하여 프라이빗 세일 방식으로 판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미술품 경매회사 또는 그 관계회사에 대하여 직접 자산으로 작품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라이빗 세일 방식은 미술품 경매와는 달리, 응찰자 사이에서의 호가 경쟁 방식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위탁자 또는 미술품 경매회사가 제시한 가격을 구매 희망자가 검토하고, 그 가격을 받아 들이거나 할인을 요구하는 방식의 협상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프라이빗 세일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탁자 또는 미술품 경매회사가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 또는 판매 희망자가 작품가에 대한 할인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미술품 경매를 위한 위탁수수료나 낙찰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품의 적절한 시세를 모르는 경우 비교적 낮은 가격에 작품을 판매하거나 비교적 높은 가격에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미술품의 진위나 미술품의 가치를 형성하는 컨디션, 유통 경로(provenance), 색상, 그 외 여러 요소 등에 대한 판단이 미술품 경매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대중적인 검증을 거치지는 않았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당사는 미술 시장에 경기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회복의 시기를 적절하게 판

단하고,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미술품 경매회사와 적극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등 경기 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반의 계획을 세워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청산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VID-19 장기화 및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초자산이 속한 미술품 거래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그로 인하여 공동사업의 청산을 위하여 필수적인 미술품의 매각이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적 또는 심미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미술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미술품거래시장에서의 실제 수요층이 한정될 수 있는데, 위에서 기술한 미술품 시장 규모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한정된 미술품 시장 내에서의 수요층을 더욱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전에 이러한 미술품 시장의 유동성과 그 유동성의 증가 또는 감소, 과거 거래 데이터 신뢰도의 한계, 시장과 수요층이 폭넓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초자산 가치의 객관적 입증 가능 여부에 따르는 위험

당사는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거래사례 등을 분석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첨부하며, 기초자산 취득금액과 확정되거나 예상되는 발행제비용 등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품인 기초자산의 거래 사례 등에 대한 조사는 주로 국내 또는 국외의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거래된 과거 사례를 기초로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가치를 추정하였을 뿐이며, 동 미술품의 가격에 대한 보장 또는 명확한 작품의 가치를 제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 공모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하여 미술품 시장의 변동, 작품의 급격한 가치 상승 또는 하락 등으로 기초자산 가치의 객관적 입증 실패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실패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공동사업의 청산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의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은 시장원리에 의하여 가격이 정해지는 상품 또는 제품과는 달리 생산자인 작가의 창작적 활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원가법 등 정형화된 가격 산정 방식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즉 미술품은 그 자체로 생산자가 단 하나만 제작하여 시장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어 그 가치가 그 미술품을 소유하고자 의지와 사람의 가치 판단 척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미술품의 경매는, 최종적으로 낙찰자로 결정되는 구매희망자(응찰자)의 지불능력과 지불의지가, 다른 구매희망자들보다 얼마나 더 크냐에 따라 최종 낙찰가액이 결정되고 그 낙찰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대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상품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원리와 유사하게 미술품의 객관적 가격을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동일한 작가에 대한 미술품 경매가격은 그 거래 사례의 전문적이고 합리적 선정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유사한 작품에 대한 유의미한 거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로 생산자인 작가의 약력, 거래 상대방인 매도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작품의 재질, 주제와 화풍, 보증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또

한, 해외에서 동일 작가의 미술품에 대하여 발행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거래사례들이나 국내에서 모집이 계획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기재된 거래사례들, 그리고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공개된 거래사례 57건에 대하여 공개된 거래 가격, 거래량과 거래 가격들의 변동 추이, 단위가격(cm2/호)당 면적 등을 분석하여 내재가치를 산정하고, 그 내재가치에 비추어 취득금액과 공모총액의 적절성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기관	거래사례수(전체)	취득금액 (공모총액)(원)
	직접 비교대상	내재가치(원)
당사 (내부평가)	57	600,000,000 (660,000,000)
	10건	787,604,647원 ~ 792,285,780원

한편,「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감정평가사는 동산인 미술품의 소유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평가(주)는 채권과 증권, 기타의 가치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으로 기초자산의 가치 범위를 검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 요약

평가기관	평가액(원)
(주)제일감정평가법인	690,000,000
한국기업평가(주)	735,283,930 ~ 862,790,702

이처럼 당사는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거래사례 등을 분석하여 기초자산의 취득가액과 그에 따르는 비용 및 보수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합니다. 하지만 당사의 기초자산 취득가액과 거래 사례 등에 대한 조사는 과거의 사례를 기초로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가치를 추정하였을 뿐이며, 동 미술품의 가격에 대한 보장 또는 명확한 작품의 가치를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사례는 유사한 미술품에 관한 것일 뿐, 해당 미술품에 관한 거래가격이 아니며, 재판매시에도 그와 같은 가격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기초자산이 속한 미술품 시장의 변동, 작품의 급격한 가치 상승 또는 하락 등에 공동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당사나 감정평가사가 제시한 거래사례가 적절하지 않거나 사용한 거래사례 분류법 혹은 분석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자산 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여러 요인들에 따라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가 제시하는 기초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당사가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투자자의 위임을 받아 기초자산을 처분하는 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기초자산 가격의 입증에 관한 위험은 공동사업의 청산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파. 기초자산인 미술품 투자에 있어 내재적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것으로, **미술품의 위작 위험, 작품의 손상 위험, 분실 위험, 도난 위험 등 기초자산인 미술품 자체에 내재된 위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적으로 유통되는 미술품의 대부분은 진품으로, 미술품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화랑 및 경매회사들은 각자 나름의 진위 판별 기준 및 데이터 검증을 통해 위작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는 작품이 미술시장에 판매되어 미술 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 미술품 시장에서는 천경자, 이우환 화백의 작품에 대한 위작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작 논란 발생 시 국내 미술품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며, 동 작품을 판매한 화랑 또는 경매회사는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에 대하여 철저한 유통경로 확인을 거치는 것과 동시에, 주요한 진위감정 기관으로 꼽히는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에 진위감정을 의뢰하였고, 진품이라는 감정 및 소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사의 유통경로에 대한 확인이나 기초자산에 대한 진위 감정, 그에 대한 당사의 내부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 등에 관하여서는,「제1부 - II.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 -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사업의 청산 전까지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미술품에 손상을 입을 위험이나, 미술품이 분실 또는 도난 당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은 공동사업의 수익성 뿐 아니라 공동사업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취득하기 전 미술품의 진위에 대한 보증서, 미술품의 손상여부 등 거래 시점에서의 작품 상태를 표시한 컨디션 리포트(Condition Report) 등을 매도인 또는 객관적 제3자로부터 제공받고, 매도인의 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한 조사와 더불어 매도인이 미술품의 진위에 대하여 판단한 절차까지를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당사가 종전 영위하던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부터 시작하여 당사와 관련되어 최근 3년 이내 위작으로 인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케이옥션은 미술품 전문 경매회사로서 1회 경매 시 수십 ~ 수백점의 작품이 판매되며, 경매 작품 중 위작 논란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명성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 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공동사업 참여자로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주)케이옥션을 선정하고, 케이옥션이 제공하는 미술품 전문 수장고인 "케이아트스페이스"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미술품 전문 수장고 "케이아트스페이스"의 주요 사항	
보안 및 출입관제	각 호실 내부 CCTV에 의한 실시간 모니터링
	소재지 건물 외부 전체 CCTV 설치 및 24시간 상주 경비
	전문 보안업체(세콤)에 의한 각 호실별 개별 출입 관제

	이중 철문 및 격벽 시스템
소방	(미술품을 보호할 수 있는) 하론가스 소방 시스템
	난연 소재 내장재(카페트, 벽돌, 페인트 등) 시공
보관	항온항습기
미술품 관리	K-Office에 의한 미술품 입고 및 출고 관리
보험	케이옥션과 동일 조건의 미술관 보험(보험한도 1,700억원)

케이옥션은 작품 입고 시, 아래의 절차를 거쳐 작품 감정을 진행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케이아트스페이스에 입고되는 작품 역시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작품 감정 절차]

감정단계	감정 과정
입고진행	위탁 작품 수량 및 작품 이미지, 컨디션 확인
정보확인	작가정보, 작품명, 작품 카테고리, 재료, 사이즈 등 작품 정보 확인
리서치	진본성이 공인된 작품, 정확한 전시이력 및 문헌정보 확인되는 작품 정보 확인
내부감정	경매기록, 출처, 문헌 등 재확인, 작품 실사 후 진본 여부 확인
외부감정	외부 전문가 감정, 내부의견 전문가와 논의 후 내부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

케이옥션의 미술품 종합유통체계인 K-Office는 7,671명의 작가에 대하여 카테고리, 작가명(영문/중문), 생년월일, 학력, 전시, 작가설명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담은 작가 DB와 작품의 표현법에 따라 15,798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 총 3,746종의 작품 재료 또는 분류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11만건 이상의 미술품들의 진위에 대한 기록과 대한민국 또는 국외에서 출판되거나 알려진 대부분의 미술 관련 지식정보를 누적시킨 DB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72명의 주요 거래 미술 작가들에 대하여 7,057건의 서명 DB와 3,666종의 주요 미술 제작기법 및 재료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사는 경매 작품에 대한 진위 여부를 상세히 판단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3년 이내 당사나 케이옥션에 대하여 경매를 통한 위작으로 인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미술품이 위작으로 밝혀질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위작의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미술품의 손상·분실·도난 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는 관련 손해를 보장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당사는 투자자 위험의 현실화나 사업중단 사태 등에 대비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량에 비례하여 적립하고, 당사의 운영자금과 분리되어 보관되는 투자자보호기금을 증권 청약 누적잔액(당사가 종전 발행하여 청산되지 않은 미술품들을 포함합니다)의 5%를 적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 자금에 대한 보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2022년 11월 29일 이전에 모집하여 아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 및 당사가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한 금액의 누적 잔액은 13,120,410,000원입니다. 이에 따르는 투자자보호기금의 필요 적립액은 누적 잔액의 5%에 해당하는 656,020,500원이며 당사는 이를 상회하는 667,474,095원의 투자자보호기금을(이자가 추가되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계약 및 하나은행 출금제한계좌를 통하여 분리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로도 매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미청산 잔액 대비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보호기금이 안전하게 분리보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사는 금번 공모 후에는 다시 금번 공모총액을 포함하여 5% 이상의 투자자보호기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21,546,405원을 추가로 투자자보호기금에 적립하여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때, 사업연도 중 기초자산의 조기 청산 등으로 증감변동할 수 있는 투자자보호기금 적립액은 당사 이사회의 결의와 감사의 동의를 통하여서만 출금할 수 있는 출금제한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합니다. 당사 이사회는 2024년 4월 3일자 이사회 의결로, 제3회차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함께 투자자보호기금을 출금제한 조건부로 예치하여 분리보관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사업연도 중 기초자산의 조기 청산을 통하여 누적 잔액 대비 투자자보호기금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 및 감사의 동의를 득하여 그 초과분에 한하여만 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며, 당사가 발행하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에 투자자보호기금의 변동과 현황을 기재합니다.



유가증권 상세내역

고 객 성 명 :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발급일시 : 2025-10-22 09:33:15
계 좌 번 호 : 207-01-887728　　기준일자 : 2025-10-22

상품유형	상품명	잔 고	기준가	평가금액(W)
금전신탁	M099-001 투게더아트 MMT 1호	589,405,295		621,349,041

계좌상세정보

계좌번호	231-910049-29904	과목명	기업자유
최종거래일	2025-10-01	상품명	기업자유예금
신규일	2024-04-03	잔액	46,125,054 원
만기일		이연만기일	
계약기간	0	출금가능금액	0 원
부기명			
관리영업점	압구정금융센터	계좌별칭정보	
기타정보	전부지급정지 실명확인필		
예금자보호여부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주의 :계좌 해지 시에는 이자가 반영되어 잔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고 및 기타등록정보]

주의사고	등록정보	SMS관리	수수료면제관리	통장대출관리	카드및우대관리	기타정보
전부지급정지	실명확인필					

(주)하나은행 압구정금융센터지점

투자자보호기금 적립기준과 실제 적립액

(2025년 10월 22일 기준)

누적잔액 (원)	적립기준 (5%, 원)	적립금 평가액 (원)	금회 모집액 (원)	금회 모집 후 예상 누적잔액 (원)	추가 적립 예정액 (원)	추가 적립 후 투자자 보호기금 예상액 (원)
13,120,410,000	656,020,500	특정금전신탁: 621,349,041 출금제한계좌: 46,125,054 합계: 667,474,095	660,000,000	13,780,410,000	21,546,405	689,020,500

(주1) 누적잔액은 2022년 11월 29일 이전에 모집된 금액과 2024년부터 본 증권신고서 이전 발행되어 아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모집액을 합한 액수입니다.
(주2) 당사는 사업연도 중 투자자보호기금의 추가 적립과 분리보관을 위하여 하나은행 압구정금융센터에 당사 이사회 결의 및 감사 동의를 통하여만 출금할 수 있는 출금제한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해당 계좌는 투자자보호기금의 분리보관만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며, 계좌 기본정보에 "전부지급정지" 및 "실명확인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계좌에는 제2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공모 일정 완료 후 당사가 추가 적립한 투자자 보호기금이 분리보관되어 있습니다.이처럼 당사가 수립하고 있는 위험 관리 방안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의 내재적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해당 위험이 발생할 경우 당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당사가 수립하고 있는 위험 관리 방안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의 내재적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해당 위험이 발생할 경우 당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 기초자산의 처분곤란 등으로 인한 장기 보유 위험 및 투자계약증권 만기 연장 위험

당사의 계속기업 가능성, 당사의 매출, 영업이익, 현금유동성 등은 공동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청산 결과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는 기초자산을 합리적 가격에 취득하여 시장 가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단기간에 매각함으로써 공동사업을 이른 시간에 성공적으로 청산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술품은 예술적 가치와 개별적 선호도, 경기의 변동이나 미술품 시장의 상황에 따라 시장 가치와 수요가 변경될 수 있으며, 유사한 거래사례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미술**

품에 대하여 일정한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수의 수요자만이 존재하거나 수요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판매시기와 잠재적 가격을 본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서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기초자산의 매각이 자계약증권의 만기인 5년이 도래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계약증권을 장기 보유하게 되실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처분곤란으로 인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 5년을 기한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의 만기 연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청산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계속기업 가능성, 당사의 매출, 영업이익, 현금유동성 등은 공동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청산 결과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는 기초자산을 합리적 가격에 취득하여 시장가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단기간에 매각하여 공동사업을 이른 시간에 성공적으로 청산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합니다.

즉 당사는 공동사업의 운영자로서 기초자산의 취득금액을 합리적 수준으로 산정하고, 기초자산의 관리에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며, 기초자산의 합리적 기간 내에 적절한 시장 가치로 처분하여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청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의 직접 처분 노력뿐 아니라, 기초자산의 처분을 위하여 당사의 최대주주이자 공동사업 참여자인 (주)케이옥션을 비롯하여 미술품 판매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적절한 자를 기초자산 처분을 위한 공동사업 참여자로 삼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수취할 수 있는 성과보수는 기초자산의 매각대금과 본 공모로 인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총 공모금액과의 차이에 연동되므로 당사의 영업이익은 공동사업의 성공적 조기 청산에 연동되기도 합니다. 당사가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자산 중 일부가 투자계약증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증권에 대하여 당사는 공동사업의 성공적 청산을 위한 이해관계를 투자자와 같이 합니다.

그럼에도 당사가 기초자산으로 삼은 미술품은 예술적 가치와 개별적 선호도, 경기의 변동이나 미술품 시장의 상황이 그 경제적 가치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술품의 선호도가 시장원리보다 구매자의 예술적 취향에 좌우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유사한 거래사례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미술품에 대하여 일정한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수의 수요자만이 존재하거나 수요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이 적시에 처분되지 아니하여 투자자가 투자계약증권을 장기 보유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을 투자자 명부의 최초 확정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매각하여 공동사업을 청산하고자 할 것이나, 위에서 기재한 위험으로 인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로 5년의 기간 동안 만기가 연장되어 최초 투자자 명부 확정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투자계약증권을 보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완료되는 날로부터 5년 동안 기초자산이 처분되지 아니하면, 투자계약증권의 만기가 1회에 한하여 갱신 확약에 따르는 갱신이 이루어지는 날로부터 합계 10년간 존속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미술품 경매회사 2개사[(주)서울옥션 및 (주)케이옥션]의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감사 보고서에 기재된 재고자산 변화 등을 기초로 추정한 해당 회사들의 미술품 재고자산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5개년 평균 보유기간(재고자산 회전율을 일 단위로 변환)은 케이옥션이 약 988일, 서울옥션이 약 970일로

나타났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종전 미술품 공동구매서비스를 통하여 구매한 전체 146점의 평균 보유일수는 1,317일, 그 중 매각이 완료된 48점의 미술품 평균 보유기간은 약 627일이며, 매각되지 않은 미술품 101점의 평균 보유일수는 1,652일, 최장 보유기간은 2,548일입니다.

한편, 해외, 특히 미국에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대표적 사업자인 마스터웍스의 경우, 그 홈페이지와 미국 SEC에 제출된 공시를 통하여 야요이 쿠사마 작품 2점을 각 801일과 1,067일 보유하여 각 연 13.4%와 연 17.6%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다거나, 조지 콘도 작품 2점을 각 442일과 638일 보유하여 각 연 39.3%과 연 21.5%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얻었다고 표시하는 등 기초자산의 처분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위험

공동사업은 생산자이자 창작자인 작가의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본 증권신고서를 통한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포함하여 공동사업의 전 과정에서 작가의 지적재산권을 해하지 않아야 합니다.**그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 공동사업의 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보관·관리·매각의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한이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공동사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은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술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원작자이자 생산자인 작가에게 소유권과 다른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인정되므로 공동사업과 관련하여서도 기초자산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는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제4호와 제3항은 저작물인 미술품의 원본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저작물의 판매가 종료된 이후에는 복제 또는 배포를 할 수 없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무법인(유) 광장으로부터의 법률자문 및 해당 법무법인을 통하여 저작권법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문의 등을 거쳤습니다. 그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에 저작물의 복제물인 사진 등을 제한적으로만 게시하고, 투자자가 당사 홈페이지 (https://weshareart.com)을 통하여 청약기간까지 작품의 사진이나 사진이 포함된 컨디션 리포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작품의 실물을 전시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해당 인터넷 주소를 통하여 청약자 또는 청약희망자로서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며, 미술품의 원본을 당사가 안내하는 바에 따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기간이 종료하여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판매가 종료되면, 위 인터넷 주소에 접근하기 위한 로그인 절차 등이 추가될 예정이나, 배정된 증권을 취득하여 미술품에 대한 공유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소유권자로서 미술품에 대한 사진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이러한 방안이 「저작권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상반되는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결 등이 나오는 경우 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변경 등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초자산의 복제물인 사진을 추가·삭제 또는 변경하여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당사가 수립하고 있는 저작권법 준수 방안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 공동사업의 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보관·관리·매각의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한이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공동사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너.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과 관련된 위험

미술품은 2027년 7월 26일부터 「미술진흥법」에서 정하는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대상("재판매보상금")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재판매보상금의 징수 가능성은 공동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5일 제정되고,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술진흥법」 제25조는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징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매보상금은 동법 부칙에 의하여 공포일로부터 4년을 경과한 2027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며, 본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서는 그 요율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매각이 2027년 7월 26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재판매보상금의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매보상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투자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비용에 포함되는 제세공과금으로서 청산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더. 원금 미보장과 관련된 위험

본 공모에서 당사가 발행하는**투자계약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에 의하여 당사가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자 회원에 대하여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을 거칠 것을 요청드리고 있고, 그 결과 공격투자형에 속하는 투자자에게만 청약에 응하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모집되는 투자계약증권이 1등급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성향이 공격투자형이 아니시거나,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에 있어 2등급 내지 5등급 투자상품을 선택하며 안전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투자자에게는 본 공모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 결정 전에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와 투자계약은**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악화는 당사의 사업,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 공동사업의 수행, 기초자산의 처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이후 기초자산의 내재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공시서류의 효력의 발생은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공시서류의 공시심사 과정에서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공시서류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본 건 공모 증권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공시서류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인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 기초자산의 내재가치, 투자계약의 청산손익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증권의 시장가격이나 청산손익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전자공시되어 있는 본 공시서류 관련 사항과 당사 홈페이지(http://weshareart.com)에 공시되어 있는 기초자산 및 투자계약 관련 주요 사항들을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건 공모를 통하여 취득한 증권 가치는 하락할 수 있으며, 본 공시서류에서 제시된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당사는 인수인의 인수 없이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므로 동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1) 자금조달 금액

구분	금액
기초자산 취득금액	600,000,000
발행제비용	60,000,000
모집 또는 매출 총액[(1)+(2)]	660,000,000

(주1)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상단에 기재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2) 발행제비용의 내역

구분	금액(원)	산정근거
발행분담금	594,000	공모총액 대비 0.09%
자문 수수료(VAT 포함)	15,422,000	감정평가보고서, 법률검토의견서, 미술품 가치평가 보고서, 감정보고서
사서인증	1,200,000	공증인
예비비	21,392,000	기초자산의 국내외 운송료, 전시, 분쟁처 리, 기타 발행과 공동사업의 운영 중 발생 할 수 있는 비용 및 계좌관리수수료 등을 위하여 유보된 예비비
발행인 매매차익	21,392,000	작품 선매입에 따른 발행인 매매차익
총계	60,000,000	

(주1) 당사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보관기간 동안 미술품 보관료(보험료)를 당사의 부담으로 보관합니다.
(주2) 당사는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을 선매입하며, 투자계약증권의 10%를 우선 배정 받습니다. 또한, 당사는 청약 미달시 잔여 투자계약증권을 당사가 취득하고, 장래의 미술품 장기 보관 가능성에 따라 소요되는 보관 비용(보험료 포함)을 모두 당사의 부담으로 지출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에는 비용의 지출을 줄이고 당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부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처분기간을 단축하고 적절한 처분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계속할 경제적 유인이 있습니다.
(주3) 당사는 발행인 매매차익의 100%를 예비비로 삼아 기초자산의 국내외 운송료, 분쟁 처리, 기타 발행과 공동사업의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 유보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에는 비용의 지출을 줄이고 당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부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처분기간을 단축하고 적절한 처분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계속할 경제적 유인이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예상 항목과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기초자산의 매각에 따른 청산시 남은 비용은 당사로 귀속되며 부족한 경우 당사가 추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 투자자

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목	금액(원)	비고
컨디션리포트 발급비	990,000	작품 판매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의 컨디션 체크와 컨디션리포트 발급 비용
전시 및 운송비	7,000,000	미술품 해외 전시 판매를 위한 운송(판매자 부담시, 항공 운송 기준, 회당 500만원 가정) 1회 + 미술품 국내 전시 판매를 위한 운송(판매자 부담시, 미술품 운송용 무진동 탑차 편도 1회당 50만원 가정) 4회
작품관리비(액자, 보존처리, 촬영 등)	4,000,000	작품 판매를 위한 액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보존처리와 촬영이 필요한 경우 등
뷰잉 및 전시비용	6,000,000	청약 전 프리뷰를 위한 인력배치 및 인쇄비용을 포함한 전시비용 일체, 청약 종료 후 전시 부대비용, 작품 관람을 위한 인력배치 비용 등
기타비용	3,402,000	기초자산이나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분쟁해결 및 우발적 상황에 대한 기타비용 및 계좌관리수수료
합계	21,392,000	

(주4) 투자자의 실명계좌 발급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는 NH투자증권에서 당사 청약 전용 계좌를 개설하는 데 따르는 실명계좌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투자자가 NH투자증권에서 당사 청약 전용 계좌가 아닌 다른 투자를 위하여 개설하는 실명계좌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주5) 청약금 분리 보관을 위한 특정금전신탁계약에서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8 (기준일 : 2025년 10월 22일)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기타	계
-	-	60,000,000	-	-	600,000,000	660,000,000

(주1) 공동사업을 위한 기초자산 취득과 발행제비용 등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에 관한 사항

1. 법률검토의견의 제출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 공동사업구조의 적법성 또는 법률적 위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계약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규 및 계약관계 서류에 비추어 볼 때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2. 법률검토의견의 요약 기재

법률검토의견의 요약

본 법무법인(유한) 지평(이하 '본 법무법인')의 "투자계약증권의 공모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검토 의견(이하, '법률의견서', 전문은 첨부서류 법률검토의견 참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인 겸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귀사는 다수의 투자자(이하 문맥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총칭하여 '투자자')와 투자계약(이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유영국(Yoo Youngkuk) 작가가 1984년 창작한 작품 Work를 기초자산(이하 '기초자산')으로 하는 제8회차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을 모집하여 발행하고자 합니다.

법률검토의견서의 제3항에서 기재한 전제와 제5항에서 서술할 일정한 단서 하에서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법률의견을 개진합니다.

1. 귀사와 투자자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4조 제2항 제4호의 투자계약증권 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합니다.
2. 공동사업의 목적은 투자계약증권이 아닌 자본시장법상 다른 증권의 발행으로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3. 투자계약의 내용 또는 공동사업의 구조는 민법, 자본시장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 본 법률의견 발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여하한 대한민국의 관련 법규(이하 총칭하여 '대한민국의 관련 법규')에 특별히 저촉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4. 투자계약의 내용 또는 공동사업의 구조에서 일정한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동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행사가 일정하게 제한됨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와 투자자 간에 소송·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이러한 소송·분쟁은 통상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와 투자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분쟁의 유형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동사업의 구조상 기초자산을 공유하는 관계에서 귀사 또는 투자자에 대한 강제집행, 회생 또는 파산절차 개시라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공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일정한 제한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투자계약의 내용은, 공동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공동사업의 구조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관하여 투자계약에 따라 부여받는 권리인 투자계약증권 및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취득·보유·행사 또는 처분 양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계약의 내용 및 공동사업의 구조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투자계약증권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도록 구성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6.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자의 권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따라 투자계약의 내용 또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보장됩니다. 단,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자의 권리는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고지되는 투자위험과 투자계약에 기재된 공동사업 운영자 및 투자자의 의무가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끝.

3. 법률검토의견의 전문

법률검토의견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 「법률검토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계약증권 관련 투자자 보호

1. 용어의 정의

용어	상세한 설명
발행인/당사/ 공동사업 운영자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로서, 당사를 말합니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의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발행인, 당사, 공동사업 운영자는 모두 (주)투게더아트를 의미합니다.
공동사업 참여자	공동사업 운영자 외에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 관련 업무를 분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란 공동사업 운영자와 공동사업 참여자를 말합니다.
투자자총회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이 구성하는 의사결정 기구로 투자계약으로 정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그 소집 절차 및 결의방법 등은 투자계약에 따릅니다.
투자계약증권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주 또는 주수를 증권 1단위로 하며, 1좌 또는 좌수 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초자산	공동사업으로 투자하는 대상자산을 말합니다.
진위(眞僞)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의하여 창작된 본래(Original)의 것”인 경우 ‘진(眞)’으로 판단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위(僞)’로 판단합니다.
보증서	COA(Certificate of Authenticity) 또는 COW(Certificate of Warranty)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질 수 있으나, 그 취지는 미술품이 진(眞)이라는 사실을 보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자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Fact Sheet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구성요소가 되지는 않으나, 작품의 유통 경로 중 작품의 진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기할 만한 유통경로(provenance),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주요한 전시,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 등을 기술한 문서입니다.
Condition Report	미술품에 대하여 이학적, 물리적, 미술적 현재 상태를 조사하여 기재한 문서입니다.
(미술품) 1차 시장	화랑(Gallery) 또는 아트페어(Art Fair) 등 미술품을 전시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시장을 말합니다. 이 때 전시 또는 판매의 대상이 되는 미술품은 작가들이 창작(생산)한 경우를 주로 하되, 컬렉터로부터 위탁된 작품들에 대한 전시 또는 판매도 함께 합니다.
(미술품) 2차 시장	미술품 경매회사 등 미술품을 소유자로부터 미술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시장을 말합니다.
미술품 경매	미술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미술품을 전시한 후,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미술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응찰자(bidder)들로부터 호가를 제시 받아 주로 최고가를 제시한 응찰자에게 미술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입니다. 국내에서는 (주)케이옥션과 (주)서울옥션이 미술품 경매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Sotheby’s, Christie’s, Phillips가 미술품 경매시장의 9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컬렉터(Collector)	미술품 수집가로서 개인인 미술품의 최종 소비자이자, 1차 시장 또는 2차 시장에서 미술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미술품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내정가	미술품 경매에서 미술 작품의 경매가 시작되는 최초의 가격을 말합니다.
낙찰가 (Hammer Price /Realized Price)	미술품 경매에서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응찰자가 지불하기로 약속한 가격을 말합니다. 위탁자에게서 경매회사가 수취하는 수수료와 낙찰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차순위 응찰자 (Under Bidder)	미술품 경매에서 낙찰자가 제출한 낙찰자격보다 바로 한 호가 밑의 가격을 제출한 응찰자를 말합니다. 차순위 응찰자가 제출한 가격은 자유경쟁 원칙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는 미술품 경매에서 해당 미술품의 가격과 수요로 받아들여집니다.
위탁수수료	미술품의 판매를 위하여 미술품 소유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구매수수료 (=낙찰수수료)	미술품을 구매하거나 낙찰받은 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발행제비용	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공증·공시·심사·평가 기타 제반 비용, 기초자산의 보관 또는 처분과 관련된 보관료·보험료·운송료·수수료 등의 비용, 투자자보호기금의 적립, 그리고 발행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사서인증	공증인법에 따라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명의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또는 서명, 무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공유관계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
공유물분할금지 특약	공유자 간의 합의에 의해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5년 내, 최대 10년까지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유물분할금지 특약에 동의한 투자자에 한하여 본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명채권 양도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입니다. 지명 채권은 당사자 사이에 양도를 금지한다는 약정이 있거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거나 법률상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하고 있습니다. 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를 위한 통지, 승낙절차 및 확정일자 부여에 관하여는 투자계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명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는 투자자들의 명부를 말합니다.
점유개정	동산에 있어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의사표시로 인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인도방법을 말합니다.
기준일	투자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에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로 보기로 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청산	기초자산이 잔여부분 없이 종국적으로 매각되고, 그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과보수	발행인이 청산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사업중단 사태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가 투자계약증권에서 정한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가. 서비스 중지 사태가 10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가 합리적인 서비스 중지 사유와 30영업일 이내의 서비스 재개 일자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중단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당사의 서비스이용약관(투자자회원)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의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다.당사의 관련 등록·인가·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결의, 파산선고, 회생신청, 지급불능 기타 그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당사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투자계약에서 정한 업무 등의 정상적 수행에 있어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계좌관리기관	발행인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투자계약증권의 청약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합니다.
호	미술품의 캔버스 규격을 가리키는 말로, 19세기 중후반 무렵 인상파 화가들에 의하여 도입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유래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미술품의 크기나 면적에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으나 관행적으로 인물, 풍경, 해경, 정사각형에 해당하는 '호수' 또는 '호수표'에 의한 호당 가격이 산정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보호기금	투자자 위험의 현실화나 사업중단 사태 등에 대비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량에 비례하여 적립하고, 특정금전신탁하여 당사의 운영자금과 분리되어 보관되는 기금입니다.
(증권의)모집/매출/모집 또는 매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모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고, "매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뿐, 당사가 이미 발행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매도할 것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에 의하여 증권을 배정받는 투자자가 이전받는 권리에는 공동사업의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이 포함됩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 2. 공모방법」에서 일반공모에 의한 "모집"으로 공모방법을 확정하여 기재하되, 본 증권신고서와 투자계약서에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을 모집과 함께 기재합니다.
매각대금 /청산금	기초자산이 공동사업자에 의해 최종 매각되어 발생하고 매각대금 전용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을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공동사업의 기초자산 매각대금을 달리 청산금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전용계좌	매각대금이 최종 배분되기 전까지 매각대금의 보관 및 관리를 목적으로 개설된 전용 계좌를 말합니다.

2. 공동사업의 내용

2-1. 공동사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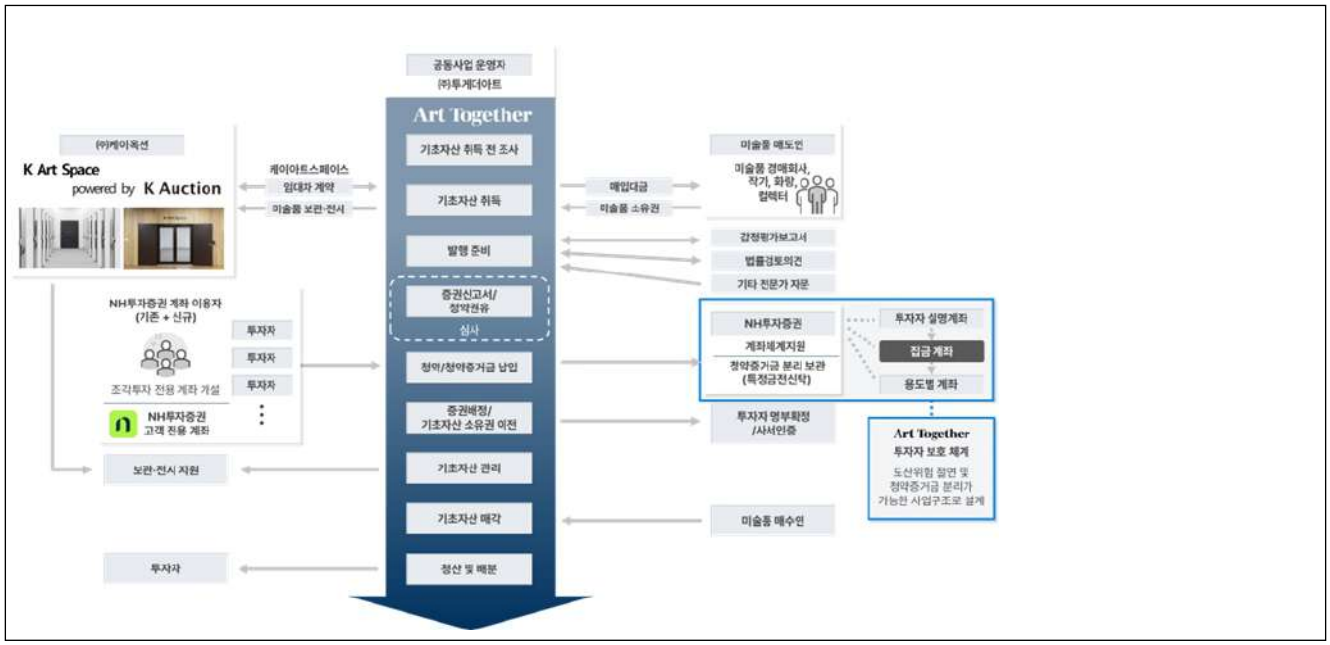
본 공동사업은 투자자가 취득한 투자계약증권의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귀속받는 것입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기초자산의 취득, 관리, 매각, 손익배분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자는 당사에 대하여 기초자산의 취득・관리・ 처분(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모총액의 100% 미만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처분하는 행위 제외) 기타 그에 수반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2. 공동사업의 세부 구조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투자계약에 기한 공동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초자산을 매도인으로부터 선매입하였고, 공동사업을 위해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합니다. 투자자는 청약기간 중 투자계약증권의 취득을 청약하고, 계좌관리기관의 개설한 전용 계좌를 통해 청약증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동 청약증거금은 별도의 집금계좌로 납입받아 청약기간 동안 특정금전신탁하여 분리보관되고, 당사는 납입기일에 청약증거금을 증권 취득대금으로 대체합니다.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이 모집되는 공모총액 중 기초자산의 선매입에 대한 매매대금, 발행분담금, 자문 수수료(감정평가, 법률검토, 기타), 사서인증 수수료 등 발행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발행인 이익으로 삼습니다. 이 때, 당사는 공동사업의 기간 동안 지출될 수 있는 운송료, 분쟁처리, 기타 비용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투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초자산 보관, 관리, 처분, 손익배분 등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기초자산을 보관, 관리하며 적절한 시점에 이를 매각, 청산하여 투자자에게 처분손익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주)케이옥션은 공동사업 참여자로서 기초자산 보관을 담당하며, 향후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로부터 기초자산의 처분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고, 법무법인(유) 세종은 당사와 사이에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당사에 사업중단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산 관리, 처분 및 손익배분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공동사업의 세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사업의 세부구조

공동사업의 세부 구조에 있어 각 당사자를 다시 한 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 미술품 기반 투자계약증권의 공모에 참여하고, 보유 증권의 지분에 비례하여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매각에 따른 투자수익을 배분받고, 투자계약증권에 따르는 권리를 보유하는 자입니다.

(계좌관리/신탁사)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관리 및 청약 신청을 위하여 당사와 계좌지원에 대한 계약 및 청약증거금 보관을 위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청약을 위한 실명계좌 체계의 지원과 청약증거금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신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입니다(NH투자증권).

(공동사업 운영자) 미술품을 보유하거나 판매하는 미술품 경매회사, 작가, 화랑, 수집가 등으로부터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을 물색하여 매입한 후,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고 공동사업을 운영하며 기초자산의 매각과 공동사업의 청산을 수행하는 자(당사, ㈜투게더아트)

(공동사업 참여자/미술품 보관)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보관을 위한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와 미술품 보관계약에 따라 공동사업 참여자로서 미술품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주)케이옥션).

2-3. 공동사업의 내용 및 향후 계획

(1) 공동사업의 구체적 내용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은 기초자산을 취득하여 보관한 후, 최종적으로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처분손익으로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공동사업의 목적으로 합니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는 당사가 되며, 공동사업의 기초자산은 예술창작품인 미술품으로 하며, 기초자산의 상세내역은 「제1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9.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서]
제1조(목적) 본 투자계약은 투자자가 기초자산{이하 "기초자산", 본 투자계약 제28조에서 정의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한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가지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자가 수행한 기초자산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 등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표시하는 투자계약증권(이하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투자자와 공동사업자의 권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처분손익의 귀속 기타 투자자와 공동사업자간 중요한 권리의무를 정하는 개별 투자계약(이하 "본 투자계약")으로서 공동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본 투자계약의 체결에 동의하는 투자자의 의사표시는 다른 투자자, 공동사업 운영자, 공동사업 참여자(이하 공동사업 투자자와 운영자, 참여자를 총칭하여 "당사자") 모두를상대방으로 한다.

(2) 공동사업의 향후 전망

공동사업의 향후 전망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처분 가능성과 종국적인 처분시점에서의 기초자산 가치, 즉 처분시의 매매대금이 본 증권신고서로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 공모총액에 비하여 얼마나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당사는 공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초자산의 물색과 취득을 위하여 노력하고, 기초자산의 처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며, 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매매대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증권의 효력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의성실과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기초자산을 매각하여 청산하도록 국내외 미술품 경매회사에 매각을 위한 위탁 출품, 미술품 판매를 위한 네트워크 활용, 기초자산 및 작가의 미술품 판매량과 판매가격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조사하는 등 기초자산에 대한 매각 가능성을 높이고 합리적 매각시기와 매각가액을 판단위하여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의 변동, 미술시장의 변동, 기초자산과 유사한 미술품이나 기초자산의 제작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사정 등 제반 환경의 변동으로 기초자산의 매각에 성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초자산의 매각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증권의 효력 발생 후 3년이 경과하여도 기초자산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 매 1년마다 투자자 총회를 통하여 공동사업의 운영경과와 매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기초자산이 속한 미술품 시장의 규모와 특성, 기초자산 거래사례에 대한 당사의 분석에 기초한 기초자산의 가치에 대한 향후 전망은 「제1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중 9.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아래와 같이 1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케이옥션과 (주)서울옥션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시된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미술품 재고자산의 변동과 상품 매출의 변화를 기초로 하여, 미술품 판매사업 분야의 상품(미술품) 매출액, 매출원가, 재고자산회전율(매출원가 기준), 재고자산 보유기간(재고자산회전율을 일 단위로 환산), 총 자산 대비 재고자산 구성비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주)케이옥션의 5개년 상품매출, 상품매출원가, 상품매출 총이익률]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상품매출	10,111,471	5,112,368	1,673,750	720,818	10,994,674	8,093,742	12,491,373	12,491,373	12,572,360
상품매출원가	9,405,851	4,704,426	1,527,951	728,027	9,283,033	7,143,106	11,721,866	11,721,866	12,206,514
상품매출 총이익률	7.00%	8.00%	8.7%	-1.0%	15.6%	11.7%	6.2%	6.2%	2.9%

[(주)서울옥션의 5개년 상품매출, 상품매출원가, 상품매출 총이익률]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상품매출	6,689,271	6,689,271	30,897,014	31,522,787	30,392,460	29,860,062	46,149,651	41,514,731	16,669,297	15,408,432
상품매출원가	4,313,316	4,313,316	26,405,031	27,385,761	24,050,026	23,649,583	38,936,235	34,192,067	14,090,845	12,982,924
상품매출 총이익률	35.50%	35.50%	14.5%	13.1%	20.9%	20.8%	15.6%	17.6%	15.5%	15.7%

[(주)케이옥션의 5개년 기초재고, 재고매입, 기말재고, 평균재고, 재고자산회전율, 재고자산 보유기간]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기초재고	32,739,649	29,224,565	30,061,828	27,183,625	19,655,077	17,858,914	18,460,762	18,460,762	24,007,864
재고매입	6,582,944	4,297,280	4,205,772	2,768,967	19,689,784	16,467,817	12,916,181	11,120,018	6,659,412
기말재고	29,916,742	28,817,418	32,739,649	29,224,565	30,061,828	27,183,625	19,655,077	17,858,914	18,460,762
평균재고	31,328,196	29,020,992	31,400,738	28,204,095	24,858,452	22,521,269	19,057,919	18,159,838	21,234,313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원가기준)	0.40 회	0.26 회	0.15회	0.14 회	0.52 회	0.48 회	0.84 회	0.88 회	0.72 회
재고자산보유기간	914 일	1398 일	2,378일	2,573 일	704 일	765 일	437 일	416 일	507 일
당해 매입재고 판매율	22.0%	14.9%	12.8%	9.5%	65.5%	60.6%	65.7%	62.3%	36.1%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	14.9%	14.3%	15.9%	14.6%	13.8%	12.8%	20.7%	19.7%	26.3%

[(주)서울옥션의 5개년 기초재고, 재고매입, 기말재고, 평균재고, 재고자산회전율, 재고자산 보유기간]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연결 기준	별도 기준
기초재고	71,436,221	61,362,657	83,571,713	75,016,257	67,299,452	58,915,645	67,240,612	55,124,944	57,143,813	47,790,104
재고매입	3,868,777	2,389,417	14,269,539	13,732,161	40,322,287	39,750,196	38,995,075	37,982,768	24,187,644	20,317,763
기말재고	70,991,682	59,438,759	71,436,221	61,362,657	83,571,713	75,016,257	67,299,452	58,915,645	67,240,612	55,124,944
평균재고	71,213,951	60,400,708	77,503,967	68,189,457	75,435,582	66,965,951	67,270,032	57,020,294	62,192,213	51,457,524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원가기준)	0.21 회	0.25 회	0.50회	0.57 회	0.49 회	0.54 회	0.75 회	0.80 회	0.32 회	0.35 회
재고자산보유기간	1729 일	1466 일	735일	637 일	739 일	671 일	489 일	459 일	1,158 일	1,044 일
당해 매입재고 판매율	5.4%	4.0%	20.0%	22.4%	48.2%	58.0%	57.9%	64.5%	36.0%	36.9%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 (%)	33.4%	29.6%	36.4%	33.1%	43.0%	41.1%	38.8%	35.8%	45.4%	41.4%

위 표에서 케이옥션의 5개년 평균 상품 판매 이익률은 약 8.08%, 평균 재고자산 보유기간은 약 988일이며, 서울옥션의 같은 기간 상품 판매 이익율은 약 20.40%, 평균 재고자산 보유기간은 약 970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 사의 미술품 판매 사업 분야에서 케이옥션과 서울옥션의 미술품 운용 방식 차이가 있으나, 미술품 판매 사업 부분에서 지속적인 수익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위와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당사는 미술품의 취득과 판매를 기본적인 공동사업 구조로 하는 본 투자계약증권의 모집과 매출에 있어서도 공동사업의 향후 전망이 공동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기초자산과 동일한 작가에 관하여 해외에서 발행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기재된 미술품 시장의 전망과 기초자산의 전망을 조사하고 당사의 인용, 추정, 판단을 거쳐 「제1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3) 기초자산에 관한 가격 산정 근거 등」에서 당사는 기초자산의 취득가액의 적절성을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나, 해당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공동사업 배당(수익지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사업 배당(수익지급)

본 공모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은 기초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청산금(배당)으로 지급합니다.

[투자계약서]

제23조(처분손익)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에 따라 본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하 "처분손익")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2조(청산으로 인한 처분손익의 귀속)
① 기초자산이 잔여부분 없이 종국적으로 매각되고, 그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청산이 완료된다.
② 처분손익은 청산이 완료되는 때에 확정되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③ 처분손익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제세공과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산정된다.
④ 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후에는 본 투자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처분손익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매각 기타 처분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의 청산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청산 처분손익을 지급받는다.
⑤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은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대하여 그 소유한 증권의 비율(해당 증권의 비율로 정해지는 기초자산 소유권 비율과 같다)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조기 매각, 일부 매각, 기초자산의 운용 수익 발생, 기타 투자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고 그 지급이 본 투자계약의 청산과 관련된 재무상태 기타 본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항에 중대한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준일을 정하여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제43조(처분손익의 한도)
①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익에는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② 투자자의 손해는 투자자가 처분손익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보유하는 증권 가액의 합계를 한도로 하여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증권의 가액과 비율을 넘어서는 손해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지 못한다. 다만, 투자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른 투자자나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한다.

제44조(성과보수)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은 [별첨 6] 성과보수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 1주당 귀속되는 청산시가(기초자산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으로 인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실제로 수취한 금액을 말한다.)가 증권의 1주당 모집 가액에 대비하여 108% 이하인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다.

제45조(제세공과금)
① 청산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세공과금의 일반적 산정 기준 등을 투자자에게 안내하거나, 투자자를 위하여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③ 투자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의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가 제세공과금의 원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하게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 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과거 배당(수익지급) 이력

당사는 종전 미술품 공동구매서비스를 운영하며 공동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한 바 있습니다. 당사가 종전 운영하였던 미술품 공동구매서비스사업의 배당(수익지급)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사업 이력]

사업명	취득일	취득금액(원)	매각일	매각금액(원)	사업기간	수익률
(작품명)	(모집종료일)	[공동구매가격(원)]	매각일	매각금액(원)	(보유기간)	(매각수익률)
신데렐라	2019-01-11	2,680,000	2019-05-14	7,000,000	124	161%
Flower(set of 2)	2019-04-08	2,000,000	2020-06-25	3,000,000	445	50%
Real to virtual transition	2020-07-06	20,000,000	2020-07-10	24,200,000	5	21%
Taboo Yogini - Scarlet F1002	2020-07-10	23,000,000	2020-07-13	27,830,000	4	21%
Dialogue	2020-01-01	260,060,000	2020-09-04	313,820,000	248	21%
An Homage to monopink 1960 A	2019-04-22	1,700,000	2020-12-31	3,200,000	620	88%
Un Passage	2018-11-26	1,500,000	2021-01-05	3,150,000	772	110%
Red Hat	2019-08-15	5,990,000	2021-01-05	8,300,000	510	39%
Ecriture No.2-06	2020-09-21	8,130,000	2021-04-27	19,383,000	219	138%
점으로부터(From Point)	2020-01-01	312,340,000	2021-04-27	360,000,000	483	15%
Butterfly Effect	2020-07-24	10,410,000	2021-05-10	12,000,000	291	15%
물방울	2020-06-14	50,000,000	2021-05-12	71,994,000	333	44%
Pumpkin(White T)	2020-07-07	46,500,000	2021-05-26	56,000,000	324	20%
Quadriptyque 4-4	2019-08-04	30,000,000	2021-07-22	42,000,000	719	40%
풍경	2020-12-31	55,780,000	2021-07-27	80,000,000	209	43%
물방울	2021-03-18	217,530,000	2021-08-20	295,000,000	156	36%
Pumpkin	2020-12-15	133,860,000	2021-08-23	170,000,000	252	27%
Quadriptyque 4-3	2019-07-09	30,000,000	2021-11-10	49,000,000	856	63%
Sea	2020-10-14	26,780,000	2021-11-10	40,000,000	393	49%
무제	2021-09-15	35,700,000	2022-02-21	45,000,000	160	26%
Eve of Distruction	2021-03-24	122,710,000	2022-05-02	160,000,000	405	30%
Elftermarzzweitausendundsechzehn	2021-09-08	106,410,000	2022-05-17	130,000,000	252	22%
Blah, Blah, Blah	2020-12-15	44,620,000	2022-05-30	53,500,000	532	20%
From an Island-03060	2021-05-12	44,620,000	2022-06-17	80,000,000	402	79%
Pain and sorrow	2021-06-16	223,100,000	2022-06-17	270,000,000	367	21%
무제	2021-02-17	17,650,000	2022-07-07	25,200,000	506	43%
Reencontrarme Reconocerme	2020-01-16	12,530,000	2022-08-10	15,000,000	938	20%
Evolution, Revolution, Resolution (complete set of 8 prints)	2022-06-03	70,000,000	2022-08-16	89,500,000	75	28%
With Winds	2021-10-14	223,100,000	2022-10-11	280,000,000	363	26%
[펀크앱 전용] Love 311	2020-05-08	22,270,000	2022-10-13	33,000,000	889	48%
Work	2021-06-29	117,130,000	2022-12-19	190,000,000	539	62%
Pictured Gathering with Mirror	2020-10-22	80,000,000	2022-12-19	115,000,000	789	44%
Water	2020-10-30	22,310,000	2023-02-21	27,000,000	845	21%
무제	2021-01-18	13,720,000	2023-03-02	16,500,000	774	20%
Flowers (F. & S.Ⅱ.64)	2022-10-12	40,800,000	2023-09-20	90,000,000	344	121%
An Island - 07015	2022-01-26	90,360,000	2023-09-20	120,000,000	603	33%
Happy	2019-01-01	13,980,000	2023-12-19	29,000,000	1814	107%
붓질 268	2022-07-06	139,800,000	2024-02-29	152,800,000	604	9%
무제 (2013)	2022-06-16	16,000,000	2024-03-18	18,000,000	642	13%
회귀(Recurrence) SA95018	2022-05-06	41,940,000	2024-05-30	50,000,000	756	19%
Julian Opie 법인 전용 블라인드 작품	2021-09-16	32,000,000	2024-06-04	32,000,000	993	(주1)
Coca-Cola Girl 9	2021-10-25	44,620,000	2024-06-10	52,000,000	960	17%
시고(詩稿)	2019-02-12	20,970,000	2024-07-02	27,000,000	1,968	29%
Love is what you want	2021-06-01	3,400,000	2024-07-03	6,400,000	1,129	88%

Flowers (F. & S.Ⅱ.66)	2022-10-12	79,000,000	2024-10-08	120,000,000	734	52%
Still Life with Blonde	2020-07-10	6,840,000	2025-02-03	8,000,000	1,670	17.0%
Doraemon's Daily Life	2020-09-08	2,150,000	2025-05-16	2,472,500	1,712	15.0%
Vivien with Hat	2021-12-09	44,620,000	2025-08-28	55,000,000	1,359	23.3%

(주1) 미술품 공동구매서비스를 이용하며 해당 작품 100%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 회원에게 2024년 6월 4일자로 작품이 현물로 인도되어 별도로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 종전 미술품 공동구매서비스에 의하여 취득된 작품의 매각일 순서에 따라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통상적으로 매각일 후 3영업일 이내에 매각된 작품에 의한 지급(배당)을 완료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전 미술품 공동구매서비스를 통하여 구매하였던 전체 미술품 146점 중 당사가 일시 사업을 중단하였던 2022년 11월 이전까지 매각되었던 32점과, 2023년 상반기에 매각된 2점, 당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면제 결정을 받은 2023년 7월 13일 이후 매각된 14점, 합계 48점에 대한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사업 배당(수익지급) 이력]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동사업을 통해 2024년 6월 7일 배정을 실시한 증권을 2024년 8월 2일에 매각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사는 아래 증권의 매각과 청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였습니다.

사업명	취득일	모집금액(원)	매각일	사업기간(일)	매각금액(원)	청산시가(원)	성과보수(원)	세금	수익률(%)	수익률(%)	수익률(%)
증권명	증권배정일	청약 모집 가격(원)	매각일	운용기간	매각금액(원)	(주1)	(주2)	기타소득세(원)	(주3)	(주4)	(주5)
AT-CONDO-003	2024-06-07	1,028,000,000	2024-08-02	57	1,180,000,000	1,166,382,000	12,351,240	11,334,830	13.46%	11.16%	9.56%
AT-NARA-004	2024-07-24	867,000,000	2024-10-18	87	1,000,000,000	964,860,500	6,270,111	9,589,490	11.29%	9.46%	8.24%

(주1) 기초 자산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으로 인한 비용과 제세공과금등을 공제하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실제로 수취한 금액입니다.
(주2) 공모총액 대비 청산시가가 108%초과하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취하는 금액입니다.
(주3) 청산시가를 기준으로 공시 및 통계에 반영되는 세전 수익률입니다.
(주4) 청산시가에서 성과보수와 세금을 공제한 전체 세후평균수익률로 법인, 개인 및 과세최저한의 적용에 따라 실제 수익률은 표기하는 수익률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5) 청산시가에서 성과보수와 세금을 공제한 개인 세후평균수익률로 과세최저한의 적용에 따라 실제 수익률은 표기하는 수익률과 차이가 있습니다

위 증권에 대한 청산을 포함하여 과거 배당 이력 중 수익률 상위 3작품과 수익률 하위 3작품은 다음과 같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이 이루어진 작품들의 전체 평균 수익률은 42.45%입니다.

과거 배당 이력: 수익률 상위 3작품 (상위 3작품 평균 140%)

사업명	취득일	취득금액(원)	매각일	매각금액(원)	사업기간(일)	수익률(%)
(작품명)	(모집종료일)	[공동구매가격(원)]	매각일	매각금액(원)	(보유기간)	(매각수익률)
신데렐라	2019-01-11	2,680,000	2019-05-14	7,000,000	124	161
Ecriture No.2-06	2020-09-21	8,130,000	2021-04-27	19,383,000	219	138
Flowers (F. & S.Ⅱ.64)	2022-10-12	40,800,000	2023-09-20	90,000,000	344	121

과거 배당 이력: 수익률 하위 3작품 (하위 3작품 평균 11%)

사업명	취득일	취득금액(원)	매각일	매각금액(원)	사업기간(일)	수익률(%)
(작품명)	(모집종료일)	[공동구매가격(원)]	매각일	매각금액(원)	(보유기간)	(매각수익률)
무제 (2013)	2022-06-16	16,000,000	2024-03-18	18,000,000	642	12.50
AT-NARA-004	2024-07-24	867,000,000	2024-10-28	1,000,000,000	97	11.29
붓질 268	2022-07-06	139,800,000	2024-02-29	152,800,000	604	9.30

다. 진행중인 공동구매 및 공동사업현황

당사가 진행중인 공동구매 및 공동사업 현황은 종전 운영하였던 미술품 공동구매서비스 98점과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한 공동사업 보유 미술품 5점, 총 103점으로 투자자를 위하여 케이아트스페이스에 보관하고 있으며, 그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중인 공동구매 사업 현황] 기준일:2025년 10월 22일

사업명	취득일	취득금액(원)	사업기간(일)
(작품명)	(모집종료일)	[공동구매가격 (원)]	(보유기간)
Untitled (2022)	2022-11-29	174,750,000	1,059
무제(1960s)	2022-11-04	395,500,000	1,084
Spring 21-03	2022-10-18	88,000,000	1,101
산월	2022-09-07	58,250,000	1,142
묘법 No. 950618	2022-08-31	34,950,000	1,149
Study (22)	2022-08-16	116,500,000	1,164
Vierundzwanzigsterjunizweitausendundzwanzig	2022-07-21	93,200,000	1,190
묵고 23206	2022-07-21	26,800,000	1,190
World Champion	2022-07-11	81,550,000	1,200
The Method of Drawing 76-1-8-1	2022-06-23	52,800,000	1,218
Dreiundzwanzigstermarzzweitausendundeinundzwanzig	2022-06-14	75,000,000	1,227
Nintendo Ghost Abduction with Sweet Pink Clouds	2022-06-09	11,900,000	1,232
Bodyscape 76-1-2016	2022-05-24	78,000,000	1,248
The Presentation(2019)	2022-05-19	38,340,000	1,253
Pumpkin(1982)	2022-05-13	143,760,000	1,259
Sun 4	2022-05-10	34,950,000	1,262
점으로부터(From Point, 1978)	2022-05-03	311,480,000	1,269
Stadion 17/VII	2022-04-20	29,950,000	1,282
선으로부터(From Line, 1977)	2022-04-12	383,360,000	1,290
청명(淸明)-18042	2022-04-06	83,880,000	1,296
Let's Go to Seattle!	2022-04-01	39,610,000	1,301
In Between - Spring Series	2022-03-30	27,960,000	1,303
The Couch Unsent Piano	2022-03-23	8,500,000	1,310
겸재예찬 M II 225	2022-03-17	34,160,000	1,316
Pumpkin(1983)	2022-03-10	165,100,000	1,323
물방울 SN2014	2022-03-03	58,870,000	1,330
Two Chairs with People	2022-02-18	88,000,000	1,343

묘법 시리즈 V-17	2022-02-11	37,930,000	1,350
무서운 바다	2022-02-07	35,700,000	1,354
음양7-S. 169	2022-01-14	100,400,000	1,378
Oleandrin	2022-01-03	256,300,000	1,389
무제 (2006)	2021-12-27	128,290,000	1,396
Wildflowers	2021-12-13	17,850,000	1,410
Untitled (c)	2021-12-06	267,720,000	1,414
내재율(Internal Rhythm) 2014-3	2021-11-28	53,550,000	1,417
Internal Rhythm 2017-76-P, 2016-23-P, 2011-58-P(Set of 3)	2021-11-23	21,000,000	1,425
Karma	2021-11-19	42,000,000	1,430
Tagger	2021-11-16	39,900,000	1,434
Untitled No.13 from “The Yosemite Suite”	2021-11-10	110,680,000	1,437
무제 (2002)	2021-11-04	18,060,000	1,443
Lemon Squash	2021-10-29	33,470,000	1,449
Ecriture No.010409	2021-10-25	96,600,000	1,455
Gateway to East (Set of 3)	2021-10-20	30,000,000	1,459
무제 (2000)	2021-10-18	98,170,000	1,464
Up to You	2021-10-07	44,620,000	1,466
Perspective Should be Reversed	2021-09-27	142,000,000	1,477
Frog B, Frog O	2021-09-01	50,000,000	1,487
Untitled 84-7-B	2021-08-24	379,270,000	1,513
Ecriture No.120228	2021-08-11	102,900,000	1,521
$ (Quadrant)	2021-08-04	169,800,000	1,534
Curare	2021-07-29	14,000,000	1,541
Fenbufen	2021-07-29	14,000,000	1,547
[emart24 이벤트] 줄리안오피_Running women	2021-07-21	44,000,000	1,547
물방울 P.A. 84016-84	2021-07-21	178,500,000	1,555
Still Life with Picasso from Homage to Picasso	2021-07-15	44,620,000	1,555
Oiseaux	2021-07-08	115,470,000	1,561
Just a Little Bit	2021-06-21	100,400,000	1,568
Save The Amazon (Blue)	2021-05-27	3,400,000	1,585
Cage 6	2021-05-20	42,000,000	1,610
무제	2021-05-04	46,860,000	1,617
You Wanna Take Me To A Kung Fu Movie?	2021-04-14	2,100,000	1,633
Shelf Still Life	2021-04-07	32,350,000	1,653
Maternite Rouge	2021-03-31	54,660,000	1,660
물방울	2021-01-28	48,000,000	1,667
Wouldn't it be nice if we could do such a thing?	2021-01-07	10,000,000	1,729
New York Couples 5	2020-10-23	21,070,000	1,750
화동의 꽃은 무궁화처럼 질기다	2020-10-23	4,080,000	1,826
고양이	2020-09-28	18,410,000	1,826
The Seers III	2020-09-16	6,810,000	1,851
Spirit of Freedom	2020-09-11	8,170,000	1,863

Benzyloxyurea, from 40 Woodcut Spots	2020-09-07	9,070,000	1,868
Dora Maar au Chat II	2020-08-24	2,500,000	1,872
Portrait of an artist (pool with two figures) II	2020-08-24	4,000,000	1,886
Blame game(complete set of 10 prints)	2020-08-20	157,020,000	1,886
Ika(1)	2020-08-10	32,000,000	1,890
Le Beau Temps	2020-07-16	4,790,000	1,900
Still Life with Blonde	2020-07-10	6,840,000	1,925
Flowers From the Village of Ponkotan	2020-06-18	1,940,000	1,953
Stars and Stripes	2020-05-22	3,350,000	1,980
Untitled(middle panel from Triptych August 1972)	2020-04-24	9,740,000	2,008
Blame game	2020-04-09	16,740,000	2,023
산(山)	2020-01-20	5,140,000	2,103
Commune with...	2019-11-01	10,000,000	2,183
Commune with...	2019-10-14	50,000,000	2,201
Untitled	2019-09-09	10,000,000	2,236
A Dream	2019-08-30	13,170,000	2,246
JUST ANOTHER CROCODILE BIRD	2019-07-15	7,000,000	2,292
The Boundary of Fantasy	2019-05-21	10,000,000	2,347
Sara Dancing 1	2019-05-09	97,810,000	2,359
Cohesive Sphere - 0026	2019-04-18	5,000,000	2,380
Untitled	2019-04-01	21,180,000	2,397
Instant Landscape	2019-02-22	13,000,000	2,435
해피월드	2019-01-30	18,000,000	2,458
묵란도(墨蘭圖)	2018-12-25	5,010,000	2,494
Seen 201212	2018-12-09	8,000,000	2,510
Follow Your Dreams	2018-11-23	15,000,000	2,526
Stone Book	2018-11-16	50,000,000	2,533
Love Is The Answer	2018-11-06	15,000,000	2,543
Halte de Comediens ambulants avec Hibou	2018-11-01	28,100,000	2,548

[진행중인 공동사업 현황] 기준일: 2025년 10월 22일

사업명	취득일	공모금액(원)	사업기간
(증권명칭)	(배정공고일)	[모집(매출가액) (원)]	(보유기간)
AT-KUSAMA-001	2024-01-25	1,182,000,000	637
AT-CONDO-002	2024-04-03	1,028,000,000	568
AT-UFAN-005	2024-11-06	1,178,000,000	351
AT-PARTY-006	2024-12-20	2,295,000,000	307
AT-UFAN-007	2025-01-23	950,000,000	273

당사는 보관중인 미술품 매각에 대한 경매, 전시, 홍보 기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자산 전시에 대한 사항]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초자산	전시시작일	전시종료일
33점	2024-03-30	2024-04-09
25점	2024-04-30	2024-05-08
25점	2024-05-25	2024-06-04
1점	2024-06-04	2024-06-07
12점	2024-06-13	2024-06-30
4점	2024-06-15	2024-06-20
3점	2024-06-28	2024-07-05
14점	2024-06-29	2024-07-09
5점	2024-07-09	2024-07-17
1점	2024-07-10	2024-07-17
15점	2024-07-27	2024-08-06
18점	2024-08-31	2024-09-10
20점	2024-09-28	2024-10-08
17점	2024-11-23	2024-12-03
20점	2024-12-21	2024-12-31
1점	2024-12-28	2025-01-06
20점	2025-01-25	2025-02-04
99점	2025-03-11	2025-08-26

(주1) 기초 자산의 개별 목록 및 상세 안내 사항은 발행인 플랫폼 투게더아트 (https://weshareart.com) 홈페이지의 '공시'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구획으로 분리된 케이아트스페이스에서 기초자산은 당사만이 활용하는 특정한 호실에 보관되며, 1개의 호실은 그 보관방식에 따라 300점 정도까지의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구획분리된 호실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당사 기초자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으로, 당사가 이용하지 않는 동안 다른 호실 또는 화재나 파손 등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당사의 기초자산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는 각 기초자산에 대하여 부여된 번호를 바탕으로 미술관 보험에 부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3. 공동사업자에 관한 사항

3-1. 공동사업자의 개요

투자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운영할 공동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사업자명	공동사업에 있어서의 업무	분류
(주)투게더아트 (당사)	공동사업의 운영,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기초자산의 취득·보관·처분, 공동사업의 청산	공동사업 운영자
(주)케이옥션	기초자산의 보관, 기초자산의 처분(미확정)	공동사업 참여자

화랑(갤러리), 아트페어, 미술품 경매업자 (미확정),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인 기타	기초자산의 처분	공동사업 참여자

(주1) 당사와 (주)케이옥션은 확정금액에 의한 미술품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 (주)케이옥션의 손익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술품 보관 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에 따라 기초자산의 훼손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2) 기초자산의 처분 방법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청산을 위하여 화랑(갤러리), 아트페어, 미술품 경매업자(미확정),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업자 등을 통하여 기초자산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 때, 당사는 (주)케이옥션에 기초자산의 처분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가. 공동사업 운영자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의 개요는 「제2부 I. 회사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 참여자 중 (주)케이옥션의 주요 사업, 연혁,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옥션에 관한 기재사항은 케이옥션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케이옥션이 사업보고서 등을 통하여 공시한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1) 주요사업

케이옥션은 크게 ① 미술품 판매 사업, ② 미술품 경매 사업, ③ 미술품 중개 사업, ④기타 사업의 4개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 부문은 동일한 원천 기술을 사용하지만 시장 등이 상이합니다.

미술시장은 창작된 미술품을 최초로 판매하는 화랑(Gallery)이나 화랑들이 주기적으로 모이는 아트페어(Artfair)로 구성되는 1차 미술 시장(Primary Art Market)과, 당사와 같은 경매회사처럼 미술품의 재판매를 주로 영위하는 2차 미술 시장(Secondary Art Market)으로 나누어집니다.

특별한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미술품 1차 시장에 비하여, 케이옥션이 속해있는 미술품 경매 시장은 양질의 미술품 확보 및 연속적인 경매 진행 능력 보유 여부 자체가 미술품 경매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와 같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케이옥션은 수년간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경쟁업체인 ㈜서울옥션과 함께 과점 체제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케이옥션은 미술품 경매 시스템 관리 플랫폼인 K-Office를 자체적으로 설계, 개발하여 사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K-Office는 현존하는 국내 미술품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방대한 유통정보를 집적하고 있는 미술품 종합 관리 시스템이며, 미술품 유통 관리의 표준화라는 개념을 도입한 최초의 시스템입니다. 케이옥션의 미술품 경매는 K-Office를 활용하여 관리되는 미술품 데이터들과 미술품의 입·출고 프로세스들을 통하여 정교하게 분류되고 설계된 상품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케이옥션은 미술품 판매, 미술품 중개 시장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기타 미술품 보관업이나 미술품에 관련 여신 또는 수신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이옥션은 해외 주요 미술품 경매회사 및 주요 갤러리들과 미술품 관련 구조화 매매거래 등을 수행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연혁

연월	주요 내용
2005.09	㈜케이옥션 설립
2005.11	제1회 미술품 경매
2006.08	온라인 미술품 경매 실시(최초의 본격적인 온라인 미술품 경매)
2007.09	본점 소재지 이전 : 서울 강남구 청담동 79-15
2009.02	본점 소재지 이전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40-6,7 (현재 본점 주소지)
2011.03	조정열 대표이사 취임
2012.04	이상규 대표이사 취임
2012.09	보물 제585호 퇴우이선생진적첩 낙찰(34억원, 국내 고미술 최고 낙찰가 갱신)
2013.11	예금보험공사 미술품 분야 공매대행기관 선정
2013 - 2014	전재국 컬렉션(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경매 100% 낙찰
2015.03	제1회 홍콩 단독 미술품 경매 실시
2016.11	유상증자(상환전환우선주 발행) * 증가한 주식수: 230,769주/ 증가한 자본금: 1,353,845,000원/ 총 자본금: 4,153,845,000원
2016.11	제17회 한국메세나협회 창의상 수상(미술계 최초)
2017.04	국세청 전문매각기관 단독선정 김환기 “고요” 65.5억원 낙찰(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가 갱신)
2018.05	도현순 대표이사 취임
2018.04	자선경매와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 연중 개최
2019.04	국세청 전문매각기관 연속선정
2020.12	상환전환우선주 (72,627주) 상환(자본금 변화 無)
2021.02	상환전환우선주 (113,142주) 보통주 전환(자본금 변화 無)
2021.04	잔여 상환전환우선주 (45,000주) 보통주 전환(자본금 변화 無)
2021.07	보통주 1:10 액면분할, 분할 후 1주당 액면 5백원 (주식총수 758,142주에서 7,581,420주)
2022.01	코스닥 상장
2022.07	보통주 1:2 무상증자(주식총수 27,174,135주)
2022.09	제1회차 전환사채(CB)발행/조달금액 295억원
2023.02	(주) 투게더아트 종속회사 편입
2024.11	종속회사 흡수합병(아트네이티브주식회사, 아르떼케이주식회사, 아트폼스주식회사)
2024.12	대한민국 일 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3) 조직구성

케이옥션의 2024년 사업보고서에서는 이사회 이외에 연구개발조직으로 경매그룹과 기획운

영그룹을 두고 있고, 판매조직으로는 고객그룹을 두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4년말 직원 현황은 101명입니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 참여자 중 (주)케이옥션의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자산총계	201,121
부채총계	89,109
자본총계	112,012
매출액	19,457
영업이익	-4,756
당기순이익	-7,088

(주1) 상기 재무현황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초자산 처분을 위한 공동사업 참여자(들)은 미확정입니다. 미확정된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은 청산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공시하거나 계약 또는 법령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 종료 시점에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3-2. 공동사업자의 연혁

가. 공동사업 운영자에 관한 사항

주 공동사업자인 당사의 연혁은 「제2부 I. 회사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 참여자 중(주)케이옥션의 연혁에 관한 사항은 위 「제1부 VI. 3-1. 나.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확정된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은 청산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공시하거나 계약 또는 법령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 종료 시점에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에게 제공합니다.

3-3. 공동사업자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

가. 공동사업 운영자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의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부 III. 재무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 참여자 중 (주)케이옥션의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부 VI. 주주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케이옥션의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매 분기, 반기, 사업연도말 사업보고서에 포함되어 공시됩니다.

미확정된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은 청산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공시하거나 계약 또는 법령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 종료 시점에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미확정된 공동사업 참여자들 중 비거주자, 개인이나 소규모 회사로 당사가 재무정보 등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또는 법령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에 있어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4. 공동사업자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가. 당사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제2부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 참여자 중 (주)케이옥션의 연혁에 관한 사항은 위 3-1.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 참여자중 (주)케이옥션에 관한 사항은 공동사업과 관련된 인력에 한하여 아래 3-5. 공동사업자 담당인력 나. 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주)케이옥션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분기, 반기, 사업연도말 사업보고서 「제2부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 공시됩니다.

미확정된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은 청산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공시하거나 계약 또는 법령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 종료 시점에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미확정된 공동사업 참여자들 중 비거주자, 개인이나 소규모 회사로 당사가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법령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에 있어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5. 공동사업자 담당인력

가. 당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공동사업 담당인력 중 운영인력과 투자자 보호 인력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업무 (상세업무)	성명 (생년)	소속·직급	업무경력	자격증	비고	근속연수 (개월)
투자자 보호인력 (공동사업 관리 총괄)	도현순 (1967)	대표이사	1. 한국은행 4.6년(외화자금과) 2. 리만브라더스 홍콩 0.5년 3. 페레그린증권 홍콩/서울 3.8년 4. 맥킨지 서울 1.9년 5. 리먼브라더스 서울 6.9년 6. (주)케이옥션 16.4년(현재/대표이사) 7. (주)투게더아트 2.6년(현재/대표이사)	-	책임담당자	31
투자자 보호 인력 (사업운영담당/ 준법지원담당임원)	이관재 (1965)	사업운영 / 준법지원담당 임원 등기이사	1. 금융감독원 33.8년(조사기획국, 기업공시국 등) 2. (주)투게더아트 2.4년(현재/사업운영담당/준법지원 담당 임원 전무)	-	-	29
투자자 보호인력 (기초자산 검증)	김보름 (1979)	사외이사	1. 서울문화재단11.3년(문화사업팀장) 2. 세종대학교 3년(문화예술경영학과 주임(초빙)교수) 3. 한성대학교 2.7년(현재/문학문화컨텐츠학과 조교수) 4. (주)투게더아트 2.1년(현재/사외이사)	AAA	(주1)	25
투자자 보호인력 (경영감시)	지승현 (1983)	사외이사	1. 삼정회계법인 4년(IM4본부 공인회계사) 2. 삼덕회계법인 1년(감사본부 공인회계사) 3.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년 (Deal 1본부 공인회계사) 4. KT&G 1.6년(자금운용센터 금융투자팀) 5. (주)로보에테크놀로지 2.4년(현재/재무기획담당) 6. (주)투게더아트 2.1년(현재/사외이사)	공인회계사	-	25
투자자 보호인력 (경영감시)	배장원 (1974)	사외이사	1. 사회적기업 ㈜꿈틀 3.7년(서울지사장) 2. 국회의원 보좌관 4.8년(4급, 정무위원회) 3. 신성장연구소 0.5년(현재/소장) 4. (주)투게더아트 0년(현재/사외이사)	-	-	0
투자자 보호인력 (감사)	박준원 (1983)	감사	1. 안진회계법인 8년(감사본부 공인회계사) 2. 삼덕회계법인 4년(감사본부 공인회계사) 3. (주)LG 에너지솔루션 1.6년(정도경영팀) 4. 예인회계법인 3.1년(현재/대표자 공인회계사) 5. (주)투게더아트 2.1년(현재/감사)	공인회계사	-	25
투자자 보호 인력 (이해관계인 거래 통제/준법지원)	문대영 (1982)	매니저	1. 변호사문대영법률사무소 8년(변호사) 2. (주)케이옥션 1년(법무팀장) 3. 티에이어드바이저(유) 6.7년(현재/이사) 4. (주)투게더아트 2.6년(현재/ISC팀 매니저)	변호사 /CAMS /투자자산운용사	(주2)	31
운영인력 (기초자산 관리, 공시, 투자자 명부 관리)	신규식 (1984)	매니저(O&CS팀장)	1.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 4.7년(플랜트계약팀, 해외계약팀, 토건계약팀)2. (주)미드레이트 4.1년(운영총괄팀) 3. (주)투게더아트 4.0년(O&CS팀장/매니저)	투자자산운용사	-	48

운영인력 (기초자산 매입, 관리, 처분)	김진환 (1975)	매니저(ISC팀장)	1. 주식회사써머스플랫폼 2.8년(콘텐츠팀, 사업기획팀) 2. 주식회사케이티알파 1.5년(사업기획팀) 3.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식회사 2년(사업기획팀) 4. 주식회사지엔에스무역 5.3년(운영총괄팀) 5. 뷰티매니지먼트솔루션 주식회사 3년(사업개발팀) 6. (주)하비우드 3.3년(운영팀) 7. (주)서울옥션블루 1.3년(사업개발팀) 8. (주)투게더아트 1.3년(현재/ISC팀장/매니저)	-	-	16
운영인력 (투자계약 관리, 투자자보호)	도영진 (1993)	매니저(기획개발팀장)	1. 아트네이티브(주) 1년(사내이사/사업개발) 2. (주)블랜드 0.6년(대표이사/사업개발) 3. 티에이어드바이저(유) 1.2년(사업개발) 4. 아트폼스(주) 1년(사내이사/사업개발) 5. 아트큐브플러스(주) 6년(사내이사/사업개발) 6. (주)투게더아트 2.3년(현재/매니저/기획개발팀장)	미국공인회계사 /투자자산운용사	-	27
운영인력 (기초자산 매입, 관리, 처분)	이지현 (1983)	매니저	1. (주)케이옥션 16.1년(현재/경매팀 팀장) 2. (주)투게더아트 2.6년(현재/매니저)	-	-	31
운영인력 (기초자산 매입, 관리, 처분)	윤희재 (1990)	매니저	1. University of Pennsylvania Arthur Ross Gallery 1.2년(연구) 2. Keystone Education Ltd.(서울/홍콩) 3.2년(컨설팅, 마케팅) 3. 프리랜서 2.3년(전시자료 번역, 유학컨설팅) 4. (주)케이옥션 5.5년(현재/경매팀 PI파트) 5. (주)투게더아트 2.3년(현재/ISC팀 매니저)	-	-	27
운영인력 (투자계약 관리)	김세라 (1989)	매니저(재무팀장)	1. 제일메디칼 주식회사 2.2년(무역관리부) 2. 주식회사 메타브랜딩 1.7년(경영지원실) 3. 주식회사 참피온 1.7년(재무팀) 4. (주)케이옥션 3.6년(재무그룹 회계팀) 5. (주)투게더아트 2.3년(현재/재무팀장, 회계 및 공시 담당 매니저)	투자자산운용사	-	27
운영인력 (투자계약 관리)	이아름 (1993)	매니저	1. 한국맨소래담 주식회사 4.6년(재무팀) 2. (주)케이옥션 2.4년(재무그룹 회계팀) 3. (주)투게더아트 2.3년(현재/재무팀 자금담당 매니저)	투자자산운용사, 재경관리사	-	27

(주1) AAA는 Appraisers Association of America의 약자로 미국에서 감정평가를 위한 통일 규준(USPAP: Uniform Standard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에 의하여 미술품 등 동산의 가치 평가에 관한 교육을 수료하고, AAA에 회원자격(membership)을 득한 전문가를 말합니다.

(주2) CAMS는 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의 약자로, 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ACAMS: Association of 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에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ACAMS 회원으로 등록한 전문가를 말합니다.

나. 공동사업참여자들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자 참여자 중 기초자산의 보관과 관련된 (주)케이옥션의 케이아트스페이스의 운영에 관한 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업무 (상세업무)	성명 (생년)	소속·직급	업무경력	자격증	비고
운영인력 (기초자산 관리)	김정임 (1974)	(주)케이옥션 기획운영그룹장 상무	1. (주)케이옥션 8.9년(현재 / 기획운영그룹)	-	책임담당자
운영인력 (기초자산 관리)	김형준 (1984)	(주)케이옥션 기획운영그룹 작 품관리팀 팀장	1. (주)케이옥션 11.9년(현재 / 기획운영그룹 작품관리팀)	-	책임담당자/미술학 석사

(주1) 위 인력들은 당사나 본 공모로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케이아트스페이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인력들입니다.

(주2) (주)케이옥션 기획운영그룹 작품관리팀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인 이상의 미술학 전공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술학 석사 이상 학위자는 3명입니다.

미확정된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은 청산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공시하거나 계약 또는 법령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 종료 시점에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미확정된 공동사업 참여자들 중 비거주자, 개인이나 소규모 회사로 당사가 담당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법령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에 있어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6. 공동사업자의 사업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에 관한 사항

가. 당사에 관한 사항

아래에서는 주로 당사의 사업전략, 위험관리 및 공동사업의 수익구조를 기술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업전략, 위험관리, 수익구조는 아래 기재 이외에도「제2부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자산에 대한 사업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제1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중 미술품 시장과 기초자산에 대한 분석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전략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당사는 공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물색하고 평가하며, 공동사업의 구조에 부합하는 거래 상대방의 선정, 미술품에 대한 조사, 거래 구조에 대한 검토, 공동사업 참여자에 대한 선정 등을 수행합니다.

중요성 측면에서 당사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특성으로서 미술품 진위의 중요성과 진위 여부에 따르는 거래상대방의 보증 능력을 공동사업에 있어 가장 큰 투자위험요소 또는 손실가능성으로 보고 있으며, 공동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미술품의 장래 가치에도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미술품은 입증되는 유통경로나 첨부되는 거래상대방의 보증서등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진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진위와 유통경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미술품은 장래를 향한 위험성으로 가치의 온전한 보전이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입증해 주는 유통경로나 발급받은 보증서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나 재무상황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미술품의 위작 위험이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진위 보증 책임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운영 과정에서는 보안 시설과 내화 시설이 갖추어진 미술품 보관시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제는 기초자산이 최종적인 매각까지 취득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며 온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도난 위험, 화재 위험, 훼손 위험 등에서 미술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보관 중 위험이 현실화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범위의 보험이 부보되는 것을 중요한 사업 전략의

일부로 삼고 있습니다.

미술품의 보관에 있어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당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사업전략은 기초자산을 취득하여 인도 받은 후, 위와 같이 안전한 보관장소에서 미술품을 보관해 줄 제3자를 선정하여 동산인 기초자산을 인도한 후, 최종 매각시까지 기초자산의 판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시나 판매를 위한 실물 확인 목적 등 공동사업의 주된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미술품의 점유 이전을 수반하는 일체의 다른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술품은 동산으로서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의 이전을 받은 자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당사는 적절한 보관자에게 미술품의 보관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점유를 인도한 후 투자자들에게 공시하여 투자자들이 미술품을 목적물로 하는 반환청구권을 준공유할 수 있게 된 후에는, 투자자들이 증권의 취득으로 가지게 되는 공유 지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예를 들어 미술품의 점유 이동을 수반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대여/렌탈업, 미술품 근질권 또는 양도담보와 관련된 사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것을 중요한 사업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당사가 직접 보관함으로 인하여 당사의 다른 자산과 혼장될 위험이나, 이동이 쉬운 미술품의 점유가 계속 이전되어 투자자들의 권리가 불안해지거나 침해될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로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에 있어 기초자산 보관에 관한 공동사업 참여자로 (주)케이옥션을 선정하여 미술품의 진위 보증 및 보관에 관한 위험과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주)케이옥션은 미술품 보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당사 이전에도 문화재단이나 주요 컬렉터 등에 대하여 케이아트스페이스 미술품 보관 프로그램을 다년간 성공적으로 제공해 왔으며 기초자산 취득금액을 충분히 보장하는 미술품 보험을 부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초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거래상대방 또는 공동사업 참여자의 선정 등과 관련된 사업전략에 있어서는, 국내외의 주요 갤러리나 미술품 경매회사에 판매를 위탁하는 방식을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 당사는 국내외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수취하는 위탁수수료율에 대한 조사, 기초자산과 작가 또는 가격대가 유사한 작품에 대한 매각 경험, 기타 거래에 관한 조건 등을 비교하여 공동사업의 목적달성과 투자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또는 공동사업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지속적인 물색과 조사를 중요한 사업 전략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초자산 매각에 관한 거래 상대방이나 공동사업 참여자는 미정입니다. 만약 (주)케이옥션을 다시 매각에 관한 공동사업 참여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술품 경매회사로 가지는 시장에서의 지위나 거래조건 등이 타사에 비하여 유사하거나 유리한 경우이기 때문일 것이며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이러한 조건들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사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도 미술품 경매와 프라이빗 세일의 방법을 시의 적절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술품 경매와 프라이빗 세일은 아래와 같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초자산을 프라이빗 세일 방식으로 취득하였지만, 추후 기초자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처분의 시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식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분	경매 방식	프라이빗 세일 방식

내용	- 소장자의 미술품을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위탁받아 일정기간 전시한 후 지정한 일자와 장소에서 공개된 경매를 개최합니다. 이 때, 경매회사를 위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자를 경매사(auctioneer)라고 하며, 경매에 응하는 것을 응찰 또는 입찰(bidding), 경매에 응하는 사람을 응찰자 또는 입찰자(bidder)라고 합니다. 응찰자가 경매에 응하는 가격은 응찰가 또는 호가(bidding price)이며, 각 경매가 이루어지는 미술품은 '랏'(Lot)이라고 합니다. - 경매회사는 매 랏의 미술품에 경매를 시작하는 추정가(estimate)를 제공하고 경매사는 낮은 추정가(low estimate)부터 호가 단위(biding increment)에 따라 점점 높은 가격에 응찰하는 응찰자를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떤 랏에 응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 랏의 미술품은 유찰이 되나, 여러 명의 응찰자가 계속하여 호가 단위를 높여 가면 경매사가 최고가에 응찰한 응찰자가 낙찰자(winning bidder)로 결정합니다. 만약 같은 미술품에 대하여 동일한 호가를 제시한 응찰자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경매 시작 전에 서면 응찰(written bidding)을 제시한 응찰자를 1순위로 합니다. - 미술품 경매회사는 경매가 종료되면 낙찰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미술품을 인도하고, 위탁자에게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미술품의 전시, 보관, 신뢰와 보증의 제공, 대금의 수령과 지급, 경매의 진행 등에 걸친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 이처럼 미술품 경매의 방식은 일정한 기간이 정하여지기는 하나, 대중에게 공개되고 여러 사람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술품 가격이 보다 더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고 신뢰성 있는 미술품 경매회사의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미술품의 경매가 대면 또는 온라인 경매 방식으로 진행되고 완전히 동일한 작품이 있기 힘든 미술품의 특징으로 인하여 특별한 과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대금(hammer price) 이외에 미술품 경매회사에 지급되는 구매수수료(buyer's premium)나 위탁수수료(seller's premium)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미술품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여야 합니다.	- 위탁자가 미술품을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공개 경매에서 유찰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술품 경매회사에 대하여 프라이빗 세일 방식으로 판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미술품 경매회사 또는 그 관계회사에 대하여 직접 자산으로 작품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라이빗 세일 방식은 미술품 경매와는 달리, 응찰자 사이에서의 호가 경쟁 방식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위탁자 또는 미술품 경매회사가 제시한 가격을 구매 희망자가 검토하고, 그 가격을 받아 들이거나 할인을 요구하는 방식의 협상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프라이빗 세일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탁자 또는 미술품 경매회사가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 또는 판매 희망자가 작품가에 대한 할인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미술품 경매를 위한 위탁수수료나 낙찰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품의 적절한 시세를 모르는 경우 비교적 낮은 가격에 작품을 판매하거나 비교적 높은 가격에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미술품의 진위나 미술품의 가치를 형성하는 컨디션, 유통 경로(provenance), 색상, 그 외 여러 요소 등에 대한 판단이 미술품 경매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대중적인 검증을 거치지는 않았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기초자산의 보관에 관하여 (주)케이옥션 이상의 미술품

진위 보장 능력,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시장적 지위와 건전한 재무 상황, 미술품 유통에 관한 충분한 거래 사례, 미술품 보관에 관한 안전한 시설과 보험의 적용, 대금이나 수수료율 등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고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등 이상의 거래조건을 제시 받는 경우,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투자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렇듯 당사의 중요 사업전략이 될 거래상대방 또는 공동사업 참여자의 잠재적 후보군으로 케이옥션 이외에 같은 코스닥 상장사이자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주)서울옥션, 해외 미술품 경매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소더비(Sotheby's), 크리스티(Christie's), 또는 근현대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는 필립스(Phillips)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사와 미술품 전문 매체 등에서 선정되는 국내외 주요 갤러리들에 대한 접촉 역시 늘려가고 있습니다.

(2) 위험관리

당사는 외화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므로 환헤지에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가 기초자산인 미술품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는 진위, 보관, 겸업 등에 관한 위험 문제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공동사업 참여자를 공동사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수익구조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자들은 기초자산의 최종적인 매각을 통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초자산이 매각되면, 매각까지 공동사업에 소요된 비용,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 대한 성과보수(최종매각대금이 모집(매출)총액의 108%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제세공과금을 각 순서대로 공제하고 난 금원을 1주당 처분손익으로 하여 배분 받습니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기초자산의 최종적인 매각까지 소요되는 미술품 보관료와 보험료는 당사의 부담으로 할 뿐, 공동사업의 비용으로 삼아 투자자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당사가 수취할 수 있는 성과보수는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처분손익이 증권의 취득금액을 108%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손익이 높아지는 비율에 따라 수취하게 되므로, 투자자가 손실을 보거나 원본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성과보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성과보수의 결정 방식		
공모총액 대비 청산시가(주1)	성과보수율	비고
[108]% 이하	0%	
[108]% 초과	공모총액 대비 청산시가가 108%를 초과하는 공동사업 수익의 20%	부가가치세(VAT) 별도

(주1) 청산시가 :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으로 인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실제로 수취한 금액

(주2) 공동사업 수익 = 청산시가 - 공모 총액

상세한 성과보수 발생 가능한 경우 및 예상액 등은 본 증권신고서 「투자계약관계서류」에 첨부된 투자계약서 별지 성과보수 부분을 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세공과금에 관하여서는 「제1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중 과세에 관한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

당사는(주)케이옥션으로부터 케이아트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의한 미술품 보관을 제공받고 있으며, 미확정된 장래의 거래상대방 중 하나로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주)케이옥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케이옥션의 케이아트스페이스 관련 사업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는 당사가 구체적으로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당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며, 당사는 1실당 연 3,000만원(VAT 별도)의 확정금액에 의한 미술품 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보관료와 보험료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주)케이옥션의 사업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에 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분기, 반기, 사업연도말 사업보고서 「제2부 I. 회사의 개요 및 II. 사업의 내용」에 공시됩니다.

미확정된 공동사업 참여자들에 관한 사항은 청산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공시하거나 계약 또는 법령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 종료 시점에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미확정된 공동사업 참여자들 중 비거주자, 개인이나 소규모 회사로 당사가 담당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법령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비공개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에 있어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자 권리에 관한 사항

4-1. 투자자 총회 및 의결권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은 투자자총회를 구성하고, 증권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공동사업 운영자 또는 투자계약증권의 10%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처분 또는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행위 등을 위하여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에서 의결사항에 따라 의결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

제36조(투자자총회와 의결권)
①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은 투자자총회를 구성한다.
② 투자자의 의결권은 증권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7조(투자자총회의 소집과 개최)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 및 공동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투자자총회는 본 투자계약서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가 소집한다.
③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의하여 증권의 10%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통지로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의 대표이사는 투자자총회의 의장이 되며, 공동사업 운영자의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사내이사, 미등기임원 중 부사장(부대표), 전무, 상무, 이사, 제3항에 의하여 투자자총회를 소집 요청한 투자자의 순으로 투자자총회 의장이 된다.
⑤ 투자자총회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전자적 방식으로 투자자총회에 부의될 의안을 7일 이상의 기간동안 게시하고, 그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⑥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의 본점 소재지에서 투자자총회를 개최하거나, 필요에 따라 그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⑦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투자자총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⑧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투자자총회 1주일 전까지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발송한다.
⑨ 전항에도 불구하고, 모집 증권 총수 100분의 1 이하의 증권을 소유한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총회 1주일 전까지 투자자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본 투자계약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시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제38조(투자자총회의 결의방법)
①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과반수의 찬성(이하 “찬성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이 때, 찬성 정족수는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에서 포괄적으로 위임된 공동사업 운영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본 투자계약의 이행 경과보고
2.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시 요구
3.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사전 고지되지 아니한 공모총액 대비 3% 초과 수수료 또는 비용의 지출 여부
4.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공동사업 운영 방향의 권고
5. 기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② 투자자총회는 모집된 증권 전부의 찬성(이하 “처분 정족수”)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 다만, 처분을 위한 상대방, 처분가격, 처분 시기를 특정하여야 한다.
2. 제8조의3 제6항에 따라 공동사업자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최소 청산목표액 미만 가격으로 처분하는 행위
3.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4. 제21조의 공유물의 분할금지 특약 및 특약의 갱신 확약에 대한 해지 또는 철회
5. 본 투자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
6.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

7.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총회가 정하는 사항
8.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40조 제3항에 따라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중단
③ 전항 각 호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해지 또는 철회 시까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본조에서 정한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가 미달된 경우 그 의안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없거나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가 증권을 취득하여 투자자로서 투자자총회의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자의 의결권을 제외한 정족수(이하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를 산정하여 찬성 정족수 또는 처분 정족수를 충족하는 경우 그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 운영자를 배제한 정족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의2(투자자의 의결권 위임)
①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 또는 다른 투자자에게 투자자총회의 의결권 행사 권한을 특정한 투자자 총회를 위하여 또는 모든 투자자 총회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의결권의 행사가 위임되고 그 위임이 철회되지 않은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제38조 제5항과 같은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투자자는 투자자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4-2. 투자수익 등 분배

기초자산 처분손익은 청산이 완료(잔여부분 없이 종국적으로 매각)되는 때에 확정되어 투자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투자계약증권의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대로 귀속되고, 처분손익은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성과보수(최종매각대금이 모집(매출)총액의 108%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제세공과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산정됩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기초자산을 인도하고 기초자산 매각대금을 완전하게 지급받음으로서 기초자산 매각을 통한 청산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산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며, 기초자산 인도 및 매각대금의 수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계약에 따라 7영업일 이내에 빠르게 청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초자산의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투자자 명부 변경 정지에 대한 공시 및 청산금 지급 등에 대한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청산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공시하고자 노력합니다. 당사가 청산 절차에서 공시하는 내용에는 대상 투자계약증권, 처분의 대상이 된 기초자산 작가(작품), 모집총액, 모집된 총 증권 수, 증권배정일을 포함하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정보, 그리고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을 뜻하는 청산금 총계, 매각에 수반된 판매수수료, 투자계약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에게 지급되는 성과수수료가 있는 경우 그 성과수수료, 기타 투자계약에 따라 청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 당사가 투자자를 위하여 원천징수하게 되는 제세공과금 등이 있는 경우 그 세금에 대한 내용, 청산금 지급에 대한 일정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매각대금 수령 후 청산금 분배 시작 전까지, 증권 배정일 이후 투자자 명부 변경 정지일까지 사이에 변경된 투자자 명부를 확인하고, 각 투자자들에게 분배될 청산손익을 산정하며, 투자자를 위하여 당사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를 위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의 매각 이후 안전하고 신속한 청산금 지급이 투자자 보호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청산금 지급에 있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노

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청산금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매각대금 전용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매각대금의 보관과 관리, 그리고 배분 절차 일체를 규정하는 "기초자산 매각 후 청산 업무 처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되는 공동사업의 기초자산이 매각되는 경우, 당사는 그 매각대금을 청약시와 동일하게 NH투자증권을 통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이 체결된 매각대금 수령 전용계좌를 통하여 수령할 계획이며, 향후로도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의 기초자산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특정금전신탁계약, 에스크로계약,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청산절차 종료시까지 매각대금을 회사와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계약 등을 체결(또는 체결된 계좌를 계설하는 등 그와 유사한 방법을 모두 포함합니다)하는 등 회사의 도산위험과 투자자를 최대한 절연시킬 수 있는 조치(이하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청산절차 내 투자자 보호조치 등")를 취하여 투자자에게 공동사업의 처분손익이 배분되기 이전까지의 매각대금에 있어서도 투자자 보호를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청산절차 내 투자자 보호조치 등을 포함하여 기초자산 매각 후 청산 업무 처리 규정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공시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투자계약서]

제42조(청산으로 인한 처분손익의 귀속)
① 기초자산이 잔여부분 없이 종국적으로 매각되고, 그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청산이 완료된다.
② 처분손익은 청산이 완료되는 때에 확정되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③ 처분손익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제세공과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산정된다.
④ 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후에는 본 투자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처분손익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매각 기타 처분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의 청산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청산 처분손익을 지급받는다.
⑤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은 청산을 위하여 결정된 기준일에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대하여 그 소유한 증권의 비율(해당 증권의 비율로 정해지는 기초자산 소유권 비율과 같다)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조기 매각, 일부 매각, 기초자산의 운용 수익 발생, 기타 투자로 인한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고 그 지급이 본 투자계약의 청산과 관련된 재무상태 기타 본 투자계약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항에 중대한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준일을 정하여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제43조(처분손익의 한도)
①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익에는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② 투자자의 손해는 투자자가 처분손익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보유하는 증권 가액의 합계를 한도로 하여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증권의 가액과 비율을 넘어서는 손해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지 못한다. 다만, 투자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른 투자자나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한다.

제44조(성과보수)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은 [별첨 6] 성과보수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 1주당 귀속되는 청산시가(기초자산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으로 인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실제로 수취한 금액을 말한다.)가 증권의 1주당 모집 가액에 대비하여 108% 이하인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다.

제45조(제세공과금)
① 청산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세공과금의 일반적 산정 기준 등을 투자자에게 안내하거나, 투자자를 위하여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③ 투자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의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가 제세공과금의 원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하게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 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주1) 청산인이 부담하는 세금에 관련하여서는 「제1부 II. 증권의 주요권리 내용」중 과세에 관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의 매각 후 청산 업무 처리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투자계약증권”은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2. “공동사업”은 기초자산을 증권에 비례하는 소유권 비율로 취득하고 기초자산의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통한 처분손익을 취득 시의 소유권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와 공동사업 참여자를 말한다.
4.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있어 공동사업의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회사를 말한다.
5. “공동사업 참여자”는 공동사업 운영자 외에 본 투자계약의 공동사업 관련 업무를 분담하는 자를 말한다.
6. “투자자”는 본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계약증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공동지분을 가진 자를 말한다.
7. “매각대금”은 기초자산이 공동사업자에 의해 최종 매각되어 발생하고 매각대금 전용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을 말한다. 매각대금은 달리 “청산금”이라고도 표시할 수 있다.
8. “매각대금 전용계좌”는 매각대금이 최종 배분되기 전까지 매각대금의 보관 및 관리를 목적으로 개설된 전용 계좌를 의미한다.
② 청산 업무의 처리 과정 등에 대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4조(매각대금 전용계좌 개설 및 보관)
①회사는 공동사업에 있어 기초자산의 청산금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한다.
② 회사는 매각대금을 매각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수령하며, 매각대금 전부를 완전하게 수령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시작하고 투자자에게 공동사업에 대한 처분손익을 청산금으로 지급하는 분배절차를 시작한다.
③ 회사는 매각대금 배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각대금을 전용계좌를 통하여 보관한다. 이 때, 본 규정 시행일 이후 회사가 모집하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는 공동손익의 처분손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전까지 매각대금을 안전하게 분리보관하기 위하여 매각대금 전용계좌에 대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 에스크로 계약,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청산절차 종료시까지 매각대금을 회사와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계약 등을 체결(또는 체결된 계좌를 개설하는 등 그와 유사한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하는 등 회사의 도산위험과 투자자를 최대한 절연시킬 수 있는 조치(이하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청산절차 내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 항을 위하여, 회사는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매각대금 수령을 위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청산절차 내 투자자 보호조치를 보완한 매각대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관리한다.
⑤ 전 항의 계좌 개설 후에도 계좌의 속성이 변경되거나 본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고 향상된 시스템을 지원하는 타 계좌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진행중인 청산과정 중에는 회사는 매각대금을 신규 계좌로 이관하게 할 수 없다.
⑥ 공동사업자는 매각대금을 직접 매각대금 전용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수인 혹은 공동사업 참여자의 사정으로 매각대금을 전용계좌로 수령하지 못하고 타 계좌로 수령했을 경우 매각대금을 즉시 매각대금 전용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제5조 (자금관리)
① 매각대금 전용계좌는 다른 계좌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타 목적의 자금과 혼용

되어서는 안 된다.
② 매각대금 전용계좌에 대하여는 그 자금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거래내역을 유지하여야 하며, 매각대금 전용계좌에 매각대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자금 담당자는 재무팀장과 담당 임원에게 그 거래내역을 매일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매각대금 전용계좌의 청산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6조 (매각대금의 분배)
① 회사는 매각대금이 매각대금 전용계좌에 보관되기 시작된 후 신속하게 이를 투자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매각대금에 대한 분배를 위하여 투자자를 위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거나 투자자명부에 대한 확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양수 등 투자계약증권의 현재소유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 등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매각대금 전용계좌에 매각대금 전액을 완전히 수령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매각대금에 대한 분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매각대금에 대하여 수행된 특정금전신탁계약 등 청산절차 내 투자자 보호조치에 대한 내역을 지체 없이 재공시한다.
④ 매각대금 분배 내역에 대한 기록은 청산 완료 후 5년간 보관한다.

제7조 (공시)
① 회사는 매각대금에 관한 사항을 수시공시 사항으로 공시한다.
② 회사의 공시는 내부 공시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③ 본 규정에 관련된 업무는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모두 수시 공시 사항으로 본다.

제8조 (공동사업 중단 시 청산 업무 등)
회사가 서비스 중지 또는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관중인 매각대금의 청산 절차는 회사의 「사업중단시 청산 업무 등 처리 절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분쟁)
본 규정에 따른 투자자 민원이 있을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다. 본 규정에서 지정된 매각 및 청산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지시 또는 업무대리를 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다.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때, 청산 전 차감되는 성과보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성과보수의 결정 방식		
공모총액 대비 청산시가(주1)	성과보수율	비고
[108]% 이하	0%	
[108]% 초과	공모총액 대비 청산시가가 108%를 초과하는 공동사업 수익의 20%	부가가치세(VAT) 별도

(주1) 청산시가 : 기초자산의 매각대금에서 매각으로 인한 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실제로 수취한 금액

(주2) 공동사업 수익 = 청산시가 - 공모 총액

상세한 성과보수 발생 가능한 경우 및 예상액 등은 본 증권신고서 「투자계약관계서류」에 첨부된 투자계약서 별지 성과보수 부분을 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장부·서류의 열람 및 사본청구권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취득・보관・관리・매각과 관련된 서류, 청산과 청산손익에 관련된 장부, 투자자 명부 중 투자자 본인이 포함된 부분을 열람하고, 등·초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제20조의2(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①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취득・보관・관리・매각과 관련된 서류를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영업비밀이 포함된 정보, 계약 또는 법령으로 공개가 제한된 정보, 공동사업의 목적상 열람이 제한되는 것이 합리적인 정보의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공개를 유보하거나, 미공개, 일부 공개할 수 있다. ② 투자자는 공동사업의 청산이 있는 경우, 그 청산과 처분손익에 관련된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투자자는 증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 투자자명부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을 열람할 수 있다. ④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영업시간 내에 공동사업 운영자 본점 주소지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인쇄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실비는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투자자가 부담한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관하여 투자자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출력하는 문서가 그 출력 시점에서 본 조에서 정하는 문서들의 등본 또는 초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확인해 줄 수 있다. ⑥ 본 조에 의한 열람과 등・초본 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 본 투자계약, 서비스이용약관 및 기타 공동사업 운영자의 내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⑦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조에서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를 법원, 수사기관, 행정기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3조(투자자명부의 열람・공개・제공) ① 투자자는 투자자명부 중 투자자 본인이 포함된 부분을 열람할 수 있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명부 확정 이후 투자자명부의 주요 사항을 공시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③ 투자자명부는 법원,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기타 본 투자계약과 증권에 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될 수 있다. ④ 투자자명부의 열람・공개・제공이 있는 경우, 투자자 또는 다른 투자자들의 개인정보 중 일부나 전부를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4-4. 투자대상 기초자산 매각에 따른 청산업무 처리절차

투자자는 투자계약에 따라 기초자산 처분 및 손익배분에 관한 권한을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

사에 위임하고 당사가 이 청산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처분계획(처분 시기, 가격, 상대방 등이 포함된 매매계약 예정 내용), 처분가격 산정의 객관적 근거, 처분 의사결정에 이른 사유 등을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투자자는 투자자총회에서 공동사업 운영자가 고지한 처분계획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총회에서 투자자 전원이 반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지된 처분계획 대로 기초자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 운용자는 기초자산을 공모총액의 100% 미만 가격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투자자총회에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계약서]

제40조(청산의 절차와 방법)
① 청산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별첨 5] 청산의 절차와 방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청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산 계획을 공시한다.
1. 기초자산 매각 (예정)가격
2. 투자자에게 귀속될 1주당 처분손익
3. 처분손익 산정에 앞서 공제되는 성과보수
4. 제세공과금에 대한 안내
5. 기타 청산에 필요한 사항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처분계획(처분 시기, 가격, 상대방 등이 포함된 매매계약 예정 내용), 처분가격 산정의 객관적 근거, 처분 의사결정에 이른 사유 등을 [14]일 이상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공시한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사유, 기타 공동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그 공시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제3항에 따라 공시하며, 제2항의 내용을 함께 기재한 경우에는 청산 계획서를 공시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청산을 위한 기초자산 매각)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 이후 합리적 기간 내에 기초자산을 매각하여 공동사업을 청산한다.
② 전 항의 기간은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 이후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③ 기초자산의 매각 가액은 기초자산의 보유기간, 매각 예상 시점에서 기초자산의 시장 가치, 경기변동,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과 향후 전망, 기초자산 매각을 위한 수수료나 제세공과금 기타 투자자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 항에 있어 동종의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의 모집 사례, 국내외의 미술품 판매업자나 미술품 경매업자의 이익률, 공동사업에 소요 된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는 청산을 위한 기초자산 매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1. 기초자산의 처분 가액, 시기, 매수자의 결정
2. 기초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운송, 전시
3. 기초자산의 처분과 관련한 비용 등의 지출
4. 기타 상기 각 호에 부수하는 권한

[별첨 5] 청산의 절차와 방법

1. 기초자산의 매각
: 기초자산이 잔여 부분 없이 최종적으로 매각되고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매각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본 투자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은 청산 절차를 시작한다.

2. 공동사업 운영자의 공시 의무
: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매각이 확정되거나 공동사업의 청산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 사항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3. 공시 사항
: 공동사업 운영자는 청산 결과의 요지에, 청산까지의 비용, 성과보수 등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의무

1.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하거나 추인하는 중요한 권리의무

가. 본 투자계약 제22조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하거나 추인하는 중요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초자산의 매매(예약)계약에 대한 체결과 이행, 그 매매(예약)계약에 대한 예약완결권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 그 예약완결권의 행사
(2) 기초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계된 금전 등에 대한 금전신탁계약, 서비스 이용 계약 등 기초자산 보관 또는 관리를 위한 계약의 체결
(3) 전항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에게 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업무지시 및 운용지시
(4) 기초자산과 공동사업의 유지・보관・관리・대여・ 처분에 관한 권한
(5) 기초자산과 공동사업의 청산과 처분손익에 관한 업무
(6) 본 투자계약 제8조의3 제5항에 따르는 기초자산의 처분
(7) 위 (1) 호 내지 (6)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포괄적 권한

나. 위 (1) 호 내지 (7) 호에 관하여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의 체결에 앞서 투자자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는 수행 시점에 소급하여 투자자가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위임 철회의 제한 등
: 투자자는 위 1. 가. 의 (1) 호 내지 (7) 호에 따른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을 철회・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처분 정족수를 말함)로 위 위임을 제한하거나 철회・ 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포괄적 위임 등
: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기초자산의 처분권한을 위임(처분의 시기, 가격, 상대방, 등 처분 조건・방식에 관한 어떠한 제한이 없는 포괄적 대리권 수여를 포함함)한다. 투자자는 위 2.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자산의 처분에 대한 위임을 철회 ・해지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투자자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공모총액 대비 100% 미만의 가격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에서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시한 기초자산 처분계획의 중단을 결정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동 처분계획에 따라 기초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본 호는 기초자산 처분권한의 위임과 관련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한 다른 권한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4. 위임과 추인의 승계
: 투자자로부터 본 투자계약서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위 1. 가. 의 (1) 호 내지 (6) 호에 대한 위임과 추인의 효과는 승계된다.

5. 위임의 종료 등
가. 전 1. 내지 4.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가장 먼저 도래한 날의 익일에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투자자의 위임은 종료되고 본 투자계약도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1)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나, 기초자산이 처분되지 아니한 채 공유물분할 특약의 갱신에 대한 투자자총회에서 처분 정족수에 의한 반대가 있은 경우. 다만 이 경우 기초

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 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을 분배하는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2) 투자자명부의 최초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이 경우 기초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을 분배하는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3)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청산 업무가 종료되고, 그 청산 업무의 종료가 공시 된 경우
(4) 투자자총회에서 본 투자계약 제38조 제2항 및 제5항의 처분 정족수에 의한 결의로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위임의 해지 또는 철회, 본 투자계약의 해지가 있는 경우
나. 전 항에 의하여 위임이 종료된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위임이 종료된 날까지 본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를 공시한다.
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위임이 종료한 경우에도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잔존 업무가 있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에서 그 잔존 업무를 수행한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민법 제734조에 의한 사무관리로 본다.

4-5.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라 발행인과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등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투자계약에 따라 발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투자계약을 위반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제27조(공동사업 운영자의 선관주의 의무)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취득・보관・관리・처분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초자산이 공동사업 운영자의 재무상태나 신용상태와 분리되어 유지・보관・관리・처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가 공동사업 운영자와 공동사업 운영자의 임직원, 그리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제3자에게도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0조(손해배상책임)
① 공동사업 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투자계약을 위반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인 공동사업 운영자와 신고 당시의 공동사업 운영자의 이사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4.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5.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 제135조 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7.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4-6. 재판관할 등

투자계약에 의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 발행인 본점 주소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투자계약서]

제54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투자계약에 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한국어로 해결되어야 하며, 공동사업 운영자와 투자자 간에 본 투자계약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의 본점 주소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4-7.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취득한 투자계약증권의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기초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공유지

분을 취득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투자계약증권의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기초자산 처분손익의 배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에 민법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계약증권의 소유자 및 기초자산의 공유지분권자로서 투자계약증권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제18조(증권의 양수도 방법 및 제한)
① 어느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 등 본 투자계약에 기한 권리, 권한, 의무 및 지위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 이 때, 양수인은 본 투자계약에 기한 권리, 권한, 의무 및 지위 일체를 승계하는 것을 승낙하고 동의한 자여야 한다.
②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인인 투자자가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 사실을 통지(이하 “양도 통지”)하고, 공동사업 운영자로부터 양도에 대한 승낙(이하 “양도 승낙”)을 받아 야만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양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 통지에 대한 위임을 받은 서면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제출하거나, 양도인의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 통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양수인은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고 공동사업 운영자의 양도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공동사업 운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증권의 양도 및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양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이 때,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모집이 완료된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하는 투자자명부에 대한 사서인증과 별개로, 투자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양도 승낙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가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에 대한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은 이를 준수하여야만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공하는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의 절차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나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의 양도를 위해 필요한 당사자의 정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증명서, 처분문서와 양도에 필요한 비용 등을 투자자와 투자자의 양수인으로부터 제공 또는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증권의 양도 및 통지에 필요한 수단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와의 명시적 서면 합의 없이 본 투자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본 투자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투자자는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본 투자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⑦ 증권의 양도・양수 및 투자자명부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양도인 및 양수인이 연대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비용의 지급을 받기 전까지 관련된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투자자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등)
① 투자자는 취득한 증권 주수에 비례하는 비율로 공동사업 운영자로부터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② 투자자는 증권의 취득시점에 전항의 권리를 취득하며, 증권의 양도 시 전항의 권리도 함께 이전된다. 다만, 증권 및 기초자산의 양도의 효력을 공동사업 운영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가 투자자를 위하여 기초자산을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기초자산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④ 기초자산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공동사업 운영자, 투자자,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양수받는 양수인 사이에서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증권의 양도와 양수를 위한 통지와 승낙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⑤ 투자자는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만을 별도로 양도하지 못하며, 증권 및 본 투자계약에 기한 일체의 권리의무와 함께 양도할 수 있다.

5. 투자자 보호장치에 관한 사항

5-1. 투자자별 공유지분(소유권) 입증 및 기초자산 보관 위치 확인수단 제공 또는 발행인의 도산위험과 법적 절연 관련

가. 공유지분(소유권)의 입증

기초자산인 미술품은 동산으로서, 점유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며 등기나 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투자계약증권의 취득에 수반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자산은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가 보관을 위탁한 (주)케이옥션이 점유하게 되는데, 투자자는 기초자산의 공유지분권을 투자계약에 따라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방식으로 이전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에 대하여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각 투자자가 보유하는 기초자산의 비율, 기초자산의 주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여 사서인증하는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투자자 명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청약기간 종료 후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는 당사 홈페이지 (https://wesahreart.com)에서 투자자 명부 중 투자자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 이전 방식이나 사서인증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제도나 도산절연이 인정되는 신탁제도와는 다르며,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인인 당사가 기초자산을 보관하는 때에는 당사의 도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도산절연이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투자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케이옥션과 기초자산에 대한 보관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가 기초자산을 점유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사의 도산 등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관리, 처분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세종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계속적 보관 및 처분노력과 관련여서는 공동사업 참여자인 (주)케이옥션과 사업중단조건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계약서]

제17조(증권의 배정, 실물증권의 미발행 등)
① 본 투자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청약한 투자자는 [별첨 2] 증권의 배정방법에 따라 증권을 배정받는다.
② 관련 법령에서 증권의 전자등록 등 발행 방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본 투자계약에 기한 증권은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한다. 실물로 된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항에 따라 증권으로 효력이 인정되며, 투자자가 증권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30조(투자자명부의 확정과 작성)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의 청약에 대한 배정 및 증권 취득대금의 납입이 완료되면 본 투자계약의 체결에 동의하고 증권을 취득하는 투자자들의 명부("투자자명부")를 확정하여 작성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가 작성하는 투자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1.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
2. 투자자의 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3. 투자자가 취득하는 증권의 수와 비율
4. 전3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의 사유와 변경일시, 변경된 내용
③ 투자자명부가 확정되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로부터 기초자산의 취득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에 필요한 행위 및 부대되는 의사표시, 기초자산의 관리와 처분 및 그에 부대되는 행위 등에 대한 권한을 [별첨 3]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위임되는 중요한 권리 의무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보며, 공동사업과 본투자계약을 위하여 공동사업 운영자가 증권 모집 이전에 한 행위들은 투자자에 의하여 추인 받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투자자는 투자자명부 확정 이후에는 본 투자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투자계약에 대한 동의를 부인・해지・철회할 수 없다.

제32조(확정된 투자자명부에 대한 사서인증)
공동사업 운영자는 확정된 투자자명부를 작성하여 제16조에 따라 사서인증의 방식으로 공증하고 이후 변경되는 투자자명부는 확정일자인의 방법으로 한다.

제33조(투자자명부의 열람・공개・제공)
① 투자자는 투자자명부 중 투자자 본인이 포함된 부분을 열람할 수 있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명부 확정 이후 투자자명부의 주요 사항을 공시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③ 투자자명부는 법원,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기타 본 투자계약과 증권에 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될 수 있다.
④ 투자자명부의 열람・공개・제공이 있는 경우, 투자자 또는 다른 투자자들의 개인정보 중 일부나 전부를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투자자명부의 변경)
① 투자자명부가 확정된 후 제18조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는 양도 통지를 적법하게 수령하고 양도 승낙을 한 경우, 투자자명부 변경 절차를 이행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날로부터 매 [1]개월마다 투자자명부의 변경사항을 사서인증한다. 이 때, 공동사업 운영자가 투자자명부의 변경 사항만을 사서인증하여 변경 전 투자자명부에 첨부함으로써 유효한 투자자명부의 확정 이 있은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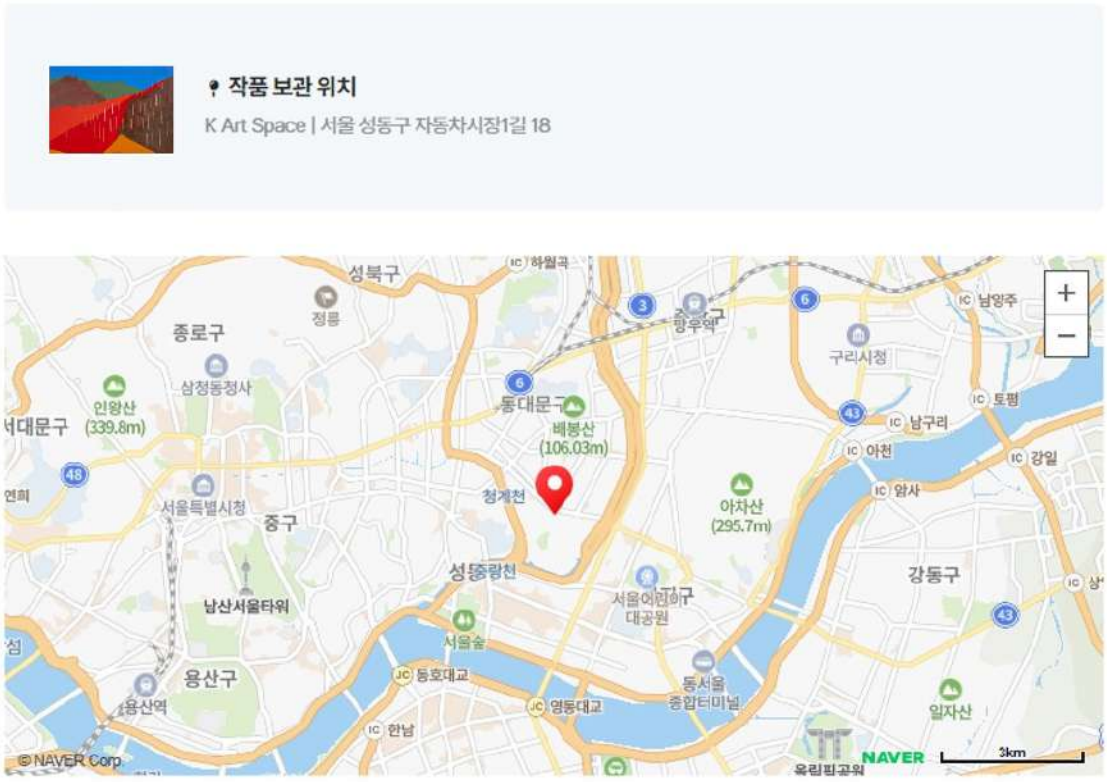
나. 기초자산의 보관위치 제공

당사는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를 통하여 확정된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게 기초자산의 보관위치를 공개하여 제공합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의 전시기간이 종료되면 (주)케이옥션의 케이아트스페이스에 보관할 계획이며, 향후 그 보관장소의 이동이 있는 경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들에게 그 변경된 보관위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투자계약서]

제8조의3(취득한 기초자산의 보관・관리・처분 등)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공유지분의 형태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기초자산을 투자자를 위하여 보관・관리・매각한다.
② 전항의 보관・관리・매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초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미술품 전문 수장고 등)의 이용과 그 변경
2. 기초자산의 상태와 시가에 대한 조사
3. 기초자산의 가치 상승을 위한 촬영, 홍보, 전시
4. 기초자산에 대한 보험의 가입과 보험금의 지급청구
5. 기초자산의 훼손 또는 파손이 있어 수리 또는 복원이 필요한 경우, 그 수리 또는 복원
6. 기초자산의 처분 시기, 처분 상대방, 처분 가액의 결정
7. 전 1호 내지 6호의 업무를 위한 전문가 등 제3자나 시설의 활용
8. 전 1호 내지 7호의 업무를 위한 기초자산의 운송과 운송업체의 사용
9. 전 1호 내지 8호의 업무를 위한 비용・보수・수수료의 지출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전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 일체를 취소·철회 불가능한 조건으로 위임(단, 제38조 제2항에 따른 위임의 해지·철회는 가능) 받는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보관장소를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한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모총액 대비 [100]%(이하 “최소 청산목표액”) 이상을 매매 대금으로 하여 기초자산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이 약정되거나 최소 청산목표액 이상으로 미술품 경매에 출품하기 위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본 투자계약에 의해 투자자들로부터 기초자산의 처분에 관한 권리, 권한 일체를 취소·철회 불가능한 조건으로 위임받아 기초자산을 처분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외의 기초자산 처분은 「민법」 제264조에 따라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본 조에서 정한 사항들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공시관련 업무규정」의 수시공시에 준하여 공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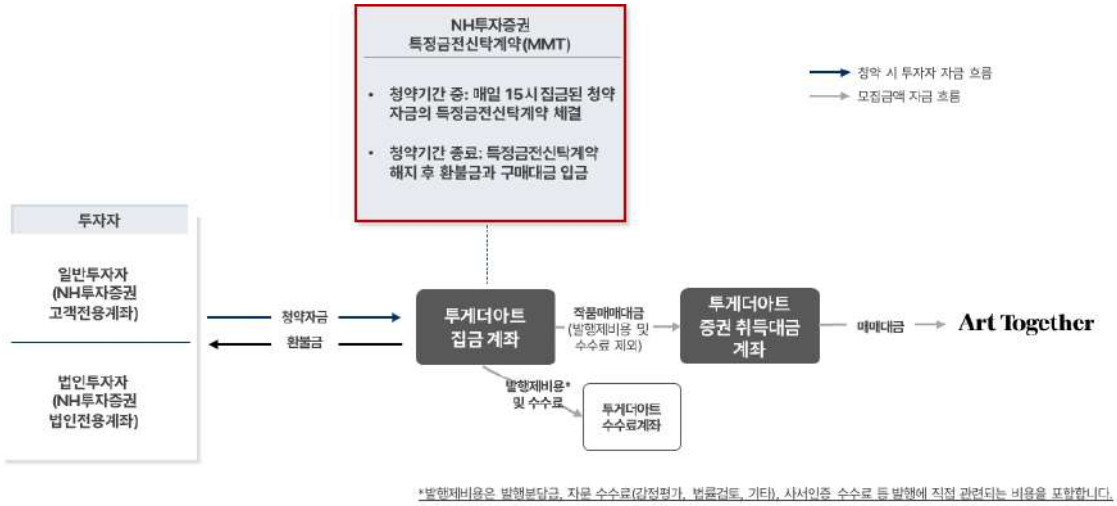
기초자산 보관장소 확인방법(예시)



작품보관위치_게시례

5-2. 투자자 예치금 보관 관련

본 공모로 인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청약기간 중 당사가 계좌관리기관에 개설하는 집금계좌에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납입되는 경우, 당사는 그 예치금에 대하여 NH투자증권을 수탁사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기간 중 매일 오후 3시까지 모집된 청약금 및 청약증거금을 특정금전신탁계좌에 분리하여 예치함으로써 청약기간 내 청약금과 청약증거금에 대한 도산절연 효과를 가집니다. 당사는 청약기간 종료 후 투자자 명부가 확정되면,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배정된 증권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은 증권 취득대금으로 대체하며, 배정되지 아니한 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자에게 환불하며, 공모총액에서 기초자산 취득금액 및 발행제비용 등을 각 지급하거나 수취합니다.



예치금(청약금 및 청약증거금) 관리체계 및 도산절연

(주1) 청약금 및 청약증거금에 관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은 본 투자계약증권의 첨부서류로 제공됩니다.

(주2) 위 특정금전신탁계약은 청약기간 중 매일 오후3시를 기준으로 하여 체결되므로, 위 제공된 첨부서류는 날인되지 아니한 계약서입니다.

5-3. 유통시장 관련

본 공모에 의하여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적법한 유통시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적법한 유통시장의 개설 시기 역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2년12월 종전 운영하던 미술품 '조각거래소'를 폐쇄하였으며, 본 공모에 의하여 발행하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유통시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조각거래소 폐쇄 시점에서의 미술품 조각거래 기록을 모두 DB화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투자자들이 향후 납세 의무 등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시장 폐쇄에 따르는 투자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본 공모로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양도 및 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당사는 그 양도 및 양수를 위한 양도 통지 및 양도 승낙에 대한 절차를 제공하나, 양도 및 양수에 따르는 수수료와 비용은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당사는 위 조각거래소 폐쇄 당시의 당사 조각거래소를 이용하였던 고객이 본 공모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유통시장 폐쇄로 인한 투자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양도 및 양수에 따르는 수수료 등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조각거래소 폐쇄 전까지 당사가 모집한 미술품 공동구매서비스의 대상인 미술품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보관 및 처분 노력을 계속하여 투자자 보호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토큰증권(Token Security)의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방식으로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유통시장이 개설되는 경우, 해당 유통시장에서 투자계약증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투자자는 이러한 당사의 노력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노력과 투자자의 협조에도 유통시장의 개설 시기나 본 공모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이 그러한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가 마련한 투자계약서 제17조 제2항은 증권의 전자등록이 가능한 경우 전자등록이 가능함을 전제로 증권의 실물발행을 배제하고 있고, 동 투자계약서 제19조 제4항은 전자증권 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으로 투자계약증권을 등록 또는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인 당사는 본 투자계약증권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 또는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러한 당사의 유통노력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 2019년 9월 16일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과정에서, 당시 주권의 전자등록 과정에서 주권의 발행과 종류를 정한 조항들은 정관에서 반드시 삭제를 필요로 하였으나, 주식의 전자등록에 대한 근거는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는 등으로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지난 국회 회기 발의되었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3조의2 제23조의2 제6항 각 호는 '발행인이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나 '분산원장등록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등에 있어 "전자등록기관은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토큰증권, ST를 말합니다)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거나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전환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비록 현 단계에서는 본 증권이 전자증권으로의 등록 또는 토큰증권으로의 발행이 되지 않아 환금성이 부족하나 추후 투자계약증권의 전자등록 또는 토큰증권 발행을 통한 환금성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도록 투자계약서에 그러한 가능성을 반영하고 투자자의 일반적 협조의무를 함께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계약서 제19조의2에서 정한 공동사업의 합병 역시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통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공동사업의 규모가 부족한 경우 투자자 총회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을 하시기 전에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에 이러한 유통시장에 관련된 위험요소들을 참고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서]
제19조(증권의 시장성 제한과 유통 노력 등) ① 증권의 모집 시점에 증권이 공개 또는 비공개로 다수 당사자에 의하여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의 유통 또는 양도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후에도 적법한 양도가 가능한 공개 또는 비공개 시장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장에서 증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하 “유통 노력”)을 다한다. ③ 투자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유통 노력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④ 투자자는 증권과 관련된 법률 등의 제·개정으로 증권을 전자증권 또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등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 해당 발행의 절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5-4.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 마련 관련

가. 투자자 위험

당사는 투자계약서에 기초자산의 가치평가방법에 따르는 위험,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가액 산정 방법에 따르는 위험, 매각기간의 장기화에 따르는 위험 등 당사가 공동사업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기재하고, 본 공모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에서 예상되는 투자위험요소들을 가능한 충실하게 기재하여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세한 투자위험요소들에 대해서는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당사는 이러한 투자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하고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청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당사가 기재한 위험의 현실화, 당사가 미처 기재하지 아니한 위험이나 당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판단

전에 이러한 투자위험요소들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서]

제46조(위험의 고지)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을 본 투자계약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이하 “투자위험”)으로 고지한다.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위험을 증권의 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도 기재 할 수 있다.
1. 본 투자계약은 투자에 따르는 손해와 이익에 따라 처분손익의 유무와 처분손익 시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투자자에 대한 처분손익의 지급 가능 여부와 처분손익의 지급 가능 시기, 처분손익금의 액수는 본 투자계약의 체결 또는 증권의 모집 시에 확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2. 투자자성향진단 등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청약 또는 본 투자계약의 체결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본 투자계약은 투자자성향진단 결과 공격투자형에 속하고 다른 금융투자상품 중 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투자자에게만 적합할 수 있다는 사실
3. 기초자산의 판매 시기와 잠재적 가격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가 장기간 동안 증권을 소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4. 기초자산의 판매가액 또는 투자의 처분손익 합계가 증권 공모총액보다 낮을 가능성과, 비용을 공제한 후 전혀 청산금이 분배되지 않을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5. 증권의 유통시장이 없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본 투자계약 체결 시에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시장 등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못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한 시장이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6. 본 투자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양도와 양수는 본 투자계약에 따르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본 투자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권리의무의 양도와 양수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7. 기초자산을 유지・보관・관리・처분하고 투자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비용이 처분손익에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
8. 투자자총회 결의 등 본 투자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기초자산의 처분행위와 청산 절차가 위임되어 있으므로, 기초자산을 장기간 보유하여 청산이 지연되거나 혹은 공동사업 운영자가 합리적이라 판단 하는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기초자산을 처분하고 공동사업을 청산할 수 있다는 사실
9. 본 투자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은 국내외에서 유사한 사업유형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그 경제적 효과가 검증되지는 않았다는 사실
10. 기초자산의 진위와 평가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선관주의 의무에 의존하며, 기초 자산의 진위 여부에 대한 제3자의 평가나 기초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
11. 공동사업 운영자의 재무상태, 청산, 파산, 회생, 지급불능, 소송, 신용 상태의 변경, 행정 처분 등이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12. 기초자산이 속한 시장의 상황과 국내 또는 국외의 경제사정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반적인 기초자산 시장의 침체는 증권의 수익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13. 공동사업 운영자가 제공받거나 이용하는 기초자산 유지・보관・관리・처분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상태, 청산, 파산, 회생, 지급불능, 소송, 신용 상태의 변경, 행정 처분 등이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14.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본 투자계약서, 본 투자계약에 의하여 모집되는 증권, 그 외 공동사업 운영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문서 일체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기초자산’ 또는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15. 본 투자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사실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은 본 투자계약, 기초자산, 본 증권에 대하여 수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는다는 사실
17. 본 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금액의 손실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며 공동사업 운영자를 포함한 어떠

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
18. 기초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익 또는 증권의 양도로 인한 매매소득에 대 한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공동사업 운영자가 본 투자계약 체결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검토한 세법의 적용을 투자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도, 추후 공동사업 운영자가 확인하지 못한 세법의 적용이나 기타 세법의 변경 등에 의하여 예상하지 못한 과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손익금 혹은 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익에 대한 세금이 본 투자계약에 의한 공동사업과 투자자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19. 최종적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신고 의무는 투자자에게 있으며,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타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기타 공동사업 운영자가 투자자로부터 위임받거나 원천징수의 의무를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의 신고와 납부를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에도, 기타 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기타 조세나 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할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동사업 운영자의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에 따라 증권 수익률이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21. 제1호 내지 제20호의 투자위험과 다른 사유로도 처분손익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② 투자자는 전항과는 별개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직접 수행한 투자성향분석이나, 계좌관리기관, 예치금 보관업자, 기타 공동사업 운영자가 위임한 금융투자업자 등에 의하여 수행된 투자성향분석 기타 그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위험에 대하여 증권신고서에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으며, 투자위험에 대한 공동사업 운영자의 노력을 함께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기술할 수 있다.
④ 투자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모두 상세하게 공동사업 운영자로부터 고지받고, 그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나. 광고기준

당사는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과 당사의 브랜드 광고 등에 대해 준수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광고 지침」("광고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광고는 광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되고 배포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광고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투자광고"란 회사가 회사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다음 각 세부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 회사, 제휴관계에 있는 타 회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관리기관 포함) 또는 기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광고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는 자 등의 명칭, 로고, 주소·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시스템 이용방법, 업무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설명회·세미나 개최 안내
3) 투자유인 문구나 구체적인 추천 금융투자상품명이 포함되지 않는 시황·업황의 분석 및 전망
4) 회사가 발행 또는 판매중인 전체 금융투자상품 또는 전체 영위업무에 관한 목록·편람으로서 투자유인 문구를 포함하지 않은 것
5) 관계법규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른 제도의 변경 안내
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 회사가 판매중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수·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객관적 통계를 기초로 추출한 정보를 보여주면서 선정기준 및 정렬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
라. 단순히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회사명 또는 브랜드명만을 노출하는 행위
2. “금융투자상품”이란 회사가 미술품조각투자를 위하여 발행·판매 하는 투자계약증권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관련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무표시사항) ① 투자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회사의 명칭 및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가.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나. 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다.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을 표기하는 경우 투자광고 시점(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
라. 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대비용과 최대수익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소수익
마. 세제(稅制) 변경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그 제도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제도의 시행 시점 및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제도 관련 중요사항
바. 해당 투자광고는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금융투자상품의 청약의 권유는 (예비,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른다는 사실
3.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고지사항
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나. 과거 수익률을 포함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거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
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최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포함) 및 그에 따른 손실 추정액. 이 경우, 객관적・합리적인 근거를 포함
4. 증권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
5. 해당 광고가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심의 또는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
6.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

7.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을 받은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기관·단체의 명칭, 수상등의 시기 및 내용
8.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② 제1항의 규정은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별표1]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의기준" 제2호에서 정하는 일부 매체의 투자광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고지사항(즉, 이 지침 제4조 제1항 제3호 각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투자광고의 글자크기, 폰트, 글재색 및 배치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위험고지내용을 포함한 투자광고의 주요한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2. 영상매체 또는 인터넷 배너를 이용한 투자광고의 경우 투자자가 위험고지내용을 포함한 투자광고의 주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재생 속도를 조절하고, 음성 정보는 자막으로도 표시할 것

제5조(금지행위) 투자광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수익률을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좋은 기간의 수익률만을 표시하거나 강조하는 행위
나. 세전·세후 여부를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
다. 금융투자상품의 예상수익률을 표시하면서 예상손실률을 근접 기재하지 않거나 크기, 색상, 배열 등에 있어 동등하지 않은 수준으로 표시하는 행위
라. 수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행위
3.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4.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하는 행위
5. 개별 금융투자상품 또는 영위업무에 대한 광고내용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지 않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주는 행위
6. 수익률, 수수료, 수상실적 및 통계수치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수익률, 수수료 등(이하 이 목에서 “수익률 등"이라 한다)을 특별히 우대하여 제시하면서 우대조건·기간 등을 수익률 등의 글자 크기의 3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익률 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나. 수상실적 또는 통계수치(이하 이 목에서 "수상실적 등"이라 한다)를 특별히 강조하여 표시하면서 그 출처, 시기, 조건 등을 수상실적 등의 글자 크기의 3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상실적 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7. 사진·문자·그림 등을 이용하여 법인·단체를 포함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8. 계약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9.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10. 투자광고에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광고매체 또는 유관 금융기관의 상호를 부각시키는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발행 및 판매자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11. 금융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12. 투자광고에서 글자의 색깔·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크기 등이 해당 금융투자상품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하지 않는 행위
13. 기타 [별표 2] "투자광고관련 금지행위"에서 열거하는 행위

제6조(온라인 투자광고)
회사는 인터넷 매체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별표1] "온라인 투자광고 심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필의 표시)
① 투자광고물의 적절한 위치에 준법지원부서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은 사실과 투자광고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준법지원부서의 사전심의를 받은 투자광고물의 경우: "준법지원부서(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호 (20 . . ~ 20. .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내용 변경이 없이 투자광고물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광고물의 심의필 표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별표1] "온라인 투자광고 심의기준" 제2호에서 정한 일부 매체 등을 이용한 투자광고이거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은 공간상 제약으로 제1항에 따른 표시가 곤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투자광고지침][별표 1]온라인 투자광고 심의기준

1. 온라인 투자광고의 종류
가. 홈페이지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 포함),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시스템(HTS, MTS 등),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
나. 소셜미디어 광고: 소셜미디어 등(가입자간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미디어로 글자수 또는 공간적 제약이 있는 온라인 매체)을 이용한 투자광고
다. 검색광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 등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 시 금융투자회사의 홈페이지 주소 및 주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광고문구 등이 표시되는 투자광고
라. 배너광고: 주로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연결되도록 한정된 공간에 이미지, 플래시,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투자광고
마. PUSH 메시징 광고: 이메일, 메신저, 알람 등을 이용하는 투자광고
바. 이용후기 광고: 회사가 특정인(해당 서비스를 이용 해본 경우에 한 함)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온라인 매체에 이용후기(단, 개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광고는 불가) 등을 게시하는 투자광고
사. 기타 온라인 광고: 기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투자광고

2. 온라인 투자광고 종류별 심의기준

종류	심의기준
가. 공통	ㅇ 온라인 투자광고를 하면서 투자자의 투자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 의무표시사항 등은 같은 화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소셜미디어 광고, 검색광고, 배너광고 등과 같이 이용 가능한 광고면이 제한적인 경우 해당 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화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나. 홈페이지 광고	ㅇ 회사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타 회사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일부 공간에 대해 회사가 실질적인 게시 및 삭제 등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한이 있음을 명백히 표시할 경우 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광고가 가능하다.
다. 소셜 미디어 광고	ㅇ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 투자자 유형별 금융투자상품 추천 등 투자유인성이 높은 표현의 경우 연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준법지원부서 사전심의가 완료된 이미지 파일(해당 내용이 포함된 경우)은 본문에 게시할 수 있다. ㅇ 회사가 운영 중인 매체 내 광고물은 심의필의 표시(유효기간 포함)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검색 광고	ㅇ 회사의 명칭, 로고 등 단순한 정보제공은 이 지침 제2조 제1호 본문에 따라 투자광고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광고면적상 제약을 고려하여 심의필의 표시(유효기간 포함)를 생략할 수 있다.
마. 배너 광고	ㅇ 정지형 배너광고의 경우 해당 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화면에 이 지침 제4조에 따른 의무표시사항 및 준수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결화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그 밖의 배너광고의 경우 이 지침 제4조에 따른 의무표시사항 및 준수사항을 해당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ㅇ 광고면적상 제약을 고려하여 심의필의 표시(유효기간 포함)를 생략할 수 있다.
바. PUSH 메시	ㅇ 광고면적상 제약에 따라 해당 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화면

징 광고	에 이 지침 제4조에 따른 의무표시사항 및 준수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ㅇ 회사가 운영 중인 매체(단, 이메일은 제외)를 통한 광고물은 심의필의 표시(유효기간 포함)를 생략할 수 있다.
사. 이용 후기 광고	ㅇ 해당 게시물에는 회사에서 대가를 받고 작성하였다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게시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게시물 본문과 구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투자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아. 기타 온라인 광고	ㅇ 기타 상기 매체에 포함되지 않은 온라인 투자광고의 경우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심의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3. 정보공유 및 전달과정의 책임 소재
가. 회사는 최초 게시한 내용과 해당 회사가 직접 정보 공유한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진다.
나. 해당 온라인 매체 참여자간 공유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형된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다.

[투자 광고 지침] [별표 2] 투자광고 관련 금지행위

1. 공정한 거래질서 및 건전한 투자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가. 고객 등에게 혐오감이나 위화감 등을 조성하는 행위
나. 다른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자의 금융투자상품, 영위 업무 등을 비방하는 행위
다. 관계 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라. 가격변동위험, 국가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의 투자위험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기적 거래를 지나치게 조장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거나 입증이 불가능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최저, 유일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다. 특정시점, 특정기간 또는 특정구간에 해당되는 사항을 일반적이거나 통상적인 것으로 표시하는 행위
마. 언론에 잘못 보도된 내용임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행위
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

3. 다른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자 또는 금융투자상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행위
가. 우월성 부각을 목적으로 유리한 내용만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
나. 부분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전체적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상호 관련이 없는 사항을 비교하여 우월성을 표시하는 행위
다.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자사에게만 유리하도록 비교기준을 설정하여 우월성을 과대표시하는 행위
라. 객관적 근거 없이 비교대상보다 우월하다고 표시하는 행위

4. 투자자로 하여금 잘못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다른 금융투자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 및 광고적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나. 제휴상품 광고시 제휴회사의 금융투자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 및 표현을 사용하거나 제휴회사 등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을 자신이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다. 절세금액을 금융투자상품 자체의 성과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5-5.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및 분쟁처리 절차

가. 보험 및 공제 등

당사 또는 공동사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투자자 손실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 및 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① 당사는 (특)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의 사이에서 1억원을 보상한도액으로 하는 개인정보보배상책임공제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② 당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대하여 10억원을 한도로 하는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③ 당사는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주)케이옥션이 운영하는 미술품 전문 프로그램인'케이아트스페이스'에 보관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주)케이옥션이 부보하는 총 한도

1,700억원, 케이아트스페이스 프로그램 보관 미술품에 대하여 30억원을 한도로 하는 미술관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건당 30억원을 초과하는 미술품에 대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케이아트스페이스와 동일한 요율에 따라 개별 미술품에 대한 별도 보험을 가입하고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모로 인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은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타의 손해 또는 손실의 보상체계

본 공모로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은 원금의 보장이 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당사는 투자자에 대하여 원금 보장이나 공동사업의 운영 결과에 따르는 처분손익이 최종적으로 투자자의 손실 또는 손해로 귀결되는 경우에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전에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또는 공동사업자의 과실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 투자위험요소의 현실화나 예상하지 못한 투자위험요소가 현실화된 경우에 있어 당사는 투자자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자보호기금 운영규정」에 따라 투자자보호기금을 적립하고 사용합니다.

[투자자보호기금 운영규정]
제4조(투자자보호기금의 인출과 사용)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투자자보호기금을 인출하고 사용한다. ② 투자자보호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인출하고 사용된다. 1.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자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2.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4. 전 1호 내지 전3호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③ 투자자보호기금은 기초자산의 시가하락을 보상하기 위한 용도로는 인출되고 사용되지 아니한다. ④ 투자자보호기금의 인출과 사용은 본조 제2항 각호의 사유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자위험과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회사 서비스약관에 의한 물품소유자 회원은 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회원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제5조(투자자보호기금에 대한 공시) 회사는 투자자보호기금의 총액, 관리방법, 인출사유 발생, 사용처에 대하여 회사의 정기공시와 동일하게 공시한다.

(주1) 당사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투자자보호기금은 금 621,349,041원이며 출금제한계좌에 분리보관된 46,125,054원으로, 추가적립 예정액 21,546,405원을 포함한 투자자 보호기금 예상액은 689,020,500원으로 미청산 잔액의 5%인 656,020,500원을 상회합니다.

(주2) 본 공모 전 누적 잔액은 13,120,410,000원이며, 본 공모 완료 후 예상되는 누적 잔액은 13,780,410,000원으로, 본 공모 완료 후 추가적립 예정액 21,546,405원을 포함해 누적 잔액 대비 5%에 해당하는 투자자 보호기금은 금 689,020,500원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2022년 11월 29일 이전에 모집하여 아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 및 당사가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모집한 금액의 누적 잔액은 13,120,410,000원입니다. 이에 따르는 투자자보호기금의 필요 적립액은 누적 잔액의 5%에 해당하는 656,020,500원이며 당사는 이를 상회하는 667,474,095원의 투자자보호기금을(이자가 추가되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계약 및 하나은행 출금제한계좌를 통하여 분리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로도 매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미청산 잔액 대비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보호기금이 안전하게 분리보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사는 금번 공모 후에는 다시 금번 공모총액을 포함하여 5% 이상의 투자자보호기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21,546,405원을 추가로 투자자보호기금에 적립하여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때, 사업연도 중 기초자산의 조기 청산 등으로 증감 변동할 수 있는 투자자보호기금 적립액은 당사 이사회의 결의와 감사의 동의를 통하여서만 출금할 수 있는 출금제한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합니다. 당사 이사회는 2024년 4월 3일자 이사회 의결로, 제3회차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함께 투자자보호기금을 출금제한 조건부로 예치하여 분리보관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사업연도 중 기초자산의 조기 청산을 통하여 누적 잔액 대비 투자자보호기금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 및 감사의 동의를 득하여 그 초과분에 한하여만 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며, 당사가 발행하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에 투자자보호기금의 변동과 현황을 기재합니다.

투자자보호기금 적립기준과 실제 적립액

(2025년 10월 22일 기준)

누적잔액 (원)	적립기준 (5%, 원)	적립금 평가액 (원)	금회 모집액 (원)	금회 모집 후 예상 누적잔액 (원)	추가 적립 예정액 (원)	추가 적립 후 투자자 보호기금 예상액 (원)
13,120,410,000	656,020,500	특정금전신탁: 621,349,041 출금제한계좌: 46,125,054 합계: 667,474,095	660,000,000	13,780,410,000	21,546,405	689,020,500

(주1) 누적잔액은 2022년 11월 29일 이전에 모집된 금액과 2024년부터 본 증권신고서 이전 발행되어 아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모집액을 합한 액수입니다.
(주2) 당사는 사업연도 중 투자자보호기금의 추가 적립과 분리보관을 위하여 하나은행 압구정금융센터에 당사 이사회 결의 및 감사 동의를 통하여만 출금할 수 있는 출금제한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해당 계좌는 투자자보호기금의 분리보관만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며, 계좌 기본정보에 "전부지급정지" 및 "실명확인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계좌에는 제2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공모 일정 완료 후 당사가 추가 적립한 투자자보호기금이 분리보관되어 있습니다.이처럼 당사가 수립하고 있는 위험 관리 방안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의 내재적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해당 위험이 발생할 경우 당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당사가 수립하고 있는 위험 관리 방안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의 내재적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해당 위험이 발생할 경우 당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자보호기금이 적립된 특정금전신탁계약 적립금 잔액 및 출금제

한계좌와 그 적립 현황에 대한 추가적 사항에 대하여서는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 3. 기타 위험 파. 기초자산인 미술품 투자에 있어 내재적 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초자산인 미술품에 대한 보증

당사는 매도인이 작품을 매수한 갤러리현대의 구매확인서와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소견서를 통해 기초자산에 대한 위작 위험에 대한 보증을 제공받습니다. 보증에 관한 내용은 「제1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9. 기초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라. 민원 처리 내규 및 분쟁처리기구

당사는 본 공모로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는 당사의 회원이자 고객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형평성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사의 전반적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민원처리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외부전문위원을 포함하는 분쟁처리기구를 두고 민원의 사실관계 확인, 자율조정을 위한 대안 제시, 절차의 안내 등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민원처리지침, 분쟁처리절차에 대한 안내, 분쟁처리기구의 외부전문위원을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 공시 또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지침]

제 1조 (목적)
회사의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형평성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전반적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① 회사의 대고객 접점에 있는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② 민원인이라 함은 회사의 회원(투자계약증권의 투자자를 포함한다)으로 감독당국 또는 회사에 민원 또는 분쟁을 제기한 고객을 포함하며, 모바일,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제 3조 (업무분장)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 해당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처리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응토록 한다.

제 4조 (민원처리 보고체계)
민원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본부장은 회사의 평판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사회와 경영진에 보고한다.

제 5조 (민원처리의 종류 및 방법)
① 자율조정: 회사의 영업행위나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해명 요구 등으로 회사 혹은 감독 당국에 민원제기 된 건으로 회사가 처리함이 적절한 건
② 직접처리: 법규위반 및 부당행위 고발성 민원으로 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감독당국이 직접 처리하는 건
③ 이첩처리: 금융거래계약에 기초한 권리구제 요청 등 이의 신청성 민원으로 금융감독기관에 직접 민원 신청한 것으로 회사가 감독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아 처리하는 건

제 6조 (민원의 단계별 관리 및 처리)
모든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법규 미비, 제도 정비 등과 관련된 건은 예외로 한다.
① 1단계(접수일+1영업일): 민원인의 불만/요구사항을 정확히 확인, 향후처리과정을 안내하여 신뢰감을 형성한다.
② 2단계(접수일+3영업일): 민원처리부서 지정 후 내용을 전달한다.
③ 3단계(접수일+7영업일): 사실조사 및 자율조정 단계로 불만/요구사항에 대하여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사실관계확인과 자율조정을 시도한다.
④ 4단계(접수일+14영업일): 민원처리부서에서 조사된 사실을 재검토 및 필요시 협의회 구성. 최종 검토내용을 유선 안내하여 자율조정 시도하고 성립이 되지 않을 경우, 문서로 안내문을 작성한다.
⑤ 5단계(접수일+30영업일): 안내 회신단계로 민원인 및/또는 감독당국에 안내문 발송 및 관련자료를 송부한다.

제 7조 (분쟁처리기구)
① 회사는 민원인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처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쟁처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다.
1.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1인
2. 민원을 담당하거나 그 민원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 1인
3. 외부전문위원 1인 이상 3인 이하
③ 분쟁처리기구에서는 민원인을 위하여 민원의 사실관계 확인, 자율조정을 위한 대안 제시, 절차의 안내 등을 할 수 있다.

④ 분쟁처리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외부전문위원에게는 회사의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상한으로 하여 실비 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분쟁처리기구의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그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
⑤ 분쟁처리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외부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하나로 한다.
1. 코스닥 또는 유가증권 상장회사에서 10년 이상 재무에 관한 경력이 있는 자
2. 미술품 판매회사 또는 미술품 경매회사에서 등기된 임원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투자자산운용사, CFA, FRM의 자격을 가지고 금융투자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5.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협회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6.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회사의 이사회가 인정한 자

[분쟁처리절차]



분쟁처리절차

(주1)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절차 구조도입니다.

(주2) 당사는 민원처리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쟁처리기구에서는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합니다. 분쟁처리기구의 외부 전문위원 성명과 주요 약력은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5-6. 회사의 사업중단시 독립된 제3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당사는 투자계약증권 발행 업무를 수행한 후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독립적 제3자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보관·관리·처분·정산 등의 업무 수행 체계가 유지되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업중단시 청산 업무 등 처리 절차 규정」("청산업무 처리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독립적 제3자를 선임하여 청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산업무 처리규정 및 선임된 독립적 제3자의 선임과 변경은 공시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된 독립적 제3자의 업무 수행 체계에 관하여서는 본 공모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첨부서류 및 「제1부V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서]
제49조(사업중단시의 청산 업무) ①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보관・관리・ 처분・정산 등의 업무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사업중단시 청산 업무 등 처리 절차 규정」에 따른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제3자의 선임과 변경을 공시한다.

[청산업무 처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서비스 중지」 사태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이용약관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각 사유 등으로 인하여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그에 수반하는 투자계약 관련 업무의 수행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적으로 중지 또는 정지되는 사태를 말한다.
2.「사업중단」 사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서비스 중지 사태가 10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회사가 합리적인 서비스 중지 사유와 30영업일 이내의 서비스 재개 일자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중단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회사의 서비스이용약관 제16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다. 회사의 관련 등록·인가·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결의, 파산선고, 회생신청, 지급불능 기타 그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회사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투자계약에서 정한 업무 등의 정상적 수행에 있어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3.「청산 업무 등 처리절차」라 함은 회사가 사업중단 사태에 대비하여 투자자의 원리금 상환·배분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투자자 등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4.「예치기관」이라 함은 회사가 투자자의 투자금 및 상환금을 고유재산 등 회사의 계산으로 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예치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위탁계약」이라 함은 사업중단 사태에 대비하여 회사가 청산 업무 등 처리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보관·관리·처분·정산 등 업무를 위임하는 독립적 제3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6.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 각 투자계약증권이나 투자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제4조(독립적 제3자와의 위탁계약 체결)
① 회사는 사업중단 사태를 대비하여 독립적 제3자와의 사이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위탁계약은 복수로 체결될 수 있다.
③ 회사는 위탁계약의 체결, 해지·해제, 변경, 기타 중요한 사항을 공시한다. 이 때의 공시는 정기공시 또는 수시공시의 예에 의한다.
④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10인 이상의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
2. 회계법인
3. 회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업종으로 코스닥 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
4. 기타 전3호와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회사의 청산 업무 등 처리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위탁계약에 포함되는 청산 업무 등 처리절차)
① 회사는 사업중단 사태에 대비하여 체결하는 위탁계약에서 청산 업무 등의 처리절차에 의한 업무를 위탁한다.
② 사업중단 사태가 해소되기 전까지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청산 업무 등의 처리절차가 우선한다.
③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되는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1. 원리금, 상환금, 투자금, 예치금 등(“예치금 등”)의 배분과 장부의 작성
2. 전 호의 대금에 대한 지급
3. 예치기관에 대한 송금 지시
4. 기초자산의 관리 및 처분

5. 전4호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요청
6. 전5호에 관련된 업무들에 관련된 업무의 재위탁 권한
7. 전6호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통지, 공지, 공시, 고시
8. 위탁계약의 수행과 관련된 보수와 비용
④ 전 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사는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위탁계약을 맺은 상대방에 대하여 투자계약증권, 기초자산, 투자자명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서비스 중지 또는 사업중단 사태 등에 대한 공시)
① 회사는 서비스 중지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사유와 예정된 서비스 재개 일정을 수시공시에 준하여 공시한다.
② 회사는 사업중단 사태가 있는 경우 사업중단 일자 및 사유, 본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와 그 위탁계약의 주요내용을 수시공시에 준하여 즉시 공시한다.
③ 전 2항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수시공시에 준하여 공시한다.
④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공시는 본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 또는 본 규정에 의한 비상대책위원회가 할 수 있다.
⑤ 전항의 공시에는 예치금 등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8조(투자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서비스 중지 또는 사업중단 사태가 있는 경우 회사가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의 최종 투자자명부에 등재된 투자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② 사업중단 사태 이후의 통지는 본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 또는 본 규정에 의한 비상대책위원회가 할 수 있다.
③ 전2항에 의한 통지는 사업중단 사태 발생 전의 최종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주소,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되며,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④ 전 항의 통지에는 예치금 등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발행 후 공시에 관한 사항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공시정보를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 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공시 관련 업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공시 규정"). 당사의 공시 규정은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공시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정기공시, 수시공시, 기타 공시(자율공시 및 조회공시 등)로 나누어 공시하게 됩니다.

당사가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하여 하는 공시는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eshareart.com)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의 공시로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시를 갈음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합니다.

제4조(공시 방법)
본 투자계약에 관련된 공시(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과 본 투자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공시”)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 게재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의 공시로 공동사업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시를 갈음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공시 관련 업무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투게더아트(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공시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공시업무의 수행,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정관에 정하여진 것, 투자계약서나 투자계약증권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시정보」라 함은 회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다만, 회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이나 투자계약서에서 공시사항으로 정하고 있거나, 금융감독원 기타 법률상·계약상 권한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공시사항으로 지정된 사항들은 공시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3. 「공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회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4. 「공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회사의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각 부서를 의미한다.
5.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회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 각 투자계약증권이나 투자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제9조(공시방법)
① 회사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한다.
② 회사의 공시는 회사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 전자공시

6-1. 정기공시

당사는 아래 각 호의 사항들에 관한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매 분기 또는 반기 결산일로부터 45일 이내 회사의 공고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한 사항들도 정기공시와 동일하게 공시합니다. 투자계약서에 의한 기준일 중 각 사업연도 12월 31일 또는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중 하나를 기준일로 하여 하는 공시는 정기공시로 봅니다. 기준일에 하는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보고서 공시

연번	공시사항	시기	비고
1	회사의 재무제표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2	회사의 사업자 등록 내역(상호 및 본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3	회사의 주 사업 내용 및 영업방식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4	회사의 임원과 임직원 수, 투자자 보호인력과 운영인력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5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자본변동 등에 관한 사항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6	회사의 청산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7	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한 사항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8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순자산가치(NAV)에 대한 발행인 또는 전문가의 평가의견.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주1)

(주1)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연도가 속한 사업보고서 공시부터 포함한다.

(나) 분·반기 보고서 공시

연번	공시사항	시기	비고
1	회사의 재무제표와 외부 감사인의 검토의견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2	회사의 사업자 등록 내역(상호 및 본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3	회사의 주 사업 내용 및 영업방식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4	회사의 임원과 임직원 수, 투자자 보호인력과 운영인력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5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자본변동 등에 관한 사항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6	회사의 청산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7	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한 사항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8	회사가 직전 사업보고서 공시 또는 직전 분·반기 보고서 공시 이후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의 목록	분·반기 결산 후 45일 이내	

한편, 당사는 2023사업연도 상반기부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 또는 매 분기나 반기 검토보고서를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시에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하여, 투자자들이 발행인으로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결산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시 관련 업무 규정]

제5조(정기공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관한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의 공고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시한다(이하 “사업보고서 공시”).
1.회사의 재무제표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2.회사의 사업자 등록 내역(상호 및 본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3.회사의 주 사업 내용 및 영업방식
4.회사의 임원과 임직원 수, 투자자 보호인력과 운영인력
5.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자본변동 등에 관한 사항
6.회사의 청산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7.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한 사항
8.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순자산가치(NAV)에 대한 발행인 또는 전문가의 평가의견. 다만, 투자계약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연도가 속한 사업보고서 공시부터 포함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관한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매 분기 또는 반기 결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회사의 공고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시한다(이하 “분·반기 보고서 공시”).
1. 회사의 재무제표와 외부 감사인의 검토의견
2. 회사의 사업자 등록 내역(상호 및 본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3. 회사의 주 사업 내용 및 영업방식
4. 회사의 임원과 임직원 수, 투자자 보호인력과 운영인력
5.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자본변동 등에 관한 사항
6. 회사의 청산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7. 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한 사항
8. 회사가 직전 사업보고서 공시 또는 직전 분·반기 보고서 공시 이후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의 목록
③ 회사는 투자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정기공시 사항 또는 기준일이 있는 경우 그기준일에 정기공시를 할 수 있다.

[투자계약서]

제35조(기준일)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이하 “기준일”)에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로 볼 수 있다.
1. 증권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초자산의 처분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본 투자계약에 기한 처분손익을 받을 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추가・포기・정정・수정을 포함한다)이나 결정이 필요한 경우
②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준일을 정하거나 기준일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2]주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을 공시할 때 직전 사서인증일과 공시일 이후 사서인증 일 사이에서 증권의 양도, 양수가 있은 경우 변경된 투자자명부를 사서인증 없이도 확정된 투자자명부로 본다는 뜻을 함께 공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경우에는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준일로 볼 수 있다.
1. 증권의 모집이 완료되어 배정을 공시한 날로부터 매 1년이 경과한 날
2. 각 사업연도의 12월 31일
3. 기초자산의 처분이 완료되었다는 공시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이 경우 처분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의 지급을 위한 기준일로 본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준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시할 수 있다.
1. 기초자산의 가치에 대한 공동사업 운영자 또는 전문가의 평가의견
2. 증권의 순자산가치(NAV)
3. 전 2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
4. 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사용, 적립, 잔액, 기타
5. 그 외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6-2. 수시공시 등

당사는 수시로 공시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합니다. 기초자산의 처분 등 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투자설명서 또는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중요한 사항의 변경, 일정 금액 이상의 소송, 투자자 총회의 개최 및 투자자 총회의 결정, 권한 있는 감독기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조치나 처분, 기타 기초자산의 가치나 투자계약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합니다. 발행인이 하는 사업중단시의 청산 업무에 관한 공시는 지체없이 하여야 하는 수시공시로 봅니다.

다만, 당사는 아래 수시공시의 공시사항에 대하여서는 정하여진 공시 시기에 관계 없이 가능한 발생일로부터 지체 없이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며, 향후 당사가 2023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에 대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은 한국거래소(KRX)에 본 투자계약증권 등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정한 수시공시 시한을 준수할 계획입니다.

연번	공시사항	시기	비고

1	기초자산의 처분 등 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2	기초자산의 보관장소 변경에 관한 정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3	기초자산의 보험자나 보험조건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정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4	투자설명서 또는 투자계약서(특약을 포함한다)에 기재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5	기초자산 관련 소송 중 청구금액이 기초자산 가액 100분의 5이상인 경우 또는 기초자산의 진위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6	투자자 총회의 개최 및 투자자 총회의 결정이 있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7	권한 있는 감독기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 또는 사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한 조치 또는 처분을 받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8	기타 기초자산의 가치나 투자계약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주1) 수시공시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기공시가 이루어지고 그 정기공시에 전 항의 수시공시사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기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주2) 수시공시 사항 중 공동사업의 운영,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 법률 또는 계약상 의무, 기타 특별히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3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시를 유보(이하 “공시 유보”)할 수 있다.

(주3) 공시 유보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공시 유보 내역을 사업보고서 공시에 기재한다.

[공시 관련 업무 규정]

제6조(수시공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발행한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의 공고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시한다.
1. 기초자산의 처분 등 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2. 기초자산의 보관장소 변경에 관한 정보
3. 기초자산의 보험자나 보험조건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정보
4. 투자설명서 또는 투자계약서(특약을 포함한다)에 기재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5. 기초자산 관련 소송 중 청구금액이 기초자산 가액 100분의 5이상인 경우 또는 기초자산의 진위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경우
6. 투자자 총회의 개최 및 투자자 총회의 결정이 있은 경우
7. 권한 있는 감독기관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 또는 사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한 조치 또는 처분을 받을 경우
8. 기타 기초자산의 가치나 투자계약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 전 항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정기공시가 이루어지고 그 정기공시에 전 항의 수시공시사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시공시 사항 중 공동사업의 운영,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 법률 또는 계약상 의무, 기타 특별히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3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시를 유보(이하 “공시 유보”)할 수 있다.
④ 공시 유보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공시 유보 내역을 사업보고서 공시에 기재한다.

[투자계약서]

제35조(기준일)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이하 “기준일”)에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로 볼 수 있다.
1. 증권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초자산의 처분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본 투자계약에 기한 처분손익을 받을 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본 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추가・포기・정정・수정을 포함한다)이나 결정이 필요한 경우
②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준일을 정하거나 기준일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2]주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을 공시할 때 직전 사서인증일과 공시일 이후 사서인증 일 사이에서 증권의 양도, 양수가 있은 경우 변경된 투자자명부를 사서인증 없이도 확정된 투자자명부로 본다는 뜻을 함께 공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경우에는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준일로 볼 수 있다.
1. 증권의 모집이 완료되어 배정을 공시한 날로부터 매 1년이 경과한 날
2. 각 사업연도의 12월 31일
3. 기초자산의 처분이 완료되었다는 공시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이 경우 처분손익의 계산과 청산금의 지급을 위한 기준일로 본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준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시할 수 있다.
1. 기초자산의 가치에 대한 공동사업 운영자 또는 전문가의 평가의견
2. 증권의 순자산가치(NAV)
3. 전 2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
4. 투자자보호기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사용, 적립, 잔액, 기타
5. 그 외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37조(투자자총회의 소집과 개최)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 및 공동사업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투자자총회는 본 투자계약서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가 소집한다.
③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의하여 증권의 10%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제1항의 사유 가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에 대한 통지로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의 대표이사는 투자자총회의 의장이 되며, 공동사업 운영자의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사내이사, 미등기임원 중 부사장(부대표), 전무, 상무, 이사, 제3항에 의하여 투자자총회를 소집 요청한 투자자의 순으로 투자자총회 의장이 된다.
⑤ 투자자총회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전자적 방식으로 투자자총회에 부의될 의안을 7일 이상의 기간동안 게시하고, 그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⑥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 운영자의 본점 소재지에서 투자자총회를 개최하거나, 필요에 따라 그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⑦ 공동사업 운영자는 그 투자자총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⑧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투자자총회 1주일 전까지 확정된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발송한다.
⑨ 전항에도 불구하고, 모집 증권 총수 100분의 1 이하의 증권을 소유한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자총회 1주일 전까지 투자자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본 투자계약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시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제40조(청산의 절차와 방법)
① 청산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별첨 5] 청산의 절차와 방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청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산 계획을 공시한다. 1. 기초자산 매각 (예정)가격
2. 투자자에게 귀속될 1주당 처분손익
3. 처분손익 산정에 앞서 공제되는 성과보수
4. 제세공과금에 대한 안내
5. 기타 청산에 필요한 사항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처분계획(처분 시기, 가격, 상대방 등이 포함된 매매계약 예정 내용), 처분가격 산정의 객관적 근거, 처분 의사결정에 이른 사유 등을 [14]일 이상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공시한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사유, 기타 공동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그 공시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제3항에 따라 공시하며, 제2항의 내용을 함께 기재한 경우에는 청산 계획서를 공시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사업중단시의 청산 업무)
①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보관・관리・ 처분・정산 등의 업무는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사업중단시 청산 업무 등 처리 절차 규정」에 따른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제3자의 선임과 변경을 공시한다.

6-3. 기타공시

당사는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발행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 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투자자나 감독기관의 요청을 받아 당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사실관계 또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조회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

(가) 자율공시

연번	공시사항	시기	비고
1	회사가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유 발생시	

(나) 조회공시

연번	공시사항	시기	비고

1	회사 또는 회사가 발행한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르는 투자자나 감독기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공시를 하여야 하는 사유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주1)

(주1)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사실관계 또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조회하여 공시할 수 있다.

(주2) 회사는 조회공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거나 사실확인 중이라는 내용으로 미확정 공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의사결정 과정의 구체적 내용이나 사실확인의 구체적 결과를 다시 공시하는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만약 다시 공시하는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장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공시 규정]

제7조(자율공시)
회사는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하여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제8조(조회공시)
① 회사는 회사 또는 회사가 발행한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르는 투자자나 감독기관의 요청을 받아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사실관계 또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조회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공시를 하여야 하는 사유나 요청이 있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공시한다.
③ 회사는 제1항과 관련된 공시에 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거나 사실확인 중이라는 내용으로 미확정 공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의사결정 과정의 구체적 내용이나 사실확인의 구체적 결과를 다시 공시하는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만약 다시 공시하는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장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7. 추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예비)투자설명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들이 첨부서류로 제출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결정을 하시기 전에 첨부된 서류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 서비스 약관과 당사가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규정들은 당사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 게시되어 있으니, 투자 결정 전에 참고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공개)

가. 정관 나. 투자계약관계서류 (1)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2) 투자계약서 및 [별첨] 일체 다. 업무위탁 관련 서류 : 특정금전신탁계약(안) 라.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마. 이사회 의사록 바. 감사보고서등 : 2024년 감사보고서, 2025년 반기 검토보고서 사. 외부기관의 평가의견서 (1) (주)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 (2) 한국기업평가(주) 미술품 가치평가보고서 (3) (사)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소견서 라. 특정금전신탁계약서(안) 마. 기타 (1) (기초자산에 대한) Condition Report (2) 공동사업 운영자 내부평가서 등[미술시장, 기초자산, 기초자산 가격 적정성 등]

(주1) 청약금 및 청약증거금에 대한 특정금전신탁계약은 청약기간 내에 당사와 수탁사 사이에서 매일 오후 3시에 체결되며 사전계약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에 따라 위 첨부서류는 날인되지 아니한 계약서입니다.

(주2)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이 제공한 것으로 계약의 주요 조건이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3) 투자계약서는 청약기간에 투자자가 청약하며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서류로서 첨부서류는 날인되지 아니한 투자계약서입니다.

(주4) 투자계약서의 첨부서류인 [별첨]에는 발행인에게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공유자가 되는 경우 투자자가 발행인에게 투자계약증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초자산의 보관과 처분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그 위임의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는 청약기간 내에 청약을 하며 해당 위임장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므로 첨부서류는 날인되지 아니한 투자계약서입니다.

(주5) 투자계약서의 첨부서류인 [별첨]에는 청약 일정, 청산의 절차와 방법, 기초자산의 주요 내역, 성과보수율과 성과보수의 결정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6) 발행인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2025년 반기 검토보고서에는 발행인이 투자자보호기금으로 2025년 6월말 기준으로 617,350천원을 특정금전신탁하여 분리보관하고 있으며, 46,115천원을 사용이 제한된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2부 III. 5. 재무제표 주석 11. (2)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7) 첨부서류 중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컨디션 리포트(Condition Report),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중 기초자산의 상세한 사진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저작권법」제35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당사 홈페이지의 URL 주소에서 기초자산의 사진과 해당 서류들을 투자자 명부 확정시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자 명부 확정 이후에는 투자자 명부에 기재된 투자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로그인 절차 등을 거쳐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초자산의 사진 등에 관한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금지됩니다.

8. 이해상충 가능성 및 방지체계

당사는 투자자와 공동사업자 또는 투자자 사이에서의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준과 방지체계를 투자계약서와 당사 자체 규정을 통하여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민원처리지침"을 두어 투자자와 공동사업자 또는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하는 분쟁처리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지침"과 분쟁해결기구에 관하여서는 「제1부VI. 5-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투자자-공동사업자간

공동사업에는 투자계약증권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당사가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공동사업의 성공보다는 당사의 이익이나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우선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 조달하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 없이, 투자자에 대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과 공동사업의 수행을 확약하고,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참여합니다. 당사가 발행제비용에서 발행시까지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를 당사의 이익으로 한다는 점이나, 공동사업의 기간이 장기간이 되는 경우 보관료나 보험료 등을 당사가 부담한다는 점, 당사가 수취하는 성과보수는 공동사업의 성공적인 청산을 통하여만 수취할 수 있다는 점 등은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당사가 투자자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공동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할 유인을 설명해 줍니다.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며, 당사가 선정하는 공동사업 참여자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공동사업 참여자의 선정이나 공동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합리적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을 두고 당사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8-2. 투자자-다른 투자자간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에 참여한 투자자 사이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는 투자자 사이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수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조율하기 위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민원처리지침을 통하여 투자자 사이의 민원을 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서]

제25조 (공동사업 참여자)
① 공동사업 참여자는 공동사업 운영자가 수행하는 공동사업을 계약이나 위탁 등으로 분담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공동사업 참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1. 공동사업 참여자의 상호
2. 공동사업 참여자가 위탁 등으로 분담하는 공동사업의 내용
3. 공동사업 운영자와의 관계(지분관계와 특수관계인 여부를 포함한다)
4. 공동사업 관련 경력(내용 및 기간)
5. 공동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보수, 수수료 기타 계약의 중요한 내용
③ 전항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 투자계약 체결시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한다. 공동사업 참여자가 공개할 수 없거나 공개를 거절한 정보, 공동사업 참여자의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정보, 기타 관련 계약이나 법령에서 보호되는 정보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와 같다.
④ 공동사업 참여자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본 투자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시한다. 다만,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거나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비밀로 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공동사업 운영자의 선관주의 의무)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의 취득・보관・관리・처분을 포함하는 공동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전항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초자산이 공동사업 운영자의 재무상태나 신용상태와 분리되어 유지・보관・관리・처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가 공동사업 운영자와 공동사업 운영자의 임직원, 그리고 공동사업 운영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제3자에게도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8조(이해상충 방지체계)
① 공동사업에 있어 공동사업 운영자(공동사업 운영자의 「상법」에 따른 특수관계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함)와 투자자,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사이에서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는 경우, 공동사업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순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법령 또는 규제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투자자 전원 또는 다수 의결권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가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공동사업 운영자의 이익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 운영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규율한다.

제51조(투자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
① 공동사업 운영자는 본 투자계약에 기한 증권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동사업 운영자가 모집하여 청산되지 아니한 기초자산(2022년 11월 22일 이전에 모집된 기초자산과 본 증권신고서로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공모총액을 포함한다) 잔액의 [5]%에 해당하는 투자자보호기금을 누적적으로 적립한다.
②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보호기금의 적립과 사용, 분리보관 등의 구체적 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공동사업 운영자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거나 공시한다.
③ 공동사업 운영자는 기초자산에 대한 분실, 도난, 훼손, 화재 등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초자산의 보관 시 미술품에 관한 보험에 가입된 미술품 보관시설을 사용한다.
④ 공동사업 운영자는 투자자의 개인정보침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다.

⑤ 공동사업 운영자는 임원의 손해배상위험에 대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52조(분쟁조정절차)
공동사업 운영자는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투자자 민원과 손해배상의 청구를 처리한다. 이 때, 민원처리지침에는 투자자가 제기하는 민원의 처리방법과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하는 분쟁처리기구의 역할 및 구성, 운영을 포함한다.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

제3조(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이해관계자”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및 관계회사를 말한다.
2. “최대주주”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
3. “주요주주”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명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4.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관계회사”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문단9(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5 및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거래의 범위)
이해관계자 거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당 1억원 이상의 매출/매입거래
2. 건당 1억원 이상의 부동산 또는 자산의 구입/처분
3. 건당 1억원 이상의 용역거래
4. 연구개발의 이전
5. 면허 약정
6. 건당 1억원 이상의 대여와 출자를 포함하는 금융거래[복리후생(주거 안정, 기타)를 목적으로 하는 임직원에 대한 대여를 제외한다]
7. 담보 또는 보증
8. 경영위탁계약
9. 기타 위와 유사한 정도의 거래

제5조 (거래의 집행)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들에게 그 거래의 객관성과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참석이사들의 만장일치 결의를 얻어 그 거래를 집행한다.

제6조 (이사회의 필수 내용)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특수관계의 성격(특수관계의 이해에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명단을 포함한다)
2. 거래명세(대가가 없거나 소액의 거래와 거래의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타의 정보도 포함한다.)
3. 가격정책, 결제조건 등의 거래조건(거래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의 효과를 표시한다.)

제7조 (이사회를 불요로 하는 거래)
이해관계자 거래 중에서 다음 각 호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매입거래(약관 또는 약관과 유사한 계약서에 의한 응찰·낙찰·위탁 등). 다만, 회사가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취득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거래조건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경우에 한한다.
2. 경상적인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보수/비용(약관 또는 약관에 유사한 계약서에 의한 거래를 말한

다)
3. 기타 상관습이나 상대방인 관계회사가 전2호에 의한 거래로 보는 거래(경매약관, 정형화된 판매계약서, 임직원 복리후생에 따르는 대여금, 파트너 수수료, 할인이나 우대 정책 등). 다만, 회사가 모집 또는 매출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취득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거래조건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경우에 한한다.

9. 본 투자계약증권 투자가 적정하지 않을 수 있는 투자자 유형

본 공모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은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하여 투자금 전체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성격 및 비시장성에 따라 기초자산의 처분 전까지는 본 증권의 현금화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일반투자자가 여유자산의 10%를 초과하여 본 투자계약증권 등 상장되지 않는 비시장성자산에 투자하시는 것은 자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당사는 1주당 가액인 10,000원을 최소투자금액으로 하되, 본 증권신고서에 의하여 모집되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서는 투자자 1인에 대하여 [3,000]주에 해당하는 30,000,000원을 최대 청약 한도로 하고, 증권의 배정 이후에도 1인의 투자자가 당사의 명시적 동의 없이 50%를 초과하여 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1) 일반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로서, 동법 동조 제6항에 의한 "일반투자자"를 말합니다.

(주2) 당사는 투자자의 청약 전 투자성향분석(투자적합성 테스트)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본 공모에 의하여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은 공격투자형 투자자에게 부합하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투자자의 투자성향이 그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약을 수령합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	-	-	-	-
합계	-	-	-		-

가-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투게더아트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Together Art, Inc. 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18년 7월 30일에 미술품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 강남구 언주로174길 26, 3층	02-6959-1909	https://weshareart.com

마.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발급번호 : 0010-2025-332042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기 업 명 :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사업자등록번호 : 221-87-01096 법인등록번호 : 110111-6827096

대표자명 : 도현순

주 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174길 26 3층

유효기간 : 2025-04-01 ~ 2026-03-31

용 도 :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25년 04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 발급사실 및 발급취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중소기업확인서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주요사업의 내용 및 신규사업

당사는 미술품(회화 등)을 판매 또는 중개하고 그에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종전 미술품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다수의 분할된 소유권을 소규모 매수자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 공모를 포함하여 투자계약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여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취득하고 이를 보관 및 관리한 후, 기초자산을 처분하여 그 투자에 따르는 처분손익을 투자자와 나누는 공동사업을 주로 영위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제2부 - I. 회사의 개요. 5.정관에 관한 사항, 다. 사업목적현황 및 변경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의 매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사업부문별 매출]

사업부문	2025년 매출(반기)	비고
상품 매출	438,667,204	-
용역 수수료 매출	21,594,611	-
합계	460,261,815	-

(주1)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본지에 따라 미술품의 점유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술품 대여업(미술품 렌탈 등)을 영위하지 아니합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상법 제290조에 의한 변태설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연혁

연월	내역
2018년 07월	(주)투게더아트 법인 설립 * 발행주식수 : 300,000원 / 총 자본금: 30,000,000원
2018년 10월	유상증자(상환전환우선주) * 증가한 주식수: 75,000주 / 증가한 자본금: 7,500,000원 / 총 자본금: 37,500,000원
2018년 11월	국내 최초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투게더'오픈
2019년 08월	특허등록(제10-2013526호예술품대여서비스시스템및방법)
2019년 09월	제 4회 '한경 핀테크 컨퍼런스 2019' 특별상 수상
2019년 12월	본점 소재지 이전 : 서울 강남구 논현로111길 23, 5층
2020년 04월	아트투게더 플랫폼 대규모 리뉴얼 오픈
2020년 10월	특허 등록(제10-2169669호 예술품 거래 중개 시스템 및 방법)
2020년 12월	유상증자(보통주 발행) * 증가한 주식수: 149,990주 / 증가한 자본금: 14,999,000원 / 총 자본금: 52,499,000원
2021년 04월	특허 등록(제10-2245845호 소유권 지분 분할 및 거래가 가능한 예술품 거래 중개 시스템 및 방법)
2021년 06월	제1회 대한민국 스마트 금융대상 최우수상 수상
2021년 07월	상환전환우선주(75,000주)의 보통주 전환 * 증가한 주식수: 0주 / 증가한 자본금: 0원 / 총 자본금: 52,499,000원
2021년 08월	유상증자(보통주 발행) * 증가한 주식수: 33,340주 / 증가한 자본금: 3,334,000원 / 총 자본금: 55,833,000원
2021년 11월	삼성전자 C-lab Outside 선정
2021년 12월	본점 소재지 이전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29, 4층
2022년 03월	아트폼스(케이옥션 자회사) 지분투자 유치(최대주주 주식 일부 양수도) 및 업무협약 체결
2022년 03월	김항주 대표이사 취임
2022년 04월	유상증자(보통주 발행 - 출자전환) * 증가한 주식수: 26,023주 / 증가한 자본금: 2,602,300원 / 총 자본금: 58,435,300원
2022년 04월	유상증자(상환전환우선주 발행) * 증가한 주식수: 55,763주 / 증가한 자본금: 5,576,300원 / 총 자본금: 64,011,600원
2022년 05월	롯데카드 '디지로카' 제휴 서비스 출시/ 제3회 삼성금융 오픈 컬래버레이션 스타트업 선정
2022년 07월	PCT 출원 (PCT/KR2022/009501 미술품 거래 관련 데이터 처리 방법)
2022년 08월	유상증자(상환전환우선주 발행) * 증가한 주식수: 66,915주 / 증가한 자본금: 6,691,500원 / 총 자본금: 70,703,100원
2022년 08월	무상증자(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 전입) * 증가한 주식: 10,000,000주 / 증가한 자본금: 1,000,000,000원 / 총 자본금: 1,070,703,100원
2022년 10월	제3회 삼성금융 오픈 컬래버레이션 우수상 수상/ 교보증권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휴
2022년 11월	NH투자증권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휴

2022년 12월	NH투자증권 미술품 조각투자 업무 협약 체결/ 카카오페이 아트위크 공동구매 및 카카오 아지트 전시회/ 카카오브레인 karlo`s Moment 전시회
2023년 01월	아트투게더x카카오브레인 온라인 경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 ESG 위원회' 기업위원 위촉
2023년 02월	카카오브레인 공동 기획 작품 판매 수익금 기부
2023년 02월	케이옥션 및 아트폼스(케이옥션 자회사) 지분투자 유치(최대주주 주식 일부 양수도) 및 업무협약 체결
2023년 03월	NH투자증권 토큰증권 협의체 'STO 비전 그룹' 결성/ 도현순 대표이사 취임
2023년 04월	유상증자(보통주 발행) * 증가한 주식수: 504,777주 / 증가한 자본금: 50,477,700원 / 총 자본금: 1,121,180,800원
2023년 04월	NH농협은행㈜ 업무 제휴
2023년 05월	케이옥션[케이아트스페이스] 미술품 보관 계약 체결
2023년 06월	NH투자증권㈜ 업무 제휴
2023년 09월	상환전환우선주(1,857,792주) 보통주 전환
2023년 10월	유상증자 제3자 배정 * 증가한 주식수: 113,207주 / 증가한 자본금: 11,320,700원 / 총 자본금: 1,132,501,500원
2023년 11월	한국기업평가 업무 제휴
2023년 11월	나이스피앤아이 '토큰증권 평가협의체' 발족 및 업무 제휴
2023년 12월	본점 소재지 이전 : 서울 강남구 언주로174길 26, 3층(현재 본점 주소지)
2023년 12월	하이투자증권 미술품 기반 STO사업 업무 제휴
2023년 12월	신한투자증권 토큰증권 사업 업무 제휴
2023년 12월	KB증권 토큰증권 사업 업무 제휴
2024년 01월	투게더아트 제1회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
2024년 09월	유상증자(보통주 발행) * 증가한 주식수: 1,050,000주 / 증가한 자본금: 105,000,000원 / 총 자본금: 1,237,501,500원
2025년 08월	한국ST거래 토큰증권 신사업 업무 제휴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7회차까지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일자	내용	소재지
2018년 07월 30일	설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5길 34, 5층(역삼동)
2019년 12월 02일	본점 이전	서울 강남구 논현로111길 23, 5층(논현동)
2021년 12월 06일	본점 이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29, 4층(삼성동)
2023년 12월 01일	본점 이전	서울 강남구 언주로174길 26, 3층

(주1) 회사는 2023년 12월 1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174길 26, 3층으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다. 경영진의 주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19-07-05	임시주총	대표이사(사내이사) 이승현	-	대표이사(사내이사) 이상준
2019-12-06	임시주총	사내이사 이승행	-	사내이사 류진혁
2020-07-30	(임기만료)	-	-	사내이사 김항주
2020-12-23	(사임)	-	-	사내이사 이승현
2021-03-31	정기주총	사내이사 이은우	-	사내이사 이승행
2022-03-15	임시주총	사내이사 김항주	-	-
2022-04-24	임시주총	감사 이상화 사외이사 김동선	대표이사(사내이사) 김항주 대표이사(사내이사) 이은우	-
2022-08-26	임시주총	기타비상무이사 남경희 감사 신규식	-	대표이사(사내이사) 이은우
2023-03-30	정기주총	대표이사(사내이사) 도현순 사내이사 손이천 사내이사 이지현 감사 김병수	-	대표이사(사내이사) 김항주 감사 신규식
2023-08-29	임시주총	기타비상무이사 박지현	-	기타비상무이사 남경희
2023-09-20	임시주총	사내이사 주재승 사외이사 지승현 사외이사 김보름 감사 박준원	-	사내이사 손이천 사내이사 이지현 사외이사 김동선 감사 김병수
2024-08-12	임시주총	사내이사 이관재	-	-
2024-08-31	(사임)	-	-	사내이사 주재승
2025-05-09	임시주총	-	대표이사(사내이사) 도현순	-
2025-08-29	(임기만료)	-	-	기타비상무이사 박지현
2025-11-05	임시주총	사외이사 배장원 기타비상무이사 박지현	사외이사 지승현 사외이사 김보름	-

라. 최대주주의 변동

2023년 2월 회사의 최대주주가 김항주에서 (주)케이옥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 상호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 등 그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과거 미술품 중개업 등을 주 업종으로 하고,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미술품인 기초자산을 취득, 관리, 처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선매입으로 취득한 후 다수의 투자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합니다. 이후 미술품 매각을 통해 발생한 손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원)

종류	구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7기 (2024년말)	제6기 (2023년말)	제5기 (2022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12,375,015	12,375,015	11,325,015	8,849,239
	액면금액	100	100	100	100
	자본금	1,237,501,500	1,237,501,500	1,132,501,500	884,923,9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1,857,792
	액면금액	-	-	-	100
	자본금	-	-	-	185,779,200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
	액면금액	-	-	-	-
	자본금	-	-	-	-
합 계	발행주식총수	12,375,015	12,375,015	11,325,015	10,707,031
	액면금액	100	100	100	100
	자본금	1,237,501,500	1,237,501,500	1,132,501,500	1,070,703,100

(주1) 당사는 2022년 8월 27일 이사회 결의로 준비금 1,000,000,000원을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주2) 당사는 2023년 3월 29일 이사회 결의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23년 4월 29일자로 보통주 504,777주를 신주로 발행하였습니다.

(주3) 당사가 2022년 4월 및 2022년 8월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1,857,792주는 2023년 9월 27일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4) 당사는 2023년 9월 26일 이사회 결의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23년 10월 20일자로 보통주 113,207주를 신주로 발행하였습니다.

(주5) 당사는 2024년 7월 25일 이사회 결의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24년 9월 4일자로 보통주 1,050,000주를 신주로 발행하였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	1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2,375,015	1,932,792	14,307,807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1,932,792	1,932,792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1,932,792	1,932,792	보통주 전환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12,375,015	-	12,375,015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12,375,015	-	12,375,015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	-	-

(주1)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의 수는 정관 제5조의 범위 내로 발행하며, 정관 제11조의2에 따라 우선주인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인 25,000,000주로 합니다.

(주2) 당사는 2023년 3월 29일 이사회 결의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23년 4월 29일자로 기명식 보통주 504,777주를 신주로 발행하였습니다.

(주3) 당사가 2018년 10월 11일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75,000주는 2021년 5월 17일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4) 당사가 2022년 4월 및 2022년 8월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1,857,792주는 2023년 9월 27일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5) 당사는 2023년 9월 26일 이사회 결의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23년 10월 20일자로 보통주 113,207주를 신주로 발행하였습니다.

(주6) 당사는 2024년 7월 25일 이사회 결의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24년 9월 4일자로 보통주 1,050,000주를 신주로 발행하였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의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류주식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4. 주식의 총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5년 5월 9일입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당사의 직전 3사업연도 정관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2년 02월 07일	제5기 1차 임시주총	제2조(목적)	사업다각화를 위한 목적 추가 -휴게음식사업
2022년 06월 02일	제5기 4차 임시주총	제2조(목적)	사업다각화를 위한 사업 목적 추가 -인터넷 전자상거래 -중고품 위탁매매업 -무역업(패션잡화 포함) -수선업(의류,잡화 포함) -대여업(의류,잡화,귀금속 포함)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2022년 08월 26일	제5기 6차 임시주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70,000,000주로 변경
2023년 07월 28일	제6기 1차 임시주총	제2조(목적) 제4조(공고방법) 제11조의 7(주식매수선택권)	1. 사업다각화를 위한 사업 목적 추가 - 미술품 판매업 -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원칙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를 제한하는 조항 삭제
2023년 09월 20일	제6기 3차 임시주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제24조(주주총회 소집) 제25조(소집통지) 제31조(이사와 감사의 원수 및 선임) 제33조의 2(내부거래에 대한 통제) 신설 제36조(업무집행) 제45조(감사의 직무) 제46조(사업연도) 제47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제47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 등)	1.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000,000주로 변경 2. 코스닥 협회 표준 정관 준용하여 정비 3. 이해관계자 거래 규정 등 내부통제제도의 정관 명시

2025년 05월 09일	제8기 1차 임시주총	제8조(주식의 종류)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10조의3(동등배당)<신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18조(사채의 발행) 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 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26조(소집지)<신설> 제28조(의장의 질서유지권 등) 제30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신설> 제31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신설> 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제33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신설> 제34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제35조(이사의 수) 제36조(이사의 선임) 제37조(이사의 임기)	1. 상장사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정비 2.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를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변경 3.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명수를 사외이사로 두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 4.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변경 5.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변경

다. 사업목적현황 및 변경 사항

(1) 사업목적 현황

구분	사업목적	사업영위 여부
1	미술품 중개업	영위
2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영위
3	예술 관련 서비스업	영위
4	박물관 운영업	미영위
5	온라인 정보 제공업	영위
6	모바일 상거래 및 컨설팅업	영위
7	전자상거래업 관련 유통업 및 자문업	영위
8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영위
9	영상물 제작 및 판매업	미영위
10	교육지원 서비스업	미영위
11	휴게음식점영업	영위
12	인터넷 전자상거래	영위
13	중고품 위탁매매업	미영위
14	무역업(패션잡화포함)	미영위
15	수선업(의류, 잡화 포함)	미영위

16	대여업(의류, 잡화, 귀금속 포함)	미영위
17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영위
18	미술품 판매업	영위

(2) 사업목적 변경 내용 및 사유

1) 사업목적 변경 내용

구분	변경일	사업 목적	
		변경 전	변경 후
추가	2022년 02월 07일	-	11.휴게음식사업
추가	2022년 06월 02일	-	12.인터넷 전자상거래
			13.중고품 위탁매매업
			14.무역업(패션잡화 포함)
			15.수선업(의류,잡화 포함)
			16.대여업(의류,잡화,귀금속 포함)
			17.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추가	2023년 07월 28일	-	18.미술품 판매업

2) 변경 사유
- 휴게음식사업 : 사옥 내 커피점 운영
- 인터넷 전자상거래 : (종전 영위하던)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
- 중고품 위탁매매업, 무역업(패션잡화 포함), 수선업(의료,잡화 포함), 대여업(의류,잡화,귀금속 포함) : 중고명품 사업 진출 계획이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위하지 않으며, 관련 자회사 지분은 2023년 2월 지분 매각 완료
-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 기타
- 미술품 판매업 :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한 사업 추가

(3)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구분	사업목적	추가일자
1(주1)	11.휴게음식사업	2022년 02월 07일
2(주1)	12.인터넷 전자상거래	2022년 06월 02일
3(주2)	13.중고품 위탁매매업	2022년 06월 02일
4(주2)	14.무역업(패션잡화 포함)	2022년 06월 02일
5(주2)	15.수선업(의류,잡화 포함)	2022년 06월 02일
6(주2)	16.대여업(의류,잡화,귀금속 포함)	2022년 06월 02일
7(주2)	17.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2022년 06월 02일
8(주3)	18.미술품 판매업	2023년 07월 28일

(주1) 휴게음식사업, 인터넷 전자상거래 : 기존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 부대사업

-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해당사항 없음
- 시장의 주요 특성. 규모 및 성장성 : 해당사항 없음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해당사항 없음
-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 여부 등) : 해당사항 없음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해당 사항 없음
- 주요 위험 : 해당 사항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해당 사항 없음
- 미추진 사유 : 해당 사항 없음

(주2)

중고품 위탁매매업, 무역업(패션잡화 포함), 수선업(의류, 잡화 포함), 대여업(의류, 잡화, 귀금속 포함)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 중고명품 조각투자 목적의 사업 추가하였으나, 자회사(엣플렉스)가 사업을 진행하였고, 자회사는 2023년 02월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중고명품 조각투자
- 시장의 주요 특성. 규모 및 성장성 : 사업매각 완료로 해당사항 없음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사업매각 완료로 해당사항 없음
-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 여부 등) : 사업매각 완료로 해당사항 없음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사업매각 완료로 해당 사항 없음
- 주요 위험 : 사업매각 완료로 해당 사항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사업매각 완료로 해당 사항 없음
- 미추진 사유 : 사업매각 완료로 해당 사항 없음

미술품 판매업 : 기존 미술품 중개업(조각투자 판매)에서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업 개편에 따른 판매구조 변경에 따라 사업목적 추가하였습니다.

-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 기존 중개업에서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한 판매구조 변경

- 시장의 주요 특성. 규모 및 성장성 : 세계 미술시장은 1950년을 1로 볼때 2021년까지 연평균 약 8.5%의 성장을 달성 하였으며, 여전히 장기 성장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 미술시장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약 연 395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약 575억 달러규모의 시장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기준 약 503억 달러 규모로 일시적으로 축소되었다고 말해지나, 최근 3개년간 미술 시장 규모는 평균 636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매하는 사업 또한 미술품 시장의 성장과 함께 꾸준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해당 사업은 기초자산을 당사가 선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다수의 투자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을 모집하여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금 조달원천은 공모의 방식이며,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 운영기간은 투자자명부 확정일로부터 5년이며 당사는 5년 이내에 기초자산을 처분하나, 부득이한 경우 투자자총회의 처분정족수 결의에 의하여 청산기간이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3)

- 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 여부 등) : 2019년부터 예술품 대여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등(특허번호 제10-2013526호, 제10-2169669호, 제10-2245845호)을 연구개발 하였으며, 당사의 전 인원은 이러한 연구개발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으로 인한 매출에 해당 기술과 노하우를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제2부 II 사업의 내용 4. 매출 및 수주상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종전에 영위하였던 미술품 조각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이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에 해당 한다는 판단과 함께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등에 대하여 2022년 11월 조건부 제재면제 결정을 받았고, 2023년 7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제재면제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진행하였던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을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적법한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한 미술품 판매사업으로 변경하여 제1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부터 제7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 주요 위험 :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진계획 : 본 건 증권신고서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한 미술품 판매 등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 미추진 사유 : 해당사항 없음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공동사업 운영자로서 미술품인 기초자산을 취득, 관리, 처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인 미술품을 선매입으로 취득한 후 다수의 투자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합니다. 이후 미술품 매각을 통해 발생한 손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 당사가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 제공에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는 7. 기타 참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미술품 시장과 새로운 형태의 미술품 시장

(1) 전통 미술품 시장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은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동사업을 투자계약의 기초로 합니다. 그에 따라, 재원 조달을 위한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이 중요한 만큼,기초자산인 미술품 시장이 당사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술품 시장은 창작된 미술품을 최초로 판매하는 화랑(Gallery)이나 화랑들이 주기적으로 모이는 아트페어(Artfair)로 구성되는 1차 미술 시장(Primary Art Market)과, (주)케이옥션이나 (주)서울옥션과 같은 경매회사처럼 미술품의 재판매를 주로 영위하는 2차 미술 시장(Secondary Art Market)으로 나누어집니다.



미술품 유통시장 구조도

특별한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미술품1차 시장에 비하여, 2차 시장인 미술품 경매 시장

은 양질의 미술품 확보 및 연속적인 경매 진행 능력 보유 여부 자체가 미술품 경매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와 같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수 년간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에서는 (주)서울옥션과 (주)케이옥션이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함께 과점 체제를 형성하여 왔습니다. 해외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도 소더비(Sotheby's)와 크리스티(Christie's)가 200년 가까이 사실상 과점 체제를 형성하다 2000년대에 들어선 최근에 와서야 필립스(Phillips)가 일정 점유율을 확보하게 될 정도로 높은 진입 장벽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이자 본 투자계약증권에 있어 미술품 보관자로서 공동사업자 참여자인 (주)케이옥션은 미술품 경매 시스템 관리 플랫폼인 K-Office를 자체적으로 설계, 개발하여 사업에 적용하면서 2차 시장인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케이옥션을 당사 최대주주로 두고 확고한 업무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케이옥션이 보유한 K-Office는 방대한 유통 정보를 집적하고 있는 미술품유통체계로, 미술품 유통 관리를 표준화 하였습니다. 케이옥션은 국내 미술품 시장에서 수 십년간 명성을 쌓은 전문가들이 해당 시스템의 운영과 개선에 매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 1월 2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도 하였습니다.

(2) 새로운 관점에서의 미술품 시장

당사가 현재 공모를 진행하고자 하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리고 현재 국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토큰증권(ST) 등을 통한 미술품 취득과 판매는 미술품 시장 중 1차 시장과 2차 시장 중 하나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 미술품 시장에서 1차 시장과 2차 시장 개념이 물리적 관점에서 개별 미술품에 대한 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비하여, 당사가 금번에 공모하고자 하는 투자계약증권 등은1:1의 거래관계에서 벗어나 하나의 미술품을 법률적 또는 경제적 개념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재원으로 취득하여 그 운용과 청산에 대한 수익을 나누고자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시장으로 보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특히 다수 투자자로부터의 재원 조달이라는 점에서 공동사업은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증권성을 가지게 됩니다.

2. 당사가 종전 영위하였던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

당사는 2022년 11월까지 미술품의 지분소유권을 소액 단위로 분할하여 개별 투자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그 미술품의 판매 등으로 개별 투자자들이 원금과 수익을 얻도록 한 후, 그 판매에서 오는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이른바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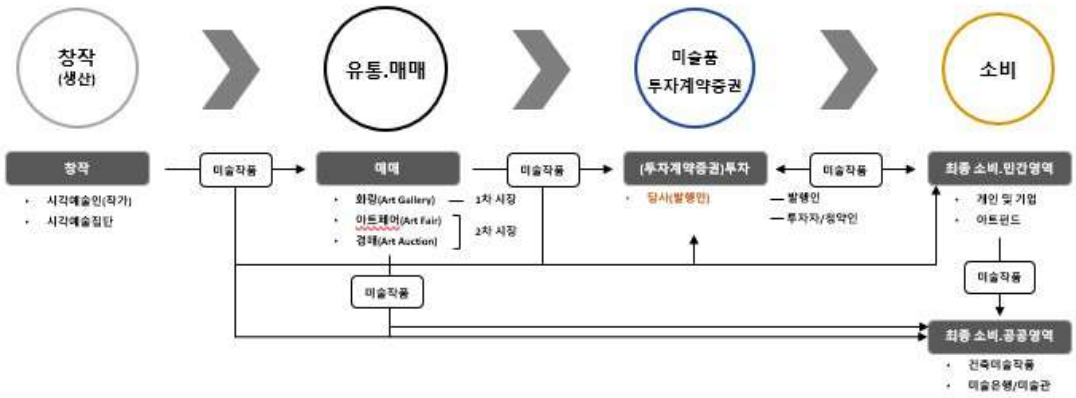
당사는 종전 당사가 영위하였던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를 운영하며, 2022년 11월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준비하기까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6점의 미술품에 대하여 누적 투자자 약 23,350명(중복 참여 포함)을 기록한 바 있으며, 미술품의 공동 소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3.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 구조과 당사의 경쟁력

(1)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으로 변경될 수 있는 미술시장의 유통과 소비구조

당사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이 활성화 됨으로 인하여, 종전 미술품 유통 시장에 소액투자자의 진입이 활발해질 수 있고, 이러한 투자자들은 대체투자 상품으로서의 투자 뿐 아니라 미술품 자체에 대한 향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품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형

성하거나, 소비층을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이 포함된 미술품 유통 구조

(2)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있어서의 진입장벽

가. 진입장벽에 대한 요약

당사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진입장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① 가격경쟁력과 시장성, 그리고 향후의 잠재적 가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미술품에 대한 소싱(Sourcing)과 판매 역량
② 미술품을 취득하여 보관하고 관리하고, 처분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미술품 유통의 노하우
③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들을 준수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

나. 미술품 소싱 역량

미술품의 소싱 역량은, 기초자산이 되는 미술품의 진위, 미술품 취득가액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역량, 미술품의 유통경로(provenance)와 직전 유통경로에의 검증, 투자계약증권 발행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계약과 그 매매계약의 완결을 보장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선정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미술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미술품 시장에서 오랜 업력을 가지고 신용을 쌓지 않은 이상 쉽게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술품 소싱 역량은 일시적으로 미술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기 위한 고객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는 다르며, 적절한 가격으로, 적절한 미술품을, 적절한 시기에 취득하고 판매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증명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진 경우 미술품 소싱과 판매 역량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동산인 미술품에 대한 공동사업에 있어 필요한 노하우

1) 권리관계에 대한 노하우

미술품 유통의 노하우는, 동산에 해당하는 미술품의 취득·보관·처분에 있어서의 권리관계를 오랜 기간 다루어 본 경험과 노하우로부터 출발합니다. 미술품은 부동산과 달리 점유로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이면서도, 부동산에 비할 정도로 큰 내재가치를 가지고 있는 몇 되지 않은 종류의 동산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술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동일한 규격을 가지는 공산품과는 달리 재고자산의 관리에 있어 평균법을 사용하기 어려워 개별법으로 이를 관리할 수 밖에 없고,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유체동산 집행의 방법에 따라야 하나 그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점유관계를 확정하고 보관이나 매각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구조인 공유관계 측면에서는, 동산인 공유물의 분할청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인 동산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공유지분권자의 본질적 권리를 제약하는 특약이 가능한지 또는 그러한 특약이 승계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여러 권리관계상 특수성들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예술창작품이나 동산으로서 미술품에 대한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여러 권리관계상 특수성들은 미술품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점인데, 이는 미술품에 관한 유통 노하우를 가지거나 이전 받을 방법이 있고,동산의 공유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을 거쳐, 동산의 지분소유권자로서 마주칠 수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권리관계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있지 않고서는 가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2) 보관이나 운송에 따르는 인적·물적 자원의 보유와 유통 노하우

미술품은 그 경제적 가치가 미술품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고, 물감과 캔버스, 종이, 액자 등 소재와 구성에 따라 물리적인 보관이나 운송에 따르는 노하우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유화 물감을 캔버스에 그린 미술품과 아크릴 물감을 활용한 미술품, 종이에 수채화로 그린 미술품, 부조가 붙어 있는 미술품, 한지 등을 캔버스에 접착한 미술품, 먹물과 한지에 그려진 미술품, 조각 형태를 가진 미술품 등은 모두 그 보관에 따라 별도의 주의가 필요할 수 있고, 운송이나 설치를 위해서도 무진동 탑차를 사용하여 미술 전공자에 의한 운송이 필요한 등 별도의 인적 물적 자원과 함께 오랜 유통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관이나 운송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의 보유와 미술품 유통 노하우 유무는 미술품의 보관 기간이 오래될 수록 더욱 더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단기간이 아닌 연 단위의 미술품 보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미술품을 재차 판매하였을 때 종국적 판매가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미술품의 상태가 변화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은 미술계의 상식입니다. 운송이나 설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들을 준수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

당사의 관점에서 미술품의 소싱이나 판매 역량이나 미술품의 보관이나 운송에 따르는 유통 노하우는 모두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에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의 보유와 유통 노하우는, 취득하는 미술품 각각의 개별적 특성을 확인하고 분류할 수 있는 충분한 숫자의 미술 전문인력 확보, 미술품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조사 역량, 미술품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관장소의 확보, 그 보관장소의 물리적 환경을 개별 미술품에 부합하도록 설계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 미술품의 거래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뢰가 쌓인 인적 자원과 이를 위한 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때에만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당사의 경쟁력

당사는 (주)케이옥션을 미술품 보관에 있어 공동사업 참여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최대주주인 케이옥션과 2022년 3월 2일자로 미술품 구입과 판매에 대한 조언과 조력 제공, 제3자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은 우대수수료율의 제공, 준법경영 등 포괄적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케이옥션-투게더아트 업무협약서

제3조 상호 협력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호 협력한다.

(1) 당사자들은 '상호 협력'한다는 문언 및 본 협약서의 주요 내용과 제한사항을 제3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2) 주요참여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미술품 구입과 판매[경매, 중개 또는 Private Sale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언과 조력을 제공한다.

(3) 이해관계인은 미술품의 구입과 판매를 주요참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완전 위탁할 수 있다.

(4) 주요참여자는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서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은 우대수수료율을 제공할 수 있다.

(5) 이해관계인은 주요참여자 또는 매수인을 미술품 구입 또는 판매에 있어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중개인으로 삼을 수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6) 매수인과 이해관계인은 미술품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 사업부류에 해당하는 분야의 온라인 판매, 분할소유권 유통, 렌탈, 개인정보보호, 준법경영 등에 있어 필요한 IT와 보안 시스템 개발 등에 협력할 수 있다.

(7) 매도인, 매수인, 이해관계인, 주요참여자는 준법경영을 통하여 상대방 당사자들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한다.

케이옥션_투게더아트 mou

이를 통하여 당사는 공동사업의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진위 보증을 제공받음은 물론, 케이옥션이 가진 미술품 전문 수장고인 '케이아트스페이스'에 미술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케이옥션이 가진 미술품 종합유통체계 K-Office를 통한 미술품 관리, 미술품의 유통 경로 확인과 가치 추정에 대한 기본 정보, 거래 상대방 물색 등에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계약증권 발행 전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를 제공하던 당시부터도 미술품의 분할 소유권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그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금융보안원의 보안점검을 수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다양한 증권회사나 은행 등과 함께 상품개발과 서비스 연동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시 발행제비용 중 비용으로 처리하고 남은 이익, 당사가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권의 처분손익 귀속에 따르는 이익, 기초자산을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청산하여 수취하는 성과보수를 각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매입 현황

당사는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인과의 사이에서 양수도대금의 지급과 매매계약의 완결을 확약하고 미술품의 인도를 보장받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미술품을 당사가 위험을 부담하는 재고자산으로 인식한 후,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투자계약증권의 취득자에게 그 증권의 취득비율에 따라 미술품의 공유 지분권을 귀속시키게 됩니다.

나.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주요 매입 품목인 미술품의 가격은 각 제품별로 상이하여 가격변동추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는 미술품 매입에 있어 해당 미술품의 작가나 유사 작품에 관련된 정보, 해당 시점에서 당사 고객그룹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 당사 전문인력들의 경험 등을 동시에 활용하여 미술품 가격의 변동 추이를 추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 주요 매입처

당사는 국내외의 미술품 경매회사, 화랑, 아트페어, 주요 컬렉터, 당사 회원들로부터 미술품의 매입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나, 당사에 미술품에 대한 확고한 보증능력과 신용도를 보장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만 기초자산이 될 미술품을 매입합니다.

라.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

당사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시 발행제비용 중 비용으로 처리하고 남은 이익, 투자계약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권의 처분손익 귀속에 따르는 이익, 기초자산을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청산하여 수취하는 성과보수를 각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사업영역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생산능력과 생산실적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마. 생산 및 설비

당사는 용역에 해당하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수수료와 그 처분손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할 뿐이므로, 생산과 관련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미술품 보관에 최적화된 (주)케이옥션의 미술품 수장고 공간인 케이아트스페이스를 임차하여 미술품을 보관합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2024년 1월 제1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한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제7회차까지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당사의 2025년 10월말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손익은 매출액 469백만원과 영업손실 2,119백만원입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발행하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과 그로 인한 기초자산의 양도를 매출로 인식합니다.

가. 매출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제 8기 반기말	제 7기	제 6기	제 5기
상품	438,667	4,550,084	-	-
용역 및 기타매출	21,595	239,584	77,729	395,826
합계	460,262	4,789,668	77,729	395,826

(주1) 용역 및 기타매출 부문은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영위하던 미술품 조각투자 중개업을 통한 중개 수수료 매출,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따르는 용역 매출, 기타 매출 등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규로 조각투자 중개를 하고있지 않으며, 관리중인 잔존 조각투자의 매각(청산손익 분배)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통한 청산 수수료 매출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2) 당사의 2025년 10월말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손익은 매출액 469백만원과 영업손실 2,119백만원입니다.

나. 투자계약증권 발행상황

(1) 투자계약증권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구분	증권명칭	청약개시일	청약종료일	증권교부일	운영기간(주1)	청약금액	발행총액(주2)	청산금지급일	청산금액(주3)

미술품투자계약증권	AT-KUSAMA-001	2024-01-16	2024-01-23	2024-01-25	5년	1,014,500	1,182,000	-	-
미술품투자계약증권	AT-CONDO-002	2024-03-26	2024-04-01	2024-04-03	5년	771,500	1,028,000	-	-
미술품투자계약증권	AT-CONDO-003	2024-05-28	2024-06-05	2024-06-07	5년	569,570	1,028,000	2024-08-07	1,154,031
미술품투자계약증권	AT-NARA-004	2024-07-12	2024-07-22	2024-07-24	5년	559,530	867,000	2024-10-28	958,590
미술품투자계약증권	AT-UFAN-005	2024-10-28	2024-11-04	2024-11-06	5년	962,310	1,178,000	-	-
미술품투자계약증권	AT-PARTY-006	2024-12-05	2024-12-18	2024-12-20	5년	841,080	2,295,000	-	-
미술품투자계약증권	AT-UFAN-007	2025-01-15	2025-01-22	2025-01-23	5년	460,140	950,000	-	-

(주1) 투자계약증권의 공동사업 운영기간은 투자자명부 확정일로부터 5년이며 당사는 5년 이내에 기초자산을 처분하나, 부득이한 경우 투자자총회의 처분정족수 결의에 의하여 청산기간이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2) 청약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잔여증권은 당사가 전부 인수 후, 공동사업운영자에 최종 배정되었습니다.

(주3) 청산금액은 기초자산 매각금액에서 이에 따르는 부대비용과 공동사업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성과수수료, 제세공과금을 차감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 투자계약증권으로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증권명칭	발행총액	기초자산취득자금	운영자금(주)
미술품투자계약증권	AT-KUSAMA-001	1,182,000	1,094,030	87,970
미술품투자계약증권	AT-CONDO-002	1,028,000	934,952	93,048
미술품투자계약증권	AT-CONDO-003	1,028,000	934,952	93,048
미술품투자계약증권	AT-NARA-004	867,000	788,547	78,453
미술품투자계약증권	AT-UFAN-005	1,178,000	1,080,784	97,216
미술품투자계약증권	AT-PARTY-006	2,295,000	2,115,261	179,739
미술품투자계약증권	AT-UFAN-007	950,000	880,000	70,000

(주1) 운영자금에는 외부평가비용, 발행인 매매차익, 발행분담금, 사서인증수수료, 계좌관리수수료,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시장위험관리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이나 이자율,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가격 같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수익을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 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금리위험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의 증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증가 최소화를 위해 엄격한 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 유동성리스크

유동성리스크의 주요 발생 원인은 수금차질등으로 인한 Cash-Flow불일치, 금융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금융권 유동성억제 등으로 인한 외부자금 조달 차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 외환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요성 기준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외환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가격 위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기초자산인 미술품의 처분손익의 변동에 대한 위험, 기초자산의 평가손실에 대한 위험, 재고의 부담과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파생상품 계약체결 현황은 없습니다.

다. 신용위험

당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활동

당사가 투자계약증권을 통하여 기초자산으로 취득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대상인 미술품은 각각 모두 개별적인 제조처(작가), 재질, 제작연도, 크기, 가격, 주제,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위 판단 방법이나 가격의 증감 변동폭이나 가능성이 모두 다르며, 상품(미술품)의 판매가능성이나 유통 경로가 동일한 제조처에서 나온 상품조차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상품(미술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단일하거나 독점적인 유통망을 가진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상품(미술품)별로 제조처의 제조이력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ISO나 KS같은 시스템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상품(미술품)을 포장하는 규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상품(미술품)의 재질과 설치법,

운반법, 무게, 보관, 판매 방법이 상품(미술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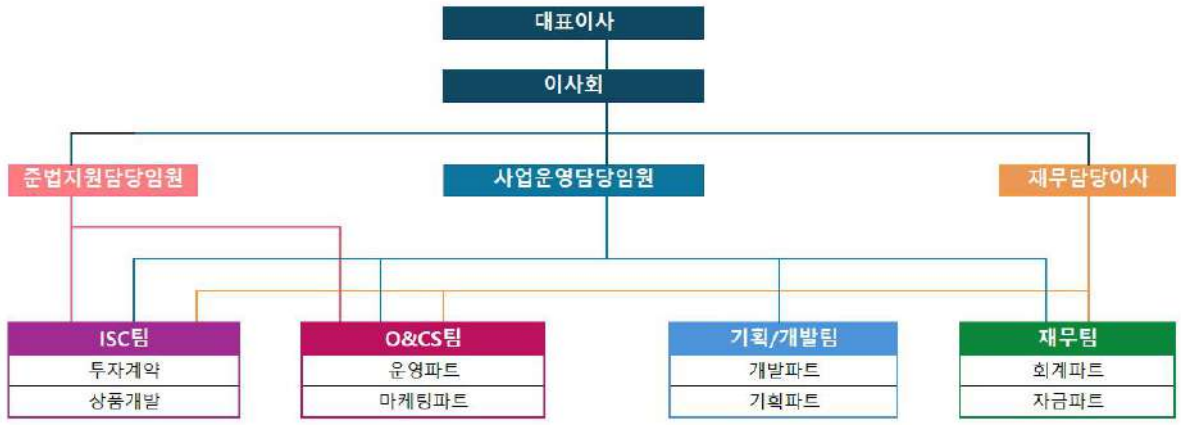
이에 당사는 미술품 유통에 관한 노하우를 가진 최대주주와의 협업 이외에, 독자적인 미술품 조사 및 분석, 미술품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보유하는 방법이나 기타 유통 노하우 획득, 주영업 목적에 부합하는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보수 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활동은 당사가 취득한 미술품 공유지분권(분할소유)에 대한 특허권 등에서 잘 드러나며, 당사의 전 인원은 이러한 연구개발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비용은 영업비용의 직접 계정(급여,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경상연구개발비 비용처리 및 개발비의 자산화 처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으며, 소규모 회사로서 당사 구성원 전원은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 조직도



조직도

7. 기타 참고사항

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법률/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

(1) 투자계약증권

1)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 사업의 증권성(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판단

2022년 11월 29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218호로 당사가 영위하던 미술품 조각투자사업

이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의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는 당사를 포함하여 당사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5개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결을 하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2022. 11. 29. 의결 제218호]
3. 주요내용 가. 한우 및 미술품 관련 5개 조각투자 서비스의 증권성 여부 5개 조각투자 서비스의 사업구조, 거래의 실질 고려시 동 조각투자 서비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의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함 나. ㈜스탁키퍼 등 5개사에 대한 조치안 본건 조각투자 서비스는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조각 투자 서비스에 대해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인 점, 아직까지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소액 대체투자 수단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는 점,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조사 및 제재절차의 개시 보류(㈜스탁키퍼 등 4개사) 및 진행을 유예(㈜열매컴퍼니)하고, 사업구조 개편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할 경우 제재를 면제하려는 것임

2) 당사에 대한 조치

당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2022. 11. 29. 의결 제218호] <별지4> (주)투게더아트에 대한 조치안
2. 조치내용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별표2) 5.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3) 5.에 따라 ㈜투게더아트의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미제출에 대한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는 다음 항목의 이행을 조건으로 보류하고, 해당 조건의 이행 완료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제재를 면제한다. □ ㈜투게더아트가 별도의 사정변경 없이 하기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 및 제재절차를 개시한다.

한편, 당사에 부여된 제재절차 개시 보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2022. 11. 29. 의결 제218호] <별지4> (주)투게더아트에 대한 조치안

<제재절차 개시 보류 조건>

① 조치일로부터 6개월 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업재편을 완료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
(i) 물건에 대한 투자자별 소유권 공유지분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물건의 보관위치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수단·방법을 증권신고서에 명시)하거나, 투자자의 권리·재산을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시킬 것
(ii) 투자자 예치금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고 사업자 도산 시 투자자에 대한 예치금 반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iii) 물건 공유지분의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조치일로부터6개월내 물건 공유지분의 유통시장을 폐쇄하기 위한 계획 및 유통시장 폐쇄에 따른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 조각투자 가이드라인(4.28.) : 발행인의 유통시장 운영은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시장이 부재하고, 유통시장의 존재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iv) 물건의 가치평가 방법*, 주요 투자위험**, 수수료, 매각기간 등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절차 등을 마련하고 증권신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기재할 것
* 예) 사업자가 진품임을 확인한 방법·절차 등 포함
** 예) 보관·관리 도중 손상 위험, 미매각 위험, 위작 위험 등
(v)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사업자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
* 예) 미술품의 손상 등에 대비한 책임보험 및 위작 피해에 대비한 투자자보호기금 조성 등
(vi) 사업자의 도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독립적인 제3자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물건의 보관·관리·처분·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② 상기 조건 이행완료에 대한 금융감독원 보고·증권선물위원회 승인시까지 신규 모집 및 광고 집행은 불가
*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 과정에 있음을 알리는 취지의 안내문구의 배포·게시는 가능

3) 당사의 금융감독원 사업재편 완료 보고 및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당사는 위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재절차 개시 보류 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사업구조를 재편 한 후, 2023년 5월 31일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사업구조재편 완료보고를 마치고, 그에 대한 실사를 거쳐 2023년 7월 12일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당사에 대한 제재면제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는 위 사업구조 재편 완료보고와 동 실사 과정, 증권선물위원회의 조건부 제재면제, 기타 감독당국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한 본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본 공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당사의 경쟁력 확보

한편,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종전 특별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 당사가 영위해 왔던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업구조재편 완료보고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면제 결정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증권으로 인정받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본 공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1. 에서 말씀드린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에 있어서의 진입장벽이나 당사가

확보한 경쟁력으로 인하여,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계기로 하여 당사 는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한 규모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및 매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 미술품에 있어서는 국내 미술품 시장과 해외 미술품 시장에서 중요한 참여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상당한 성장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토큰증권(ST) 시장에 있어서도 투자계약증권이 가장 적합한 방식의 증권 중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 미술품 및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과세

미술품과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과세와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제1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6.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인 미술품에 대한 과세는 다른 자산과 달리 기타소득세(2025년 6월 30일 이전) 또는 배당소득세(2025년 7월 1일 이후)로 분리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 그 과세방식에 대한 이해와 원천징수 가능여부가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지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어, 당사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이행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비를 면밀하게 수행해왔습니다.

당사는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조세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원천징수 가능여부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라. 시장진입장벽 등

시장진입장벽에 대하여는 「II. 1. 사업의 개요 및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요약재무정보를 생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결재무제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반 기 재 무 상 태 표

제 8기 (당)반기말 2025년 06월 30일 현재
제 7기 (전)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7기 (전)기초 2024년 01월 01일 현재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8(당)기 반기말		제7(전)기말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제7(전)기초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자산							
Ⅰ.유동자산			2,042,327,967		3,432,612,600		2,060,151,102
현금및현금성자산	3,5,24,26	1,644,982,396		2,278,808,856		848,049,767	
미수금	3,6,26	569,857		584,198		1,957,774	
미수수익	3,6,26	10,770,372		8,423,238		3,793,424	
선급금		3,628,997		1,940,993		51,840	
선급비용		55,864,745		35,376,115		38,921,969	
선납세금	19	4,821,600		5,789,200		5,054,600	
부가세대급금		-		-		68,291,473	
유동성주임종장기채권	3,6,23,26	100,000,000		-		-	
재고자산	7	221,690,000		1,101,690,000		1,094,030,255	
Ⅱ.비유동자산			3,868,912,219		3,424,298,723		1,451,633,20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4,26	2,583,470,000		2,093,610,000		-	
기타투자자산	3,24,26	617,349,786		474,593,105		457,394,151	
유형자산	8,9	610,475,993		695,379,643		806,219,068	

무형자산	10	6,022,948		10,232,688		39,726,993	
임차보증금	3,6,23,26	51,593,492		50,483,287		48,292,995	
주임종장기채권	23,26	-		100,000,000		100,000,000	
자산총계			5,911,240,186		6,856,911,323		3,511,784,309
부채							
Ⅰ.유동부채			3,941,443,565		3,895,959,638		1,729,018,182
미지급금	3,26	12,965,025		35,967,434		27,816,511	
미지급비용	3,26	277,077,267		211,107,080		46,376,117	
예수금		20,464,265		22,136,497		54,644,059	
부가세예수금		-		575,372		-	
단기차입금	3,11,26	3,500,000,000		3,500,000,000		1,500,000,000	
선수금		-		-		1,650,917	
선수수익	23	25,618,255		23,133,335		-	
유동리스부채	3,9,23,26	105,318,753		103,039,920		98,530,578	
Ⅱ.비유동부채			557,494,432		577,308,133		430,877,739
선수수익		282,958,526		249,470,314		-	
비유동리스부채	3,9,23,26	274,535,906		327,837,819		430,877,739	
부채총계			4,498,937,997		4,473,267,771		2,159,895,921
자본							
Ⅰ.자본금			1,237,501,500		1,237,501,500		1,132,501,500
자본금	12	1,237,501,500		1,237,501,500		1,132,501,500	
Ⅱ.자본잉여금			8,552,526,178		8,552,526,178		5,615,478,478
주식발행초과금	12	8,552,526,178		8,552,526,178		5,615,478,478	
Ⅲ. 기타자본구성요소			660,842,627		524,403,457		333,456,377
기타자본잉여금	13	195,493,314		195,493,314		195,493,314	
주식매입선택권	13	465,349,313		328,910,143		137,963,063	
Ⅳ.이익잉여금			(9,038,568,116)		(7,930,787,583)		(5,729,547,967)
미처분이익잉여금	14	(9,038,568,116)		(7,930,787,583)		(5,729,547,967)	
자 본 총 계			1,412,302,189		2,383,643,552		1,351,888,388
부채및자본총계			5,911,240,186		6,856,911,323		3,511,784,309

별첨 주석 참조

반 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8(당)기 반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제7(전)기 반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0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8(당)기 반기		제 7(전)기 반기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3개월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적	3개월	누적
Ⅰ. 매출액	15,23	6,387,017	460,261,815	1,132,399,835	2,284,916,039
Ⅱ. 매출원가	15,20,23	3,196,078	430,941,299	1,064,650,928	2,158,681,183
Ⅲ. 매출총이익		3,190,939	29,320,516	67,748,907	126,234,856
판매비와관리비	16,20	530,026,793	1,083,842,534	595,995,405	1,296,865,396
Ⅳ. 영업이익(손실)		(526,835,854)	(1,054,522,018)	(528,246,498)	(1,170,630,540)
금융수익	17	15,689,702	35,080,280	6,208,597	12,379,890
금융비용	17	44,513,467	88,815,267	45,506,028	82,231,117
기타수익	18	474,286	476,472	2,333	153,235
기타비용	18	-	-	2,271,924	2,814,017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555,185,333)	(1,107,780,533)	(569,813,520)	(1,243,142,549)
Ⅵ. 법인세비용	19	-	-	-	-
Ⅶ. 반기순이익(손실)		(555,185,333)	(1,107,780,533)	(569,813,520)	(1,243,142,549)
Ⅷ. 기타포괄손익		-	-	-	-
Ⅸ. 총포괄이익(손실)		(555,185,333)	(1,107,780,533)	(569,813,520)	(1,243,142,549)
Ⅹ. 주당이익	21				
기본(희석)주당순이익(손실)		(45)	(90)	(50)	(110)

별첨 주석 참조

반 기 자 본 변 동 표

제8(당)기 반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제7(전)기 반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0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이 익 잉여금	총 계
2024.01.01(전기초)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1,132,501,500	5,810,971,792	137,963,063	(5,729,547,967)	1,351,888,388
주식선택권	-	-	79,877,908	-	79,877,908
반기순이익(손실)	-	-	-	(1,243,142,549)	(1,243,142,549)
2024.06.30(전반기말)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1,132,501,500	5,810,971,792	217,840,971	(6,972,690,516)	188,623,747
2025.1.1(당기초)	1,237,501,500	8,552,526,178	524,403,457	(7,930,787,583)	2,383,643,552
주식선택권	-	-	136,439,170	-	136,439,170
반기순이익(손실)	-	-	-	(1,107,780,533)	(1,107,780,533)
2025.06.30(당반기말)	1,237,501,500	8,552,526,178	660,842,627	(9,038,568,116)	1,412,302,189

별첨 주석 참조

반 기 현 금 흐 름 표

제8(당)기 반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제7(전)기 반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0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8(당)기 반기		제 7(전)기 반기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25,646,479)		(733,901,360)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458,237,020)		(706,118,238)	
가. 당기순이익		(1,107,780,533)		(1,243,142,549)	
나.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22	284,710,847		256,706,144	
다.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22	364,832,666		280,318,167	
2. 이자 수취		31,622,941		8,997,419	
3. 이자 지급		-		(40,030,051)	
4. 배당금 수취		-		-	
5. 법인세 환급(납부)		967,600		3,249,51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8,179,981)		(959,883,699)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48,179,981)		(959,883,699)
기타투자자산의 증가		142,756,681		892,884,899	
시설장치의 취득		-		66,998,800	
비품의 취득		5,423,300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0,000,000)		1,940,000,00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000,000,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		2,00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0,000,000)		(6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60,000,000		60,000,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 + II + III+IV)			(633,826,460)		246,214,941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278,808,856		848,049,767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644,982,396		1,094,264,708

별첨 주석 참조

5. 재무제표 주석

제 8 (당)기 반기 2025년 06월 30일 현재
제 7 (전)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1. 일반사항

주식회사 투게더아트(이하 "회사"라 함)은 2018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회사의 주요사업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4길 26, 3층(신사동, 남강빌딩)
(2) 주요사업 내용 : 미술품의 자기판매 및 투자계약증권 발행
(3) 대표이사 : 도현순
(4) 주요 주주 및 지분율
2025년 06월 30일 현재 회사의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12,375,015주이며, 납입자본금은 1,238백만원입니다. 회사의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당반기		전기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주)케이옥션	6,240,804	50.43	6,240,804	50.43
김항주	1,119,161	9.04	1,119,161	9.04
기타	5,015,050	40.53	5,015,050	40.53
합계	12,375,015	100.00	12,375,015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회사의 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제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에 따른 일반기업회계기준("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따른 자본, 총포괄손익 및 주요한 현금흐름의 조정사항은 주석 27에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별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회사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다음과 같습니다.

(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교환가능성 결여 시 현물환율을 추정하도록 하며 그러한 영향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결여로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 및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반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회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측정기준

반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반기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 아닌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실충당금의 측정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증가하지 않은 경우(주1)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1)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한편, 매출채권, 미수금 등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약정은 기대신용손실

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포괄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6)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감가상각방법
비 품	5 년	정액법
시 설 장 치	5 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평가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상각방법
상 표 권	5 년	정액법
소프트웨어	5 년	정액법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9)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유동리스부채' 또는 '비유동리스부채'로 분류합니다.

(10)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1)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하고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혹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만 이를 제공한 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용역은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당해 추정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하며, 취소나 중도청산시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2) 수익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투자계약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사업(이하'투자계약증권 발행'라고 함)과 공동사업운영자로서 투자계약증권 투자자에게 기초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기타 그에 수반되는 사항들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업(이하'공동사업 운영'라고 함)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따른 수익은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투자계약증권 투자자의 청약대금 납입으로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공동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은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회사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13)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입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회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자산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

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5)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

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16)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 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17)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고기간말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재고자산의 평가

미술품시장은 제품이 규격화되어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유동성이 높은시장이 아니므로, 미술품에 대한 판매가치 평가는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며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 및 담보물로부터 실현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합니다. 해당 미술품의 과거 거래 가격 또는 유사 작품의 최근 거래가격, 또는 동일 작가 미술품의 거래 가격, 미술시장의 동향 등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 실제 판매로 실현되는 금액과 다를수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범주

(1) 금융자산의 범주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1,644,982	-	1,644,982
미수금	570	-	570
미수수익	10,770	-	10,770
유동성주임종장기채권	100,000	-	1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583,470	2,583,470
기타투자자산	617,350	-	617,350
임차보증금	51,593	-	51,593
합계	2,425,265	2,583,470	5,008,735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2,278,809	-	2,278,809
미수금	584	-	584
미수수익	8,423	-	8,423
주임종장기채권	100,000	-	1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93,610	2,093,610
기타투자자산	474,593	-	474,593
임차보증금	50,483	-	50,483
합계	2,912,892	2,093,610	5,006,502

<전기초>

(단위 :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848,050	-	848,050
미수금	1,958	-	1,958
미수수익	3,793	-	3,793
주임종장기채권	100,000	-	100,000
기타투자자산	457,394	-	457,394
임차보증금	48,293	-	48,293
합계	1,459,488	-	1,459,488

(2) 금융부채의 범주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미지급금	12,965
미지급비용	277,077
단기차입금	3,500,000
금융리스부채	379,855
합계	4,169,897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미지급금	35,967
미지급비용	211,107
단기차입금	3,500,000
금융리스부채	430,878
합계	4,177,952

<전기초>

(단위 :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미지급금	27,817
미지급비용	46,376
단기차입금	1,500,000
금융리스부채	529,408
합계	2,103,601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이자수익(비용)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35,08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합계	35,080
<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88,815)
합계	(88,815)

<전반기>

(단위 : 천원)

구분	이자수익(비용)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2,38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합계	12,380
<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82,231)
합계	(82,231)

4. 공정가치

(1) 금융상품의 종류별 공정가치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보유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으며, 금융상품의 중요한 분류변경 사항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금액과 유사하므로 공정가치 공시를 생략하였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상태표 상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근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회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 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부채의 경우 동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수준 2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수준 3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됩니다.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583,470	-	-	2,583,470	2,583,470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093,610	-	-	2,093,610	2,093,610

<전기초>

(단위 : 천원)

구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3)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 관련 공시

1)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으로 분류된 자산・부채의 계정 재분류 외에 당반기와 전기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2)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과정

회사의 재무부서는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의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부서는 공정가치 측정내역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진에게 보고하며 일정에 맞추어 공정가치 평가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경영진과 협의합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전기초
보통예금	1,644,982	2,278,809	848,050

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전기초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미수금	570	-	570	584	-	584	1,958	-	1,958

미수수익	10,770	-	10,770	8,423	-	8,423	3,793	-	3,793
유동성주임종장기채권	100,000	-	100,000	-	-	-	-	-	-
임차보증금	51,593	-	51,593	50,483	-	50,483	48,293	-	48,293
주임종장기채권	-	-	-	100,000	-	100,000	100,000	-	100,000
합계	162,933	-	162,933	159,490	-	159,490	154,044	-	154,044

(2) 보고기간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채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미수금	미수수익	유동성 주임종장기채권
6개월 이하	-	3,533	-
6개월초과 12개월이하	-	1,156	-
12개월초과 18개월이하	-	2,678	-
18개월초과 24개월이하	570	1,928	-
24개월 초과	-	1,475	100,000
손상채권분류	-	-	-
합계	570	10,770	100,000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미수금	미수수익	주임종장기채권
6개월 이하	14	2,342	-
6개월초과 12개월이하	-	2,287	-
12개월초과 18개월이하	570	2,319	-
18개월초과 24개월이하	-	1,475	100,000
24개월 초과	-	-	-
손상채권분류	-	-	-
합계	584	8,423	100,000

<전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미수금	미수수익	주임종장기채권
6개월 이하	1,958	1,475	-
6개월초과 12개월이하	-	2,319	100,000
12개월초과 18개월이하	-	-	-
18개월초과 24개월이하	-	-	-
24개월 초과	-	-	-
손상채권분류	-	-	-
합계	1,958	3,794	100,00

2) 보고기간말 현재 대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전기초
상품	평가전금액	221,690	1,101,690	1,094,030
	평가충당금	-	-	-
	장부금액	221,690	1,101,690	1,094,030

8.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전기초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비품	60,375	(37,310)	23,065	54,952	(32,563)	22,389	54,952	(23,310)	31,642
시설장치	306,461	(94,431)	212,030	306,461	(63,784)	242,677	152,000	(5,067)	146,933
건설중인자산	-	-	-	-	-	-	87,462	-	87,462
사용권자산	549,338	(173,957)	375,381	549,338	(119,023)	430,315	549,338	(9,156)	540,182
합계	916,174	(305,698)	610,476	910,751	(215,370)	695,381	843,752	(37,533)	806,219

(2)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대체	감가상각(주1)	기말
비품	22,389	5,423	-	-	(4,747)	23,065
시설장치	242,676	-	-	-	(30,646)	212,030
사용권자산	430,315	-	-	-	(54,934)	375,381
합계	695,380	5,423	-	-	(90,327)	610,476

(주1) 감가상각비는 전액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대체	감가상각(주1)	기말
비품	31,641	-	-	-	(9,253)	22,389
시설장치	146,933	67,000	-	87,462	(58,718)	242,677
건설중인자산	87,462	-	-	(87,462)	-	-
사용권자산	540,182	-	-	-	(109,868)	430,315
합계	806,219	67,000	-	-	(177,838)	695,381

(주1) 감가상각비는 전액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9. 리스

(1)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전기초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건물	549,338	(173,957)	375,381	549,338	(119,023)	430,315	549,338	(9,156)	540,182

(2)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	증가	감소	감가상각	기말
건물	430,315	-	-	(54,934)	375,381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	증가	감소	감가상각	기말
건물	540,182	-	-	(109,867)	430,315

(3)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	증가	감소	이자비용	지급	기말
건물	430,878	-	-	8,977	(60,000)	379,855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	증가	감소	이자비용	지급	기말
건물	529,408	-	-	21,469	(120,000)	430,878

(4) 당기 및 전기 중 리스와 관련해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54,934	54,934
리스부채이자비용	8,977	11,220
소액자산리스료	1,056	1,412
합계	64,967	67,566

당반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61백만원입니다.

(5) 당기말 현재 리스부채 및 금융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전기초	
	최소리스료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최소리스료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최소리스료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1년 이내	120,000	105,319	120,000	103,040	120,000	98,531
1년 초과 5년 이내	290,000	274,536	350,000	327,838	470,000	430,878
합계	410,000	379,855	470,000	430.878	590,000	529,409

10.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전기초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특허권	2,566	(513)	2,053	2,566	(257)	2,309	-	-	-
상표권	1,161	(1,101)	60	1,161	(1,044)	117	1,161	(868)	293
소프트웨어	169,507	(165,597)	3,910	169,507	(161,701)	7,806	169,507	(130,073)	39,434
합계	173,234	(167,211)	6,023	173,234	(163,215)	10,232	170,668	(130,941)	39,727

(주1) 무형자산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전액 계상됩니다.

(2)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주1)	기말
특허권	2,309	-	-	(256)	2,053
상표권	117	-	-	(57)	60
소프트웨어	7,806	-	-	(3,896)	3,910
합계	10,232	-	-	(4,209)	6,023

(주1) 무형자산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전액 계상됩니다.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주1)	기말
특허권	-	2,566	-	(257)	2,309
상표권	293	-	-	(176)	117
소프트웨어	39,434	-	-	(31,628)	7,806
합계	39,727	2,566	-	(32,061)	10,232

(주1) 무형자산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전액 계상됩니다.

11. 차입금

(1) 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차입처	연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전기초
단기차입금	(주)케이옥션(주1)	4.6%	1,500,000	1,500,000	1,500,000
단기차입금	(주)케이옥션(주1)	4.6%	2,000,000	2,000,000	-
합계			3,500,000	3,500,000	1,500,000

(주1) 종전 단기차입금의 대주인 아트폼스(주)와 아르떼케이(주)는 (주)케이옥션의 100% 자회사였으며, 전기 중 (주)케이옥션과 소규모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12.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자본금

1)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전기초
발행할주식의 총수(주)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주당 액면금액(원)	100	100	100
발행한 주식수(주)	12,375,015	12,375,015	11,325,015
보통주자본금(원)	1,237,501,500	1,237,501,500	1,132,501,500

2)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당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구분	일자	증감주식수	주당발행금액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전기>					
전기초	2024-01-01	11,325,015	-	1,132,502	5,615,478
유상증자	2024-09-04	1,050,000	2,900	105,000	2,937,048
전기말	2024-12-31	12,375,015	-	1,237,502	8,552,526
<당기>					
당반기초	2025-01-01	12,375,015	-	1,237,502	8,552,526
당반기말	2025-06-30	12,375,015	-	1,237,502	8,552,526

(2) 자본잉여금

1) 자본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전기초
주식발행초과금	8,552,526	8,552,526	5,615,478

2)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발행초과금	8,552,526	-	-	8,552,526

<전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발행초과금	5,615,478	2,937,048	-	8,552,526

13. 기타자본구성요소

(1)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전기초
기타자본잉여금	195,493	195,493	195,493
주식매입선택권	465,349	328,910	137,963
합계	660,842	524,403	333,456

(2)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기타자본잉여금	195,493	-	-	195,493
주식매입선택권	328,910	136,439	-	465,349
합계	524,403	136,439	-	660,843

<전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기타자본잉여금	195,493	-	-	195,493

주식매입선택권	137,963	190,947	-	328,910
합계	333,456	190,947	-	524,403

(3) 주식기준보상제도

1)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차	3차	4차
부여일	2022년 08월 09일	2023년 08월 31일	2024년 09월 01일
부여대상자	임직원	임직원	임직원
부여주식의 종류와 수량	기명식 보통주 436,291주	기명식 보통주 315,000주	기명식 보통주 220,000주
약정의 유형	신주발행방식	신주발행방식	신주발행방식
행사가격	1,776원/주당	1,777원/주당	2,900원/주당
행사가능기간	2023년 08월 10일~ 2031년 08월 10일	2025년 09월 01일~ 2028년 08월 31일	2026년 09월 01일~ 2029년 08월 31일

2)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주)

구분	2차	3차	4차
기초	193,904	315,000	220,000
부여	-	-	-
상실	-	-	-
행사	-	-	-
기말	193,904	315,000	220,000

<전기>

(단위: 주)

구분	2차	3차	4차
기초	193,904	315,000	-
부여	-	-	220,000
상실	-	-	-
행사	-	-	-
기말	193,904	315,000	220,000

3) 회사는 이항평가모형에 의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였으며, 공정가치 산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2차	3차	4차
평가기준일	2022년 8월 9일	2023년 8월 31일	2024년 9월 1일
주가	1,578원	1,243원	3,030원
행사가격	1,776원	1,777원	2,900원
무위험수익률	3.16%	3.76%	3.01%
적용변동성	49.14%	55.01%	64.41%
공정가치	806원	518원	1,739원

14. 이익잉여금

(1) 이익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전기초
미처분이익잉여금	(9,038,568)	(7,930,788)	(5,729,548)

15.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매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상품매출	-	438,667	1,108,662	2,234,857
수수료수입	-	-	-	1,502
기타수입	6,387	21,595	23,738	48,557
합계	6,387	460,262	1,132,400	2,284,916

(2) 매출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상품매출원가	-	426,235	1,064,651	2,158,681
기초상품	221,690	1,101,690	1,869,904	1,094,030
당기상품매입원가 등	-	(453,765)	205,924	2,075,828
기말상품	221,690	221,690	1,011,177	1,011,177
기타원가	3,196	4,706	-	-
합계	3,196	430,941	1,064,651	2,158,681

16.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293,188	584,750	293,498	584,484
퇴직급여	23,158	45,231	22,908	42,373
복리후생비	2,621	5,182	4,479	10,579
여비교통비	-	13	1,304	3,194
접대비	1,857	5,190	4,778	7,279
통신비	9,426	16,980	1,037	2,296
수도광열비	1,625	4,185	1,879	4,739
세금과공과	25,955	51,184	30,273	79,892
감가상각비	45,247	90,327	45,538	91,075
지급임차료	11,228	22,365	11,260	22,233
보험료	2,553	6,454	4,398	8,607
운반비	-	440	-	99
교육훈련비	-	-	-	456
도서인쇄비	129	470	222	1,142
소모품비	950	3,515	2,772	8,594
지급수수료	41,764	100,913	81,987	196,963
광고선전비	-	5,996	41,773	137,079
무형 고정자산 상각	2,105	4,210	7,951	15,902
주식보상비	68,220	136,439	39,939	79,878
합계	530,026	1,083,844	595,995	1,296,865

17.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금융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이자수익	15,690	35,080	6,209	12,380

(2) 금융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이자비용	44,513	88,815	45,506	82,231

18.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기타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잡이익	474	476	2	153

(2) 기타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잡손실	-	-	2,272	2,814

19.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사가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의 법정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는 21%이며, 법인세에 부과되는 주민세(10%)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발생하여 법인세비용의 평균유효세율은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 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상품의 변동	-	880,000	858,727	82,853
상품의 매입등	-	(453,765)	205,924	2,075,828
종업원 급여	316,346	629,981	316,406	626,857
복리후생비	2,621	5,182	4,479	10,579
세금과공과	25,955	51,184	30,273	79,892
감가상각비	45,247	90,327	45,538	91,075
보험료	4,332	9,744	4,398	8,607
지급수수료	43,182	102,330	81,987	196,963
무형 고정자산 상각	2,105	4,210	7,951	15,902
주식보상비	68,220	136,439	39,939	79,878
기타	25,215	59,152	65,025	187,112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	533,223	1,514,784	1,660,647	3,455,546

21. 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기본주당이익은 회사의 보통주당기순이익을 당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보통주반기순이익(손실)	(555,185,333)	(1,107,780,533)	(569,813,520)	(1,243,142,549)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1)	12,375,015	12,375,015	11,325,015	11,325,015
기본주당순이익(손실)	(45)	(90)	(50)	(110)

(*1)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주)

구 분		일자	주식수(주1,2)	가중치	유통보통주식수
당반기	기초	2025-01-01	12,375,015	181/181	12,375,015
	합계		12,375,015	-	12,375,015
전반기	기초	2024-01-01	11,325,015	182/182	11,325,015
	합계		11,325,015	-	11,325,015

(2) 희석주당순이익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로는 주식선택권이 존재하나, 희석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희석주당손실은 기본주당손실과 동일합니다.

(3) 잠재적 보통주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순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순이익을 희석화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주)

구분	청구기간	관련비용 (법인세효과 차감 후)	발행될 보통주식수
주식선택권	2023-06-01~2029-08-31	-	728,904

22. 현금흐름표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됩니다.

(2)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이자수익	(35,080)	(12,380)
이자비용	88,815	82,231
감가상각비	90,327	91,075
무형자산상각비	4,210	15,902
주식보상비	136,439	79,878
합계	284,711	256,706

(3)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선급비용의변동	(20,489)	(14,042)
미수금의 변동	14	1,388
선급금의 변동	(1,688)	(1,185)
부가세대급금의 변동	-	68,291
재고자산의 변동	426,235	82,853
미지급금의 변동	(11,193)	(4,438)
예수금의 변동	(575)	(25,671)
미지급비용의 변동	(1,672)	25,440
선수금의 변동	(25,677)	(1,651)
선수수익의 변동	(122)	149,333
합계	364,832	280,318

(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주임종장기채권의 유동성 대체	100,000	-
건설중인자산의 시설장치 대체	-	87,462

(5)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현금흐름	비현금 변동 등	기말
단기차입금	3,500,000	-	-	3,500,000
리스부채	430,878	(60,000)	8,977	379,855
합계	3,930,878	(60,000)	8,977	3,879,855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현금흐름	비현금 변동 등	기말
단기차입금	1,500,000	2,000,000	-	3,500,000
리스부채	529,408	(60,000)	11,220	480,628
합계	2,029,408	1,940,000	11,220	3,980,628

23. 특수관계자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관계	기업명	
	당반기	전기
최상위지배기업	티에이매니지먼트(유)	티에이매니지먼트(유)
중간지배기업	티에이어드바이저(유)	티에이어드바이저(유)
지배기업	(주)케이옥션	(주)케이옥션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주1)	-	-
기타	최상위지배기업, 중간지배기업 및 지배기업의 기타특수관계자 등	최상위지배기업, 중간지배기업 및 지배기업의 기타특수관계자 등

(주1) 전기 중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인 아트폼스(주), 아트네이티브(주), 아르떼케이(주)는 (주)케이옥션에 흡수합병되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	매입	매출원가	기타비용
티에이매니지먼트(유)	최상위지배기업	14,370	-	13,564	-
티에이어드바이저(유)	중간지배기업	14,439	-	13,579	-
(주)케이옥션	지배기업	-	-	-	154,715
아트큐브플러스(주)	기타	14,439	-	13,579	-
티에이파트너(유)	기타	14,370	-	13,564	-
임직원 등	기타	53,813	-	50,352	-
합계		111,431	-	104,638	154,715

<전반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	매출원가	기타비용
티에이매니지먼트(유)	최상위지배기업	35,882	33,818	-
티에이어드바이저(유)	중간지배기업	60,990	57,650	-
(주)케이옥션	지배기업	-	-	74,931
아트폼스(주)(주1)	지배기업의종속기업	-	-	34,311
아트네이티브(주)(주1)	지배기업의종속기업	-	-	36,699
아트큐브플러스(주)	기타	60,990	57,650	-
티에이파트너(유)	기타	35,882	33,818	-
임직원 등	기타	350,720	331,593	-
합계		544,464	514,529	145,941

(주1) 전기 흡수합병되기 이전까지의 거래 내역입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과 목	거래조건			변동내용			
			발생년도	약정기간	이율(%)	기초잔액	기중증가액	기중감소액	기말잔액
임직원	임직원	유동성 주임종장기채권	2022	상환시	-	100,000	-	-	100,000
(주)케이옥션	지배기업	단기차입금	2023	1년	4.6	1,500,000	-	-	1,500,000
(주)케이옥션	지배기업	단기차입금	2024	1년	4.6	2,000,000	-	-	2,000,000
합계						3,600,000	-	-	3,600,000

<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과 목	거래조건			변동내용			
			발생년도	약정기간	이율(%)	기초잔액	기중증가액	기중감소액	기말잔액
임직원	임직원	주임종장기채권	2022	상환시	-	100,000	-	-	100,000
(주)케이옥션	지배기업	단기차입금	2023	1년	4.6	1,500,000	-	-	1,500,000
(주)케이옥션	지배기업	단기차입금	2024	1년	4.6	-	2,000,000	-	2,000,000
합계						1,600,000	2,000,000	-	3,600,000

(4)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채권			채무		
		유동성 주임종장기채권	선급비용	임차보증금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티에이매니지먼트(유)	최상위지배기업	-	-	-	-	-	5,763
티에이어드바이저(유)	중간지배기업	-	-	-	-	-	6,579
(주)케이옥션	지배기업	-	36,271	60,000	3,500,000	240,147	-
아트큐브플러스(주)	기타	-	-	-	-	-	6,579
티에이파트너(유)	기타	-	-	-	-	-	5,763
임직원 등	기타	100,000	-	-	-	-	28,370
합계		100,000	36,271	60,000	3,500,000	240,147	53,054

<전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채권			채무		
		주임종장기채권	선급비용	임차보증금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티에이매니지먼트(유)	최상위지배기업	-	-	-	-	-	4,462
티에이어드바이저(유)	중간지배기업	-	-	-	-	-	5,348
(주)케이옥션	지배기업	-	15,072	60,000	3,500,000	160,309	-
아트큐브플러스(주)	기타	-	-	-	-	-	5,348
티에이파트너(유)	기타	-	-	-	-	-	4,462
임직원 등	기타	100,000	-	-	-	-	24,150
합계		100,000	15,072	60,000	3,500,000	160,309	43,770

(5) 특수관계자의 리스거래로 인한 리스부채 장부금액의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계정과목	기초	증가	감소	이자비용	지급	기말
(주)케이옥션	지배기업	부동산 리스	430,877	-	-	8,977	(60,000)	379,854

<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계정과목	기초	증가	감소	이자비용	지급	기말
(주)케이옥션	지배기업	부동산 리스	529,408	-	-	21,469	(120,000)	430,877

(6)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회사는 기업 활동의 계획·운영·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내부감사 책임자 및 각 사업부문장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기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단기종업원급여	228,854	297,600
퇴직급여	15,000	20,000
주식기준보상	45,231	45,571

24.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우발상황 및 주요 약정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미술품 공동구매 물품소유자 회원과 미술품에 대한 관리위탁 서비스 제공을 약정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약정을 통해 총 104점의 미술품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관리 중인 미술품을 회사의 지배기업인 (주)케이옥션이 운영하는 미술품 전문 시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미술품의 도난 및 분실 방지 보안 설비, 화재 등 재난 대비 시설, 특수 소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케이옥션과 동일한 조건 및 요율로 미술품 전문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 사용이 제한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목	예금종류	금융기관명	금액		사용제한내용
			당반기말	전기말	
기타투자자산	특정금전신탁	NH투자증권	617,350	474,593	투자자보호기금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하나은행	46,115	135,859	투자자보호기금
합계			663,465	610,452	

(3) 담보제공자산 내용

예금 이외에 담보제공(소유권제한 포함)한 내용은 없습니다.

(4) 제공받은 보증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보증제공자	예금종류	금액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50,000

(5) 보험가입의 내용

회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6)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기말 현재 중요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7) 주요 약정사항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은 없습니다.

25. 영업부문

회사는 단일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고 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6. 위험관리

(1) 금융위험관리

회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노력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관리

회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용위험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 및담보수준을 재조정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종류별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전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644,982	2,278,809	848,049
미수금	570	584	1,957
미수수익	10,770	8,423	3,793
유동성주임종장기채권	1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583,470	2,093,610	-
기타투자자산	51,593	474,593	457,394
임차보증금	617,350	50,483	48,293
주임종장기채권	-	100,000	100,000
합계	5,008,735	5,006,502	1,459,486

2) 유동성위험관리

회사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분	장부가액	현금흐름합계	3개월 미만	3개월~1년	1년~5년
미지급금	12,965	12,965	12,965	-	-
미지급비용	277,077	277,077	1,451	275,627	-
단기차입금	3,500,000	3,581,853	-	3,581,853	-
금융리스부채(주1)	379,855	410,000	30,000	90,000	290,000
합계	4,169,897	4,281,895	44,416	3,947,480	290,000

(주1)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 명목현금흐름금액 입니다.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장부가액	현금흐름합계	3개월 미만	3개월~1년	1년~5년
미지급금	24,158	24,158	24,158	-	-
미지급비용	222,916	222,916	82,448	140,468	-
단기차입금	3,500,000	3,573,600	2,013,863	1,559,737	-
금융리스부채(주1)	430,878	470,000	30,000	90,000	350,000
합계	4,177,952	4,290,674	2,150,469	1,790,205	350,000

(주1)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 명목현금흐름금액입니다.

<전기초>

(단위: 천원)

구분	장부가액	현금흐름합계	3개월 미만	3개월~1년	1년~5년
미지급금	27,817	27,817	27,817	-	-
미지급비용	46,376	46,376	-	46,376	-
단기차입금	1,500,000	1,559,762	-	1,559,762	-
리스부채(주1)	529,408	590,000	30,000	90,000	470,000
합계	2,103,601	2,223,955	57,817	1,696,138	470,000

(주1)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 명목현금흐름금액입니다.

3)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자율 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2)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극대화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회사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수정변경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전기초
부채총계 (A)	4,498,938	4,473,268	2,159,896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B)	1,644,982	2,278,809	848,050
순부채 (C=A-B)	2,853,956	2,194,459	1,311,846
자본총계(D)	1,412,302	2,383,644	1,351,888

총자본(E=C+D)	4,266,258	4,578,103	2,663,735
순부채비율 (F=C/E)	67%	48%	49%

2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

회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24년 1월 1일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채택일은 2025년 1월 1일 입니다. 개시 한국태책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회사가 적용한 회계정책과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의무적 예외항목의 적용

1) 추정치에 대한 예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2024년 1월 1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치는기존의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동일한 시점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추정된 추정치(회계정책의 차이조정 반영 후)와 일관성있게 작성됐습니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주요 설명

1) 이연법인세

회사는 과거회계기준의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이연법인세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비유동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리스

회사는 전환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전환일에 존재하는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회사는 전환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하였으며,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에 전환일 직전에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하거나 발생한 리스료 금액을 조정하여 측정하였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자본 및 총포괄손익의 차이조정

1) 2024년 1월 1일(전환일)현재 자본의 차이조정

(단위: 천원)

구 분	주	자 산	부 채	자 본
과거 회계기준		2,966,687	1,630,488	1,336,199
조정액:				
유형자산 상각방법 변경	1	16,622	-	16,622
리스인식		528,475	529,408	(933)
주식선택권	2	-	-	-
조정사항 이연법인세		-	-	-
조정액 합계		545,097	529,408	15,68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3,511,784	2,159,896	1,351,888

(주1) 감가상각방법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
(주2)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변동사항

2) 2024년 12월 31일 현재 자본의 차이조정

(단위: 천원)

구 분	주	자 산	부 채	자 본
과거 회계기준		6,350,499	4,042,390	2,308,109
조정액:				
유형자산 상각방법 변경	1	85,615	-	85,615
리스인식		420,798	430,878	(10,080)
주식선택권	2	-	-	-
조정사항 이연법인세		-	-	-

조정액 합계		506,413	430,878	75,53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6,856,911	4,473,268	2,383,644

(주1) 감가상각방법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
(주2)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변동사항

3) 2024년(2024년1월1일~2024년12월31일) 총포괄손익의 차이 조정

(단위: 천원)

구 분	당기손익	총포괄손익
과거 회계기준	(2,070,139)	(2,070,139)
조정액:		
유형자산 상각방법 변경	68,993	68,993
리스인식	(9,147)	(9,147)
주식선택권	(190,947)	(190,947)
조정사항 이연법인세	-	-
조정액 합계	(131,101)	(131,10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201,240)	(2,201,240)

4) 현금흐름표의 중요한 조정사항

과거회계기준에 따르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던 이자수취, 배당금수취,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액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현금흐름표상에 별도로 표시하기 위하여 관련 수익(비용) 및 관련 자산(부채)에 대한 현금흐름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원,주)

주식발행(감소)일자	발행(감소)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 당 액면가액	주 당 발행(감소)가액	비고
2022년 04월 25일	출자전환	기명식 보통주	26,023	100	26,900	제3자배정
2022년 04월 25일	유상증자	상환전환우선주	55,763	100	26,900	RCPS 발행

2022년 08월 27일	유상증자	상환전환우선주	66,915	100	26,900	RCPS 발행
2022년 08월 02일	무상증자	기명식 보통주	8,264,886	100	-	무상증자
2022년 08월 27일	무상증자	상환전환우선주	1,735,114	100	-	RCPS 무상증자
2023년 04월 28일	유상증자	기명식 보통주	504,777	100	1,777	주주배정
2023년 09월 27일	전환권행사	상환전환우선주	(1,857,792)	100	-	RCPS 전환
		기명식 보통주	1,857,792	100	-	
2023년 10월 20일	유상증자	기명식 보통주	113,207	100	2,650	제3자배정
2024년 09월 04일	유상증자	기명식 보통주	1,050,000	100	2,900	주주배정

(주1) 2022년 4월 25일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당사 기명식 보통주의 주금은 당사 전 대표이사 김항주가 당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으로 상계되어, 김항주가 발행된 기명식 보통주 전량을 인수하였습니다.

(주2) 당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3문단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환전환우선주에 상환권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공시기준 제5-7-2조에 따라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미상환 채무증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래 그 상세한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주3) 당사가 2022년 4월 및 2022년 8월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는 2022년 8월 27일 무상증자를 통하여 1,857,792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 9월 27일에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4) 당사는 2023년 9월 26일 이사회 결의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23년 10월 20일자로 보통주 113,207주를 신주로 발행하였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원)

구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출자전환	1	2022. 04. 24	채무상환	700,018,700	채무상환	700,018,700	
상환전환우선주	2	2022. 04. 24	운영자금 등	1,500,024,700	운영자금 등	1,500,024,700	
상환전환우선주	3	2022. 08. 26	운영자금 등	1,800,013,500	운영자금 등	1,800,013,500	
유상증자	4	2023. 04. 28	운영자금 등	896,988,729	운영자금	896,988,729	
유상증자	5	2023. 10. 19	운영자금 등	299,998,550	운영자금	299,998,550	
유상증자	6	2024. 09. 03	운영자금 등	3,045,000,000	운영자금	3,045,000,000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실이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재고자산 보유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4년	2023년	2022년	비고
상품 및 미착품(주1)	821,690	1,101,690	1,094,030	-	-
합계	821,690	1,101,690	1,094,030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13.9%	17.35%	36.9%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0.46 회	4.07 회	0.00회	-	-

(주1) 상기 재고자산의 구성내역은 당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는 2025년 10월말 가결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재고자산 실사내역 등

당사는 연 1회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자산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재고자산에 대하여 2025년 1월 6일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의 입회하에 재고자산을 실사하였습니다.

당사는 선매입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는 미술품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전에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에 의한 실사를 실시합니다.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검토)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8기(당기)	삼덕회계법인	-	-	-
제7기(전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8기(당기)	삼덕회계법인	2025년 1분기 재무제표 검토, 2025년 반기 재무제표 검토, 2025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 2025년 연간 재무제표 감사	46	500	18	246
제7기(전기)	삼덕회계법인	2024년 1분기 재무제표 검토, 2024년 반기 재무제표 검토, 2024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 2024년 연간 재무제표 감사	42	450	42	450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7기(전기)	2025.02	법인세 세무조정	2025.03~2025.03	3	삼덕회계법인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5.01.24	삼덕회계법인 3인 및 감사	서면회의	기말 입증감사 진행상황 및 수행결과 보고
2	2025.04.22	삼덕회계법인 3인 및 감사	서면회의	검토 수행 및 종결단계에서의 주요 협의사항
3	2025.07.18	삼덕회계법인 3인 및 감사	서면회의	검토 수행 및 종결단계에서의 주요 협의사항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자산 1천억원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회사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의무가 없습니다.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 1인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대표이사 도현순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6	3	1	-	-

(주1) 사외이사 지승현, 사외이사 김보름은 2025년 11월 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각 연임이 가결되었습니다.

(주2) 사외이사 배장원, 기타비상무이사 박지현은 2025년 11월 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나. 이사회의 주요 의결 사항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최일자	주요안건	가결여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김항주	-	-	남경회	김동선
			출석률: 100%	-	-	출석률: 0%	출석률: 100%
			찬반여부				
2023-02-09	제1호 의안 : 2023사업연도(2023.1.1.~2023.12.31)외부 감사인 선임	가결	찬성	-	-	-	찬성
2023-03-29	제1호 의안 : 유상증자의 건	가결	찬성	-	-	-	찬성
개최일자	주요안건	가결여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도현순	손이천	이지현	남경회	김동선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37.5%	출석률: 87.5%
			찬반여부				
2023-03-30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도현순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
2023-04-03	제1호 의안 : 경직승인의 건(도현순, 김병수, 손이천, 문대영, 이지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2023-05-10	제1호 의안 :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분쟁처리절차, 투자자 보호기금, 기타)의 건 제2호 의안 : 공시 관련 업무규정 제정의 건 제3호 의안 : 투자광고 지침 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2023-05-16	제1호 의안 : 투게더아트 조직개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2023-07-13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07-26	제1호 의안 : 임원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에 대한 건(이승행, 신규식) 제2호 의안 : 규정보완에 대한 건(이사회 운영규정,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규정, 민원처리지침)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2023-08-10	제1호 의안 : 매도 약정서 체결의 건 제2호 의안 : 제1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및 투자계약 등 투자관계서류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08-11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개최일자	주요안건	가결여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도현순	손이현	이지현	박지현	김동선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찬반여부				
2023-09-04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09-14	제1호 의안 : 임직원 성과급 지급에 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09-20	제1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에 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개최일자	주요안건	가결여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도현순	주재승	박지현	지승현	김보름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찬반여부				
2023-09-26	제1호 의안 : 신주식 발행 제3자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10-04	제1호 의안 : 규정보완에 대한 건(감사직무규정, 사외이사직무규정)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11-01	제1호 의안 : 기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11-29	제1호 의안 : 임대차 계약 체결의 건 제2호 의안 : 권한 위임의 건 제3호 의안 : 경영 보고 제4호 의안 : 주식 양수도 승인에 대한 건 제5호 의안 : 본점 이전 등기 변경에 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11-29	제1호 의안 : 투자계약증권 발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12-18	제1호 의안 : 규정 보완의 건 제2호 의안 : 경영 보고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02-06	제1호 의안 : 기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02-06	제1호 의안 : 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02-29	제1호 의안 : 제6기(2023사업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인사와 직급에 관한 건 제3호 의안 : 협약서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02-29	제1호 의안: 제2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및 투자계약 등 투자관계서류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03-14	제1호 의안 : 제6기(2023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정의 건 제1호 의안 : 외부감사 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04-03	제1호 의안 : 투자계약증권 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투자자보호기금 적립 및 출금제한계좌 개설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05-09	제1호 의안 : 취업규칙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06-19	제1호 의안 : 기초자산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06-19	제1호 의안 : 투자계약증권 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투자자보호기금 적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07-11	제1호 의안 : 기초자산에 관한 협약의 건 제2호 의안 : 기초자산에 관한 계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07-25	제1호 의안 : 신주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개최일자	주요안건	가결여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도현순	이관재	박지현	지승현	김보름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찬반여부				
2024-08-29	제1호 의안 : 기초자산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08-30	제1호 의안 : 실권주 처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10-02	제1호 의안 : 투자계약증권 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투자자보호기금 적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11-12	제1호 의안 : 기초자산에 관한 건 제2호 의안 : 주식 양수도 승인에 대한 건 제3호 의안 : 규정 보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11-12	제1호 의안 : 투자계약증권 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투자자보호기금 적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12-19	제1호 의안 : 기초자산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4-12-19	제1호 의안 : 투자계약증권 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투자자보호기금 적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5-01-23	제1호 의안 : 주식 양수도 승인에 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5-01-23	제1호 의안 : 투자자보호기금 출금 승인에 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5-01-23	제1호 의안 : 취업규칙 변경 승인에 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5-02-24	제1호 의안 : 제7기(2024사업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5-03-06	제1호 의안 : 제7기(2024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5-04-22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5-05-09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중임)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개최일자	주요안건	가결여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도현순	이관재	-	지승현	김보름
			출석률: 100%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찬반여부				
2025-10-20	제1호 의안 : 투자계약증권 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투자자보호기금 적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2025-10-20	제1호 의안 : 임시 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2025-10-20	제1호 의안: 임직원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제2호 의안: 경영보고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2025-11-05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다.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선임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명	성명	임기	연임횟수	추천인	활동분야 (담당업무)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사내이사(대표이사)	도현순	25.05~현재	1회	이사회	경영	최대주주의 임원
사내이사	이관재	24.08~현재	-	이사회	경영자문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	지승현	23.09~현재	1회	이사회	경영자문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	김보름	23.09~현재	1회	이사회	경영자문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	배장원	25.11~현재	-	이사회	경영자문	해당사항 없음
기타비상무이사	박지현	25.11~현재	-	이사회	경영자문	주요주주의 임원

(주1) 사내이사 이관재는 2024년 8월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주2) 사외이사 지승현, 사외이사 김보름은 2025년 11월 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연임이 가결되었습니다.

(주3) 사외이사 배장원, 기타비상무이사 박지현은 2025년 11월 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당사의 사외이사는 주 사업목적에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문성이 있으며, 당사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6	3	1	-	-

(주1) 사외이사 지승현, 사외이사 김보름은 2025년 11월 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각 연임이 가결되었습니다.

(주2) 사외이사 배장원, 기타비상무이사 박지현은 2025년 11월 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없으나,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당사 경영지원부문 운영팀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사외이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바, 현재까지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업무수행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경우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경력	비고	결격요건 여부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박준원	前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前 삼덕회계법인 감사본부 前 LG Energy solution 現 예인회계법인 대표	2023.09.20 (신규선임)	부	없음

나. 감사의 주요 활동내역

구분	일시	주요 안건	감사 신규식 출석률 50%
1	2023-02-09	제1호 의안 : 2023사업연도 (2023.1.1.~2023.12.31) 외부 감사인 선임	찬성
2	2023-03-29	제1호 의안 : 유상증자의 건	불참
구분	일시	주요 안건	감사 김병수 출석률 91%
3	2023-03-30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도현순 선임의 건	불참
4	2023-04-03	제1호 의안 : 겸직승인의 건	찬성
5	2023-05-10	제1호 의안 :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의 건 제2호 의안 : 공시 관련 업무규정 제정의 건 제3호 의안 : 투자광고 지침 제정의 건	찬성
6	2023-05-16	제1호 의안 : 투게더아트 조직개편의 건	찬성
7	2023-07-13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8	2023-07-26	제1호 의안 : 임원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에 대한 건 제2호 의안 : 규정보완에 대한 건(이사회 운영규정,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규정, 민원처리지침)	찬성
9	2023-08-10	제1호 의안 : 매도 약정서 체결의 건 제2호 의안 : 제1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및 투자계약 등 투자관계서류 체결의 건	찬성
10	2023-08-11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11	2023-09-04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12	2023-09-14	제1호 의안 : 임직원 성과급 지급에 대한 건	찬성
13	2023-09-20	제1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에 대한 건	찬성
구분	일시	주요 안건	감사 박준원 출석률 97%
14	2023-09-26	제1호 의안 : 신주식 발행 제3자배정의 건	불참
15	2023-10-04	제1호 의안 : 규정보완에 대한 건(감사직무규정, 사외이사직무규정)	찬성
16	2023-11-01	제1호 의안 : 기채의 건	찬성
17	2023-11-29	제1호 의안 : 임대차 계약 체결의 건 제2호 의안 : 권한 위임의 건 제3호 의안 : 경영 보고 제4호 의안 : 주식 양수도 승인에 대한 건 제5호 의안 : 본점 이전 등기 변경에 대한 건	찬성
18	2023-11-29	제1호 의안 : 투자계약증권 발행의 건	찬성
19	2023-12-18	제1호 의안 : 규정 보완의 건 제2호 의안 : 경영 보고	찬성
20	2024-02-06	제1호 의안 : 기채의 건	찬성

21	2024-02-06	제1호 의안 : 계약 체결의 건	찬성
22	2024-02-29	제1호 의안 : 제6기(2023사업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인사와 직급에 관한 건 제3호 의안 : 협약서 체결의 건	찬성
23	2024-02-29	제1호 의안: 제2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및 투자계약 등 투자관계서류 체결의 건	찬성
24	2024-03-14	제1호 의안 : 제6기(2023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정의 건 제1호 의안 : 외부감사 계약 체결의 건	찬성
25	2024-04-03	제1호 의안 : 투자계약증권 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투자자보호기금 적립 및 출금제한계좌 개설의 건	찬성
26	2024-05-09	제1호 의안 : 취업규칙 변경의 건	찬성
27	2024-06-19	제1호 의안 : 기초자산에 관한 건	찬성
28	2024-06-19	제1호 의안 : 투자계약증권 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투자자보호기금 적립의 건	찬성
29	2024-07-11	제1호 의안 : 기초자산에 관한 협약의 건 제2호 의안 : 기초자산에 관한 계약의 건	찬성
30	2024-07-25	제1호 의안 : 신주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	찬성
31	2024-08-29	제1호 의안 : 기초자산에 관한 건	찬성
32	2024-08-30	제1호 의안 : 실권주 처리의 건	찬성
33	2024-10-02	제1호 의안 : 투자계약증권 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투자자보호기금 적립의 건	찬성
34	2024-11-12	제1호 의안 : 기초자산에 관한 건 제2호 의안 : 주식 양수도 승인에 대한 건 제3호 의안 : 규정 보완의 건	찬성
35	2024-11-12	제1호 의안 : 투자계약증권 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투자자보호기금 적립의 건	찬성
36	2024-12-19	제1호 의안 : 기초자산에 관한 건	찬성
37	2024-12-19	제1호 의안 : 투자계약증권 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투자자보호기금 적립의 건	찬성
38	2025-01-23	제1호 의안 : 주식 양수도 승인에 대한 건	찬성
39	2025-01-23	제1호 의안 : 투자자보호기금 출금 승인에 대한 건	찬성
40	2025-01-23	제1호 의안 : 취업규칙 변경 승인에 대한 건	찬성
41	2025-02-24	제1호 의안 : 제7기(2024사업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42	2025-03-06	제1호 의안 : 제7기(2024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정의 건	찬성
43	2025-04-22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정의 건	찬성
44	2025-05-09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중임)에 관한 건	찬성
45	2025-10-20	제1호 의안 : 투자계약증권 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투자자보호기금 적립의 건	찬성
46	2025-10-20	제1호 의안 : 임시 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정의 건	찬성
47	2025-10-20	제1호 의안 : 임직원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제2호 의안 : 경영보고의 건	찬성
48	2025-11-05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찬성

(주1) 2023년 3월 30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김병수 감사는 중도퇴임 하였습니다.

(주2) 2023년 9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박준원 감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다. 감사에 관한 사항 및 독립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감사는 당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시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라.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재무회계 전문가로 충분한 역량 보유하여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추후 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 감사 지원조직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재무팀	2	매니저(2)	직무수행 보조

바. 준법지원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미도입	도입	미도입

실시여부	-	-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소수주주권의 행사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여부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권과 관련하여 경쟁 혹은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12,375,015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12,375,015	-
	우선주	-	-

바. 주식사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상 주식사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신주인수권	제10조 (신주인수권) (1)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주권을 협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3월 중
주주명부폐쇄시기	사업연도 종료 익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		
주권의 종류	기명주식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명의개서대리인	해당사항 없음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 없음	공고 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eshareart.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사.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종류	개최일자	주요안건	결의내용
임시주주총회	2018년 08월 16일	제1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2호 의안 : 기타 정관변경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18년 12월 28일	제1호 의안 : 기타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법인카드 사용 및 자금 지출 관리 규정 승인의 건	가결

정기주주총회	2019년 03월 29일	제1호 의안 : 영업 보고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19년 07월 05일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19년 12월 06일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정기주주총회	2020년 03월 31일	제1호 의안 : 영업 보고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0년 12월 17일	제1호 의안 : 신주 발행의 건 (제3자배정)	가결
정기주주총회	2021년 03월 31일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임원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등기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1년 07월 28일	제1호 의안 : 신주 발행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1년 12월 15일	제1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2년 02월 07일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2년 03월 15일	제1호 의안 :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결
정기주주총회	2022년 03월 31일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등기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2년 04월 24일	제1호 의안 :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2년 06월 02일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목적추가)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2년 08월 09일	제1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2년 08월 26일	제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가결
정기주주총회	2023년 3월 30일	제1호 의안 : 영업보고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도현순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손이천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이지현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승인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3년 07월 28일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3년 08월 29일	제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3년 09월 20일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박준원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규정보완의 건 제5호 의안 : 임직원 성과급 지급의 건	가결
정기주주총회	2024년 03월 29일	제1호 의안 :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4년 8월 12일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정기주주총회	2025년 03월 21일	제1호 의안 : 제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5년 05월 09일	제1호 의안 : 정관규정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중임)의 건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5년 11월 05일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가결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초		증권신고서 제출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케이옥션	최대주주	보통주	6,240,804	50.43%	6,240,804	50.43%	(주1)
계		보통주	6,240,804	50.43%	6,240,804	50.43%	-
		-	-	-	-	-	-

(주1) 종전 당사 주식 15.02%를 보유하던 아트폼스(주)와 6.73%를 보유하던 아르떼케이(주)는 (주)케이옥션이 각 100%를 출자한 완전 자회사들이었으며, 전기 중 (주)케이옥션과 소규모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케이옥션	18,944	도현순	0.7	-	-	티에이어드바이저(유)	49.3
		-	-	-	-	-	-

(주1) (주)케이옥션의 출자자수(주주수)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주)케이옥션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주2) (주)케이옥션의 출자자수(주주수)의 기준일은 2025년 6월 30일입니다.

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케이옥션
자산총계	201,121
부채총계	89,109
자본총계	112,012
매출액	19,457
영업이익	-4,756
당기순이익	-7,088

(주1) 상기 재무현황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가.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티에이어드바이저(유)	2	강수진	-	-	-	티에이매니지먼트(유)	51.0
		-	-	-	-	-	-

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티에이어드바이저(유)
자산총계	69,310
부채총계	20,002
자본총계	49,308
매출액	223
영업이익	-5,917
당기순이익	-6,927

(주1) 상기 재무현황은 2024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티에이매니지먼트(유)	3	강수진	-	-	-	도현순	52
		-	-	-	-	-	-

라.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티에이매니지먼트(유)

자산총계	2,988
부채총계	2,313
자본총계	675
매출액	-
영업이익	-21
당기순이익	-19

(주1) 상기 재무현황은 2024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마.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20-07-01	김항주	160,500	42.80%	주식양수도 계약	-
2020-12-23	김항주	160,500	30.57%	유상증자	-
2021-08-06	김항주	160,500	28.75%	유상증자	-
2021-12-30	김항주	365,490	65.46%	주식양수도 계약	-
2022-03-04	김항주	253,880	45.47%	주식양수도 계약	-
2022-04-24	김항주	279,903	43.73%	유상증자	-
2022-08-26	김항주	279,903	39.59%	유상증자	-
2022-08-27	김항주	4,238,754	39.59%	무상증자	-
2022-09-22	김항주	4,216,217	39.38%	주식양수도 계약	-
2023-02-10	(주)케이옥션	4,718,914	44.07%	최대주주와의 주식양수도 계약	-
2023-04-28	(주)케이옥션	5,190,804	46.30%	주주배정 유상증자	-
2023-10-19	(주)케이옥션	5,190,804	45.83%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24-09-04	(주)케이옥션	6,240,804	50.43%	주주배정 유상증자	-

5. 주식 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주)케이옥션	6,240,804	50.43	-
	김항주	1,119,161	9.04	(주1)
	Republic AEG Arttogether LP	1,013,337	8.19	-
우리사주조합		-	-	-

(주1) 당사 종전 최대주주 겸 종전 대표이사입니다.

6.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11	22	50.00	748,609	12,375,015	6.05	-

(주1)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월)	임기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도현순	남	1967.01.	대표이사	사내이사	상근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학사 前 한국은행 외화자금과 前 리만브러더즈 홍콩/서울 前 맥킨지앤드컴퍼니 서울 現 (주)케이옥션 대표이사 現 (주)투게더아트 대표이사	-	-	계열회사 대표이사	31	2028-05-09
이관재	남	1965.02	전무	등기이사	상근	투자자보호	前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등 現 (주)투게더아트 사업운영담당임원 전무	-	--	-	29	2026-08-11
지승현	남	1983.05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前 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 前 한국인삼공사 재무실 과장 前 KT&G 자금운용센터 금융투자팀 과장 現 로보에 테크놀로지 재무기획팀장 現 (주)투게더아트 사외이사	-	-	-	25	2028-11-04
김보름	여	1979.10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前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문화사업)팀장 前 영국 SOAS, UNIVERSITY OF LONDON 객원연구원 前 세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주임(초빙)교수 前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現 한성대학교 창의융합대학 조교수 現 (주)투게더아트 사외이사	-	-	-	25	2028-11-04
배장원	남	1974.05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前 사회적기업 ㈜꿈틀 前 국회의원 보좌관(4급, 정무위원회) 現 신성장연구소 소장 現 (주)투게더아트 사외이사	-	-	-	0	2028-11-04
박준원	남	1983.04	감사	감사	비상근	감사	前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前 삼덕회계법인 감사본부 前 LG Energy solution 現 예인회계법인 대표 現 (주)투게더아트 감사	-	-	-	25	2026-09-19
박지현	여	1995.01	이사	기타비상무 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前 Nomura Securities International Inc 前 Nomura International Plc 前 CJ Entertainment & Media 現 Republic 이사 現 (주)투게더아트 기타비상무이사	-	-	-	0	2028-11-04

나.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원)

겸직자		겸직회사	
성명	직위	회사명	직위
도현순	대표이사	(주)케이옥션	대표이사
박지현	기타비상무이사	REPUBLIC AEG	이사

다.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원수				합계	평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남	여	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사무직	남	7	-	-	-	7	1.99	324	49	-	-	-	-
	여	9	-	-	-	9	3.23	286	32				-
합 계		16	-	-	-	16	2.69	610	39				-

(주1) 등기임원은 제외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2) 인원수와 연간급여 총액 및 1인평균 급여액은 공시서류작성일 기준 현재 재직자 기준입니다.

라. 육아지원제도 사용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기(제7기)	전전기(제6기)
육아휴직 사용자 수	남	-	-	-
	여	1	-	-
	전체	1	-	-
육아휴직 사용률	남	0%	0%	0%
	여	11%	0%	0%
	전체	6%	0%	0%
육아휴직 복귀 後 12개월 이상 근속자	남	-	-	-
	여	-	-	-
	전체	-	-	-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		-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	-	-

마.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기(제7기)	전전기(제6기)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활용	활용	활용
시차출퇴근제 사용자 수	16	19	19
선택근무제 사용자 수	-	-	-
원격근무제(재택근무포함) 사용자 수	-	-	-

바.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임원이 없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6	2,000	-
감사	1	200	-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감사 전체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7	182	36	-

(주1) 인원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재임자 기준이며,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보수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기준입니다.
(주2)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재직 인원수로 단순평균하여 계산하였습니다.

(2) 유형별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149	74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22	11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11	11	-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부여받은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45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계	1	45	-

(주1)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은 K-IFRS 10월 가결산자료 기준입니다.

<표2>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원)

부여받은자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종류	최초 부여수량	당기변동수량		총변동수량		기말 미행사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의무 보유 여부	의무 보유 기간
						행사	취소	행사	취소					
이은우 (주1)	등기임원	2021.12.15	신주발행	보통주	33,499	-	-	-	33,499	-	2021.12.15 ~ 2023.12.14	1,776	-	-
김동선 (주1)	등기임원	2022.05.31	신주발행	보통주	96,952	-	96,952	-	96,952	-	2024.05.31 ~ 2031.05.30	1,776	-	-
이상화 (주1)	등기임원	2022.05.31	신주발행	보통주	6,401	-	-	-	6,401	-	2024.05.31 ~ 2031.05.30	1,776	-	-
이승행 (주2)	미등기임원	2022.08.09	신주발행	보통주	193,904	-	193,904	-	193,904	-	2024.08.09 ~ 2031.08.08	1,776	-	-
백승한	미등기임원	2022.08.09	신주발행	보통주	193,904	-	-	-	-	193,904	2024.08.09 ~ 2031.08.08	1,776	-	-
신규식 (주2)	미등기임원	2022.08.09	신주발행	보통주	48,483	-	48,483	-	48,483	-	2024.08.09 ~ 2031.08.08	1,776	-	-
이관재	미등기임원	2023.08.31	신주발행	보통주	50,000	-	-	-	-	50,000	2025.09.01~ 2028.08.31	1,777	-	-
***외 12명 (주1)	직원	2023.08.31	신주발행	보통주	265,000	-	25,000	-	25,000	240,000	2025.09.01~ 2028.08.31	1,777	-	-
이관재	등기임원	2024.09.01	신주발행	보통주	50,000	-	-	-	-	50,000	2026.09.01~ 2029.08.31	2,900	-	-

신규식	미등기임원	2024.09.01	신주발행	보통주	40,000	-	-	-	-	40,000	2026.09.01~ 2029.08.31	2,900	-	-
***외 명	직원	2024.09.01	신주발행	보통주	130,000	-	-	-	-	130,000	2026.09.01~ 2029.08.31	2,900	-	-

(주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가득기간 전 퇴사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주2)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진 포기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주3)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에는 부여시점 이후 무상증자에 따른 조정사항이 반영된 내역입니다. 부여받은 자와의 관계는 부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계
-	1	5	6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2.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겸직자		겸직회사	
성명	직위	회사명	직위
도현순	대표이사	(주)케이옥션	대표이사

3.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신용공여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한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백만원)

거래대상회사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대여기간	이자율	목적	거래내역				승인기관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케이옥션	지배기업의 종속회사	자금대여	2023.11.13 ~ 2025.11.13	4.6%	운영자금	1,500	-	-	1,500	이사회
(주)케이옥션	지배기업의 종속회사	자금대여	2024.02.06 ~ 2026.02.06	4.6%	운영자금	2,000	-	-	2,000	이사회
합계						3,500	-	-	3,500	

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그 밖의 보증을 성격을 가지는 이행약속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가. 증권 등 매수 또는 매도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기타 무형자산의 매입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장,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당사는 2022년 11월 29일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함에도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을 불제출한 이유 등으로 조건부 제재면제 등을 받은 바 있으나, 2023년 7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제재면제를 받았습니다. 당사의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와 제재면제 등에 관하여서는 「II. 1. 사업의 개요와 II. 7. 기타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개정 2025. 3. 00.>

(4쪽 중 제1쪽)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연도	2024.01.01 ~ 2024.12.3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주)투게더아트
			사업자등록번호	221-87-01096

구분		①요 건	②검 토 내 용	③적합 여부	④적정 여부
중기업	㉮ 사업요건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③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②, ③은 2025.0.0.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구분 / 업태별 | 기준경비율코드 | 사업수입금액 (01) (도매 및 소매업)업 | (04) 511115 | (07) 4,780,667,847 (02) ( )업 | (05) | (08) (03) 그밖의 사업 | (06) | (09) 계 | | 4,780,667,847	(17) 적 합 (Y) 부적합 (N)	(26)
	㉯ 규모요건	○아래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봄) 이내일 것 ②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출액 - 당 회사 (10) (47.0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11) (1,000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63.5 억원)	(18) 적 합 (Y) 부적합 (N)	적 (Y)
	㉰ 독립성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것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아닐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19) 적 합 (Y) 부적합 (N)	부 (N)
	㉱ 유예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일 것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5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3) (년)	(20) 적 합 (Y) 부적합 (N)	
소기업	㉲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Y) (N)	(27) 적 (Y)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이내일 것		○ 매 출 액 - 당 회사 (14) (47.0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15) (50.0 억원) 이하	(22) (Y) (N)	무 (N)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구분	①요 건	②검 토 내 용				③적합 여부	④적정 여부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 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23) (Y) (N)	(28) 적 (Y)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24) (Y) (N)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억원 미만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25) (Y) (N)	부 (N)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 균		
		0.0 억원	0.0 억원	0.0 억원	0.0 억원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1	주식회사 케이옥션	110111-3306861
비상장	5	주식회사 투게더아트	110111-6827096
		티에이매니지먼트 유한회사	110114-0163763
		티에이파트너 유한회사	110114-0163804
		티에이어드바이저 유한회사	110114-0096592
		아트큐브플러스㈜	110111-5221207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타법인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